연구보고 2023-1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17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저 자 이정원, 유해미, 조혜주, 김윤환, 신윤정, 한인애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김 윤 환** (스웨덴 Lund 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한 인 애** (일본 와코대학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17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컨텐츠협회 02-2279-676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65-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2023년에는 양육지원 정책에 있어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영아 양육지원의 강화' 기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육아지원 정책 분야에서 현재 교육·보육서비스의 통합 논의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정책인 '부모급여'의 도입,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및 개선은 특히 영아 양육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인 경제적인 부담,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의 어려움과 경력 단절 위험 등 영아를 마음 놓고 돌볼 수 없는 여건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한 정책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파격적인 수준의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제도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책들은 단지 그 금액의 절대액 상향, 휴직제도 이용 기간의 확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한 개선 방향이 내포하는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해당 정책의 도입은 관련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수요자들의 영아 양육지원 수요, 유관 정책 제도들 간의 관계에서의 변화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 분야에 차별화된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감지하여 지금까지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기조의 변화와 현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영아 가구의 양육지원 수요의 변화와 필요한 대응에 대한 영아 부모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영아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 분야의 체계화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른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요자의 욕구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그간 유아들과 차별화되지 않는 일괄적인 정책지원으로 양육지원 정책의 핵심 주제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영아 양육지원'의 중요성이 저출산의 위기를 배경으로나마 인식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영아 양육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2. 연구내용 ····· 33
3. 연구방법 ····· 33
4. 연구의 배경 ····· 40

Ⅱ.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및 현황 51

1.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 53
2.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 및 사업 현황 ····· 90
3. 소결 ····· 132

Ⅲ. 국외 영아 양육지원 정책 사례 분석 135

1. 일본 ····· 137
2. 프랑스 ····· 157
3. 스웨덴 ····· 179

Ⅳ. 영아 양육실태 분석 211

1. 영아 가구의 특성 ····· 213
2. 영아 가구의 양육 실태 ····· 215
3.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이용 계획 ····· 228
4. 소결 ····· 248

Ⅴ. 영아 양육을 위한 정책 요구 **251**
1. 영아 양육의 행복과 애로사항 ····· 253
2. 영아 양육지원 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 260
3.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 276
4.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개선 요구 ····· 284
5. 소결 ····· 305

Ⅵ.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311**
1.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 313
2.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준별 체계화 방안 ····· 317
3. 영아 양육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 321

참고문헌 **333**

Abstract **345**

부록 1. 부표 **351**
부록 2.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361**
부록 3. 전문가 의견 조사 **382**

표 목차

〈표 Ⅰ-3-1〉 영아 부모 조사 내용 ····· 34
〈표 Ⅰ-3-2〉 영아 부모 조사 모집단 현황 ····· 35
〈표 Ⅰ-3-3〉 영아 부모 조사 최종 조사 사례의 연령별·지역별 분포 ····· 35
〈표 Ⅰ-3-4〉 조사 개요 ····· 36
〈표 Ⅰ-3-5〉 영아부모 대상 FGI 개최 현황 ····· 37
〈표 Ⅰ-3-6〉 심층 면담 사례 ····· 37
〈표 Ⅰ-3-7〉 자문회의 개최 ····· 38
〈표 Ⅰ-3-8〉 영아기 양육지원체계 관련 해외사례 ····· 38
〈표 Ⅰ-3-9〉 정책세미나 개최 ····· 39
〈표 Ⅰ-4-1〉 영유아 부모 취업상태(2021년 보육실태조사) ····· 40
〈표 Ⅰ-4-2〉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2021년 보육실태조사) ····· 41
〈표 Ⅰ-4-3〉 영유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 42
〈표 Ⅰ-4-4〉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및 양육비 지출 수준 42
〈표 Ⅰ-4-5〉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 43
〈표 Ⅰ-4-6〉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2년, 실질비용) ····· 43
〈표 Ⅰ-4-7〉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44
〈표 Ⅰ-4-8〉 현재 초등 한자녀 부모 기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 44
〈표 Ⅱ-1-1〉 영아 맞춤형 보육의 주요내용(2016) ····· 79
〈표 Ⅱ-1-2〉 시기별 영아자녀 양육지원의 방향성 및 주요 정책(2006~2023) 88
〈표 Ⅱ-2-1〉 시간제보육 추진 연혁 ····· 91
〈표 Ⅱ-2-2〉 시간제보육 지원 내용 ····· 91
〈표 Ⅱ-2-3〉 영아종일제서비스 추진 연혁 ····· 92
〈표 Ⅱ-2-4〉 영아종일제서비스 소득기준유형별 정부지원 내용: 일반가정 ····· 93
〈표 Ⅱ-2-5〉 영아종일제서비스 소득기준유형별 정부지원 내용: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 93
〈표 Ⅱ-2-6〉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추진 연혁 ····· 95
〈표 Ⅱ-2-7〉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내용 ····· 96
〈표 Ⅱ-2-8〉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 99
〈표 Ⅱ-2-9〉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100

〈표 Ⅱ-2-10〉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101
〈표 Ⅱ-2-11〉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01
〈표 Ⅱ-2-12〉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 변화 ····· 107
〈표 Ⅱ-2-1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영아 기준) ····· 109
〈표 Ⅱ-2-14〉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10
〈표 Ⅱ-2-15〉 출산전후휴가 제도 주요 연혁 ····· 112
〈표 Ⅱ-2-16〉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주요 연혁 ····· 113
〈표 Ⅱ-2-17〉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주요 내용 ····· 115
〈표 Ⅱ-2-18〉 육아휴직제도 주요 연혁 ····· 119
〈표 Ⅱ-2-19〉 육아휴직(급여) 주요 내용 ····· 121
〈표 Ⅱ-2-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주요 내용 ····· 124
〈표 Ⅱ-2-21〉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 주요 연혁 ····· 125
〈표 Ⅱ-2-22〉 가족돌봄휴가 제도 주요 연혁 ····· 127
〈표 Ⅱ-2-23〉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 128
〈표 Ⅱ-2-2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 129
〈표 Ⅱ-2-25〉 시간지원 범주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 요약 ····· 130
〈표 Ⅱ-2-26〉 시간지원 범주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에 포함하는 양육지원 요약 ····· 131
〈표 Ⅲ-1-1〉 지역별보육의 시설기준, 공정가격 및 인건비 비율 ····· 146
〈표 Ⅲ-1-2〉 연령별 보육소 이용 아동수·대기 아동수(2023년4월1일 현재) · 147
〈표 Ⅲ-1-3〉 일본 서비스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표 ····· 150
〈표 Ⅲ-1-4〉 4개의 급부금 ····· 151
〈표 Ⅲ-1-5〉 2023년도 현재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 153
〈표 Ⅲ-1-6〉 아동수당의 개정내용 정리 ····· 153
〈표 Ⅲ-1-7〉 일본 현금지원 범주의 영아양육지원 요약 ····· 154
〈표 Ⅲ-1-8〉 육아휴업제도 개정 전후 변화 ····· 156
〈표 Ⅲ-1-9〉 일본 시간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56
〈표 Ⅲ-2-1〉 프랑스 3세 미만 영아의 주중 낮시간 주된 돌봄자 비중 (2002, 2007, 2013) ····· 158
〈표 Ⅲ-2-2〉 프랑스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62
〈표 Ⅲ-2-3〉 프랑스 출산보너스와 출산기초수당의 소득 기준 ····· 164
〈표 Ⅲ-2-4〉 프랑스 출산기초수당의 월 지급 액수 ····· 165

〈표 Ⅲ-2-5〉 프랑스 지녀사망수당의 지급 액수 ····· 165
〈표 Ⅲ-2-6〉 프랑스 가족수당의 월 지급 액수 ····· 166
〈표 Ⅲ-2-7〉 프랑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의 월 지급 액수 ····· 168
〈표 Ⅲ-2-8〉 프랑스 현금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71
〈표 Ⅲ-2-9〉 프랑스의 출산전후휴가기간 ····· 174
〈표 Ⅲ-2-10〉 프랑스 시간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77
〈표 Ⅲ-3-1〉 성별에 따른 평균 월급여 수준 (SEK) ····· 182
〈표 Ⅲ-3-2〉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주요 변화 경향(사회보험청) ····· 184
〈표 Ⅲ-3-3〉 1세 영아의 푀르스콜라 등록 인원 수 및 비율 ····· 186
〈표 Ⅲ-3-4〉 푀르스콜라 이용 아동 1인당 연간 소요비용 및 월별환산비용(SEK) ····· 187
〈표 Ⅲ-3-5〉 스웨덴 서비스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89
〈표 Ⅲ-3-6〉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 및 다자녀 추가 수당 액수 (1인 단독 수령시 기준: SEK) ····· 191
〈표 Ⅲ-3-7〉 아동수당(barnbidrag) 및 다자녀 추가 수당 수급현황 ····· 192
〈표 Ⅲ-3-8〉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 수급현황 ····· 195
〈표 Ⅲ-3-9〉 지난 10년간 스웨덴 성별 연령대별 이혼인구 ····· 197
〈표 Ⅲ-3-10〉 자녀양육비 지원(underhållsstöd) 수혜 아동 수 ····· 197
〈표 Ⅲ-3-11〉 아동가정 주거비지원(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 수급 가구수 및 가구별 평균 수급 금액 (SEK) ····· 198
〈표 Ⅲ-3-12〉 스웨덴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199
〈표 Ⅲ-3-13〉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 사용 및 부모휴가급여 (föräldrapenning) 수급 현황 ····· 202
〈표 Ⅲ-3-14〉 더블데이(dubbeldagar) 사용 현황 ····· 203
〈표 Ⅲ-3-15〉 10일휴가(10-dagar)를 사용한 인원 및 1인당 평균 사용 일수와 수급액(SEK) ····· 206
〈표 Ⅲ-3-16〉 아동돌봄휴가(vab)를 사용한 인원, 성비 및 1인당 평균 사용 일수와 수급액(SEK) ····· 208
〈표 Ⅲ-3-17〉 스웨덴 시간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 209
〈표 Ⅳ-1-1〉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 213
〈표 Ⅳ-1-2〉 영아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 ····· 214
〈표 Ⅳ-2-1〉 막내자녀 주양육자 ····· 215

〈표 Ⅳ-2-2〉 현재 주양육자와 희망 주양육자 일치 여부 ····· 216
〈표 Ⅳ-2-3〉 막내 자녀 보조양육자(중복응답) ····· 217
〈표 Ⅳ-2-4〉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는 빈도 ····· 218
〈표 Ⅳ-2-5〉 영아의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 ····· 219
〈표 Ⅳ-2-6〉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 221
〈표 Ⅳ-2-7〉 주중 평일 영아 부모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 222
〈표 Ⅳ-2-8〉 모의 영아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중 평일 ····· 223
〈표 Ⅳ-2-9〉 부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중 평일 ····· 224
〈표 Ⅳ-2-10〉 영아 부모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말 ····· 225
〈표 Ⅳ-2-11〉 모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말 ····· 226
〈표 Ⅳ-2-12〉 주중 자녀 직접 돌봄 시간의 충분성 정도 ····· 227
〈표 Ⅳ-3-1〉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 228
〈표 Ⅳ-3-2〉 현재 어린이집의 희망 어린이집 일치 여부 ····· 230
〈표 Ⅳ-3-3〉 현재 어린이집의 희망 어린이집 일치 여부 ····· 230
〈표 Ⅳ-3-4〉 어린이집 주 평균 이용 일수 ····· 231
〈표 Ⅳ-3-5〉 어린이집 등원시간 ····· 231
〈표 Ⅳ-3-6〉 어린이집 하원시간 ····· 233
〈표 Ⅳ-3-7〉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충분성 여부 ····· 235
〈표 Ⅳ-3-8〉 어린이집 등·하원에 걸리는 편도 시간 ····· 235
〈표 Ⅳ-3-9〉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 236
〈표 Ⅳ-3-10〉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37
〈표 Ⅳ-3-11〉 어린이집 연장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 238
〈표 Ⅳ-3-12〉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시 연장보육 이용 의향 239
〈표 Ⅳ-3-13〉 현재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 ····· 240
〈표 Ⅳ-3-14〉 어린이집 실제 이용 시작 시기와 희망 이용 시기의 일치 여부 240
〈표 Ⅳ-3-15〉 희망했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 ····· 241
〈표 Ⅳ-3-16〉 희망시기보다 빨리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이유 ····· 242
〈표 Ⅳ-3-17〉 (희망 시기보다 일찍 이용한 경우) 가정양육 가능 시 어린이집 입소시기 지연 의향 여부 ····· 242
〈표 Ⅳ-3-18〉 어린이집 외 다른 학원이나 기관 이용 여부 ····· 243
〈표 Ⅳ-3-19〉 어린이집, 학원, 기타 기관 등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44
〈표 Ⅳ-3-20〉 기관 미이용 영아자녀 가구의 기관 이용 계획 여부 ····· 244
〈표 Ⅳ-3-21〉 기관 미이용 영아자녀 가구의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기 ····· 245

〈표 Ⅳ-3-22〉 기관 미이용 영아자녀 가구의 이용 예정 기관 유형 ····· 246
〈표 Ⅳ-3-23〉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여부 ····· 246
〈표 Ⅳ-3-24〉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 ····· 247
〈표 Ⅴ-1-1〉 영아 자녀 양육의 행복감 정도 ····· 253
〈표 Ⅴ-1-2〉 영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1+2순위 ····· 254
〈표 Ⅴ-1-3〉 자녀 양육의 어려움 - 1순위 ····· 255
〈표 Ⅴ-1-4〉 부모별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 경험 여부 ····· 256
〈표 Ⅴ-1-5〉 제특성별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 경험 여부 - 엄마 256
〈표 Ⅴ-1-6〉 양육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 258
〈표 Ⅴ-1-7〉 양육 관련 정부지원사업 정보 획득 시의 어려움 ····· 259
〈표 Ⅴ-1-8〉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 정도 ····· 260
〈표 Ⅴ-2-1〉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 261
〈표 Ⅴ-2-2〉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 유무 ····· 261
〈표 Ⅴ-2-3〉 영아 양육 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 ····· 261
〈표 Ⅴ-2-4〉 현금성 지원 인지 여부 ····· 262
〈표 Ⅴ-2-5〉 현금성 지원 인지 여부 - 1) 부모급여 ····· 262
〈표 Ⅴ-2-6〉 가정양육수당 인지 여부 ····· 263
〈표 Ⅴ-2-7〉 아동수당 인지 여부 ····· 264
〈표 Ⅴ-2-8〉 첫만남이용권 인지 여부 ····· 264
〈표 Ⅴ-2-9〉 현금성 지원 수혜 경험 유무 ····· 265
〈표 Ⅴ-2-10〉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중복응답) ····· 266
〈표 Ⅴ-2-11〉 현금성 급여(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사용처(중복응답) ····· 267
〈표 Ⅴ-2-12〉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인지 여부 ····· 268
〈표 Ⅴ-2-13〉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269
〈표 Ⅴ-2-14〉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 이용 기간(평균) ····· 269
〈표 Ⅴ-2-15〉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 ····· 269
〈표 Ⅴ-2-16〉 어머니 소득별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기간 ····· 270
〈표 Ⅴ-2-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기간 ····· 270
〈표 Ⅴ-2-18〉 가족돌봄휴직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기간 ····· 270
〈표 Ⅴ-2-19〉 자녀양육에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의 도움 정도 ····· 271
〈표 Ⅴ-2-20〉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제도의 이용 의향 ····· 272
〈표 Ⅴ-2-21〉 어머니 육아휴직제도 이용 의향 ····· 273

〈표 Ⅴ-2-22〉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의향 ····· 274
〈표 Ⅴ-2-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의향 ····· 275
〈표 Ⅴ-3-1〉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 277
〈표 Ⅴ-3-2〉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 1순위 ····· 278
〈표 Ⅴ-3-3〉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종합) ····· 280
〈표 Ⅴ-3-4〉 영아 자녀 당 매월 110만원 지원의 효과 ····· 281
〈표 Ⅴ-3-5〉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의 개선점 ····· 283
〈표 Ⅴ-3-6〉 아버지 육아휴직 개선점 ····· 284
〈표 Ⅴ-4-1〉 응답자 특성 ····· 285
〈표 Ⅴ-4-2〉 현행 영아 대상 양육지원정책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 286
〈표 Ⅴ-4-3〉 영아 양육지원정책의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287
〈표 Ⅴ-4-4〉 현금 지원 정책 부문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287
〈표 Ⅴ-4-5〉 서비스 지원 정책 부문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288
〈표 Ⅴ-4-6〉 시간 지원 정책 부문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288
〈표 Ⅴ-4-7〉 연령별 강화가 필요한 정책 범주 ····· 289
〈표 Ⅴ-4-8〉 서비스 지원 정책의 개선 및 강화 필요성: 일반 서비스 지원 ·· 289
〈표 Ⅴ-4-9〉 서비스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단시간 서비스 지원 · 290
〈표 Ⅴ-4-10〉 기타 영아 양육을 위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과제 ····· 291
〈표 Ⅴ-4-11〉 현금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 291
〈표 Ⅴ-4-12〉 기타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부문의 개선과제 ····· 292
〈표 Ⅴ-4-13〉 시간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집중적인 돌봄 시간 부여 ····· 292
〈표 Ⅴ-4-14〉 시간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부여 ····· 293
〈표 Ⅴ-4-15〉 기타 영아 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부문의 개선과제 ····· 294
〈표 Ⅴ-4-16〉 부모 급여의 영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294
〈표 Ⅴ-4-17〉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제도 이용 수요 변화 예상 ····· 295
〈표 Ⅴ-4-18〉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 295
〈표 Ⅴ-4-19〉 육아휴직급여 상향 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 296
〈표 Ⅴ-4-20〉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의 확대 시 육아휴직 이용 시기 변화 296
〈표 Ⅴ-4-21〉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의 확대 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 ····· 296
〈표 Ⅴ-4-22〉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 ····· 297
〈표 Ⅴ-4-23〉 현재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 범주에서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하거나, 중복 지원 또는 지원이 누락된 부분 ····· 298
〈표 Ⅴ-4-24〉 지원이 미흡한 대상과 미흡한 지원 내용 ····· 298
〈표 Ⅴ-4-25〉 지원이 누락된 대상과 지원 내용 ····· 298
〈표 Ⅴ-4-26〉 지원이 중복된 대상과 지원 내용 ····· 299
〈표 Ⅴ-4-27〉 영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 서비스, 현금 지원 부문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 300
〈표 Ⅴ-4-28〉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대상 연령 조정의 적절성 ····· 302
〈표 Ⅴ-4-29〉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기준 변경의 적절성 ····· 302
〈표 Ⅴ-4-30〉 제도 개선 방안의 적절성 ····· 303
〈표 Ⅴ-4-3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한 의견 ····· 303
〈표 Ⅴ-4-3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반대 이유 ····· 304
〈표 Ⅵ-2-1〉 자녀 양육지원의 범주별 지원 목적에 따른 체계화 ····· 318
〈표 Ⅵ-2-2〉 영아 양육지원의 대상 특성에 따른 체계화 ····· 319
〈표 Ⅵ-2-3〉 영아 양육지원의 지원 유형에 따른 체계화 ····· 320
〈표 Ⅵ-3-1〉 실수요자를 위한 연장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 325
〈표 Ⅵ-3-2〉 서비스 지원의 개선 방안(종합) ····· 326
〈표 Ⅵ-3-3〉 유사·중복성 현금지원의 통합 방안 ····· 328
〈표 Ⅵ-3-4〉 자녀수 기준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차등 부여 방안 ····· 331
〈표 Ⅵ-3-5〉 시간 지원의 취약대상을 위한 특례(안) ····· 331

그림 목차

[그림 Ⅰ-3-1] 연구 추진 체계 ····· 39
[그림 Ⅱ-1-1] 육아휴직제도 사용 권리(2021) ····· 64
[그림 Ⅱ-1-2]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2021) ····· 64
[그림 Ⅱ-1-3] 자녀양육지원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2011) ····· 68
[그림 Ⅱ-1-4]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의 정책 과제(2018) ····· 71
[그림 Ⅱ-1-5]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체계도(2012) ····· 76
[그림 Ⅱ-1-6] 촘촘한 수요자 맞춤형 설계·지원(2013) ····· 78
[그림 Ⅱ-1-7]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2020) ····· 80
[그림 Ⅱ-1-8]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체계도(2022) ····· 82
[그림 Ⅱ-1-9]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4) ····· 83
[그림 Ⅱ-1-10]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 83
[그림 Ⅱ-2-1]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목적 ····· 97
[그림 Ⅱ-2-2] 첫만남이용권 사업추진체계 ····· 104
[그림 Ⅱ-2-3]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추진체계 ····· 116
[그림 Ⅲ-1-1] 소자화 대책 '가속화플랜'의 구체적 내용 ····· 140
[그림 Ⅲ-1-2] 출생률 및 합계특수출생률의 연차추이 ····· 141
[그림 Ⅲ-1-3]] 연령대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142
[그림 Ⅲ-1-4] 연도별 맞벌이 세대수 추이 ····· 142
[그림 Ⅲ-1-5]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 개요 ····· 143
[그림 Ⅲ-1-6]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 145
[그림 Ⅲ-1-7] 대기아동수 및 보육소 등 이용률 추이(2013-2023) ····· 146
[그림 Ⅲ-1-8] 성별·이용기간별 육아휴업 이용률(2021년 고용균등 기본조사 기준) ····· 155
[그림 Ⅲ-3-1] 2000년대 남녀 취업률(스웨덴 VS OECD 평균) ····· 183
[그림 Ⅳ-2-1] 주중 평일 영아 부모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 222
[그림 Ⅳ-2-2] 주중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의 충분성 정도 ····· 227
[그림 Ⅴ-2-1]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중복응답) ····· 266
[그림 Ⅴ-2-2] 자녀양육에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의 도움 정도 ····· 272

부표 목차

〈부표 Ⅳ-2-1〉 모의 주중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충분한 정도 ····· 351
〈부표 Ⅳ-2-2〉 부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말 ····· 352
〈부표 Ⅳ-2-3〉 주중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충분한 정도 - 아빠 ····· 354
〈부표 Ⅳ-3-1〉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문15) ····· 354
〈부표 Ⅴ-2-1〉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1) 출산전후휴가 ····· 354
〈부표 Ⅴ-2-2〉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3-1) 어머니 육아휴직 ····· 355
〈부표 Ⅴ-2-3〉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3-2) 아버지 육아휴직 ····· 356
〈부표 Ⅴ-2-4〉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56
〈부표 Ⅴ-2-5〉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5) 3+3 부모육아휴직제 ····· 357
〈부표 Ⅴ-2-6〉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7) 가족돌봄휴가 ····· 358
〈부표 Ⅴ-2-7〉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58
〈부표 Ⅴ-3-1〉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 ····· 359
〈부표 Ⅴ-3-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 ····· 359
〈부표 Ⅴ-3-3〉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 ····· 359
〈부표 Ⅴ-3-4〉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시 이용 의향 ····· 360
〈부표 Ⅴ-3-5〉 어머니 육아휴직 개선점 ····· 360

요약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영아 양육지원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유관 제도 간 정합성 제고의 요구 증가

- 영아기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기존의 서비스 위주에서 최근 현금 지원과 시간 지원의 강화 등 전반적인 영아기 양육지원 제도들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변동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들 간의 정합성 제고와 조정의 필요성을 야기함.

□ 최근 변화된 정책 환경 하에서 현재의 영아 양육 지원 정책들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들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하기 위한 양육지원 범주 간 정합성의 정도를 진단하여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를 통해 영아 가구의 특성 파악 및 영아 양육의 실태와 영아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들의 시기별 연구 경향을 살펴봄.
- 국내 국가 수준의 주요 계획을 통해 영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의 변화 경향 및 현재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함.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양육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양육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함.
- 영아 가구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영아 양육 실태와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혜 경험과 체감도, 개선 요구,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양육 형태의 변화 의향 등을 파악함.
-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요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영아가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양육지원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영아 가구의 특성 및 영아 양육지원 정책 기조의 변화,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을 선행연구 및 통계 자료, 문헌 자료를 통해 파악함.

□ 영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

- 0~2세 영아 가구의 부모 1,000명 대상으로 영아 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조사 실시

-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총 40명을 대상으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요건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영아 가구 대상 심층 면담(FGI) 실시

- 영아 양육의 구체적인 상황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 등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심층면담을 총 4차례에 걸쳐 16명의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함.

2.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및 현황

가.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 중앙정부의 유관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위주로 국내 영아 가구 대상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동향의 정책적 함의를 모색함.

〈요약표 2-1〉 시기별 영아자녀 양육지원의 방향성 및 주요 정책(2006~2023)

시기 구분	방향성	주요 정책
2006~2008년	-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영아보육 접근성 제고 -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06) - 출산휴가급여 확대('06)_: 30일 → 90일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08): 2자녀 이상 보육료 지 → 만0~4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차등지원 - 육아휴직 대상연령 확대('08): 1세 미만 → 3세 미만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08): 3일 → 5일 ※ 고운맘카드 도입: 20만원

시기 구분	방향성	주요 정책
2009~2011년	- 보육시설 미이용가구 양육비 지원 - 보육료 지원 확대 (계속)	- 양육수당 도입('09): 0~1세아, 10만원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09년 소득하위 50% 이하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 육아휴직 대상연령 확대('10): 3세 미만 → 8세 미만 -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11): 정액 50만원 → 정률 통상임금 40% ※ 고운맘카드 지원 확대: '10년 30만원 → '11년 40만원 → '12년 50만원
2012년~2015년	- 영아 가정내돌봄 활성화 - 부모 역할 지원 강화 - 시설보육과 가정내보육 형평성 제고	- 영아(0~2세) 전(全)계층 보육료 지원('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12) - '아빠의 달' 도입('14): 1개월, 통상임금 100%(150만원)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12년 소득하위 70% → 모든 취업부모, '14년 12개월 → 24개월
2016~2018년	-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	- 영아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16)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6): 24개월 이하 → 36개월 이하 - '아빠의 달' 지원 확대: '18년 1개월 → 3개월/200만 → '19년 250만원 - 아동수당제도 도입('18): 6세 미만
2019~2022년	- 영아가구 집중투자: 소득보장과 영아 현금지원 강화 - 공보육 확충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 출산지원금 도입('19): 3개월 동안 50만원 - 자녀돌봄휴가('19): 연간 10일(무급)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19): 3일 → 10일 - 보육지원체계 개편('20): 영아 대상 연장보육 자격기준 적용 - 영아수당 도입('22) ※ 아동수당 확대: '19년 7세 미만 → '22년 8세 미만 ※ 첫만남이용권 지급('22): 출생아 당 200만원
2023년 이후	- 영아 가정양육을 위한 종합적 양육지원	- 부모급여 도입('23) - 육아휴직: 부모 공동 사용 시 휴직 기간 1년 → '1.5년 확대(예정)

나.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 및 사업 현황

-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범주를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정책 범주별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지원'으로 구분하여 현재 국내의 정책 현황을 파악함.

□ 서비스 지원 정책 현황

〈요약표 2-2〉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주) 이용 비용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개념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단위 보육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보육료)를 지원 *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
목적	가정 양육가구의 일시적 보육서비스 수요 충족	아동의 안전한 보호·복지증진/영아를 둔 취업부모에 시설보육 외 선택권 제고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육성/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아동의 안전한 보호·복지증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자원 창출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도입 연도	2013(시범사업으로 도입)	2010	1991(본인부담 원칙, 예외적 저소득층 지원으로 시작)	2006(시범사업으로 도입)
지원 대상	생후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10)12개월→ ('14)24개월→ ('17)36개월로 확대	만 0-5세 - 만0~5세 영유아 중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유치원 미이용 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시간제 보육료 지원(시간제 보육료의 75%) 월 80시간까지 지원 *'23년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4,000원	- 아이돌보미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4개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대비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라형 전액 본인 부담)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	- 영아반(0~2세반) 기본 보육료 전액 지원(소득 무관) - '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바우처)로 보육료 전액 지원 -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추가 지원(영아반 시간당 2,000원)	- 아이돌보미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 4개 소득기준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대비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라형 전액 본인 부담)
근거법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주) 이용 비용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육기반과)	
전달 체계	*관리기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읍·면·동(비용지원) *여성가족부-중앙/광역지원센터-교육기관-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복지부-시·도-시·군·구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읍·면·동(비용지원) *여성가족부-중앙/광역지원센터-교육기관-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비고: 특징, 타사업 중복성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육아휴직 이용 여부 무관**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지원 불가(돌봄공백 기준 미충족)**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 지원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기관을 주된 보육·교육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주1) 지원 제외 **-육아휴직 이용 여부 무관(단, 연장보육 자격은 제외)**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지원 불가(돌봄공백 기준 미충족)**

주: 정기적(주 3회 이상)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또는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 타 사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등(보건복지부, 2023: 342).

□ 현금 지원 정책 현황

〈요약표 2-3〉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현금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도입연도 (최초지급)	2022년	2023년	2019년	2009년
지원 대상	만 0세	만 0-1세	만 8세 미만 아동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200만원(1회)	-가정양육시 현금	월 10만원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영아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영아 대상 현금지원</th><th colspan="2">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th></tr>
<tr><th>첫만남이용권</th><th>부모급여</th><th>아동수당</th><th>가정양육수당</th></tr>
<tr><td></td><td></td><td>구분 | ’23년 | ’24년
만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만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시 차액만 지급</td><td></td><td>①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②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2년생부터 24개월 이후부터 지원</td></tr>
<tr><td rowspan="2">근거법</td><td rowspan="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td><td>「아동수당법」 제1조, 제3조, 제4조</td><td rowspan="2">「아동수당법」</td><td rowspan="2">「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조항</td></tr>
<tr><td>「아동복지법」 제1조, 제4조</td></tr>
<tr><td></td><td>「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td><td>「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제4조</td><td></td><td></td></tr>
<tr><td>주무부처</td><td>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td><td>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td><td>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td><td>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td></tr>
<tr><td>전달체계</td><td>복지부-시·도-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 관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td><td colspan="2">복지부-시·도-시·군·구
*신청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현장), 복지로, 정부24시(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 행복e음 통해 대상 아동 가구에 직접 입금</td><td>복지부-시·도-시·군·구
*신청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현장), 복지로, 정부24시(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어 매월 25일 현금지급</td></tr>
<tr><td>비고: 타사업 중복성</td><td>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가능</td><td>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과 동시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안됨.</td><td>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가능</td><td>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동시 신청 가능</td></tr>
</table>

□ 시간 지원 정책 현황

〈요약표 2-4〉 시간지원 범주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가 있는 부모) 대상 시간지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특례 (3+3부모육아휴직제)
개념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부여되는 최소한의 보호휴가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구분	영아(가 있는 부모) 대상 시간지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특례 (3+3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월 최대 300만원)
목적	모성보호/ 태아 건강 보호	모성보호/자녀 양육	초기 영아기의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
도입연도(시행일 기준)	1953(유급보호휴가 60일 부여)	2008(무급) → 2012(유급)	2022
지원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출산 전후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다태아일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및 통상임금 지급 - 유산·사산 위험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 분할 사용 가능(횟수 제한, 최대 44일 내 기간 제한 없음)	- 10일 유급 휴가 부여 (통상임금 지급: 401, 910원 상한) - 1회 분할사용 가능	-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 이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향지급(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거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비고: 타사업 중복성	모성보호가 주 목적/서비스(보육, 아이돌봄) 또는 현금 지원(부모급여) 수급 가능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 목적/서비스(보육, 아이돌봄) 또는 현금 지원(부모급여) 수급 가능	출산휴가 후 사용 가능/서비스, 현금 지원 수급 가능

〈요약표 2-5〉 시간지원 범주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에 포함하는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의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 (가족돌봄휴직)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무급휴직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하는 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족돌봄휴가) 단기적, 긴급한 사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무급 휴가	
목적	- (도입 초기) 모성보호 및 영아 양육 지원 →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기에도 근무를 지속함으로써 경력단절 방지와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달성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한 필요에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폭넓게 보장
도입연도 (시행일기준)	1988	2008	- (가족돌봄휴직) 2008 - (가족돌봄휴가) 2020	2019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질병,사고, 노령,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
지원 내용	- 한 자녀당 부모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 분할 사용 가능(2회) - 육아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휴직급여로 지급	- 한 자녀당 부모 근로자 각각 1년씩(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2년까지)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 분할 사용 가능(1회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일부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원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해마다 반복 이용 가능(무급)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비상시 10일 범위내 연장 가능),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까지(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 - (질병, 사고로 인한 돌봄이 아닌)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사용 불가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
비고: 타사업 중복성 등	- 어린이집 이용 가능(연장보육제외)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불가(양육공백 기준 미충족)	- 취업중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능(돌봄공백 기준 충족)	- 휴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불가(양육공백 기준 미충족)	- 취업중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능(돌봄공백 기준 충족)

3. 국외 영아 양육지원 정책 사례 분석

가. 일본

□ 서비스 지원

〈요약표 3-1〉 일본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

구분	지역별보육사업(인가)			
	소규모 보육사업	가정적 보육사업	사업소내 보육사업	거택방문형 보육사업
지원대상	0~2세 아동 6~19명	0~2세 아동 5명이내(3명부터 보조자 필수)	0~2세 아동	0~2세 아동 1 : 1보육
지원내용	보육자의 거택, 그 외의 장소, 시설의 보육	보육자의 거택, 그 외의 장소, 시설의 보육	종업원의 아동과 지역의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대상(지역의 일정수)	방문형 1대1 보육
근거법	어린이·육아지원법			

〈요약표 3-2〉 일본의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인가보육시설		인가외 보육시설		
인가보육소 (認可保育所)	인정어린이원 (認定こども園)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인증보육소 (認証保育所)	그외의 인가외 보육시설
0세~취학전아동	0세~취학전아동	0세~취학전아동	0세~취학전아동	0세~취학전아동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아동복지법	인정어린이원법			

□ 현금 지원

〈요약표 3-3〉 일본 현금지원 범주의 영아양육지원

구분	영아대상현금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육아 응원교부금	출산수당금	육아휴업급부금	아동수당
지원 대상	거의 모든 여성	모든 여성	건강보험과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회사원과 공무원인 여성)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아님)	중학생까지
지원 내용	50만엔	5만엔상당×2회 *쿠폰,서비스이용권, 교통비나 베이비용품 구입,랜탈비용조성 등 폭넓은 방법으로 지급가능	과거 12개월의 평균월수 ×2/3÷30일	지급개시부터 180일까지 : 과거 6개월의 평균 월수×0.67÷30일 지급개시부터 181일이후 : 과거6개월의 평균월수×0.5÷30일	3세미만 15,000엔 3세이상 취학전 10,000엔(셋째이후 15,000엔) 중학생 10,000엔

□ 시간 지원

〈요약표 3-4〉 일본 시간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구분	영아대상 시간지원		
	출생시 육아휴업 (통상 산후아빠육휴)	육아휴직제도	아빠엄마육휴플러스 (계속)
지원대상	아이 출생후 8주간 이외에 4주간까지 이용 가능 *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이용가능	원칙 아이가 1세 (최장 2세)까지	아이가 1세 2개월까지 연장가능
지원내용	육아휴업	육아휴업	육아휴업
근거법	육아·개호휴업법	육아·개호휴업법	육아·개호휴업법
주무부처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나. 프랑스

□ 서비스 지원

〈요약표 3-5〉 프랑스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유아원	인가된 보육사	시간제 보육시설	가정 양육 도우미	침식 제공 도우미
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시설	보육사가 아동의 집 혹은 보육사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주당 몇시간 혹은 반나절 동안 아동을 돌봐주는 시설	양육 도우미가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서비스	현금이 아닌 현물로 보상을 지불하는 양육 도우미
지원 대상	3세 미만 아동	18개월~6세	6세 미만	6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연령 제한 없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연령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상이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상이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를 통해 지원 (전체 비용의 최소 15% 본인 부담) - 지원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상이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를 통해 지원 (전체 비용의 최소 15% 본인 부담) - 지원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주무부처 (2023년 기준)	모성보호국 (PMI)					

□ 현금 지원

〈요약표 3-6〉 프랑스 현금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영아 대상의 현금 지원

	출산보너스	출산기초수당	자녀 교육 분담 수당
정의	출산 준비 및 출산 비용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수당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3세 미만 부양 자녀가 1명 이상인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거나 줄일 때 지원하는 수당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	3세 미만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	만3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부
지원 내용	1,019.43 유로	자녀 수, 부부 혹은 한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이한 매월 급여 지원	- 근무를 완전히 그만 둔 경우: 월 429.71 유로 - 근무시간을 50% 줄여서 근로: 월 277.14 유로 - 근무 시간을 50~80% 줄여서 근로: 159.87 유로
주무부처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비고: 특징, 타사업 중복성			- 출산·육아 및 입양 휴가 수당, 병가 또는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상, 병가 또는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상, 실업 수당, 가족 보조금, 급여, 휴일 수당, 퇴직 및 장애 연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음

〈요약표 3-6〉 프랑스 현금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 지원

구분	가족수당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부모 돌봄 수당	자녀 사망 수당	자녀 이사 수당
정의	20세 미만 부양 자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인가받은 보육사, 베이비시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급받는 수당	자녀가 중병·부상·장애가 있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한 경우 지급	자녀가 사망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사에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지원 대상	20세 미만 부양 자녀 2명 이상인 가족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인가받은 보육사, 베이비시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근로하고 있는 부모 혹은 노령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영업자	중병·부상·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임신 20주부터 자녀 25번째 생일 이전에 자녀가 사망한 부모	자녀 3명 있는 가족

구분	가족수당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부모 돌봄 수당	자녀 사망 수당	자녀 이사 수당
지원 내용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한 매월 급여 지원	소득 수준, 지녀수, 자녀 연령, 부부 혹은 한부모 여부에 따라 상이한 매월 급여 지원	- 하루 종일 일을 멈춘 경우: 일당 62.44 유로 - 반나절 일을 멈춘 경우: 일당 31.22 유로		- 자녀 3명: 최대 1,070.23 유로 - 자녀 4명: 최대 1,159.42 유로 - 자녀 1명 추가 당 89.19 유로
주무부처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 시간 지원

〈요약표 3-7〉 프랑스의 영아 대상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시간 지원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아버지 돌봄 휴가
정의	출산 전후에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자녀 출산 혹은 입양한 사람이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 활동을 중단 또는 축소하여 근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	자녀 출산 후 아버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지원 대상	출산 여성	출산 여성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지원 내용	- 첫째아 혹은 둘째아: 임신 전 6주, 임신 후 10주 - 셋째아 이상: 임신 8주, 임신 후 18주 - 두 쌍둥이 출산: 임신 전 12주, 임신 후 22주 - 두 쌍둥이 이상 출산: 임신 전 24주, 임신 후 22주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전에 최대 1년 및 2회 연장 가능 시간제 근로 전환 가능 PreParE 지원	- 총 25일 휴가 (다태아 경우 32일 휴가)
주무부처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요약표 3-8〉 프랑스의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 지원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 지원		
	가족 관련 휴가	자녀 입양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정의	출생, 결혼, 시민 파트너쉽 체결, 가까운 친척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아프거나 다친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지원 대상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
지원 내용	휴가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16주, 입양에 따라 자녀 수가 3명 이상이 된 가족(18주), 다자녀 입양(22주)	- 연간 3일 무급 휴가 - 자녀가 1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돌보는 경우 연간 5일 휴가
주무부처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다. 스웨덴

□ 서비스 지원

〈요약표 3-9〉 스웨덴 서비스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푀르스콜라/페다고지 케어	개방형 푀르스콜라	푀르스콜라/페다고지 케어
정의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단기/임시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1세~5세 아동 / 1세~12세 아동	1세-5세 아동	영아가 있는 가정의 더 나이 많은 미취학 형제자매
지원 내용	이용비 상한선	무료이용	이용비 상한선
근거법	학교법: Skollag (2010:800)		
주무부처	교육부 (Skolverket)		
비고: 특징, 타사업 중복성	부모휴가와 중복사용 불가		

□ 현금 지원

〈요약표 3-10〉 스웨덴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현금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		
	아동수당	임신급여	자녀양육비 지원	아동가정 주거비지원
지원 대상	모든 아동	일부 임산부	일부 이혼가정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
지원 내용	아동수당지급	임신기간 근로환경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유급휴가 제공	이혼 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청에서 대리지급	주거비 지원
근거법	아동수당법 Lag (1947:529) om allmänna barnbidrag	사회보험법[1] Socialförsäkringsbalk (2010:110)	자녀양육비지원법 Lag (1996:1030) om underhållsstöd	주거비 지원법 Lag (1993:737) om bostadsbidrag
주무부처	사회보험청			
전달체계	사회보험청에서 수혜자에게 직접지급			

□ 시간 지원

〈요약표 3-11〉 스웨덴 시간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시간지원		
	부모휴가 및 부모휴가급여	10일휴가	아동돌봄휴가
지원 대상	아동의 부모	산모의 배우자	아동의 부모
지원 내용	480일의 유급휴가	출산과 연계한 10일간의 유급휴가	아동의 병간호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유급휴가
근거법	부모휴가법 Föräldraledighetslag (1995:584)	사회보험법 Socialförsäkringsbalk (2010:110)	아동돌봄휴가권리법 Lag (1978:410) om rätt till ledighet för vård av barn, m.m.
주무부처	사회보험청		
전달체계	사회보험청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		
비고: 타사업 중복성	피르스콜라와 중복사용 불가		

1) 직무수행 위험요소와 관련해서는 근로환경법[Arbetsmiljölag (1977:1160)]에 근거

4. 영아 양육실태 분석

가. 영아 가구 특성

□ 영아 부모의 근로와 소득 특성

- 영아의 부모 중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부는 77.7%, 모는 35.7%이며, 모는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인 경우가 51.3%를 차지함.
- 어머니의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300~35만원 미만이 25.3%, 근로소득은 없는 경우가 25.0% 순임.

나. 영아 가구의 양육 실태

□ 영아의 주 양육자는 어린이집이 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엄마 43.3%, 조부모 또는 친인척 6.3% 순임.

- 주양육자가 어린이집인 경우는 맞벌이일 경우 53.5%로 외벌이 가구 35.3%에 비해 높으며,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주양육자가 엄마인 비율이 높아져 0세는 75.4%를 차지함.
- 영아 양육을 위해 주양육자 외의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59.8%에 당하며, 대부분 가족 및 혈연이 보조양육자임.

□ 부모가 직접 영아를 돌보는 시간은 주중 평일 기준 어머니가 평균 9.2시간, 아버지가 평균 3시간으로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현저히 길었음. 어머니의 영아 돌봄 시간은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짧은 경향을 보임.

-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은 맞벌이인 경우가 외벌이인 가구의 아버지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이용 계획

□ 어린이집 이용 실태

- 하루 기준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54.4%임. 영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증가해 2세아는 86.8%가 이용한다고 응답함.
-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경우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96.0%에 달하며, 평균 등원시각은 오전 9시, 하원시각은 16시 30분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4분으로 나타남.
- 현재 이용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88.1%로 높으나,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가장 긴 집단에서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16.4%로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장보육 이용 실태

- 어린이집 이용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은 44.1%로 나타남.
- 연장보육 이용은 맞벌이 가구에서 58.2%, 모(母)가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각각 63.3%와 65.5%로 높게 나타남. 전형적으로 장시간 규칙적인 출퇴근의 형태를 지닌 근로 형태인 경우 연장보육 이용의 편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모 소득수준에 다른 추가비용 부담시 연장보육 이용 의향은 46.9%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 시기

- 어린이집 이용가구가 최초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시기는 평균 14.9개월이며, 11개월 이하에서 최초 이용하는 비율이 28.8%로 가장 큰 비중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가 평균 13.8개월이며 11개월 이하에서 시작한 경우도 34.5%로 높았음.
- 어린이집 이용 시기가 희망하는 시기보다 빠른 경우가 50.7%로 희망시기와 일치한 경우보다 높았음. 희망 시기는 평균 21.9개월이었음.
- 희망 시기보다 어린이집을 빨리 이용한 경우 그 이유는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가 39.0%로 가장 높았음.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기가 희망하는 시기보다 빨랐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거나 가정내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린이집을 더 늦게 보냈을 것이라는 응답이 98.8%에 달하였음.

□ 미이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계획

- 현재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중 어린이집 외 다른 학원이나 기관을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미미하였음(3.4%).

-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는 '기관에 보내기에는 어린 것 같아서'(59.0%),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17.1%)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73.7%는 향후 기관을 보낼 계획이 있고 기관 이용 계획 시기는 21.6개월로 희망하는 어린이집 입소 시기(21.9개월)과 유사하였음.
- 향후 이용을 계획 중인 기관은 어린이집이 96.1%에 달하며, 현재 42.6%가 입소 대기중으로 응답됨.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일정하고 상시근무를 하는 형태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영아 양육을 위한 정책 요구

가. 영아 양육의 행복과 애로사항

□ 영아 자녀 양육의 행복과 애로사항

- 영아 부모의 76.1%는 영아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6.3%는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함.
-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맘충, 노키즈 존'과 같이 육아에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든 사회분위기, 아이가 아플 때 맡길 곳이 없음이 이유로 제시됨.
- 영아 양육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비용을 문제가 공통적이며, 일하는 부모의 경우 전반적인 '일-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제기됨.
-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상의 불이익 경험은 어머니 44.5%, 아버지 9.5%로 어머니의 불이익 경험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상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현재 미취업 혹은 40시간 미만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소득도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양육지원사업 정보 취득 경로 및 정부지원사업 정보 취득시 애로사항

- 지역맘카페, 블로그, SNS가 영아 부모들의 정부지원사업의 주된 취득 경로이며(53.5%), 정부부처 및 관련사업 홈페이지인 경우는 14.8%에 해당함.
- 정부지원사업별로 정보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41.7%) 이외 본인 자녀의 지원자격 확인의 어려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

원을 모름 등 순으로 응답됨.

-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과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육아정책 정보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은 5점 만점 중 4.4점으로 높게 나타남.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지원 중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0.3%로 서비스 지원 중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각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은 인지자 중 10.3%로 나타남.

□ 현금 지원

- 현금성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98.9%로 가장 높고, 부모급여(96.2%), 가정양육수당(94.5%), 첫만남이용권(90.1%) 순임.
- 현금성 지원은 해당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절반 이상 수혜 경험이 있으며, 아동수당은 94.2%가 수혜 경험이 있음.
- 첫만남이용권은 '자녀양육 물품 구입'에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고(64.1%), 자녀 식비(54.7%), 전체가족의 생활비(34.9%), 자녀의 보건·의료비(34.2%), 엄마의 산후조리비(33.3%) 순으로 사용처가 응답됨.
- 첫만남이용권 외 지정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기타 현금성 지원의 경우(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자녀의 식비(65.0%),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 구입비(62.3%), 전체 가족의 생활비(37.5%), 자녀의 금융 관련 비용(34.7%) 순으로 나타남.

□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가 71.2%로 가장 높고,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30%대에 머물고 있음.
-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51.4%), '출산전후휴가'(50.3%), 어머니의 '육아휴직'(40.1%)임.
-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은 어머니 11.5개월, 아버지 5.5개월로 어머니 위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아버지 육아휴직 기간은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길게 나타남.

- 자녀 양육에 시간지원제도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4점이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 시간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향후 이용 의향은 60~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74.3%)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다.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 의견

□ 자녀 양육에 긴급히 필요한 정책 지원

-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25.9%)임. 이외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22.0%),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육아휴직)'(21.1%) 등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보육서비스 지원'(13.3%),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11.4%), '부모를 대신해 가정에서 아이를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6.4%) 순으로 응답됨.

□ 현금 지원으로 인한 양육 여건 변화에 대한 의견

- 2024년부터 0세 기준 최대 11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양육 여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5점 척도로 질문함.
- '양육비용 부담 경감'(3.8점), '자녀에게 놀이 및 체험활동을 더 많이 해줄 것 같다'(3.8점)라는 의견이 많았고, 어머니의 육아휴직 이용 긍정적 검토, 어머니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 영아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시 어머니의 육아휴직 이용의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됨.
-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2.7점).

□ 시간 지원 종류별 개선 의견

-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 시간지원 제도의 개선 요구에 차이가 있었음. 이용자가 남성인 시간지원제도의 경우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요구가 가장 높고, 이용자가 여성인 경우 '급여수준 상향'이 시간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장기간’ 시간 지원 제도(예: 휴직)는 남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급여수준 상향’의 요구가 가장 높았음.

라.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 요구

□ 바람직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

- ‘서비스, 현금, 시간지원을 아울러 영아의 가정 양육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6.3%로 높게 나타남. 단,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 확대 방향에서도 현금지원 위주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젠더 측면에서의 부정적 결과과 예상되므로, 시간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현금지원 정책의 방향속에서는 아동이 어릴수록 현금지원 수준이 높아지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음.
- 가구소득 수준에 무관한 보편적 현금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소득기준을 적용한 차등지원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 보육서비스는 돌봄 공백 대응 외에도 다양한 욕구 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시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6.9%로 대부분이었음.
- 시간지원은 ‘아동의 생후 1년 까지 시간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96.9%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일상적인 일·가정양립 지원 보다는 집중적인 돌봄시간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46.9%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일상적인 돌봄시간 지원 강화에 대한 관심이 보다 요구되었음.

□ 영아 연령별 강화 필요 정책에 대한 의견

- 현재 영아를 위한 정책 지원 범주 중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 지원 범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됨.

□ 정책 부문별 개선 방향

- 일반 서비스 지원 중에는 ‘기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영아보육의 접근성 보장’의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단시간 서비스 지원에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3%로 가장 높았음. ‘시간제보육 질 제고’도 78.1%로 질 제고에 대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현금 지원 정책에서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자동 지급' 81.3%, '아동별 받을 수 있는 유사 현금지원 통일·일원화' 75.0%,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상향' 62.5% 순으로 개선이 요구됨.
- 시간 지원 정책은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93.8%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높았음. 이외 집중적인 돌봄 시간 지원의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상향 조정' 96.9%,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87.5%,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기간 확대' 81.3%, '육아휴직 사후지급액 관련 규제 완화' 81.3%,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유급화' 78.1%,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71.9% 순으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영아 양육지원 정책 변화 및 영향에 관한 의견

-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6.9%이며, 부모급여 도입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은 감소된다는 의견이 65.6%, 육아휴직 이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높게 응답됨.
-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시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 유사하게 응답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음.
-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될 경우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될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더 이용기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고, 영아일 때(31.3%), 유아일 때(6.3%) 이용 기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순으로 응답됨.
-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될 경우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59.4%로 높게 나타남.

□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에 대한 의견

- 유아(만3~5세)와는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는 만0~1세(생후 24개월 미만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50.0%).
-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서는 '시간 지원'범주가 대상면에서 지

원이 미흡하거나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연령별로는 영아기(특히 0세), 정책 지원의 범주별로는 유사한 형태의 현금 지원이 중복되고 있어 통폐합이 필요한 범주로 지적되었음.

6.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가.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 정합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로의 재구조화

□ 양육지원 욕구에 따른 지원의 충실성·다양성(선택권) 확보

□ 영아 연령별 핵심 양육지원 전략의 차별화

□ 수요자의 정책지원 접근성 제고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준별 체계화 방안

□ 정책 목적에 따른 정책 범주 체계화

〈요약표 6-1〉 자녀 양육지원의 범주별 지원 목적에 따른 체계화

범주	지원 목적
서비스	일정 시간 (부모 등 보호자를 대신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돌봄 및 교육)을 제공함.
현금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양육비 추가, 소득 감소) 경감
시간	근로자인 부모가 (근로 시간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

□ 지원 대상 특성에 따른 체계화

〈요약표 6-2〉 영아 양육지원의 대상 특성에 따른 체계화

	대상	지원 내용	예
보편 지원	영아 가구	지원 대상 내 동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중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서비스(보육료)
		지원 대상 중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돌봄공백 발생 여부)
선별 지원	부모가 근로자인 영아 가구	동일	일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배우자 출

	대상	지원 내용	예
			산휴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등	3+3부모육아휴직제(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성별에 따른 차등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이용시 우대 조치
	저소득 가구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장애 아동 가구	동일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농어촌 거주 가구	동일	농어촌양육수당
	기타	취업, 구직, 돌봄 필요, 저소득, 다문화 등에 따른 이용 자격 부여	어린이집 연장보육

□ 지원 유형에 따른 체계화

〈요약표 6-3〉 영아 양육지원의 지원 유형에 따른 체계화

정책 범주	지원 유형 구분 기준	구분 기준별 지원유형	예
서비스	서비스 제공 장소	기관 양육(돌봄)지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연장보육 포함)
		가정 내 양육(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제공 시간	장시간 양육(돌봄)지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연장보육포함),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시간제돌봄서비스
		단시간양육(돌봄)지원	시간제보육, 시간제돌봄서비스,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 제공 형태	집단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개별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시간 제공 형태	집중적인 양육(돌봄)시간 제공	휴직제도(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일상적 일-양육 양립 시간 제공(하루 중 일정시간, 주요 사유 발생시 일정 기간)	근로시간단축(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휴가(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소득 지원	유급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무급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현금(성)	지원 횟수 및 기간	1회성 지급	첫만남 이용권
		일정 기간 정기적 지급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수당, 농어촌수당 포함), 아동수당
	대상	보편적(연령별)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일반), 아동수당
		선별적	장애아동수당, 농어촌수당, 기저귀조제분유(저소득) 지원
	차등 지원 여부	연령별 차등지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수당, 농어촌 수당 포함)
		차등기준 없음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다. 영아 양육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 서비스 지원

- 영아 보육 실수요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인프라 안정성 확보
- 가정 돌봄-기관 돌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수요자를 위한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강화: 취업예정자,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자의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보장
- 영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아 연장보육료 수익자 부담·차등지원 도입
- 단시간 이용서비스 접근성 제고

〈요약표 6-4〉 서비스 지원의 개선 방안(종합)

개선 목표	대상 욕구	방안
실수요자 장시간 영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취업 등으로 인한 장시간 대리 돌봄 수요/양육 공백 해소	- 0~1세 대상 정원 10인~19인 이하의 소규모 영아보육 어린이집 신설, 운영 기준 마련 - 연장보육 자격 제한 유지 -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에 '육아휴직 종료 예정' 추가
서비스 질 제고	(부모 직접 돌봄 불가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리 돌봄 욕구	• 연장보육료 소득기준별 수익자 부담 도입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 어린이집 0~1세반 연장보육서비스 가구소득별 연장보육료 차등 지원, 상한액 설정으로 비용부담 완화 - 연장보육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연장보육 석식 등 급간식 질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강화
단시간 이용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가정양육 가구의 단시간 돌봄 욕구	-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물리적 접근성 강화) -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연령 하향(현행 생후 6개월 이상 → 생후 3개월로 하향 확대)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양성 확대

□ 현금 지원

- 유사 중복성 현금 지원 통합

〈요약표 6-5〉 유사·중복성 현금지원의 통합 방안

개선 목표	대상 현금 지원 (근거법)	방안
유사·중복적 현금지원 통폐합	-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 부모급여 (아동수당법)	- 2~5세 가정양육수당을 '부모급여'체계로 통합 -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액 일괄 추가하여 지급 - 프랑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벤치마킹 및 변형(어린이집·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 전액 및 현금 차액 지급, 공공서비스 이용 외는 현금 수급액으로 이용) - 연령별 부모급여 지급액 차등화 지속 적용
수급자의 신청·수급의 편의성 제고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및 자격조건별 지급 일원화	- 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 신청 - 자격조건별 산정된 부모급여(현금) 수급액+10만원(아동수당) 통합 지급

□ 시간 지원

- 시간 지원의 포괄성 강화
- 시간 지원 욕구에 따른 차등 지원 도입 검토

〈요약표 6-6〉 자녀수 기준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차등 부여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 지원 욕구 대응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자녀수 무관 배우자의 출산시 유급 10일의 휴가 부여 - 영유아 자녀수 기준(집중적 돌봄 필요) 자녀수 1명 추가 시 배우자 출산휴가 약 30~40% 추가 부여 - 예) 출생아 포함 영유아 자녀 1명 10일/2명 13~14일/3명 16~17일

- 외벌이 가구의 취업 부모를 위한 시간 지원 인센티브 제공

〈요약표 6-7〉 시간 지원의 취약대상을 위한 특례(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 지원 취약대상 지원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 외벌이 가구의 취업 부모, 한부모 가구의 취업부모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특례 지원 -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상한액 200~300만원선 인상)

- 시간 지원의 성별 이용 형평성 제고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의 배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생애 초기에 대한 재정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기 집중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대한민국정부, 2020: 77-78). 윤석열 정부에서도 영아기 양육지원 강화는 지속되는 경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영아기를 타겟화한 대표적인 정책 지원으로는 정권 교체 직후부터 논의를 거쳐 2023년에 전격적으로 도입되게 된 '부모급여'를 들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4). 해당 제도는 가정양육지원 강화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2] 0~11개월 아동에게 2023년 70만원에 이어 2024년에는 100만원 까지 확대하여 지급될 예정이다(대한민국정부,2022: 85). 한편 육아휴직제도 등 시간지원제도의 개편도 예고되어 육아휴직기간이 기존의 부모 1인당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2023a: 11).

이처럼 최근 영아기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기존의 시설 보육 등 서비스 위주에서 최근 현금 지원과 시간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영아기 양육지원 제도들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동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들 간의 정합성 제고와 조정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최근 제도 간의 정합성 제고 조치의 대표적 예로 부모급여 도입에 의한 관련 제도들의 조정을 들 수 있다. 즉, '22년까지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1세아의 경우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나(보건복지부, 2022a: 4), 2024년까지 매월 100만원

2) 부모급여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는 1)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의 불충분으로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함, 2)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지원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4: 4).

으로 확대 지급 예정인 부모급여는 관련 제도들의 정합성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부모급여는 결국 영아수당을 확대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기존의 영아수당은 폐지되었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4: 6),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경우는 보육료 전액은 바우처,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전액을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는 등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부모급여의 지급방식도 다변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23a: 4-5).

이는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범주 중 한 범주, 그리고 그 범주 안의 한 제도에서 나타나는 변화(도입·확대·축소·폐지 등)가 유관한 정책 범주 및 제도들과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밀한 영향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제도가 변화할 때 유관 정책과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부문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영아가구의 양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 양육지원의 체계화[3]가 필요하다.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체계화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기관 서비스 위주인 유아에 비해 다양하다는(정미라·김경숙·이방실, 2013: 185) 점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취업 상태나 취업 업종과 근로조건 등 근로특성, 돌봄을 위한 자원의 유무 등 가구특성, 영아의 각세별 연령 등 아동 특성에 따라 가능하거나 원하는 양육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영아'에 대한 양육 지원 체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아 양육지원에서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강조되는 것도 기관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된 유아에 비해 영아 양육 욕구의 다양성을 주목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아 양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의 욕구는 유아기보다 다양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은 최근까지 기관의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간 가정양육 등 다른 선택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의 다양화,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 이외 영아를 양육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3년에는 특히 영아 양육지원이

3) '체계화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됨'을 의미함. 표준국어대사전, 체계화,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5224f6adccf4c76b030aee16b33602b(인출일: 2023. 3. 6.)

매우 파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영아 양육 가구에 대대적인 선택지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아 양육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영아 양육 형태의 변화는 정책 지원 수요와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더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관련 조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2세부터는 보육서비스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선호되나 0~1세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을 포함한 가정양육이 많이 선택되며 또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정원·이윤진·김희수, 2017: 136-137; 김나영·황선영·엄지원, 2019: 148-164). 이처럼 0~1세 영아를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취업 부모에게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휴직급여를 지원해야 하며, 휴직을 희망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보육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아보육을 위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0~1세아의 돌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2023. 2. 19; 경향신문, 2023. 2. 22).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현금, 휴가·휴직제도의 확대 개편은 보육서비스 기관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감소하는 영아보육인프라의 축소로 난감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취업 부모의 자녀 직접돌봄을 지원하는 휴직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맞돌봄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부모가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23a: 11). 그런데 이처럼 휴직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하는 시기는 늦추어질 수 있으며, 반면에 휴직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 있고 최대 36개월까지 부모의 직접 돌봄이 증가하면 영아보육시설의 수요 감소로 직접 돌봄이 어려운 부모에게는 이용할 영아보육인프라 축소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유관 정책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현금지원, 휴가·휴직 지원 등으로 영아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가 증가하면 가정내 양육자가 고립된 육아로 인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시간제보육 등 단시간 대리돌봄을 지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도 더욱 제고될 필요가 있다(유해

미, 2022: 19).

이처럼 영아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은 현금, 서비스, 휴직제도 등 시간지원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므로 관련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유관 제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4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도 기존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온 현금, 서비스, 시간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제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b: 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최근 변화된 정책 환경 하에서 현재의 영아 양육 지원 정책들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들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양육지원 정책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양육지원 범주 간 정합성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아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일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권과 노동권이 보다 조화로운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정책의 주요 범주별·사업별 목표를 명료화하고, 관련 정책이 수요자 욕구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규명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간의 조정 및 개편 등이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때 영아 대상 양육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과의 중복과 더불어 사각지대 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아가구에 대한 양육지원 체계에서 제도 간 목적의 상충, 중복 지원, 대상 누락 등 사각지대 발생 요인들에 대한 조정, 정비 등 체계화를 위한 방안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세부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아가구의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아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적절한 양육지원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여 영아가구가 자녀 양육에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는다는 정책체감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영아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영아 양육의 실태와 영아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들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았다.

둘째, 영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국가수준의 주요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서 영아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의 방향성 및 전략, 그리고 세부과제를 제1차 계획 부터 최근 계획 까지 그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범주별로 주요 사업을 분류하여 관련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및 내용, 전달체계 등 현황을 파악하며 범주 내, 범주 간 여타 사업과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을 살펴보았다. 이때 관련 사업별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도 파악하여 제도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셋째,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영아양육 형태,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인지와 수혜 경험·체감도, 영아양육의 애로사항, 정책 변화에 따른 양육형태 변경 의향, 정책 개선 요구(필요사항) 등 전반적인 영아 양육실태와 정책 요구를 파악하였다.

넷째,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요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영아 양육지원 정책 기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및 보완에 대한 의견 및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요건들,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다섯째, 영아가구의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에 대응하며 양육지원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 및 세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영아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 경제적 특성을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이로부터 영아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양육지원의 영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과 관련되는 정책기조를 국가수준의 관련 기본계획 등을 통해 파악하고, 영아기 양육지원의 정책기조 변동과 관련해 매 시기 강조되었던 구체적 정책의 연혁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사업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영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아를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 지원을 정책 범주(서비스, 현금, 시간)별로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4)]

1) 영아가구 대상 실태조사

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해 전국의 0~2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 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를 조사하였다.

〈표 Ⅰ-3-1〉 영아 부모 조사 내용

설문 목차	주요 내용
Ⅰ. 영아 가구 특성	• 응답가구의 특성(가구소득, 응답자 근로소득, 취업, 자녀 연령 등 특성)
Ⅱ. 영아 가구의 양육실태 및 양육 계획	• 주양육자&보조양육자, 양육자(및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부담 정도, 부모의 자녀 직접돌봄 시간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최초 이용 시작시기, 이용 희망 시기, 희망시기 대비 조기 이용 이유, 이용 행태(이용시간, 등하원 방법, 등하원 시간, 연장보육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이유, 연장보육 만족도, 연장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비용 자부담 의향, 기타 학원 및 기관 이용,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계획 및 시기, 어린이집 입소대기 여부 및 기간 • 자녀양육의 행복
Ⅲ. 영아 양육지원 정책 제도 인지 및 수혜 경험	•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 만족도, 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 • 현금 지원 인지, 사용 용도, 첫만남이용권 사용 용도, 최대 110만원(0세) 현금 지급으로 인해 예상되는 양육 여건 변화 • 시간지원 인지 및 이용 경험, 이용 기간, 도움 정도, 시간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 이용 의향
Ⅳ. 영아양육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 요구	• 영아 양육 애로사항,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 경험 여부 • 정부지원 양육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 정보 접근시 애로사항,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 정도,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주요 조사 내용은 1. 영아가구의 특성(소득, 근로특성 포함), 2. 영아 양육실태와

4)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 및 전문가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3. 7. 10일 승인을 받았음(220996-230710-HR-010)

양육 계획, 3. 영아 양육지원 정책 제도 인지 및 수혜 경험, 4.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와 수혜 경험, 만족도, 개선 요구 등이다.

조사의 대상은 0~2세(3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이다. 영아의 연령별로 주된 양육 형태 및 양육 형태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영아의 연령별, 지역규모별로 비례 할당된 표본 설계를 추진하며, 지역별 고용조사(2021) 결과에서[5] 6세 이하 맞벌이 가구 비율이 47.3%로 나온 점을 고려, 0~2세 영아가 있는 가구 중 35~40% 맞벌이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총 1,000가구를 목표로 조사를 추진한 결과 최종 1,021 사례가 표집되었다.

〈표 Ⅰ-3-2〉 영아 부모 조사 모집단 현황

모집단	0세	1세	2세	전체
대도시	93,283	102,426	104,538	300,247
중소도시	109,001	119,370	124,797	353,168
읍면지역	37,248	41,332	44,948	123,528
전체	239,532	263,128	274,283	776,943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탈 사이트: 주제별 통계-인구-인구총조사-2023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별(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_ZTITLE&list_id=A_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인출일: 2023. 5. 10.)

〈표 Ⅰ-3-3〉 영아 부모 조사 최종 조사 사례의 연령별·지역별 분포

배분안	0세	1세	2세	전체
대도시	125	136	141	402
중소도시	144	154	162	460
읍면지역	48	51	60	159
전체	317	341	363	1021

2) 전문가 조사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선행연구자 총 40명을 대상자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 범주(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경력 있는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를 독려하여, 최종 32명

5) 통계청 보도자료(2022. 6. 21).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7p.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기조에 대한 인지 및 의견(평가 및 보완해야 할 점), 영아 양육지원 정책 변화로 인한 정책 수요 및 양육 행태 변화에 대한 영향,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요건과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영아 부모조사 및 전문가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Ⅰ-3-4〉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조사 수행 시기	주요 내용
영아의 부모 (최종 1,021명)	’23. 7.27~8.9	• 영아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근로특성 포함) • 양육 형태, 육아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계획 •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와 수혜 경험, 체감도, 개선 요구 •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전문가 (최종 32명)	’23. 8.24~8.31	• 전문가 일반 사항(주요 연구 분야, 관련 분야 경력) •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 • 영아 양육지원 정책 변화와 영향에 관한 의견(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 확대로 인한 수요자 정책 수요 변화) • 영아 양육지원의 체계화 요건과 방안(차별화된 영아 양육지원 정책 대상 연령, 지원 미흡, 중복, 누락된 대상 등)

다. 영아가구 대상 FGI 실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중 취업 특성, 소득계층, 영아 연령(0~2세)을 고려하여 총 16사례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영아 부모 대상 FGI의 주된 면담 내용은 영아 양육 형태에 대한 선호도, 현재 영아 양육 상황, 이상과 현실의 차이와 이유, 영아 양육에서의 애로사항, 영아가구의 양육 지원에 있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영아 부모 대상 조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된 3~4회차 FGI에서는 조사의 주요 결과(영아 양육의 애로사항,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 확대의 영향 등)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영아 부모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표 Ⅰ-3-5〉 영아부모 대상 FGI 개최 현황

회차	일시	대상
1	6. 9.	영아를 양육하는 미취업모 5사례
2	6. 13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 5사례
3	9. 5	영아를 양육하는 미취업모 3사례
4	9. 5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 3사례

〈표 Ⅰ-3-6〉 심층 면담 사례

회차	사례번호	영아 자녀 월령 (FGI 시점 기준)	총자녀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모취업 여부
1	1	25개월(둘째)	2	○	×
	2	16개월	1	○	×
	3	19개월	1	○	×
	4	8개월(둘째)	2	×	×
	5	6개월	1	×	×
2	6	3개월(둘째)	2	×	○(육아휴직중)
	7	26개월	1	○	○
	8	11개월	1	×	○(육아휴직중)
	9	14개월	1	○	○
	10	23개월	1	○	○
3	11	1개월	1	×	×
	12	20개월	2	○	×
	13	27개월	2	○	×
4	14	2개월	1	×	○(육아휴직중)
	15	17개월	1	○	○
	16	33개월	2	×	○

라. 자문회의 개최

유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방향 설정, 설문조사 문항 개발, 정책 제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한 자문회의(서면 자문 포함)를 개최하였다.

〈표 Ⅰ-3-7〉 자문회의 개최

자문 대상	개최 시기	주요 자문 내용	비고
행정 전문가	‘23. 2	• 연구 방향	정책실무협의회
학계 전문가, 행정 전문가	‘23. 6	• 연구 진행 상황 및 방향 점검	중간보고회
학계 전문가	‘23. 6~7	• (영유아 가구용)설문지 문항 적정성 검토	
학계 전문가, 행정 전문가	‘23. 9	•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검토	최종보고회

마. 해외사례분석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만한 해외국가 영아양육지원 정책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사례로 분석한 국가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이다.

〈표 Ⅰ-3-8〉 영아기 양육지원체계 관련 해외사례

국가명	선정 사유	주요 분석 지점(공통)
일본	- 일본은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영아에 대해서만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일본의 영아기 양육지원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무상보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정보육 영아에 대한 양육지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해당 국가의 영아 양육 정책의 지향점 - 영아 양육의 전반적 체계 구성(주요 범주별(시간, 서비스, 현금, 기타) 정책 설계, 주무부처, 운영체계, 법률 등
프랑스	- 프랑스는 영아양육에 대한 다양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표적 사례로 특히 다양한 수당이 발달해 있으며, 정책지원에서 자녀수와 관련한 양육부담을 고려하는 차등지원이 두드러짐.	
스웨덴	- 영아양육에 있어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모두 존중하는 형태로 설계된 정책의 체계를 살펴볼 수 있음.	

바. 정책 세미나 개최

본 연구를 위한 수요자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이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수요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표 Ⅰ-3-9〉 정책세미나 개최[6)]

목적	개최 시기
•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기 양육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23.12월 중

이상의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 추진 체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Ⅰ-3-1]과 같다.

[그림 Ⅰ-3-1] 연구 추진 체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기대 효과 & 결과
1. 영아 가구의 특성 분석	문헌연구	-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취약한 지점, 필요로 하는 지원 욕구를 파악
2.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연구 트렌드 분석 & 국가 수준의 계획 속에서의 영아 양육지원정책 기조 변화 분석	문헌연구 해외사례분석	-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기조의 변화 진단(강조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 - 국내외 정책 발전의 배경 비교 분석, 시사점 도출
3. 영아 양육실태 분석	영아부모조사 영아부모 FGI	- 영아양육의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요구 파악 - 영아양육지원 정책의 인지도, 수혜실태, 접근성 파악
4. 영아 양육지원 정책 요구 분석	영아부모조사 전문가 조사	-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정책 수요 변화 예측 -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성 분석

⇩

연구 방법별 주요 결과 종합 분석

⇩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도출	-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제안 -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기준 제안

6)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제4차 육아정책심포지엄(‘23. 12. 14)에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주제를 발표 예정임.

4. 연구의 배경

가. 영아가구의 특성

1) 영유아가구 형태 및 취업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서의 영아가구와 유아가구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형태가 각각 90.9%, 88.2%로(김은설 외, 2021: 85)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최연소 자녀 기준 영유아 부모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부는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90% 이상이 취업상태로 응답하였으나, 모는 최연소 자녀가 0세인 경우 취업률이 14.5%로 가장 낮다가 3세 이후에 51% 이상 다시 증가하였다(김은설 외, 2021: 93). 2021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2.57%, 만 15세 이상 여성 중 참가율은 53.39%로,[7] 영유아 모의 최연소 자녀가 영아일 때는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다가 다시 취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중 육아로 인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가 43.2%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8]

〈표 Ⅰ-4-1〉 영유아 부모 취업상태(2021년 보육실태조사)

단위: %(명)

구분	부					모				
	취업(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수)	취업(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수)
전체	93.5	1.7	1.4	3.4	(2,500)	41.0	13.1	44.9	1.0	(2,500)
최연소자녀										
영아	94.2	1.9	1.4	2.5	(1,231)	28.3	20.8	50.5	0.5	(1,231)
유아	92.9	1.5	1.4	4.2	(1,269)	51.9	6.5	40.2	1.4	(1,269)

7) KOSIS 국가통계포탈 사이트: 주제별 통계-국제기구별 통계-World Bank 성별통계 중 경제활동인구 통계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X023&vw_cd=MT_RTITLE&list_id=R_SUB_OTITLE_OTIT_WBTIT_4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RTITLE(인출일: 2023. 7. 3.).

8) KOSIS 국가통계포탈 사이트: 주제별 통계-노동-지역별 고용조사-경력단절 여성-연령대별/사유별 경력단절 통계 참조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H08S&vw_cd=MT_ZTITLE&list_id=B19_EQ3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인출일: 2023. 7. 3.).

구분	부					모				
	취업 (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 (수)	취업 (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 (수)
연령										
0세	96.0	2.1	0.7	1.2	(415)	14.5	35.1	50.0	0.4	(415)
1세	95.2	1.7	1.3	1.8	(467)	29.9	15.7	54.0	0.4	(467)
2세	90.7	1.9	2.4	5.0	(349)	42.8	10.3	46.3	0.6	(349)
3세	91.4	2.0	3.0	3.5	(306)	51.3	4.2	43.3	1.2	(306)
4세	93.7	1.5	0.8	4.0	(360)	50.3	7.6	41.0	1.0	(360)
5세이상	93.1	1.3	1.1	4.5	(603)	53.0	6.9	38.5	1.7	(60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a). p. 92. 〈표 Ⅲ-2-1〉.
출처: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93 〈표 Ⅲ-2-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부 또는 모의 취업 상태 중 최연소 자녀, 연령별 영역 자료만 발췌함.

2) 영아가구 소득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아가구 월소득은 평균 476.8만원, 유아가구는 526.5만원으로(김은설 외, 2021:112) 영아가구의 소득이 유아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청 자료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2021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6,414만원(월 534.5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통계청 보도자료, 2022. 3. 24: 3), 모집단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영유아 가구 소득이 한국의 평균 가구소득보다는 약간 낮았으며, 영아 가구의 소득은 유아 가구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표 Ⅰ-4-2〉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2021년 보육실태조사)

단위: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21년 평균	476.8	526.5	505.5
(표준편차)	260.0	293.4	275.3

출처: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12 〈표 Ⅲ-2-23〉 중 일부 발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아 가구와 유아 가구 부의 평균 근로소득은 각각 379.8만원, 390.2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모는 영아 가구는 82.7만원, 유아가구는 126.8만원으로(김은설 외, 2021: 115)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는 즉 영아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특히 모의 근로소득이 영아 양육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표 Ⅰ-4-3〉 영유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 만원(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385.4	(2,374)	·	106.5	(2,426)	·
최연소자녀구분		·	·	·	·	·
영아	379.8	(1,171)	-0.7	82.7	(1,195)	-7.3***
유아	390.2	(1,203)		126.8	(1,231)	

출처: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15 〈표 Ⅲ-2-26〉 제 특성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중 최연소자녀구분만 발췌함.

* $p < .05$, ** $p < .001$.

한편 2021년 영유아 가구 월평균 지출은 영아가구는 302.9만원, 유아가구는 347.9만원(김은설 외, 2021: 116), 월평균 양육비 지출은 영아가구는 91.8만원, 유아가구는 106.79만원으로 유아가구가 좀 더 높았다(김은설 외, 2021: 119).

〈표 Ⅰ-4-4〉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및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2021년 월평균 지출(표준편차)	302.9(166.1)	347.9(163.4)
2021년 월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표준편차)	91.8(67.7)	106.79(78.8)

출처: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16 〈표 Ⅲ-2-27〉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중 영아가구, 유아가구 2021년 전체 평균, p.119-120 〈표 Ⅲ-2-30〉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 중 영아가구, 유아가구 2021년 전체 평균만 발췌하여 정리함.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아 1인당 양육비용은 50만원~60만원 사이이며(〈표 Ⅰ-4-5〉 참조), 생활비 중 영아 1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9% 사이로 나타났다(〈표 Ⅰ-4-6〉 참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결과 중 5차년도(2022년) 결과에서는 특히 0세아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액과 생활비중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차수에 비해 1,2세 보다 높게 나타나 신생아 양육과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의 물가 변동이 있었는지 검토의

필요성이(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 2022: 126) 제기되었다.

〈표 Ⅰ-4-5〉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66.7 (2,298)	66.4 (2,334)	61.3 (2,368)	65.5 (2,403)	65.2 (2,395)
연령[주3)]					
0세	54.2 (128)	54.0 (161)	53.3 (158)	51.6 (161)	58.9 (156)
1세	51.7 (267)	54.0 (298)	54.1 (321)	55.4 (316)	55.2 (321)
2세	57.9 (299)	58.9 (296)	53.6 (331)	59.8 (354)	55.5 (335)
3세	60.4 (360)	59.5 (337)	59.6 (333)	61.7 (367)	62.8 (396)
4세	71.3 (372)	67.8 (411)	61.5 (379)	68.6 (363)	67.7 (379)
5세	75.2 (407)	72.7 (408)	66.3 (424)	70.1 (404)	75.1 (392)
6세	78.1 (465)	83.2 (423)	72.2 (422)	78.9 (438)	73.6 (416)
F	22.3***	24.2***	15.2***	18.5***	16.8***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출처: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Ⅴ). p. 126. 〈표 Ⅳ-2-9〉.

*** $p < .001$.

〈표 Ⅰ-4-6〉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연령					
0세	18.1 (128)	16.7 (161)	17.9 (158)	16.8 (161)	18.4 (156)
1세	17.9 (267)	17.4 (298)	17.7 (321)	17.4 (316)	17.9 (321)
2세	19.4 (299)	18.4 (296)	17.4 (331)	18.4 (354)	18.2 (335)
3세	19.9 (360)	18.4 (337)	18.1 (333)	18.5 (367)	19.0 (396)
4세	21.4 (372)	20.7 (411)	19.1 (379)	19.6 (363)	20.0 (379)
5세	22.8 (407)	21.3 (408)	20.2 (424)	20.2 (404)	20.9 (392)
6세	22.8 (465)	23.1 (423)	20.8 (422)	21.9 (438)	20.6 (416)
F	17.6***	23.9***	9.2***	14.7***	8.0***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출처: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Ⅴ). p. 127. 〈표 Ⅳ-2-10〉.

*** $p < .001$.

3) 육아휴직 사용

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 육아휴직을 한 비중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한 25.6%로 나타났으며, 부는 4.1%(전년대비 0.6%p 증가), 모는 65.2%(전년대비 0.8% 증가)에 해당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 21, p.16).

〈표 Ⅰ-4-7〉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P	증감	증감률
계	20.8	21.7	23.0	24.5	25.6	1.2	-
부	1.7	2.3	2.9	3.5	4.1	0.6	-
모	60.6	61.2	62.8	64.4	65.2	0.8	-

주: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중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제외하고 육아휴직 사용률 데이터만 발췌함.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12. 21.).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p.16,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30600&bid=11814&act=view&list_no=422530(인출일: 2023. 3. 6.).

한편. 현재 초등학생을 둔 한자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자녀 연령 중 언제 사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부는 자녀가 만 7세 때, 모는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 21: 20).

〈표 Ⅰ-4-8〉 현재 초등 한자녀 부모 기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단위: %

자녀 출생 연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만8세
2011	계	74.4	5.7	3.9	3.9	4.0	3.4	10.8	6.8	4.6
	부	15.1	10.6	7.5	7.6	8.1	9.6	16.2	17.6	15.9
	모	81.3	5.1	3.5	3.5	3.6	2.7	10.2	5.5	3.3
2012	계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1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주: 출처 자료의 (1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중 증감 수치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발췌함.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12. 21.).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p.16,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30600&bid=11814&act=view&list_no=422530(인출일: 2023. 3. 6.).

2021년 보육실태조사의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는 평균 9.5개월, 모는 17.8개월로 모가 약 8개월 더 길었다(김은설 외, 2021:107).

요약하면, 영아 양육기의 가구는 특히 어머니의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가구소득이 가장 취약한 시기로 추측되며, 대부분 부부와 자녀의 핵가족 형태를 이루어, 자녀 양육을 도와줄 인력의 부재가 예상된다. 영아 양육시 일하는 부모의 자녀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 시간지원제도는 어머니의 이용률이 아버지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시간지원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편중된 제도 이용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우려점이 발견되고 있다.

나. 영아 양육실태 및 양육지원 관련 연구

1) 영아 양육실태 관련 연구

영아기의 양육실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육실태조사'가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1년 제6차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시간 동안 영아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기관)은 어머니(52.6%)였다. 즉, 어머니가 영아의 낮시간 주양육자인 비율은 0세 75.5%, 1세 43.4%, 2세 36.1%로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으며(김은설 외, 2021: 130), 특히 0세아는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제5차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였다. 다만 2021년 조사 결과에서는 영아를 낮시간에 주로 '기관'에 맡긴다는 비율이 2018년 조사의 36.2%에서 39.0%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어머니가 주로 돌본다는 비율은 2018년 54.1%에서 52.6%로 감소하였다(김은설 외, 2021: 130;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 2018a: 128). 또한 2021년 조사에서는 2018년도 조사 대비 낮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이 아버지인 경우는 0.9%에서 1.4%로 증가하고, 친조부모(2.5%→1.6%), 외조부모(4.6%→3.8%)는 감소하였다(김은설 외, 2021: 130; 이정원 외, 2018a: 128). 현격한 차이는 아니지만 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이 감소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영아에 대한 부모직접돌봄 선호 경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등 '기관' 의존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아기에 최초로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은 대부분 '어린이집'으로, 17.5개월에 최초 이용을 시작하여(김은설 외, 2021: 182),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서의 18.1개월보다(이정원 외, 2018a: 188) 영아의 기관 이용 시작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0~2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으나 2~3세 사이에는 영아기 내에서도 기관 이용이 더욱 우세한 경향을 보이며 주된 양육 형태가 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조부모나 친인척, 비혈연 육아인력 등 개별돌봄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은설 외, 2021: 186 〈표 V-2-1〉). 부모 직접돌봄과 관련되는 육아휴직 경험은 2021년 조사에서 어머니 32.6%, 아버지 2.1%로, 2018년 어머니 26.0%, 아버지 1.1%에 비해 증가하고(이정원 외, 2018a: 104; 김은설 외, 2021: 106), 육아휴직 기간도 2018년도 대비 2021년에 아버지는 7.7개월에서 9.5개월로, 어머니는 13.9개월에서 17.8개월로 증가하였다(이정원 외, 2018a: 105; 김은설 외, 2021: 107). 2018년도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시기가 어머니의 경우 출산 휴가 후~생후 6개월 이전에 80% 이상 집중되며 취학 전에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나(이정원 외, 2018a: 105) 2021년 조사에서는 둘째 자녀의 경우 만 3세~취학 전까지 이용이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김은설 외, 2021: 106-107, 〈표 Ⅲ-2-7〉).

한편,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아동의 연령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2세 미만까지는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김은설 외, 2021: 153).

2) 영아기 양육지원 관련 연구

취학전 영유아 중에서도 '영아기' 양육지원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영아 양육지원 전반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한 서문희·최혜선(2007)의 연구와 김나영·황선영·엄지원(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서문희·최혜선(2007)의 연구는 취학전 영유아 중에서도 특히 영아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발달과 전생애적인 영향력, 조기 투자의 효과, 출산율 제고에 대한 영아기 보육지원의 효과 등 '영아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영아기 양육지원에 초점을 둔 초기 연구이다(서문희·최혜선, 2007: 1). 동 연구에서는 영아 양육지원 제도

나 정책이 미미한 상황에서 비공식 보육에 의존하는 영아보육의 현실과 현금 지원 제도의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서문희·최혜선, 2007: 3). 동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영아가구의 특성에 따른 공식·비공식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영아 보육시설의 요구도 파악, 가정 내 보육서비스 인력 파견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를 위한 양육지원 정책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따라 양육지원 대상을 취업모 가정 외 일반가정,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까지 포괄하며, 가정 내 보육서비스 등 영아 양육지원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소득계층, 취업여부 등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강화, 서비스 지원간의 우선순위, 형평성 제고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서문희·최혜선, 2007: 214).

한편 김나영 외(2019)의 연구에서는 영아가구 양육지원을 위해 발전해 온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방향성 간의 상충, 정책 시행 주체가 다양함에 따른 통합성의 부족에 주목하여 영아 양육지원 정책 수요자들의 명확한 욕구 분석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영아의 경우 '누가 영아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의 이슈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영아 양육의 주된 수요는 '직접 돌봄'으로 나타나며, 영아 양육지원의 거시적 정책 방향은 노동권 확보와 양육자의 편의 및 어려움 해소에서 영아의 발달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영아 중심의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김나영 외, 2019: 42).

한편 서문희·최혜선(2007)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양육지원 방향에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정내 양육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시설보육을 보완하는 차원임을 강조하였으나(서문희·최혜선, 2007: 214), 김나영 외(2019)의 연구에서는 0세아에 있어서는 부모 직접돌봄에 대한 정책 지원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김나영 외, 2019: 304).

서문희·최혜선(2007)의 연구와 김나영 외(2019)의 연구가 '영아기 양육지원' 전반을 아우르며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큰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 한다면, 이외에도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개별 정책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해당 연구들은 반드시 '영아가구의 양육지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아니더라도 주 수요층이 영아 가구인 정책 범주나 개별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별 정책들의 도입 및 확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문희·최혜선(2007)의 연구 이후 기관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가 존재함에 따른 양육지원의 형평성 부족 문제가 부상하면서 '가정 내 양육' 지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정 내 양육' 지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정원·이윤진, 2008;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 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이처럼 가정 내 양육 지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제언을 한 연구 뿐 아니라, '부모의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언한 연구(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 2016)와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수행되는 등(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 2018b)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또한 영아보육을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유해미·이규림·이민경, 2016)와 종일제 돌봄이 아닌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아 가구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연구(양미선·서문희·이규림·김정민, 2014; 김은설·김지현·최정원·윤유나, 2020) 등 영아가 주 수요층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지속되었다. 한편 2009년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도입된 '가정양육수당' 이후 영아기 양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도입되게 된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 영아가구를 타겟으로 한 현금 지원 관련 연구도 수행되었다(유해미 외, 2021a; 박은정 외, 2022).

영유아를 위한 양육지원 정책들이 개별 수요들에 대응하여 별도 사업으로 도입·확대되어오는 과정에서 정책들 간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과 경합이 발생하는 등 정합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김은지·정가원·배호중·김수진·성경·이상건·최영·안현미, 2019: 3) 최근에는 양육지원체계의 '개편', '통합적 제도 구축', '제도 간 연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다(김은지 외, 2019; 유해미·박진아·엄지원, 2021b; 박은정 외, 2022; 양미선·김나영·박은정·오미애·송신영, 2022; 최윤경·조숙인·이혜민·김정현·윤재석, 2022a).

김은지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개별 수요에 따라 작은 규모로 시범적으로 도입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대된 이후에는 정책들 간의 방향과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지원체계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반영된 정책프레임 설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김은지 외, 2019: 3-4). 동연구에서는 양육지원체계의 구조를 시간, 서비스, 현금으로 구분하고 양육지원체계를 정책욕구의 구조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로 구상하도록 지원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김은지 외, 2019: 16-17), 양육지원체계 분석 프레임에 따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양육지원정책 간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김은지 외, 2019: 106-134).

영유아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의 범주가 크게 3~4가지의 범주로 구분되는 가운데, 부모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는 영아양육에 있어서도 가정 내 양육 선택 시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불만족으로 실제로 선호하는 양육방식 선택이 어려운 정책적 유도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양미선 외, 2022: 206). 그러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영아기 집중투자'의 관점이 강조되며 기존의 0~1세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금액 수준이 대폭 상향된 '영아수당'으로 개편되었고(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2년 이후 출생한 0~1세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등(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4) 영아가구 양육지원의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 기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도 연구에 반영되는 경향이다.

대표적으로 영아수당 도입 방안에 대한 유해미 외(2021a)의 연구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영아수당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영아수당 도입으로 야기되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과의 관계 내에서의 정합성 훼손 문제와 조정·검토 고려사항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유해미 외, 2021a: 214-216). 박은정 외(2022)의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되는 '부모급여'와 관련하여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제도 간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공 영아보육서비스의 강화, 육아휴직제도의 포괄성 및 이용률 제고, 취약 영아가구 대상 지원 확대, 현금 중심에서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지자체 정책 개편, 수당제도의 개편 등을 정책 대안으로 도출하였다(박은정 외, 2022: 192-196). 양미선 외(2022)의 연구에서는 지원목적이나 지원대상이 유사·중복되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의 현금지원정책

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일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2세까지 연령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 현금지원체계의 개편(안)을 제시하였다(양미선 외, 2022: 209).

마지막으로 유해미 외(2021b)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주관 부처가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윤경 외(2022a)에서는 그간 정책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 기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여(최윤경 외, 2022a: 19), 돌봄의 연속성과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거버넌스(운영체계), 통합정보플랫폼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최윤경 외, 2022a: 281-299).

Ⅱ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및 현황

01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02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 및 사업 현황
03 소결

Ⅱ.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및 현황

제2장에서는 한국과 주요 국가의 영아가구 양육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국가 수준의 주요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 변화 등 동향을 살펴보고 서비스, 현금, 시간의 범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을 개관하였다.

1.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동향

영아가구 대상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중앙정부의 유관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주요 동향의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계획에서 명시된 영아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현금(수당), 보육서비스, 돌봄시간 지원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이들 제도의 정합성에 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계획)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09년에 보완판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매 5년마다 수립되어 2021년 제4차 계획(2021~2025)에 이어 2023년 3월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1) 2006~2010년

가) 2006~2007년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인프라의 부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증가한 점을 들고(관계부처합동, 2006a: 16), 이에 대해 대응으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의 확충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a).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을 잠재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주목하고(관계부처합동, 2006a: 20), 고령자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이 강조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a: 24). 이와 관련하여 0~2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30%선에 그쳐 영아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a: 33).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즉,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적 분담 수준이 저조하고, 육아휴직의 급여수준이 낮고 전일제로만 운영하고 있어서 제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a: 24). 따라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육아비용의 지원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출산·육아기 이후 직장복귀를 용이하게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a: 35-36).

이상의 방향성을 토대로 설정된 영아 양육지원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육아지원시설의 확충,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a: 38-57).

영유아 보육·교육비는 2006년 당시 만 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즉, 만 5세아 및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 가구에서 2009년 까지 130%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a: 40).

아동수당의 경우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이용 이외에 육아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과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육아도우미 등 가정 내 보육서비스

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도 도입이 검토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a: 50). 육아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한 보육 수요의 충족에 대해서는 특히 영아의 시설 이용 비중이 낮아서 추가 수요의 발생 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우려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a: 52). 이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진 계획으로 제시된다(관계부처합동, 2006a: 53). 또한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영아반에 2006년부터 기본보조금을 도입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a: 56). 즉, 영아의 경우 보육료 상한액이 표준보육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표준보육비용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밖에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a: 57).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당시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005년 50만원에서 2007년에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8년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형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a: 67-68).

이상의 계획을 종합하여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양육 취약시기 가정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1)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방식을 통한 영아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2)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는 영아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3) 취업 부모의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고용 환경의 조성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a: 64).

나) 2008~2010년: 새로마지플랜

2008년에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계획(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는 추진과제명과 세부과제의 일부가 변경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8).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세부과제로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

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과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를 추가한 반면, 아동수당제도 도입은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의 조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으로 중점과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도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변경된 과제를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면,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 미이용 아동'에 대해 2009년 차상위계층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66). 이때 특히 영아의 경우는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에 의한 가정양육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부모의 부담이 큰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66). 또한 2004년부터 출산·양육 관련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데는 미흡하였다고 진단하고,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소득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내실화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72). 즉, 2009년부터 부양가족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를 확대하고(100만원 → 150만원), 자녀양육비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보험료의 50%를 경감하며, 2008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9]를 도입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72).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당초의 시간연장형보육에 더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을 세부과제로 추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80-81).

다음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확대, 2008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대한민국정부, 2008 : 102-103) 및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휴직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101-105).

9) 둘째자녀는 1년, 셋째자녀는 1년 6개월(최장 50개월) 부여(대한민국정부, 2008: 72)

2) 2011~2015년

'제2차 저출산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으로 맞벌이 가구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대상에 대한 고려 부족을 지적하고,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19).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고, 영아를 둔 부모의 가정보육 수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 등이 구비되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32). 이에 따라 동 계획의 기본 방향은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일·가정 양립 부문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의 확대 및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33).

우선 '일과 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휴가·휴직제도의 개선과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대한민국정부, 2011: 35).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의 급여 수준이 낮고, 휴직 기간이 길수록 고용시장 복귀율이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37). 당시 정액제가 적용되던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직전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15%를 복귀 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37).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육아휴직제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여 육아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38).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0년부터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39). 그밖에도 가족간호휴가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보장하며,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 계획에 포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40).

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자녀양육 비용지원 확대'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35).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은 만 0~4세아의 경우 2010년에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계획이 마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59-60).

한편 영아자녀와 관련한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이 계획되었다. 영아의 경우 발달적 측면에서 시설보육 못지않게 가정내 돌봄이 바람직하여 그 수요가 높으나,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이 작아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기존의 0~1세에서 2세를 추가하고, 일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0-61). 또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2011년에 자녀 2명인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2명을 초과하는 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의 활성화'가 새로운 과제로 설정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71). 먼저, 보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급 수준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지역 및 시설유형별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5).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5-66). 또한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형어린이집' 도입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7).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에서는 가정내 양육 부모의 육아지원서비스의 확충이 강조되는데, 이때 영아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개별적 보육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육아정보, 부모교육,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의 대응도 제기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8). 또한 맞벌이 가구

를 위해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이때 직업훈련 중인 경우도 맞벌이 가구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도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틈새보육을 위한 시간제돌봄의 확대와 더불어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늘리고, 이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70).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에 대해서는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어 부모들이 안전 및 보호 활동이 유리한 개별 양육방식을 선호하므로 비용 부담의 능력과 의향이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71). 이에 따라 가정내 돌봄을 위한 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교육 지원 등의 계획이 제안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71). 또한 소규모 돌봄 등을 위한 민간 돌봄서비스의 시장 창출에 관련된 과제도 제안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73).

3) 2016~2020년

가) 2016~2018년

‘제3차 저출산계획’에서는 ‘맞춤형 보육 확대·교육 개혁’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더불어 세부과제로 설정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여기서는 그간의 성과로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전(全)계층 무상보육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부모의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미흡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점을 한계점으로 진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21).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으나, 장시간근로와 여성 중심의 접근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24).

이에 대한 진단 및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맞춤형 보육 확대’는 전(全)계층 무상보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

계가 있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격차로 인해 가정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시설 이용을 유도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79-80). 따라서 질 높은 시설보육을 다양화하여 가구특성 및 부모 여건별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80). 즉, 맞춤반 서비스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시간연장형보육을 확대하며, 시간제근로가구 등의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와 동시에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81).

'돌봄지원체계 강화'의 배경으로 미취업모의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와 취업부모의 출·퇴근시각과 어린이집의 등·하원시각의 불일치로 인한 돌봄의 공백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내 돌봄 여건 확충과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84-86).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기존의 육아휴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 이외에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여건을 개선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97-98). '아빠의 달' 인센티브[10]를 2016년에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2017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재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99). 대기업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기존의 지원금 중심에서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중심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98). 또한 육아휴직 대신에 경력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까지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까지 늘렸으며, 같은

10)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통상임금의 40 → 100%, 월 상한액은 100 → 150만원으로 확대(대한민국정부, 2016: 99).

해에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단축 전 근무시간(전일근무)에 따른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101). 나아가 장기 과제로서 육아휴직 종료 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102).

나) 2019~2020년

문재인정부의 출범에 따라 2019년에는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이 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방향을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의 확대'로 전환하고, 가족에 대한 관점도 결혼가족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중심에서 아이 중심과 모든 형태의 가족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 양육지원 관련해서는 비용, 시간, 돌봄 부문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된 세부 과제로서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2)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4-21).

우선 출산·양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과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3-14). 특히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담을 경감하고, 2019년에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7세 미만 전(全)계층으로 확대하며, 다자녀 지원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 과제에 포함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6). 또한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90일간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6).

다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육아시간의 성불평등이 심화되어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3). 세부과제로는 임신 전(全)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육아·돌봄기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7). 앞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개편도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남녀 모두가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급여의 인상 및 초기 집중지원 즉, 기간별 차등지원과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검토한다고 제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8). 그밖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8).

한편 영유아 보육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진단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가정내 돌봄 지원,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에 포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매년 450개소 이상 지속적 확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종일제보육 내실화,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9-21). 종일보육의 경우는 12시간이 지원되는 방식에서 기본-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9).

한편 이 계획에서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제도를 포괄한 아동 중심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모색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9). 즉,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초기에 급여가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계단식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9). 이들 중장기 과제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

4) 2021~2025년

가) 2021~2022년

'제4차 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권 보장이 설정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51). 이들 중에서 영아가구의 양육지원으로는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투자,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육아휴직 이용자의 규모를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들 수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2).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동 계획에서는 앞서 1~3차 계획의 한계점으로 서비스 위주의 지원에 따라 현금지원이 불충분하여 여전히 양육비용이 부담되고,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33-34). 또한 이전 계획에 비해 아동을 개별적인 주체로 인식하여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접근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가 된다(대한민국정부, 2020: 51). 즉,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51). 아동 돌봄에서는 2018년 아동수당제도의 신설로 현금·서비스·시간 지원정책의 외형이 갖추어졌으나, 분절적인 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으로 질적 수준의 제고와 이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대한민국정부, 2020: 69-70).

이에 따라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보육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거점 기능 등 책무성의 강화를 추구하였으며, 서비스 격차 해소, 긴급돌봄 체계화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71). 또한 영아기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의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영아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72). 그밖에도 보완적 서비스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지원사업 등 참여형 돌봄 문화의 조성도 추진과제로 제안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73).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 돌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중앙-지역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며, 아동 돌봄 정책 가이드와 종합계획의 수립(지역), 공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0: 74).

구체적으로는 '아동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의 일환으로 0~1세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적정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0: 77). 이는 0~1세아의 어린

이집 이용률이 낮고, 영아의 특성상 기관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초기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미흡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다(대한민국정부, 2020: 77). 이에 따라 영아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0: 77).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일부의 제한적 사용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여 영아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시간 지원을 강화하고자 육아휴직 권리를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0: 54)(그림 Ⅱ-1-1 참고).

[그림 Ⅱ-1-1] 육아휴직제도 사용 권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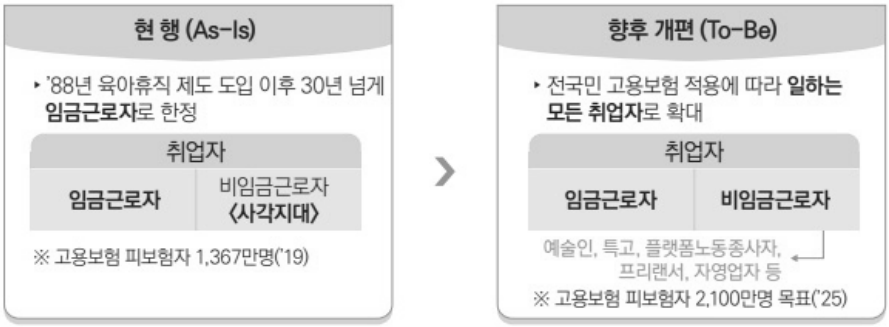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p. 54.

[그림 Ⅱ-1-2]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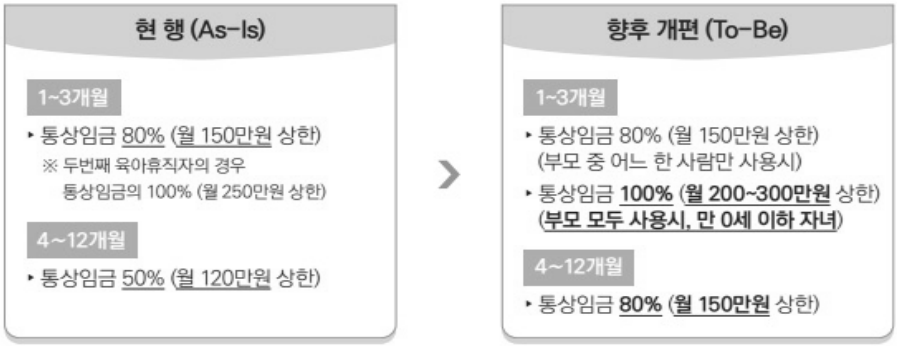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p. 55.

또한 2022년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에서 80%, 최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영아 부모의 양육시간 확보를 집중 지원하여 여성의 고립 육아를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0: 55)(그림 Ⅱ-1-2 참고).

나) 2023년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여기서는 그간 수당, 서비스, 돌봄시간 지원의 산발적 추진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저출산의 주요 요인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5). 이들 중에서 양육지원 관련 정책 과제는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 3)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설정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4). 앞서 다룬 '제4차 저출산기본계획' 대비 새롭게 주목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내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시간제보육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빈 자리를 활용하여 확충하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영아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 대비 부족한 0세반에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토요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6-7).

또한 일하는 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기 재택 및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8-9).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 확대, 지원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 휴직급여는 1일 기준 1시간에서 2024년 까지 2시간으로 늘려 통상임금 100%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8).

특히 2023년 1월부터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초기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11). 그밖에도 자녀장려금으로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11). 의료비는 2세 미만 입원 진료 시의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추진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12).

나. 건강가정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건가계획)'은 2006년에 시작하여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3차 보완계획이 발표되었고, 2021년부터는 '제4차 건가계획'(2021~2025)이 시행되고 있다.

1) 2006~2010년

'제1차 건가계획'에서 가족정책의 방향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성 평등한 사회환경의 조성으로 설정되었다.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이때 특히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된다(관계부처합동, 2006b: 16).

'가족돌봄의 사회화'의 일환으로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b: 22). 동 계획에서는 가족 중심의 아동 양육은 한계점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즉, 저소득 맞벌이 가구,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이 심각하고,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내 양육 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부모의 취업 여부와 근로 형태, 아동 특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가 부족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보육·교육비가 지원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미흡하였다고 진단하였

다(관계부처합동, 2006b: 24).

이에 따라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과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육아휴게소 운영 확대 등이 세부과제에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b: 25-26).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지원시설 이용 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b: 27).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연장형시설과 시간제보육시설의 확대도 추진과제에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b: 95).

다음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와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통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고,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적 부담 확대와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급여 인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유연화를 검토하는 내용도 세부과제에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b: 96-97).

2) 2011~2015년

‘제2차 건가계획’에서는 그간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배우자출산휴가 등 남성의 육아참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14-15). 그러나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고, 가족유형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21-22).

[그림 Ⅱ-1-3] 자녀양육지원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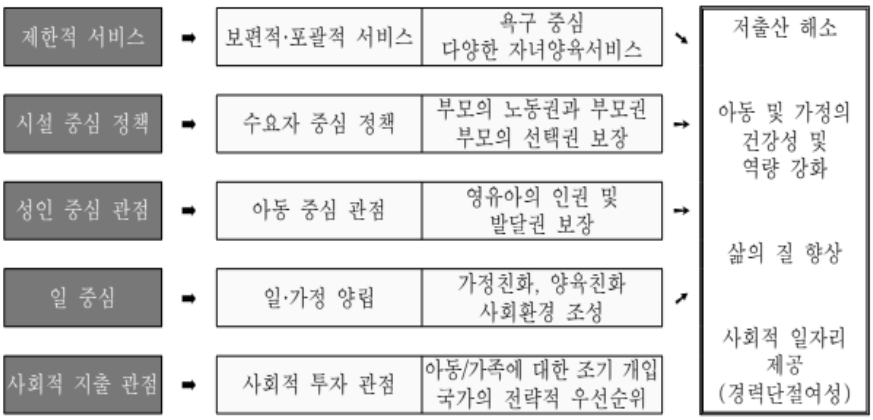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p. 77.

이에 따라 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자녀돌봄 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육아 취약가구의 특성과 돌봄 공백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을 아동에서 부모로 확대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정하였다([그림 Ⅱ-1-3] 참고). 돌봄 제공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강화하고, 이때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포함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시각을 강조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62). 이와 동시에 현재 부모 역할 지원이 선별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1: 62). 즉, 돌봄의 주체와 서비스 내용의 측면에서 다각화가 그 방향성으로 강조되어 국가 이외에도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관계부처합동, 2011: 62).

이러한 접근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시설보육을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돌봄의 틈새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의 특성(질병 등)에 따라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는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관계부처합동, 2011: 65-66). 이때 특히 영아의 경우는 발달적 측면에서 시설보육 못지않게 가정내 돌봄이 중요하고 그 수요도 높다고 인식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66). 따라서 세부과제에는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 제고', '가정내 돌봄 지원'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1: 67-68). 가정내 돌봄을 지

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미이용가구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1: 70). 구체적으로 취업부모의 자녀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1년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며,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35개월까지, 지원액도 최대 20만원 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70-71). 그밖에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을 위해 가족품앗이 활성화도 모색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1: 72).

'부모 역할 지원'에서는 그간 돌봄의 사회화로 양육부담을 시설양육이나 금전적 지원으로 해소하는 데 치중하였다고 진단하고, 국가와 사회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한 부모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77).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예비부모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의 실시,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 모임 및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관계부처합동, 2011: 78-80).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낮고, 휴직기간이 길수록 고용복귀율이 낮아지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제도에서 배제되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128-130). 이에 따라 육아휴직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률제로의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임신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유연근무형태 도입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133-137).

3) 2016~2020년

가) 2016~2017년

'제3차 건가계획'에서는 취약가족 위주에서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그간의 가족정책은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특히 남성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인식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14).

이에 따라 양육지원 관련 정책 과제는 '가족유형별 서비스 지원',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18). 자녀돌봄 지원 부문의 세부 과제는 1)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2) 돌봄 부담의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3) 가족돌봄 여건 조성으로 설정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18). 구체적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11]가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58-59). 맞춤형 보육을 위해서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7시간)을 도입하고, 시간제보육반을 확대하여 시간선택제와 재택근무자 부모 등을 위한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가 추진 계획으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59).

나) 2018~2020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라 2018년 8월에는 '제3차 건가계획(보완계획)'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 동 계획은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마련되었으며(관계부처합동, 2018: 3). 추진 방향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강조되고, 양육지원 부문에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체계의 구축'이 제시된다(관계부처합동, 2018: 5).

11) 공공형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총 2,300개소 확충(관계부처합동, 2016: 58).

[그림 Ⅱ-1-4]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의 정책 과제(2018)

구분	기 존		보 완
비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	▪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중점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 작은 결혼, 육아문화개선 등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 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체계적인 전달 체계 구축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 p. 7.

영아 양육지원과 관련된 차별화된 과제로는 '돌봄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목표가 매년 450개소로 명시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제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임신 전(全)기간으로 확대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및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원, 육아휴직 부모 동시 사용 지원, 직종별 대체인력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 37). 이외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이용 시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 37).

4) 2021~2025년

'제4차 건가계획'에서는 그간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가족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11). 양육지원 관련 추진 방향

으로는 기존에 여성의 일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남녀 모두가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 평등 관점이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21: 13).

우선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33). 아동수당 등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특히 만 0~1세의 집중 돌봄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등지원을 통합한 영아수당의 도입을 추진하고, 이동수당을 포함하여 기존의 수당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21: 40-41).

돌봄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는 1) 지역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3) 가족 돌봄의 양적·질적 강화가 제시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야간, 주말, 방학 등 운영시간 확대하고(여성가족부, 2021: 66), 지역 기반의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73).

다음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30대 이상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정생활을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하며, 청년세대가 남녀 모두 생애 과업의 1순위로 일로 인식하여 가족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고, 일·생활 균형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력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78-79). 이에 따라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씩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를 2022년에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81). 이상의 노력을 통해 모든 영아의 부모에게 양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81).

다.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하 중장기보육계획)’은 2006년 ‘새싹플랜’을 시작으로

2009년에 제1차 보완계획인 '아이사랑플랜(2009~2012년)이 수립된 이후 매 5년마다 제2차(2013~2017년), 제3차(2018~2022년)에 이어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2027년 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1) 2006~2010년

가) 2006~2008년: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보육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보조금 도입, 영아보육 활성화, 보육비용 지원 확대,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보육 이용시간 다양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3-4).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제로는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절감이 강조되어 당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의 지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9). 당시 차등보육료와 만5세 무상 보육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0년에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약 81%에 해당하는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9).

또한 영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시설의 소규모화와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 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10). 또한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보육시설 입소 우선수위를 부여하고, 보육시설 이용시간(종일제/시간제)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10).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에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와 더불어 시간제보육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10).

공보육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과 공급율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보조금을 도입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8).

나) 2009~2012년: 아이사랑플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아이사랑플랜'은 앞서 다룬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을 보완 및 수정한 것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하는 내용이 그 배경으로 제시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 특히 '아이사랑플랜'에서는 2008년 12월「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양육수당과 보육 바우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과제에 포함되었다. '새싹플랜'과 비교하여 '아이사랑플랜'에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조된다. 특히 '새싹플랜'에서 다루지 않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데, 보육료 지원 확대 과정에서 영아는 가정내 양육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게 주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0~4세아에 대한 보육료는 소득 하위 50% 까지 전액 지원하고, 5세아는 소득하위 70% 까지 전액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둘째아 이상부터 소득하위 70% 까지 전액 지원하였으나, 2010년 3월부터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되어 전액지원의 범위는 소득하위 60%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6). 또한 모든 보육시설이 일괄 12시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보육료 지원 단가를 보육시설의 운영(이용)시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7). 이에 따라 2012년에는 0~2세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2). 2012년부터 0~2세 보육료가 소득에 무관하게 전(全)계층에 지원되었으나, 영아를 둔 가구의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보육현장에서는 영아보육을 위한 시설과 교사가 부족하고, 영아보육에 대한 가(假)수요가 발생하여 맞벌이 부모 등 실(實)수요층에 피해가 발생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2: 6).

이로써 부모 수요와 조화되는 보육시간의 운영,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2: 11-12). 우선 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07:30~19:30)을 유지하여 맞벌이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되, 중장기적으로 평일 기준 기본보육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정화하여 보육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

토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11).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2009년 당시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 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는 0~2세아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7). 그밖에도 직장어린이집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가 추진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15).

이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이 확대되고, 0~2세 보육지원제도가 개편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1). 우선 보육료 지원은 0~2세아에 대해 실(實)수요자 중심으로 어린이집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하여 실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관계부처합동, 2012: 1). 즉, 맞벌이 가구나 취약계층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제를 이용하나, 전업주부(외벌이가구) 등은 반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1). 다만, 전업주부라도 해도 종일제 실수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 직업훈련, 학생, 보호자, 부적절(출산, 질병 등),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일제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2: 5).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5). 즉,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받고,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는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보육료 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 시 양육보조금 금액 만큼을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5).

한편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나 맞벌이 가구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시설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지원과의 격차가 커서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영아의 시설보육을 유도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12). 이에 따라 0~2세는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3~5세는 교육투자 차원의 시설보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방향성으로 명확하게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12).

[그림 Ⅱ-1-5]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체계도(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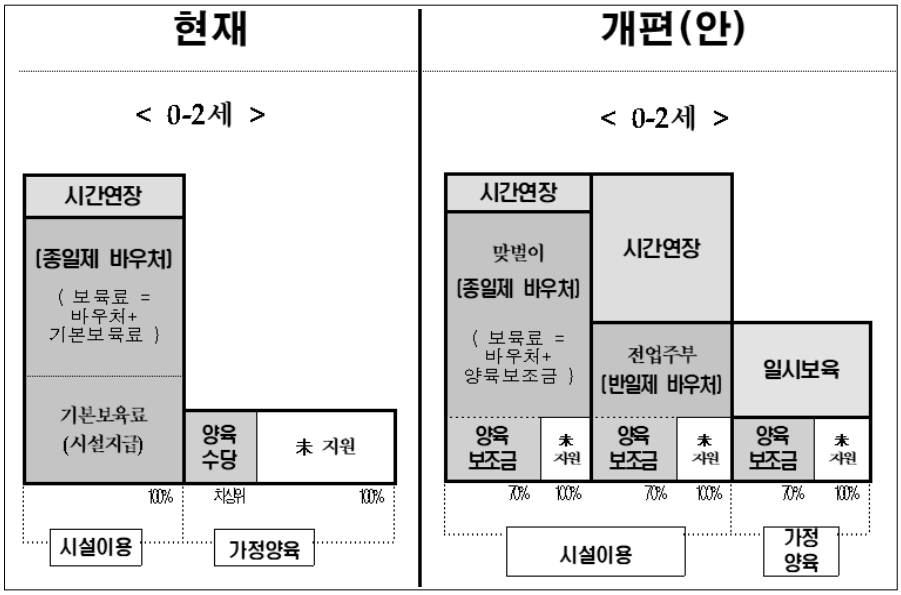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p. 8.

이에 따라 0~2세는 부모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효과 및 소득계층별 부담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우선 양육수당제도는 당시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4). 양육수당액은 기존대로 0, 1, 2세가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이나, 2013년 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12). 이와 더불어 당시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하여 0~2세의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4).

그 밖에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영아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업주부 등의 비상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의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자체의 인프라 설치

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획에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2: 12). 즉, 병원 이용 등과 같이 비상시적인 보육 수요가 발생한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5). 이를 위해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現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2: 5).

2) 2013~2017년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그간의 보육정책의 한계점으로 맞벌이 등 실(實)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제도 기반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었다(보건복지부, 2013: 14).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전(全)계층으로 확대하였으나, 해당 지원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즉, 모(母)의 취업 등 실수요와 무관하게 영아자녀의 시설보육에 대한 의존이 심화 되고, 맞벌이 가구의 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지방재정의 부족 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15). 즉, 지원 방식이 종일제보육(시설보육)과 양육수당(가정양육) 중에서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종일제 어린이집 이외에 단시간 보육, 일시보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15).

이에 따라 동 계획에서는 세부 과제로 '아동 및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1). 즉,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아에게는 가정양육을 활성화 하고, 맞벌이 등 실(實)수요층 및 3~5세에게는 양질의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성을 선회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4). 다시말해 2013년 3월부터 모든 0~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나, 그로 인해 실(實)수요와 상관없이 야기되는 종일제보육서비스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31).

이를 위해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가구 여건별 촘촘한 양육지원을 위해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확대와 더불어 일시적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보육(시간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당시 만 12개월 이하에서 만 2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34). 특히 종일제 중심의 무상보육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0~5세 보육·양육제도의 개편이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34).

[그림 Ⅱ-1-6] 촘촘한 수요자 맞춤형 설계·지원(2013)

출처: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p. 32.

여기서는 전업주부, 맞벌이,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사업간 및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서비스간 질적 경쟁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즉, 보육료·유아학비, 일시보육(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을 부모 대상의 '포괄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원 수준(금액)을 아동 연령,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른 육아 관련 실소요액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34).

이상의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어린이집의 0~2세반을 대상으로 맞춤형보육이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즉,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 서비스가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1). 이는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2). 이로써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이에 더해 긴급보육 바우처를 최대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종일반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4. 25.: 3). 이러한 맞춤형 보육의 도입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6. 6. 23: 1),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서 종일반의 이용에 제약이 생김에 따라 종일반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7. 11).

〈표 Ⅱ-1-1〉 영아 맞춤형 보육의 주요내용(2016)

구분	종일반	맞춤반
이용시간	7:30~19:30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보육료	1인당 월 825천원 (0세 기준)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
이용대상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종일반 이용 외 아동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4. 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 부터 시행. p. 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인출일: 2023. 5. 15.).

3) 2018~2022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에 무상보육 및 12시간 종일제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영아 맞춤형 보육이 부모의 선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8). 또한 무상보육 도입 이후에 보육 예산의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부족하였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들었다(보건복지부, 2017: 8). 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지역적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 위탁 방식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9). 이와 더불어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인식되어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해

소하고, 가정내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11). 이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이 세부 과제로 설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15-16). 영아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1-7]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2020)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아동인구, 보육,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EB%B3%B4%EC%9C%A1%EC%A7%80%EC%9B%90%EC%B2%B4%EA%B3%84%20%EA%B0%9C%ED%8E%B8 (2023. 5. 16. 인출)

우선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24).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되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19: 2).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19: 1-2).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기존의 종일반 자격과 유사한 연장보

육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그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안정감과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부모는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는 업무 부담을 덜고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인구아동, 보육,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 _ID=06400108&PAGE=8&topTitle=%EB%B3%B4%EC%9C%A1%EC%A7%80%EC%9B%90%EC%B2%B4%EA%B3%84%20%EA%B0%9C%ED%8E%B8 (인출일: 2023. 5. 16.)).

또한 이 계획에서는 '부모의 양육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가정양육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33). 즉, 2022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시간제보육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 2023년 이후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한계점으로 출산 후 첫 1~2년간 영아 가구가 직면하는 보편적인 어려움과 양육자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두터운 돌봄지원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인식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7). 이에 따라 '영유아의 성장 발달 시기별 최적의 지원을 위한 기반 공고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12). 즉, 영아의 경우는 가정양육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의 경우는 품질 관리 체계의 개편으로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성을 차별화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양육지원을 위한 다부처의 현금성 수당, 서비스, 인프라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이고 복잡한 지원구조로 실제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7). 이에 따라 특히 영아의 경우는 부모급여의 도입과 함께 종합적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시간제보육을 확대하며, 그 외에도 어린이집을 거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여 맞춤형 및 참여형 방식으로 정

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발달 검사-상담-치료의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14).

[그림 Ⅱ-1-8]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체계도(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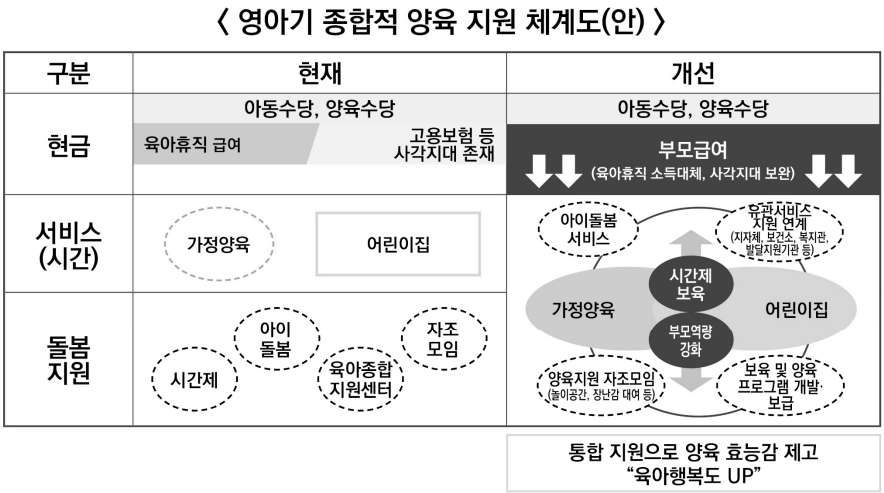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p. 14.

특히 부모급여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의 당초 계획에 비해 급여수준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영아수당은 0~1세의 가정 양육 시는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는 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에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만 0세의 경우 70만원[12](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상향), 만 1세는 월 35만원(2024년에는 50만원으로 상향)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2: 19). 이때 부모의 선호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통합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14).

12) 2023년 기준 0세아의 경우 가정양육 시는 현금으로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는 보육료 약 50만원과 현금 약 2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는 가정양육 시에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는 약 50만원을 지급함(보건복지부, 2022: 19).

[그림 Ⅱ-1-9]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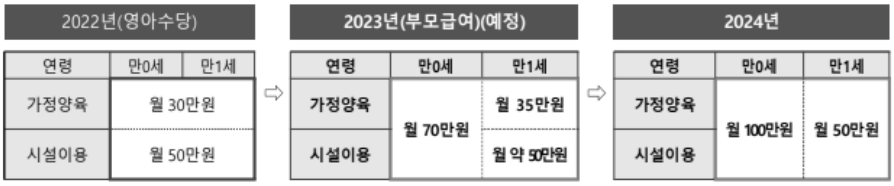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p. 19.

시간제보육의 경우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20). 시간제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하 [그림 Ⅱ-1-10]에서와 같이 운영 모형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그림 Ⅱ-1-10]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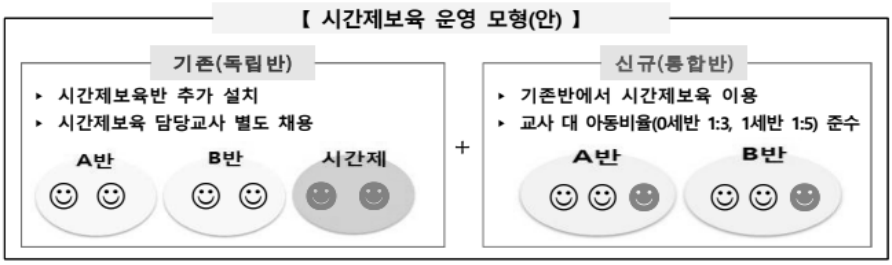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p. 20.

시간제보육과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21).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 840시간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에는 최대 940시간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21).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비용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기준 등을 개선하고, 기본보육 이외 연장보육 지원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2: 41-43). 연장

및 휴일보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의 50%를 충족하는 경우 인건비를 30~80% 수준으로 지원하며, 민간어린이집은 재원 아동 수에 비례하여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2: 42-43).

맞돌봄 문화의 확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부모 모두 사용할 시에는 휴직기간을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계획도 발표되었다(고용노동부, 2023a: 11).

라.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2015년에 제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0년에 제2차에 이어 2023년에 4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3. 4.). 이 방안에 양육지원은 앞서 다룬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세부과제를 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주목할 사항을 위주로 다루었다.

우선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아동권리 실현 기반 조성'과 더불어 '가정양육 역량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즉,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의 공간으로 가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원스톱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기본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 79).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그간 아동수당 도입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였으나,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동에 대한 재정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강조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12). 또한 이 계획에서는 특히 '코로나 19 대응 아동정책의 혁신'이 정책 과제로 설정되었다. 즉,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가계소득의 상실 및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환경이 붕괴되고, '비대면 일상화'로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77). 이에 따라 세부과제로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수당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위기 시에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과제에 포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78).

또한 아동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국가 재난 발생 시에 가족돌봄 지원의 제도화를 추구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78).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하에서 시설 휴원 등으로 자녀 돌봄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시설의 이용 수요가 증가한다고 진단하고, 대응 과제로서 재난 발생 또는 돌봄시설 종사자의 감염병 등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정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한 신속한 지역 기반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스마트기기, 인공지능 등 활용하여 원격 사례관리 등 비대면 아동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80).

한편 2023년 4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3. 4.). 여기서는 2018년 아동수당 도입, 2022년 영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 도입 등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성장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017년의 아동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2018년 예방접종 확대, 2020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도입 등 아동의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는 점을 그간의 성과로 평가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4.: 4). 단, 이처럼 아동에 대한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4.: 2-3).

이에 따라 분야별 정책 과제로서 모든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 투자 집중'과 촘촘한 돌봄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4.: 7-13). 현금지원의 확대에 더하여 아동의 건강 및 발달 지원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경감하고, 미숙아 등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3. 4.: 7). 또한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재원아동 발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3. 4.: 8). 나아가 아동가구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확대 방안으로 2025년 까지 소득기준과 자녀수 등 아동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종 아동 관련 수당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관계부처합동, 2023. 4.: 9), 6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정양육지원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4.: 9). 촘촘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돌봄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4.: 13).

마.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저출산 대응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 영아가구 양육지원 관련 방향성 및 정책 과제를 토대로 지원 부문별 주요 동향을 요약하고, 제도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등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관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유아와는 달리 영아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은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주요 시기별로 그 방향성 및 전략의 변화가 확인된다. 즉, 영아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은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지원방식의 중요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유아와는 구분되는 영아 양육지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영아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을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주목하는 경우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초래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가정내 양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중요시한다면 현금지원의 강화와 자녀돌봄 시간 지원을 늘리는 등 가정 내에서 영아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성 평등 접근을 통한 저출산 대응 전략에 따라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 보장이 강조되어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반면에 2009년부터는 가정내 양육을 영아에게 바람직한 양육 방식으로 전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지원하며,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대상의 수당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2009년 이후 양육수당의 도입 및 확대, 2022년 이후 서비스와 현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영아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에 도입된 양육수당의 경우는 이전 시기에 확대

된 영아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 미이용가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집 미이용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제도는 2006년에 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들어서야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다가 가정내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이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지원하다가 가정내양육 가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고립된 육아 및 그에 따른 양육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는 곧 영아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와 수요자 중심의 양육지원은 비교적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과 가정내 양육 가구의 고립된 육아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영아자녀의 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며, 시간연장형보육에 대한 중요성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왔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은 가정내 양육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2022년 이후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그 중요성이 보다 증대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보장, 즉 '부모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2006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2년에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며, 2016년 영아반 맞춤형 보육에 이어 2020년에는 연장보육 도입으로 실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표 Ⅱ-1-2〉 시기별 영아자녀 양육지원의 방향성 및 주요 정책(2006~2023)

시기 구분	방향성	주요 정책
2006~2008년	-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영아보육 접근성 제고 -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06) - 출산휴가급여 확대(‘06)_: 30일 → 90일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08):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만0~4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차등지원 - 육아휴직 대상연령 확대(’08): 1세 미만 → 3세 미만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08): 3일 → 5일 ※ 고운맘카드 도입: 20만원
2009~2011년	- 보육시설 미이용가구 양육비 지원 - 보육료 지원 확대(계속)	- 양육수당 도입(’09): 0~1세아, 10만원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09년 소득하위 50% 이하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 육아휴직 대상연령 확대(’10): 3세 미만 → 8세 미만 -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11): 정액 50만원 → 정률 통상임금 40% ※ 고운맘카드 지원 확대: ’10년 30만원 → ’11년 40만원 → ’12년 50만원
2012년~2015년	- 영아 가정내 돌봄 활성화 - 부모 역할 지원 강화 - 시설보육과 가정내 보육 형평성 제고	- 영아(0~2세) 전(全)계층 보육료 지원(’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12) - ‘아빠의 달’ 도입(’14): 1개월, 통상임금 100%(150만원)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12년 소득하위 70% → 모든 취업부모, ’14년 12개월 → 24개월
2016~2018년	-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	- 영아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16)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6): 24개월 이하 → 36개월 이하 - ‘아빠의 달’ 지원 확대: ’18년 1개월 → 3개월/200만 → ’19년 250만원 - 아동수당제도 도입(’18): 6세 미만
2019~2022년	- 영아가구 집중투자: 소득보장과 영아 현금 지원 강화 - 공보육 확충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 출산지원금 도입(’19): 3개월 동안 50만원 - 자녀돌봄휴가(’19): 연간 10일(무급)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19): 3일 → 10일 - 보육지원체계 개편(’20): 영아 대상 연장보육 자격기준 적용 - 영아수당 도입(’22) ※ 아동수당 확대: ’19년 7세 미만 → ’22년 8세 미만 ※ 첫만남이용권 지급(’22): 출생아 당 200만원
2023년 이후	- 영아 가정양육을 위한 종합적 양육지원	- 부모급여 도입(’23) - 육아휴직: 부모 공동 사용 시 휴직 기간 1년 → 1.5년 확대(예정)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시기별로 차별화된 양육지원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다음의 전략 및 과제는 비교적 일관되게 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맞벌이 여부 등 다양한 가구여건에 부합 하는 서비스의 다양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그것이다. 이는 곧 영아자녀에 대한 현금, 서비스, 시간지원에 대한 종합적 설계의 필요성을 말해주며, 이들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영아 양육지원의 방향성을 명료화하고, 이를 토대로 일관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부문별 지원 대상 및 수준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영아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의 방향으로 제기된 가정내 양육에 대한 지원, 영아보육의 접근성 제고, 영아가구의 소득보장, 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둘째, 영아가구의 양육지원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현금, 서비스, 돌봄시간 지원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0~1세아의 현금지원이 통합적 지원 방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육아휴직제도와의 정합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테면 24개월 미만 까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연계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자녀에게 지원되고, 시간제보육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구에 지원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단독으로 이용할 시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는 데, 통합적 지원의 측면에서 이러한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지원의 소득기준도 일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아가구 양육지원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와 미이용 가구의 양육지원 전략을 차별화하고, 세부과제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규명하며, 유관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수준이 적절한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아자녀의 연장보육료 지원은 유아와는 달리 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시간제보육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현행 지원내용 및 수준이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 및 사업 현황

본 연구에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범주는 양육지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욕구)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정책 범주별로 '영아'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정책들과 영아만을 특정하지 않지만 영아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된 정책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서비스 지원 정책 현황

1)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정책

가) 시간제보육료 지원

(1) 정의와 목적, 연혁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23c: 300).

2012년 영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시설보다는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일시적인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여성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시보육'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신수지·이승현, 2017: 12).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최초 4개 시도 15개소 21개반으로, 긴급히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정양육 서비스로 출발하였고, 2014년에는 사업 명칭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유형을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시간 및 단가를 추가 지원하였다(신수지·이승현, 2017: 12). 시간제보육은 반일제 이상 기관보육서비스 이용을 선호하지 않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영아가구에서 주로 가정내 양육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틈새를 매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Ⅱ-2-1〉 시간제보육 추진 연혁

구분	내용
2013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계획으로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포함. - '일시보육 시범사업' 도입
2014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원 유형 구분(기본형/ 맞벌이형)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13. 5. 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p.129.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014(인출일: 2023. 5. 30.).
2) 신수지·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시간제보육의 이용대상은 생후 6개월~36개월 미만의 내/외국인 영아이며, 시간제보육의 이용비용 지원 대상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의 수급자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지원 대상 외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c: 307). 시간제보육반의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며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이용단가의 75%(3천원)를 정부가 지원하여 지원대상자의 부모부담은 시간당 1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23c: 307).

〈표 Ⅱ-2-2〉 시간제보육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출처: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보육사업안내. p. 307.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

시간제보육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23년 기준 보육사업기획과)로 사업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확보, 사업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 정의 및 목적, 연혁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이하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특별히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만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여성가족부, 2023: 9), 하루 3시간 이상을 이용하며 정부지원은 월 80시간~200시간 이내이다(여성가족부, 2023: 10;12).

아이돌봄서비스가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신규 도입된 후 2010년에는 0세아(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이 사업 유형 중 하나로 신규 도입되어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2023: 8). 한편 박근혜정부의 63번 국정과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추진계획 중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 대상의 만2세까지의 확대가 제시된 후(관계부처합동, 2013. 5. 28: 130) 2014년 24개월까지, 2017년 36개월까지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여성가족부, 2023: 8).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 중 하나인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을 공유함과 더불어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7). 즉, 시설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시설보육을 이용하려 했으나 적응상의 어려움, 주변의 시설보육인프라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보육 이용이 어려운 영아를 둔 부모에게 양육형태의 선택권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서비스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Ⅱ-2-3〉 영아종일제서비스 추진 연혁

구분	내용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중 '지원가족 유형 및 아동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서비스 개발' 추진계획 포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규 도입(만0세 대상)
2014	- 영아종일제서비스 대상 확대(~만24개월)
2015	-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2017	- 영아종일제서비스 대상 확대(~만36개월)

구분	내용
2018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율 상향(5%p)
2019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율(기존지원) 5%p증, (신규지원)15~20%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13. 5. 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p.129.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014(인출일: 2023. 5. 30.).
2)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8

(2) 지원 대상 및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로 최소 1회 이용시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월 80~200시간 이내 4개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이용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3: 9-11). 이용비용 지원 대상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중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이다(여성가족부, 2023: 11).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 53).

〈표 Ⅱ-2-4〉 영아종일제서비스 소득기준유형별 정부지원 내용: 일반가정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418원(85%)	1,662원(15%)
나 형	120% 이하	6,648원(60%)	4,432원(40%)
다 형	150% 이하	1,662원(15%)	9,418원(85%)
'라 형	150% 초과	-	11,080원(100%)

출처: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54.

〈표 Ⅱ-2-5〉 영아종일제서비스 소득기준유형별 정부지원 내용: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972원(90%)	1,108원(10%)
나 형	120% 이하	6,648원(60%)	4,432원(40%)
다 형	150% 이하	1,662원(15%)	9,418원(85%)
라 형	150% 초과	-	11,080원(100%)

주: 1)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2)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출처: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54.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

아이돌봄서비스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23년 가족문화과)로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예산 확보 및 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교육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의 체계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과 비용지원이 이루어진다. 서비스 이용비용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유형 '가~다'형에 속하는 수요자는 읍·면 ·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할 수 있다[13](여성가족부, 2023: 13).

2) 영아를 대상에 포함하는 서비스 지원 정책

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개념 및 목적, 연혁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되며, 동법 제10조와 제34조에 의해 만0세~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c: 344). 단, 만3~5세반 보육료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23c: 345).

한국에서 보육서비스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탁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보육사업'이 태동하게 되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었다[14](이정원·이윤진·김희수, 2017: 58-59). 이후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및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 수립에 따라 소득

13) '라'형은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여성가족부, 2023: 13)
14) 영유아보육법[법률 4328호, 1991. 1. 14 제정] 제21조(비용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준별 육아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고, 2005년에는 보완된 '제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발표로 표준보육료 산정, 영아 기본보조금제도가 도입되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이정원 외, 2017: 61).

2006년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고 보육 내실화를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기 시작하며(이정원 외, 2017: 62) 보육료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2006년부터는 '중장기 보육계획'도 수립되면서 보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게 된다. 두 번째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통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며, 2011년에는 보육료를 소득하위 70%까지,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 및 만 0~2세에 대한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 도입되게 되었고(보건복지부, 2013: 8; 이정원 외, 2017: 67에서 재인용), 마침내 2013년에는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국가책임보육과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부여라는 관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0-5세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됨으로써(이정원 외, 2017: 70) '만 0~5세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표 Ⅱ-2-6〉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추진 연혁

구분	내용
1991	- 영유아보육법 제정. 본인부담 원칙, 예외적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04~2005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표준보육료 산정,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시설지원)
2006~2011	- 보육료 지원대상(계층) 지속 확대
2012	- 전소득계층 0-2세 보육료 지원, 만5세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2013	- 만0-5세 무상보육 실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자료: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p 58-59;61-62;67;70.

(2)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15]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이다(보건복지부, 2023c: 324).

15) 난민 및 아프간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3: 324)

보육료는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 유아학비,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 등)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3c: 342).

또한 다른 기관을 주 3회 이상 주된 보육·교육기관으로 이용하며 어린이집은 오전 혹은 오후에만 등원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3c: 342).

보육료 지원 대상인 경우 기본보육시간(09:00~16:00)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를 지원하며, 연장보육(16:00~19:30)이 필요할 경우에도 연장보육료를 0세아·장애아는 시간당 3,000원, 영아는 시간당 2,000원, 유아는 시간당 1,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c: 77, 323). 단, 연장보육 이용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장보육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3c: 331). 이는 영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장보육' 필요사유에는 '취업', '구직·취업준비', '돌봄 필요', '기타(저소득, 다문화 등)'가 포함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의 '취업'을 사유로는 연장보육 필요사유의 인정이 불가하여, 다른 사유(돌봄 필요, 기타 등)가 없다면 기본보육서비스 자격만이 인정된다(보건복지부, 2023c: 347-352).

〈표 Ⅱ-2-7〉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내용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23.3.1~)	280,000	280,000	420,000

출처: 보건복지부(2023c).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p.345.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며, 지원 대상 단가 등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 마련을 담당하며(보건복지부, 2023c: 296), 신청권자가 지원서식을 갖추어 읍·면·동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보건복지부, 2023c: 322),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c: 342).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1) 정의와 목적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2023: 9). 이를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7)

[그림 Ⅱ-2-1]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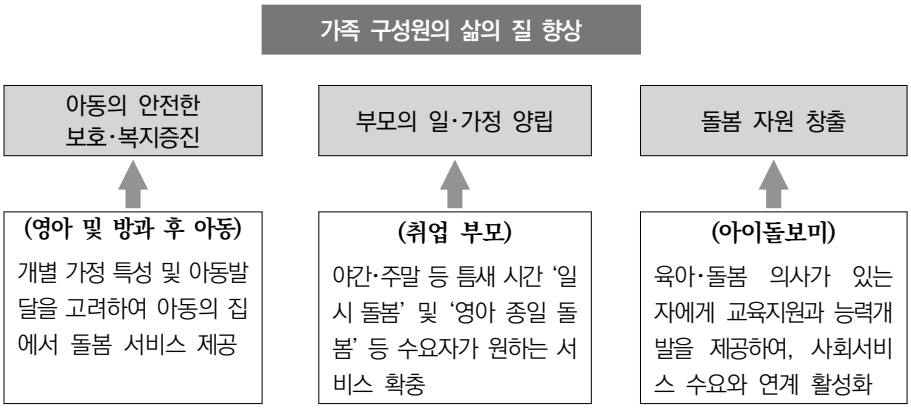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7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의 4가지 유형이 있다(여성가족부, 2023: 9).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신규 도입되었고,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이 분리되었다(여성가족부, 2023: 8). 2012년에는 근거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착수 이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사업 내용(유형)을 추가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 2018: 48) 지속적으로 개선이 추진 중이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신청권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23: 9).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이 신청권자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나(여성가족부, 2023: 60), 그 외 서비스 유형들은 모두 돌봄 대상인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이다(여성가족부, 2023: 29). 1회 이용시 신청 가능한 최소 시간은 영아종일제서비스가 3시간 이상, 시간제서비스는 2시간 이상이다(여성가족부, 2023: 53; 55). 이용비용은 시간제서비스 기준 연 960시간 이내[16] 4개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정부가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3: 10-12). 이용비용 정부지원의 결정 요건은 1) 대상아동 기준, 2) 양육공백 기준,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4)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두 충족 시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여성가족부, 2023: 2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한 소득기준[17]을 충족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 34). 2023년 현재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소

16)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으로는 1,080시간 지원(정부지원시간 특례)(여성가족부, 2023: 12)
17)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함하여 산정함. 단,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 경감 처리함(여성가족부, 2023: 34)

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 '가'~'다'형 해당)에 대해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11).

〈표 Ⅱ-2-8〉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양육공백 가정 종류	해당/제외 기준
1)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맞벌이 비해당 - 출산휴가자는 출산휴가 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 취업한 경우 해당 - 비취업 한부모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해당 - 비취업 한부모이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취업자로 간주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혹은 양부모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해당 -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비해당
4) 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해당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명 이상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한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비장애아 및 경증 장애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지원 대상임)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 희귀난치질환) 해당 자녀 포함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단, 부모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5)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경우(단, 부모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 공백 인정 확인서 제공받은 가정 해당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 1)~6)외 사유로 양육공백 발생하고 해당 사유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각 사유 해당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부담 사유]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5일 이상의 입원, 장기요양, 학교 재학, 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의 돌봄 공백 발생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28-30

〈표 Ⅱ-2-9〉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서비스유형	지원대상(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내용주)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내 이용시 소득기준유형별 최소 15%~85% 지원(일반) * 15%~90%지원(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이하 시설 이용 아동	- '가', '나'형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시 '가' 85%, '나'60% 요금 적용 ②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시 '가', '나'형 공통으로 50% 요금 적용 - '다', '라'형 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적용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만 12세 아동	- 없음

주: A형(2016. 1.1. 이추 출생) 기준으로 제시. B형(2015.12.31. 이전 출생) 기준 지원내용은 여성가족부(2023). p 참조할 것.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2; 54; 56-57; 59-60.

이러한 정부지원 결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양육지원 중복금지 기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즉,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시간에 해당하는 평일 09~16시, 유치원 정규 교육시간인 09~13시 및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연장제 등 실제 이용시간과 중복한 시간대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여성가족부, 2023: 29). 단,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 등으로 인한 시설 미운영, 탄력적 운영에 의한 이용시간 차이, 아동의 병원진료, 시설·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학교폭력,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으로 인한 시설·학교 등의 휴원·휴교·격일등교(원), 어린이집·유치원 적응기간 및 자율등원기간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서류 제출로 입증하여 예외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 29-30).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여성가족부, 2023: 29).

즉,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양육형태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은 제고하되, 불필요한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Ⅱ-2-10〉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서비스유형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중복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평일 09~16시/(유치원) 평일 09~13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29.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 53). 단, '기관연계서비스'는 신청권자가 이용가정이 아니어서 이용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범주의 지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결과는 〈표 Ⅱ-2-11〉과 같다.

〈표 Ⅱ-2-11〉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주) 이용비용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개념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단위 보육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보육료)를 지원 *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
목적	가정내 양육가구의 일시적 보육서비스 수요 충족	아동의 안전한 보호·복지증진/영아를 둔 취업부모에 시설보육 외 선택권 제고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육성/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아동의 안전한 보호·복지증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자원 창출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살의 질 향상
도입 연도	2013(시범사업으로 도입)	2010	1991(본인부담 원칙, 예외적 저소득층 지원으로 시작)	2006(시범사업으로 도입)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주) 이용비용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지원 대상	생후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10)12개월→('14)24개월→('17)36개월로 확대	만 0-5세 - 만0~5세 영유아 중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유치원 미이용 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시간제 보육료 지원(시간제 보육료의 75%) 월 80시간까지 지원 *'23년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4,000원	- 아이돌보미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4개 소득기준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대비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라형 전액 본인 부담)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	- 영아반(0~2세반) 기본 보육료 전액 지원(소득 무관) - '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바우처)로 보육료 전액 지원 -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추가 지원(영아반 시간당 2,000원)	- 아이돌보미를 아동의 집으로 파견/4개 소득기준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대비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라형 전액 본인 부담)
근거법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4조	「아이돌봄지원법」제20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전달 체계	*관리기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읍·면·동(비용지원) *여성가족부-중앙/광역지원센터-교육기관-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복지부-시·도-시·군·구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읍·면·동(비용지원) *여성가족부-중앙/광역지원센터-교육기관-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비고: 특징, 타사업 중복성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육아휴직 이용 여부 무관**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지원 불가(돌봄공백 기준 미충족)**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 지원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기관을 주된 보육·교육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주1) 지원제외 **- 육아휴직 이용 여부 무관(단, 연장보육 자격은 제외)**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지원 불가(돌봄공백 기준 미충족)**

주: 정기적(주 3회 이상)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또는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 타 시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등(보건복지부, 2023: 342)

자료: 1)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456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2)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7-12, 29-30, 34, 54, 56-57. 59-60.
3) 보건복지부(2023c).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 77, 323-324, 331, 342,345, 347-352.

나. 현금 지원 정책 현황

1) 영아 대상 현금 지원 정책

가) 첫만남이용권

(1) 정의 및 목적, 연혁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 1.).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차원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의 패러다임에 의해 아동의 출생부터 건강한 발달을 돕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한 사업이다(대한민국정부, 2020: 76).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d: 3).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4월 1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 1.).

(2)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세이다(보건복지부, 2023d: 4).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 1인당 200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23d: 4).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인 바우처 형태가 원칙이며,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하되,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d: 5).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미사용시 자동소멸된다(보건복지부, 2023d: 5). 사용 범위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구매시에도 사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d: 6).

근거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이다(보건복지부, 2023d: 3).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지자체에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23d: 7). 시·군·구에서는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집행상황을 관리하며, 대상자 관리, 현금 지급에 대한 지급, 정산을 관리한다(보건복지부, 20213d: 7).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군·구에서 사업비를 예탁 받아 전담금융기관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을 정산한다(보건복지부, 2023d: 7). 대상자는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거주지 관할 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d: 8). 시·군·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해서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대상자는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23d: 8).

[그림 Ⅱ-2-2] 첫만남이용권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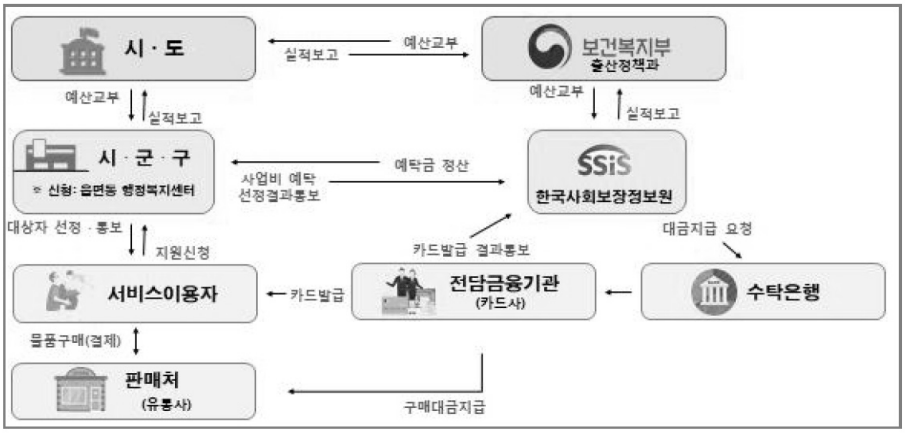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3d).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 6, 사업추진체계(시군구).

나) 부모급여

(1) 정의 및 목적, 연혁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부모급여를 신설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2 : 85).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으로(보건

복지부 2023a: 4),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 19: 1). 부모급여 지급 형태는 현금과 바우처로 나누어진다(보건복지부 2023a: 4).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으로,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3a: 5).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만 0세는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는 1인당 월 35만원이며(보건복지부, 2023a: 6),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되며 서비스 비용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3a: 5).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이용 만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많으므로 대체하고, 만 0세의 경우에는 현금 차액(18.6만원)만큼 추가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18]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19]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자는 부모급여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20] 즉,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는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부터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21]

부모급여는 아직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최윤경 외, 2022b: 9), 「아동수당법」 제1조, 제3조, 제4조, 「아동복지법」 제1조,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제4조에서 각각 관련 법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a: 3-4).

---

18)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0399(인출일:2023. 5. 19.).
19) 연합뉴스 [2023예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50100530(인출일:2023. 5. 19.).
2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0399(인출일:2023. 5. 19.).
21)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0399(인출일:2023. 5. 19.).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로, 2023년 예산은 1조 6,249억 원(국고지원비율은 서울 25~45%, 지방 55~75%)으로, 2022년 추가 경정 예산과 비교해서 지원 예산은 336% 증가하여 보육사업 중 세 번째로 큰 사업이다.[22)]

신청접수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은 복지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a: 8). 부모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매월 25일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23a: 8). 2023년 4월 25일 기준 부모급여는 약 27만 명에게 지급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5. 4.).

2)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 지원 정책

가) 아동수당

(1) 정의 및 목적, 연혁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서비스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3b: 3).

아동수당은 근거법인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제정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4. 17.),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이 처음 신설된 2018년에는 선별지원으로 만 6세 미만(만 0-5세) 수급아동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4. 17.), 2018년 12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상관없는 보편지원이 되었으며, 대상 연령도 만 6세 이하(만0-6세)로 상향 조정되었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15.) 그에 따

22)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기획3]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육 분야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19060(인출일:2023. 5. 19.).

라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표 Ⅱ-2-12〉 참조).

〈표 Ⅱ-2-12〉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 변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238만명	247만명	263.5만명	247.2만명	273.2만명
	만 0-5세	만 0-5세/ 만 0-6세(9월~)	만 0-6세	만 0-6세	만 0-7세
총예산	7,096억원	2조 1,627억원	2조 2,834억원	2조 2,195억원	2조 4,039억원
전년대비 증감	-	204.8%	5.6%	-2.8%	8.3%
국고보조율	73.5%	72.89%	72.89%	75.1%	-

자료: 보건복지부(2018a-2022a).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개요. 각년도
출처: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6 〈표 Ⅱ-1-2〉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현황(2018-2022) 재인용.

(2) 지원 대상 및 내용

아동수당 대상은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으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되며(보건복지부, 2023b: 3), 영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제도이다. 지급액은 아동당 월 10만원으로 최초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

아동수당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며, 신청은 부모급여와 비슷하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23],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매달 25일에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3b: 7).

나) 가정양육수당

(1) 정의 및 목적, 연혁

가정양육수당은 정권 교체 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보완하여 '아이사랑플랜(2009~2012)' 수립을 통해 추진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인출일; 2023. 5. 19.)

되었다(박은정 외, 2022: 36). 육아지원정책이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아이사랑플랜에서는 추진과제로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수당'을 기획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8; 박은정 외, 2022: 36에서 재인용).

가정양육수당은 2008년 12월 19일「영유아보육법」부분 개정을 통해 제34조의2(양육수당) 조항이 신설되었고, 최초 지급은 2009년 7월 1일이다(박은정 외, 2022: 37). 도입당시에는 차상위 이하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최소화된 형태로 설계되었지만, 지원 범위는 조금씩 확대되다가 2013년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모든 계층의 미취학 영유아에게 지급되게 되었다.[24]

(2) 지원 대상 및 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를 대상으로 지급된다.[25]

가정양육수당은 지급액이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형태이다. 이 중 영아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이다.[26] 단, 부모급여 대상과의 중복으로 인해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지급된다.[2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중 영아(0~23개월)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지원 아동 중 0~11개월은 41.5%, 12~3개월은 28.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양미선 외, 2022: 36).

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회복지 양육수당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sitePage=(인출일; 2023. 5. 19.)
25) 보건복지부 정책 보육사업기획 가정양육수당 안내,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2&PAGE=2&topTitle=(인출일; 2023. 5. 19.)
26) 육아정책연구소(2022). 육아정책포럼 제75호(겨울호). 정책동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제도' p. 32.
27) 보건복지부 정책 보육사업기획 가정양육수당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3020200(인출일; 2023. 5. 19.)

〈표 Ⅱ-2-1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영아 기준)

구분	0-11개월	12-23개월
2010년	24,447	27,391
2011년	36,662	38,408
2012년	37,727	44,128
2013년	384,042	346,264
2014년	383,389	309,908
2015년	386,361	310,212
2016년	363,178	305,911
2017년	319,122	274,043
2018년	219,106	236,328
2019년	269,362	203,769
2020년	243,132	187,316
2021년	232,863	158,980
(2021년 기준)비중	41.5	28.4

주: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0-6세 영유아 수*100으로 산출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2022. 4. 30.).
보건복지부(2011-2022). 2010년-2021년 보육통계(각 년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계,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o (인출일: 2022. 4. 22.).
출처: 양미선·김나영·박은정·오미애·송신영(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제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31, 〈표 Ⅱ-1-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중 내용 일부만 재인용(0-11개월, 12-23개월 아동수 및 비중).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과 겹치지 않도록 2022년생은 24개월부터 지급되는 단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면서, 단서 기준은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28]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

가정양육수당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이며,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하며(보건복지부 2023c: 335), 매달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다(보건복지부 2023c: 369).

28) 육아정책연구소(2022). 육아정책포럼 제75호(겨울호). 정책동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제도' p. 32.

〈표 Ⅱ-2-14〉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영아 대상 현금지원</th><th colspan="2">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th></tr>
<tr><th>첫만남이용권</th><th>부모급여</th><th>아동수당</th><th>가정양육수당</th></tr>
<tr><td>도입연도
(최초지급)</td><td>2022년</td><td>2023년</td><td>2019년</td><td>2009년</td></tr>
<tr><td>지원 대상</td><td>만 0세</td><td>만 0-1세</td><td>만 8세 미만 아동</td><td>기관,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td></tr>
<tr><td>지원 내용</td><td>출생아 1인당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200만원(1회)</td><td>-가정양육시 현금
<table><tr><th>구분</th><th>’23년</th><th>‘24년</th></tr><tr><td>만0세</td><td>월 70만원</td><td>월 100만원</td></tr><tr><td>만1세</td><td>월 35만원</td><td>월 50만원</td></tr></table>-기관, 돌봄서비스 이용시 차액만 지급</td><td>월 10만원</td><td>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
〈영아기준〉
①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②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2년생부터 24개월 이후부터 지원</td></tr>
<tr><td rowspan="3">근거법</td><td rowspan="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td><td>「아동수당법」 제1조, 제3조, 제4조</td><td rowspan="3">「아동수당법」</td><td rowspan="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조항</td></tr>
<tr><td>「아동복지법」 제1조, 제4조</td></tr>
<tr><td>「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td><td>「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제4조</td></tr>
<tr><td>주무부처</td><td>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td><td>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td><td>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td><td>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td></tr>
<tr><td>전달체계</td><td>복지부-시·도-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 관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td><td colspan="2">복지부-시·도-시·군·구
*신청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현장), 복지로, 정부 24시(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 행복e음 통해 대상 아동 가구에 직접 입금</td><td>복지부-시·도-시·군·구
*신청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현장), 복지로, 정부 24시(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어 매월 25일 현금지급</td></tr>
<tr><td>비고:
타사업 중복성</td><td>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가능</td><td>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과 동시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안됨.</td><td>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신청 가능</td><td>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동시 신청 가능</td></tr>
</table>

자료: 1) 보건복지부(2023d). 2023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p. 3-5. 7-9.
2) 보건복지부(2023a). 2023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 pp. 3-6, 8.

3)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 p.3, 7.
4)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보육사업 안내,p. 5, 335, 369.
5)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7.
6) 육아정책연구소(2022). 육아정책포럼 제75호(겨울호). 정책동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제도' p. 32.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4. 17.).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 15.).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4. 1.).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19.).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1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회복지 양육수당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sitePage(인출일; 2023. 5. 19.)
12)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0399(인출일: 2023. 5. 19.).
13) 연합뉴스 [2023예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50100530(인출일: 2023. 5. 19.).
14) 보건복지부 정책 보육사업기획 가정양육수당 안내,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2&PAGE=2&topTitle=(인출일; 2023. 5. 19.).
15)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기획3]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육 분야,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19060(인출일: 2023. 5. 19.).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인출일; 2023. 5. 19.)

다. 시간 지원 정책 현황

1)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시간지원 정책

가)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 및 급여

양육지원의 범주 중 '시간' 지원이란 부모에게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주로 취업활동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한 근로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일반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이러한 시간지원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혹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해 온 '유연근무제'들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정의와 목적, 연혁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29] 사

29) 근로기준법 제74조[법률 제18176호]

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다(고용노동부, 2023b: 13).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 제도'로 분류되는 만큼, 그 목적이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이전에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b: 14). 모성과 태아 보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30]에게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b: 11).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8월 유급보호휴가를 60일 부여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보호휴가기간이 90일로 확대되었다(유급은 60일). 2012년 산전후휴가에서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다. 2017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이 2001년 135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1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후 2020년에 200만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인상되었고 2022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시를 통해 2023년부터 210만원으로 인상된 상태이다(고용노동부, 2023b: 12)(〈표 Ⅱ-2-15〉 참조).

〈표 Ⅱ-2-15〉 출산전후휴가 제도 주요 연혁

시행일	개정일	내용	비고
'53.8.9.	'53.5.10.	- 유급보호휴가 60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01.1.11.	'01.8.14.	- 보호휴가 90일 부여(60일은 유급), 산후 45일 확보되도록 함 - 무급 30일의분의 통상임금 지원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 제72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01.1.11.	'01.10.30.	- 산전후휴가급여: 상한 135만원/ 하한 최저임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8
'12.8.2.	'12.2.1.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허용 - 명칭변경: 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14.7.1	'14.1.21.	-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90일 → 12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17.1.1.	'16.12.30.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시

30)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 전 분할 사용 기간은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제외한 최대 44일 범위 내임(고용노동부, 2023b: 15)

시행일	개정일	내용	비고
‘18.1.1.	‘17.12.30.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	
‘19.1.1.	‘18.12.31.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80만원으로 인상	
‘20.1.1.	‘19.12.31.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1.7.1.	‘21.1.5.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법정출산급여를 보장	- 근로기준법 제74조
‘23.1.1.	‘22.12.31.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10만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시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 12 일부 발췌.

한편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도입된 휴가제도로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으로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지원’의 목적을 모두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55).

배우자출산휴가는 2008년 6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다. 2012년 8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최초 3일은 유급) 부여, 2019년 10월부터 1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55). 10일간의 유급휴가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23b: 55). 즉, 국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의 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표 Ⅱ-2-16〉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주요 연혁

시행일	개정일	내용	비고
‘08.6.22.	‘07.12.21.	- 3일 휴가(무급) 부여 -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2.8.2.	‘12.2.1.	-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부여, 최초 3일 유급 *‘12.8.2.부터 300인 이상 사업자, ’13.2.2.부터 전 사업장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9.10.1.	‘19.8.27	- 10일 유급 부여 (1회 분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지원	- 고용보험법 제76조

시행일	개정일	내용	비고
‘19.10.1.	‘19.9.30.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382,770원 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시
‘23.1.1.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401,910원 제정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 55.

(2) 지원 대상 및 내용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에 휴가 90일을 부여하며(단, 다태아는 120일), 모성보호와 90일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3b: 13)[31].

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주는 통상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90일 전 기간에 걸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나 대기업의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의 최종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상한액 210만원의 기준이 적용되어 기업의 차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유급기간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가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23b: 11, 17).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시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10일[32]이 유급으로 부여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23: 55). 단,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고용노동부, 2023b: 57)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2023b: 55). 최초 3일의 무급휴가로 도입되어 2019년 10월부터 1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었는데, 대기업은 10일분의 급여를 사업주가 부여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서는 최초

31)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았으나, 분만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90일을 초과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반은 아님(고용노동부, 2023b: 14).

32)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고용노동부, 2023b: 57).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23b: 55).

〈표 Ⅱ-2-17〉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주요 내용

구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중인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기간	-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보장)/다태아는 120일(출산 후 60일 보장)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중 10일 부여(90일이 지나면 청구 못함)
분할사용	- 유·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 분할 사용 가능	- 1회
소득보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기업)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최종 30일은 고용보험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 고용보험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대기업: 사업주가 10일분 지급
급여수준	-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급액 상한은 210만원)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최후 30일은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어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주]은 최대 401,910원)/ 하한액은 휴가시작일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 지급)
업무 및 신분보장	- 휴가전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 지급하는 직무 복귀 - 휴가기간 및 휴가 후 30일간 해고 제한 - 휴가기간은 출근일로 계산(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그밖의 불리한 처우: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직,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정신적·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

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5일분의 급여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11, 17, 55, 59, 65를 근거로 구성.

또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분할 사용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 청구토록 요청하고, 휴가기간을 청구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토록 지도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3b: 57).

이처럼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자발적·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치를 통해 모성보호와 신생아기부터 남성의 양육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33]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휴가 및 휴직,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사업주에게, 관련 급여는 급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4]

[그림 Ⅱ-2-3]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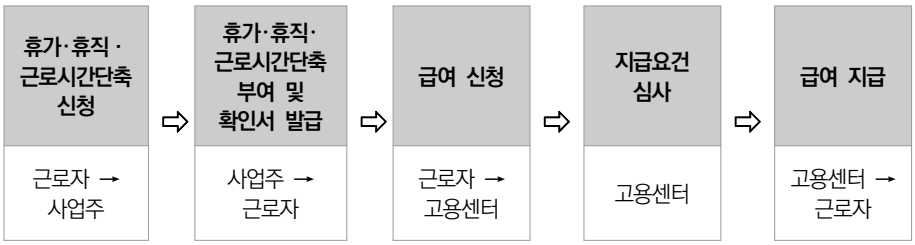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인출일: 2023. 6. 9.).

나)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35]

(1) 정의와 목적, 연혁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미만,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 지원 제도인데,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중 특히 '영아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로 현재 시행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존재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절실한 생후 12개월 내의 초기 영아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의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특례이다(고용노동부, 2023b: 182).

(2) 지원 대상 및 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33) 이하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공통임.
3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6호] 제116조(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35) 주무부처 및 전달체계는 '육아휴직(급여)'에서 공통으로 다룸.

(상한 200~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단,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23b: 182).

2) 영아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간 지원 정책

가) 육아휴직(급여)

(1) 정의와 목적, 연혁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1988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고용노동부, 2023b: 145). 도입 당시에는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고용노동부, 2023b: 146) 최초에는 직접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특히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여진다. 휴직을 통해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시간을 지원한다는 특성상 최초 도입시 육아휴직제도는 우선적으로 영아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0세아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6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대상 아동의 연령이 상향되었고, 2010년에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2014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이용 가능한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고용노동부, 2023b: 146-147) 근로자의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표 Ⅱ-2-18 참조).

한편 이용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도 완화되었다. ’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고용노동부, 2023b: 146) ‘육아’에 있어서의 여성 부담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남녀평등한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01년 1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전부개정에 의한 육아휴직 개선의 내용으로 육아휴직대상자의 확대를 명시하여[36],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

아휴직이 남녀불문하고 가능해졌으며, 2014년부터는 주로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상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2020년에는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146-148).(〈표 Ⅱ-2-18〉 참조). 이는 남녀 평등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육아휴직 시의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1년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146). 2001년~2010년까지는 정액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2001년 월 20만원에서 2007년 월 5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며(고용노동부, 2023b: 146), 2011년부터는 정액급여가 아닌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급여로 변경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최초로 정률급여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정해졌으며(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2019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인상(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되었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까지 상향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147-148). 한편 육아휴직급여 중 일정 비율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고용노동부, 2023b: 147) 이는 육아휴직기간의 종료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지속하여 근로할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설계로부터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육아를 위해 퇴직하지 않고 경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 이용 대상자를 여성근로자에서 남녀근로자 모두에게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제' 등의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을 통해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편중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부모의 평등한 육아 분담을 유도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36) 법제처, 남녀고용평등법[시행 2001. 11. 1.] [법률 제6508호, 2001. 8. 14.,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5008&lsId=&efYd=2001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인출일: 2023. 5. 31.)

〈표 Ⅱ-2-18〉 육아휴직제도 주요 연혁

시행일	개정일	내용	비고
‘88.4.1.	‘87.12.4	-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기간은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1년 이내 - 육아휴직 이유로 불리한 처우 불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95.8.4.	‘95.8.4.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남성은 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01.11.1.	‘01.8.14.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남녀 불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01.11.1.	‘01.8.14.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거규정 신설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01.11.1.	‘01.10.31.	- 육아휴직 급여액: 월2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2.12.30.	‘02.12.30.	- 육아휴직 급여액: 월30만원	
‘04.2.25.	‘04.2.25.	- 육아휴직 급여액: 월40만원	
‘06.3.1.	‘05.12.30.	-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07.4.27.	‘07.4.27.	- 육아휴직 급여액: 월5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8.6.22.	‘07.12.21.	- 육아휴직 1회 분할 허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10.2.4.	‘10.2.4.	-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1.1.1.	‘10.12.31.	-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4.1.14.	‘14.1.14.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4.10.1.	‘14.9.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아빠의 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5.7.1.	‘15.6.30.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율 확대(15%→2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16.1.1.	‘15.12.4.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종전 1개월→3개월로 기간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7.7.1.	‘17.7.1.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 20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7.9.1.	‘17.9.1.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고용보험법 제95조
‘18.7.1.	‘18.7.1.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9.1.1.	‘18.12.31.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개정일	내용	비고
		50%로 인상(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제95조,제95조의2
'20.2.28.	'19.8.27.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호 삭제
'20.2.28.	19.12.24.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삭제
'20.12.8.	'20.11.25.	-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21.11.19.	'21.5.18.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22.1.1.	'22.1.1.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7개월부터 급여 인상 * 7개월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 146-148.

(2) 지원 대상 및 내용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b: 149). 2020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150).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로의 복귀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159-161).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37],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23b: 163).

37)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고용노동부, 2023b: 166).

한편 고용보험에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여 육아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이직방지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164).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의 기간 중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고용노동부, 2023b: 175),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38](고용노동부, 2023b: 176).

한편 육아휴직급여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특례가 존재한다. 우선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 시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22년 신설되어 현재 시행중인 '3+3부모육아휴직제'(고용노동부, 2023b: 182)가 있으며,[39] 이외 '14년 도입 후 '22년까지 운영되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다(고용노동부, 2023b: 18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분담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용노동부, 2023b: 186).'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14년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16년에 적용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였고, '18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기간의 상한액은 200만원, '19년에는 250만원으로 상향지급하였다(고용노동부, 2023b: 186).

〈표 Ⅱ-2-19〉 육아휴직(급여) 주요 내용

항목	원 칙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근로자 각 1년씩 사용 가능, 부부 동시 사용 가능
기간	1년 이내(분할 사용 2회 가능)
신분보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 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38)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함(고용노동부, 2023b: 176).
39) 본고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지원'에서 상술함.

항목	원 칙
지원제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145, 150.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 정의와 목적, 연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 2023b: 2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고용노동부, 2023b: 208)[40] 의의를 지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2008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당 15~30시간의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고, 2012년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으로 강화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09).[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 2014년~201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09). 또한 2019년 8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73조제2호의 급여 지급 제한의 규정을 삭제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법률

40)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나, 실제 업무 경험이 일정 기간 단절됨으로 인해 업무 역량 등 경력에는 실질적인 단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1)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1274호, 2012.2.1.,일부개정]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호도 삭제하여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09).

한편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2008년 최초 도입 당시 15~30시간 이내였으나,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을 35시간으로 확대하여 활용 범위를 넓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 도입 당시의 설계에서 2019년에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을 이용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용노동부, 2023b: 209).[42][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초에는 육아휴직의 대체재로서 도입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육아휴직과 별개로 활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 제도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급여의 개선, 이용 기간·시간의 확대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과 더불어, 최근에는 부부가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대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부부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동시 이용을 허용·권장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도 주로 여성근로자에게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고 경력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한 자녀에 대한 필수 돌봄을 넘어서, 함께하는 육아 문화, 충분한 돌봄과 부모권의 향유를 지향하는 방향이라 사료된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대상으로, 사업주는 특별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3b: 211). 육아기 근

42)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 16558호, 2019.8.27., 일부개정]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4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권자는 2019년 8월 27일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로 변경함.

로시간 단축을 이용시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2023b: 211),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부모 각각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고용노동부, 2023b: 209) 1회 3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23b: 2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의 신분보장이 적용되며, 더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보호규정도 두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217).

또한 「고용보험법」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221). 2020년 2월 27일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23).

〈표 Ⅱ-2-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기간	1년 이내.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 근속기간에 포함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이내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음(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지원제도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구분	내 용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

자료: 1)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208, 212, 224.
2)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인출일: 2023. 6. 9.).

다)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1) 정의와 목적, 연혁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의 신설로 도입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32). 최초 제도 도입 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1항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업주가 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 중에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포함되었는데, 이후 2012년 2월 동법 개정을 통해 당해년도 8월부터는 해당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허용해야 하는 제도로 강화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32)(표 Ⅱ-2-21 참조). 휴직을 통한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2012년 개정 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특정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이러한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추가하여 휴직 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32).

〈표 Ⅱ-2-21〉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 주요 연혁

시행일	개정일	가족돌봄휴직	비고
'08.6.22.	'07.12.21.	-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 사업주는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12.8.2.	'12.2.1.	-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음	

시행일	개정일	가족돌봄휴직	비고
‘19.10.1.	‘19.8.27	- 가족 대상에 ‘조부모, 손자녀’ 추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가족돌봄휴직에 포함	
‘20.1.1.	‘19.12.24.	-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요건 완화(1년 → 6개월) -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허용 예외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출처: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232. 제도 연혁

한편, 장기적인 가족돌봄의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과는 별개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고용노동부, 2023b: 240).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추세에서,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 절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단기간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9: 10). 즉, 가족돌봄휴직이 1회 사용 단위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하며,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여 자녀 양육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고용노동부, 2019: 11).

한편 2020년 9월에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감염병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긴급 가족돌봄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어,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44].

44)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④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표 Ⅱ-2-22〉 가족돌봄휴가 제도 주요 연혁

시행일	개정일	가족돌봄휴직	비고
‘20.1.1.	‘19.8.27.	- 가족돌봄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20.1.1.	‘19.12.24.	- 가족돌봄휴가 허용 예외*신설 * 조부모의 직계비속/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20.9.8.	‘20.9.8.	- 비상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일(한부모근로자 25일) 이내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출처: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240. 제도 연혁.

(2) 지원대상 및 내용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b: 234). 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이며 1회 사용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여 분할 사용, 해마다 반복 사용도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23b: 234). 가족돌봄휴직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238).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더하여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23b: 240). 휴가 기간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 2023b: 240).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한 점, 가족돌봄휴가 이용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보호규정은 가족돌봄휴직제도와 동일하다(고용노동부, 2023b: 240). ‘장기’돌봄과 ‘단기’ 돌봄의 목적의 차이 외에도 두 제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족돌봄휴직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포함하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돌봄 필요를 직접적으로 신청 허용 사유로 언급하여 일반적인 자녀 양육 사유로도 사용 가능하다는(고용노동부, 2019: 10) 차이가 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모두 무급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2020년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갑작스런 돌봄 공백으로 자녀를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이 제고되면서,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근로자 1인당 5만원을 최대 5일, 한부모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을 지원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 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4(인출일: 2020. 3. 25;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48에서 재인용).

〈표 Ⅱ-2-23〉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구 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장기 돌봄의 필요)	-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단기적, 긴급한 돌봄의 필요)
기간	-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비상시 가족돌봄휴가 10일 범위 연장 가능 (한부모 15일))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신분보장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 금지 -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 금지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지원제도	- 없음	- 없음(한시사업으로 ‘20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시행)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232, 240.

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정의와 목적, 연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임신·육아 외 사유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생활균형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용노동부, 2023b: 246). 이 제도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3이 신설됨으로써[45] 도입되었다.

45) 남녀고용평등법[시행 2019. 10. 1.](법률 제16558호, 2019.8.27.,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2) 지원 대상 및 내용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생활 균형을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 형태 무관, 법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한 돌봄에 한정되므로 그 외 일반적인 '자녀 양육'은 자녀 돌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23b: 248). 근로자는 1년까지(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Ⅱ-2-2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대상	- 모든 근로자(남녀불문)	
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근로자), 학업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가족돌봄은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자녀 양육은 제외)
시간	- 주당 15~30시간 이하	
기간	- 1년	총 단축기간 3년(학업 사유는 1년) 이내에서 1년 연장 가능
신분 보장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금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있으면 가능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24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앞서 살펴본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시간' 지원 범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결과는 〈표 Ⅱ-2-25〉, 〈표 Ⅱ-2-26〉과 같다.

〈표 Ⅱ-2-25〉 시간지원 범주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가 있는 부모) 대상 시간지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개념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부여되는 최소한의 보호휴가	-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월 최대 300만원)
목적	- 모성보호/ 태아 건강 보호	- 모성보호/자녀 양육	- 초기 영아기의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
도입연도 (시행일 기준)	- 1953 (유급보호휴가 60일 부여)	- 2008(무급) → 2012(유급)	- 2022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출산 전후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다태아일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및 통상임금 지급 - 유산·사산 위험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 분할사용 가능(횟수 제한, 최대 44일 내 기간 제한 없음)	- 10일 유급 휴가 부여 (통상임금 지급: 401, 910원 상한) - 1회 분할사용 가능	-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 이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향지급(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거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비고: 타사업 중복성	- 모성보호가 주 목적/서비스(보육, 아이돌봄) 또는 현금지원(부모급여) 수급 가능	-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 목적/서비스(보육, 아이돌봄) 또는 현금 지원(부모급여) 수급 가능	- 출산휴가 후 사용 가능/서비스, 현금 지원 수급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 11-12, 55-58, 181-182

〈표 Ⅱ-2-26〉 시간지원 범주중 영아(가 있는 부모)를 대상에 포함하는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의	-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족돌봄휴직)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무급휴직 - (가족돌봄휴가) 단기적, 긴급한 사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무급휴가	-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목적	- (도입 초기) 모성보호 및 영아 양육지원 →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기에도 근무를 지속함으로써 경력단절 방지와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달성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필요에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폭넓게 보장
도입연도 (시행일 기준)	- 1988	- 2008	- (가족돌봄휴직) 2008 - (가족돌봄휴가) 2020	- 2019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모든 근로자
지원 내용	- 한 자녀 당 부모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부부동시 육아휴직도 가능), 분할 사용 가능(2회) - 육아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휴직급여로 지급	- 한 자녀 당 부모 근로자 각각 1년씩(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2년까지)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 분할 사용 가능(1회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일부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원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해마다 반복 이용 가능(무급)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비상시 10일 범위내 연장 가능),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까지(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 - (질병, 사고로 인한 돌봄이 아닌)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사용 불가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법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급여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	- 사업주에 신청
비고: 타사업 중복성 등	- 어린이집 이용 가능(연장보육제외)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불가(양육공백 기준 미충족)	- 취업중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능(돌봄공백 기준 충족)	- 휴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불가(양육공백 기준 미충족)	- 취업중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능(돌봄공백 기준 충족)

자료:1)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p.145-155, 208-209, 215, 221-224, 232, 237, 240, 248.
2)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인출일: 2023. 6. 9.).

3. 소결

제2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및 사업들을 정책 범주, 사업별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영아기 양육 정책들은 도입의 목적이 '영아기'의 양육지원에 특별한 목적을 두었던 정책들도 있으나, 취학전 영유아 혹은 아동 양육 지원의 체계 속에서 지원 대상에 영아를 일괄 포함한 정책들의 비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아 양육지원에 특화된 정책들은 주로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할 경우의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가정 내 양육이 아닌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영아 양육을 위한 정책 지원의 범주 및 관련 사업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중복 지원의 적절성과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즉, 다양한 정책들의 수혜 자격 기준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를 대신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정책의 영역과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시간' 정책의 영역

에서 일관되지 않은 기조가 발견되었다. ‘시간’ 지원인 육아휴직 이용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 자격에서는 제한이 없는 반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영아종일제서비스 포함) 육아휴직자에게는 돌봄 공백 기준으로 인해 비용 지원 자격이 제한되었다. ‘직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육아휴직 이용 시에 ‘대리 돌봄’ 서비스 이용의 중복적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3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이 불가능함(보육필요성)을 인정받아 보육 이용 희망시설을 신청하고, 해당 보육소 이용을 신청한 영아가 많은 경우 시정촌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조정’을 한 후 이용 가능한 보육소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장경희·유해미, 2019: 20-21, 23).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육필요성’ 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제한이 없고, 개별 가정의 입소대기 신청 후 대기가 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자체의 조정 절차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리 돌봄의 필요성이 곧 예상되는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원하는 어린이집에 곧장 연계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고, 대기한 어린이집에 입소 연락이 오는 경우 직장 복귀 시점보다 조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육아휴직자는 기본적으로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을 지원 받고 그에 대한 급여를 국가(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도의 설계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중복지원’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직장에 복귀할 때, 복귀 이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복귀 시점 보다 다소 이르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 보여진다. 육아휴직후 복귀 예정자에 대해 최우선의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일정 부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조정이 개입되는 등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등 서비스 지원의 이용 가능한 ‘영아’ 기준과 영아 양육지원에 특화된 현금성 지원(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 연령에 차이가 존재한다. 영아 대상 양육지원의 대상 연령의 일관성 제고 및 서비스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연령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근 영아 양육지원은 주로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으

며, 높은 수준의 현금 지원의 확대가 영아 양육지원 인프라에 미칠 영향과 영아 양육비 부담 경감의 목적에서의 효과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간' 지원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영아 양육지원 인프라의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에서의 소득기준 적용 여부 및 차등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의 경우 보육료 지원 단가 전액을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나,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유형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비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도 존재한다. 모두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지원으로 부모의 양육형태, 서비스 유형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소득기준 적용 여부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 공백'이 서비스 이용 지원의 핵심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으로 인해 비용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수요자의 측면에서 양육지원 정보 획득과 신청 등 전달체계의 통합 및 효율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국외 영아 양육지원 정책 사례 분석

01 일본
02 프랑스
03 스웨덴

Ⅲ. 국외 영아 양육지원 정책 사례 분석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차별성이 있는 3개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지향점과 발전 배경, 전반적인 체계 구성을 살펴보았다.

1. 일본

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동향

1) 영아의 범주

일본의 보육현장에서 영아보육은 대략 0세에서 만3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이라고 볼 수 있다. 영아보육 해당 반은 보육소 입소 기준인 4월1일 현재의 월령과 연령을 기준으로 0세반, 1세반, 2세반으로 나누고 있다. 단, 법률적으로 영아는 0세 아동을 지칭한다.[46]

2) 영아 양육지원의 사회적 배경과 육아지원의 변천과정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인 1950년-1960년대 초 일본의 가정은 생계를 위한 맞벌이의 요구가 높았다. 그를 위해 절실하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소를 필요로 하였고, 무엇보다 영아보육의 수요가 높았다.

한편 당시 일본에서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Jone Bowlby의 WHO조사 보고서 일본어판 『영유아의 정신위생』(쿠로다 지츠오 역; 黒田実郎訳)이 간행됐는데, 동시기에 정부는 1963년 중앙아동복지심의회 보육제도 특별부회의 답신(答申)으

46)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영아는 만1세를 넘지 않는 사람, 유아는 만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7년에 개정된 보육소(어린이집)보육지침의 연령구분에서는 영아보육(0세아)과 1세 이상 3세 미만 아동의 보육(1세와 2세 아동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도 영아는 1세가 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체로 일본에서 법률상 '영아'로 지칭되는 연령은 0세에 해당한다.

로써 가정보육을 원칙으로 어머니의 보육책임을 강조한 「보육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보육의 7원칙)」을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그러한 정책의 근거로 Jone Bowlby학설, 「생후 3년 간의 모자 관계의 장기적인 단절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를 내세웠다. 즉, 1960년대 초에는 이른바 「3세아 신화」가 일반적인 육아관으로 정착하게 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당시의 많은 어머니들이 3세까지의 자녀를 보육소에 맡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후생성은 1989년 후생백서를 통해 「3세아 신화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명기하기에 이르며, 「일하는 어머니회」[47]가 "우체통 수 만큼 보육소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보육소 증설을 요구하며 각 지역에서도 부모, 보육사(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소규모의 공동보육소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편 1963년에 실시한 제5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요코하마를 비롯한 4개 대도시와 전국 7개의 도시에서 혁신시장이 탄생하고, 특히 1967년 동경의 미노베 혁신도정[48]이 탄생함으로 인해 공적보육제도를 지향하는 정책 중에 영아보육도 포함하게 되었다. 나아가 1969년 중앙아동복지심의회는 보육소에 있어서 영아보육대책으로서 처음으로 0세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육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1970년-1980대에 이르러 육아를 전담하고 있던 어머니들의 육아스트레스가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어머니들에게 육아의 책임을 떠맡기는 것을 우려하는 사회적 동향이 나타났다.

한편, 1970년대 말 정부는 가정기반의 충실을 목표로 한 각종 가족우대조치를 펼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복지사회」[49]라는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그 중심 내용에는 가족복지의 근본적인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각 가족에 있다는 것으로 종래의 가족체계의 가부장제와 성별 역할분업 등을 강화한 정책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돌봄과 육아는 가정에서도 여성의 책임이 된다.

상기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1970년-1980년대 일본에서는 기혼 여성이

47) 여성이 출산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기위해 지역의 보육소, 학동보육만들기의 활동을 하는 단체. 당시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에 근무하던 코바야시 시즈예(小林静江)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1954년 12월 18일에 발회식으로 출발했다. 1960년대의 보육운동의 중핵을 담당했다.

48) 1970년대에 일본특유의 가족관계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가족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보다 가족의 자조력에 맡기는 가족정책의 하나.

49) 미노베료기치(美濃部亮吉) 제6-8대의 동경도지사. 1960년 후반부터 1979년까지 다양한 보육, 아동수당창설, 노인무료패스 제정 등 혁신적 복지정책을 펼쳐, 당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하는 M자형 노동곡선(그림 Ⅲ-3-3)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출산(소자화) 현상을 실감하게 되는 1989년의 「1.57쇼크」를 계기로 일본은 저출산 대책으로써 육아지원 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이어 1994년 일-육아 양립 지원을 목표로 한 「엔젤 플랜」 수립, 이를 구체화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을 지향한 「긴급 보육 대책 등 5개년사업」이 실시된다. 1999년에는 고용환경 및 모자보건 의료체제의 정비가 추가된 「신엔젤 플랜」, 2001년에는 「대기아동 제로작전」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다음과 같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목표가 뚜렷한 육아지원 정책이 펼쳐지게 된다.

2002년 「소자화 플러스 원」은 남성의 근로 여건 개선, 지역의 육아지원을 향한 정책이, 2003년에는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과 「저출산(소자화)사회대책 기본법」 제정된다.

2004년 「저출산(소자화)사회대책 요강」의 실시 계획으로 「어린이·육아응원플랜」이 수립되나, 2005년에 합계 출산률이 1.26으로 저하되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2010년에는 「어린이 육아 비전」을 내놓아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개개인의 희망이 성취되는 사회구현을 기본으로 지향할 사회의 주요 틀이 되는 4개의 정책과 12개의 주요시책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후 2012년 「어린이·육아지원관련 3법」이 제정되고 2015년부터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2013년 도시부 중심의 대기아동 문제 해소를 위한 「대기아동 해소[50] 가속화 플랜」, 2015년에는 새로운 「저출산(소자화) 사회 대책 강령」이 발표되어, ① 육아지원시책의 충실성 강화, ②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희망의 실현, ③ 다자녀 가구에의 배려 강화, ④ 남녀의 노동개혁, ⑤ 지역의 실정에 맞춘 대처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와 2019년까지의 구체적 수치를 둔 목표가 제시되었다.

2021년 기시다 총리 정권이 성립된 이후, 어린이·육아지원과 관련해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22년 6월 제정된 「어린이기본법」을 근거로 2023년 4월부터 '어린이가정청'이 발족되어 아동 관련 모든 행정시책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일원화

50) 2016년 2월 15일,「보육소(어린이집)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는 익명의 블로그가 확산되면서 대기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다.

한 내각부 외국(外局)이 시작되었고,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던 보육소 관련 업무가 '어린이가정청'의 성육국(출생육아국) 보육정책과로 이관 된다[51].

2023년 6월 13일, 정부는 저출산을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로 받아들여 「차원이 틀린 소자화(저출산)대책의 실현을 위한 「어린이미래전략」 책정을 향해서」라는 부제의 「어린이미래전략방침」을 결정, 그 구체적인 시책으로 「가속화플랜」을 제시, 향후 3년에 걸쳐 집중적 실시를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미래전략」을 정리할 방침이다. 그의 상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 Ⅲ-1-1] 과 같다.

[그림 Ⅲ-1-1] 소자화 대책 '가속화플랜'의 구체적 내용

①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린다

아동수당
- ☑소득제한폐지
- ☑지급기간 3년 연장(고등학교졸업까지)
- ☑셋째부터는 3만엔의 추가 지급

고등교육(대학등)
- ☑수업료 감면(고등교육의 무상화)의 확대
- ☑육아기의 대여형 장학금(학자금 대출)의 상환 부담의 완화
- ☑수업료 후지불제도의 발본확충

출산
- ☑출산육아 일시금을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대폭 인상
- ☑2026년도부터 출산비용의 보험적용 등 추진

일하는 육아 세대의 소득 증가
- ☑106만 엔의 벽을 넘어도 실수령 수입이 역전되지 않는다
- ☑주 2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자영업과 프리랜서 육아중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

주택
- ☑육아 세대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향후 10년간에 합계 30만호
- ☑플랫트 35의 금리(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을 자녀수에 따라 우대

② 사회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바꾼다

육아휴직 이용이 쉬운 직장으로
- ☑육아휴직이용률의 목표치 대폭 상향
- ☑중소기업의 부담에는 충분히 배려/조성 조치를 대폭 확충

육아휴직제도의 발본적 확충
- ☑3세부터 소학교 취학까지의 '부모와 아이를 위해 선택 가능한 근로형태(유연근무제)'를 개발
- ☑단시간 근무시의 새로운 급여
- ☑산후의 일정기간 내 남녀가 육아휴직 이용 시 급여를 실수령 100%

③ 모든 어린이·육아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끊임없이 지원
- ☑임신 출산시부터 0~2세의 지원을 강화 저소득층(반주형(伴走型))지원 : 10만엔 +상당 지원
-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를 창설
- ☑보육소(어린이집) :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 ☑빈곤, 학대방지, 장애아·의료적 케어아동

자료: '어린이가정청' 어린이미래전략방침(리플렛)'의 필자전기. https://www.cfa.go.jp/resources/kodomo-mirai/ (인출일: 2023. 9. 10.)

51) 다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은 변함없이 문부과학성의 관할 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어 유치원 관련 업무는 제외하게 된다.

3) 소자화(저출산) 실태와 남녀 노동의 현재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 [그림 Ⅲ-1-2]에 의하면, 2022년 출생아수는 77만747명으로 전년보다 4만875명이 감소해 1899년의 통계 개시이래 최초로 80만명에 미달하였다. 합계특수출생률은 2005년 1.26에서 2015년 1.45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19년 1.36, 2021년 1.30, 2022년은 1.26으로 하락해 2016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1-2] 출생률 및 합계특수출생률의 연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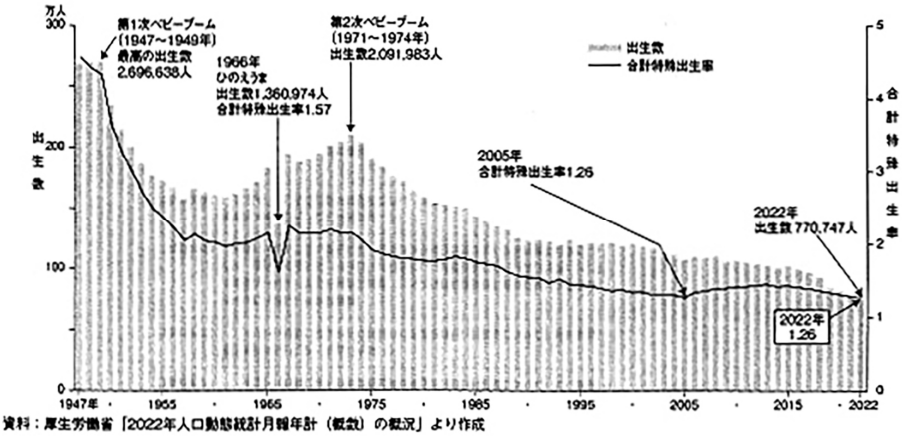

출처: 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연구소. 『보육백서』, p. 10. 후생노동성 「2022년 인구동태통계 월간보고 연합계 개황」을 근거로 작성.

[그림 Ⅲ-1-3] 은 시대별 노동 연령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비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는 일본 여성은 결혼과 출산 시기에 퇴직·이직(離職)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육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재취업하는 M자형 커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1990년은 여성의 퇴직 또는 이직 시기가 5년 정도 늦어지지만 M자형 커브는 여전히 나타난다. 다만, 2010년에서 2022년은 커브곡선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그래프 전체가 사다리꼴 모양이 된다. 이는 2010년 이후 일본 여성의 출산·육아기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1-3]] 연령대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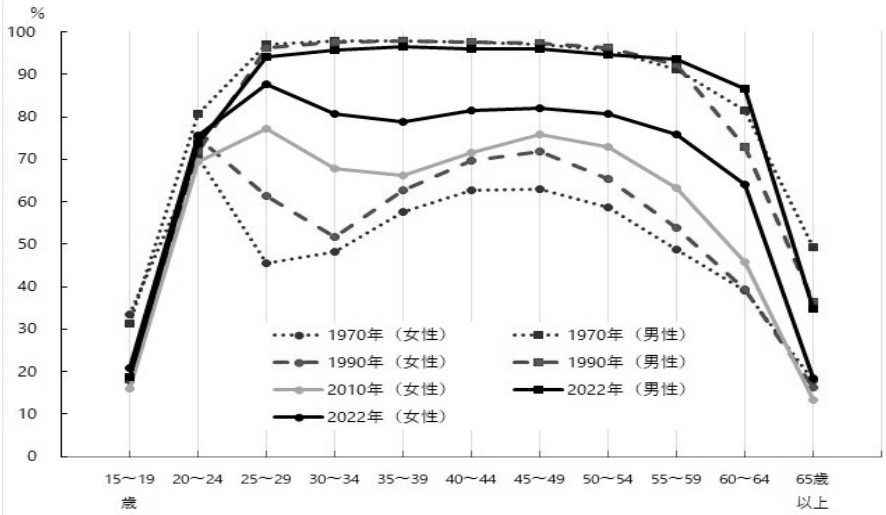

출처: 총무성통계국,「한 눈에 보는 그래프 장기노동통계」(2023년 4월14일 갱신),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203_02.html (인출일: 2023. 9. 10.)

[그림 Ⅲ-1-4] 연도별 맞벌이 세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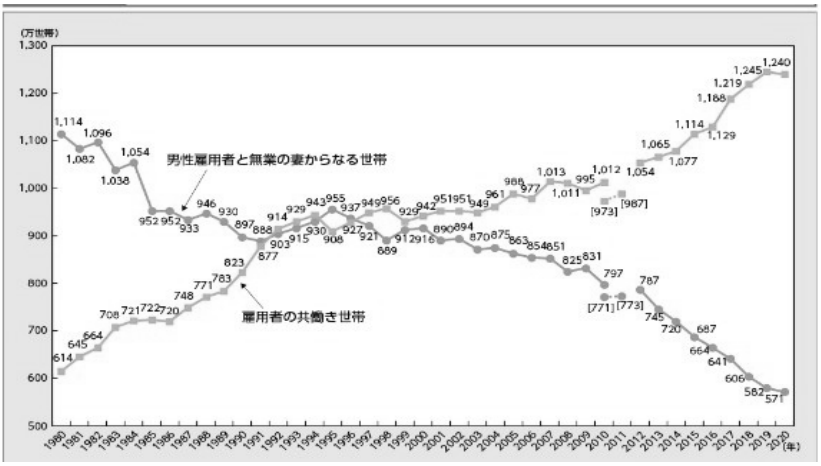

주: 1) 파란선은 '남편 외벌이+전업주부 세대], 노란선은 '맞벌이 세대'을 의미함.
2) 노동력조사특별조사」와「노동력조사 (상세통계) 」는 조사방법 과 조사 월(시기) 등이 틀리므로 시계열(時系列)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1) 총무성통계국,「노동력조사특별조사」(1980~2001년)
2) 총무성통계국,「노동력조사(상세통계) ((연평균)」(2002년~2020)

출처: 후생노동성「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레이와시대의 사회보장과 노동을 생각한다-」https://www.mhlw.go.jp/stf/wp/hakusyo/kousei/20/backdata/1-1-3.html#:~:text=%E5%9B%B3%E8%A1%A81-1-3%E3%80%80,%E3%82%8B%E3%83%BC%EF%BD%9C%E5%8E%9A%E7%94%9F%E5%8A%B4%E5%83%8D%E7%9C%81(인출일: 2023. 9. 10.)

[그림 Ⅲ-1-4] 의 1980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전업주부(남성 외벌이+전업주부)세대와 맞벌이 세대수의 연차 추이에 따르면, 1991년 전업주부 가정이 888만 세대, 맞벌이 가정 877만세대인 이후(1995-1996년을 제외) 맞절이 가정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현재 전업주부 가정은 571만 세대, 반면 맞벌이 가정은 1,240만 세대로 증가하여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다.

나. 범주별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1) 서비스

현행「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이하 신제도라고 함)」는 2012년 8월 일부 개정된「어린이·육아지원법」및「인정어린이원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정비에 따른 어린이·육아 관련 3법에 근거하여 수립, 현재까지 일본 육아지원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다. 내각부는 이 제도 수립과 관련하여 양적, 질적으로 사회에서 육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림 Ⅲ-1-5]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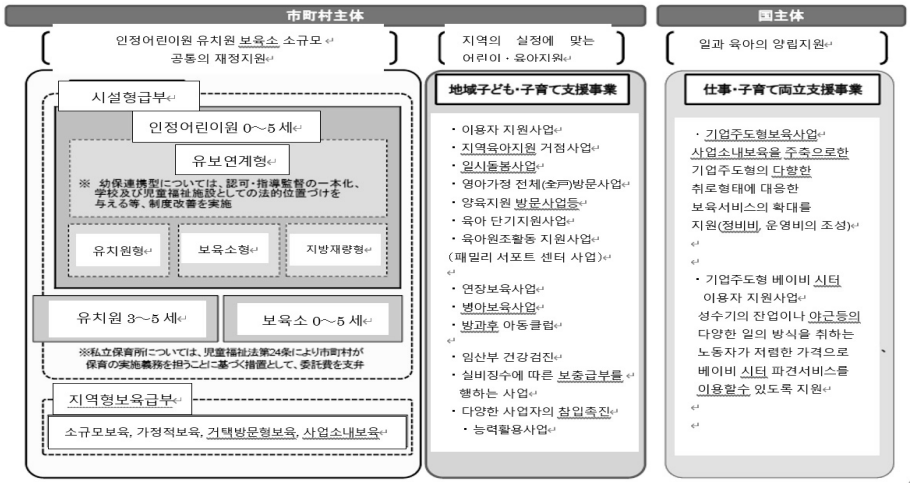

주: 1) 유보연계형은 인가, 지도감독 일원화,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
2) 보육소에는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거 지자체의 보육 실시 의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위탁비를 지불

자료: 내각부, 어린이 육아본부,「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에 대해서」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outline/pdf/setsumei (인출일:2023년 9월10일), 일부 서식변경/추가(인가외 보육시설을 포함) 작성.

‘시설형 급부’에 해당하는 인가보육소.[52] 인가유치원.[53] 인정어린이원[54]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지역별 보육 급부’는 소규모 보육, 가정적 보육, 거택 방문형 보육, 기업내 보육은 실제 대기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림 Ⅲ-1-5] 에 추가적으로 제시한 ‘인가외 보육시설’ 중 기업형 보육소와 인정보육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로 지역별 보육과 같이 대기아동 대책과 관련되어 많은 영유아가 입소한 시설이기도 하다.

시설에 다니고 있는 전체 아동의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그림 Ⅲ-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1년 대비 2021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시설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의 이용률을 보면 3세 이상 유아의 대부분이 시설형 급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3세 미만 아동은 ‘지역형 시설’ 이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중 1~2세아는 39%, 0세아는 78.9%가 「가정 등」의 지역형 보육급부를 이용하고 있다.

52) 인가 보육소 : 아동복지법 최저설치기준에 근거해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공·사 관계없이 공적 지원. 조치제도에 해당.
53) 인가 유치원 : 학교교육법에 근거해서 인가를 받은 유아교육시설.
54) 인정 어린이집 : 보육소와 유치원 기능을 하나로 한 시설, 보육소형/유치원형/유보연계형/지방재량형등 4종류가 있다.

[그림 Ⅲ-1-6] 영유아의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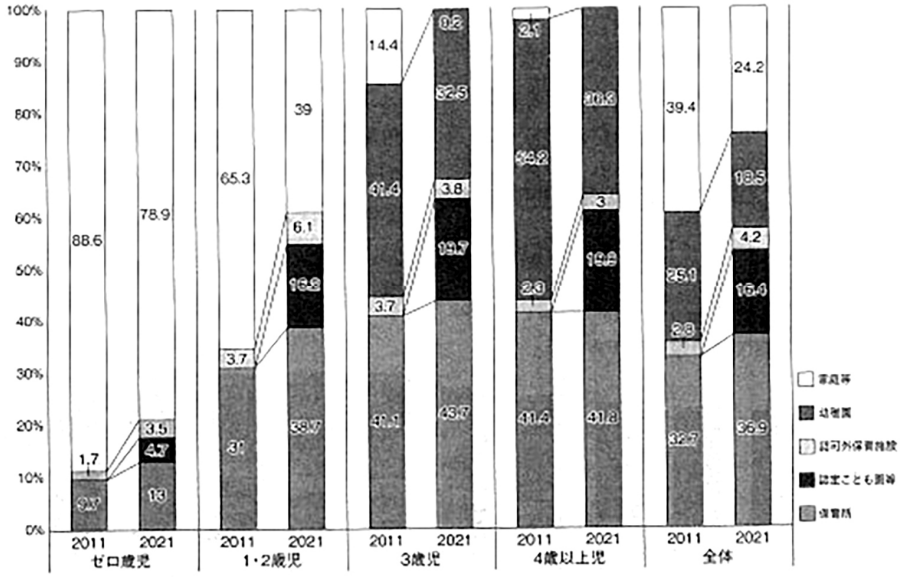

출처: 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연구소(2023). 2023년 보육백서. 히토나루 서방 p. 13

또한 [그림 Ⅲ-1-7] 에서는 매년 전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현재 1-2세 아동의 57.8%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아동수도 2017년 26,081명을 최대치로 2020년은 12,439명, 2021년 5,634명, 2023년 현재 2,68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55) 1. 보육소 이용 아동수는 보기행정보고례(후생노동성 매년4월1일현재 개수) 에 의함.
2. 인정어린이원 등의 이용 아동수는 전연령에 있어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외에 지방재량형의 재원아동수를 포함. 3세 미만 아동에 있어서는 유치원형 인정어린이원, 지역별 보육사업의 이용아동수도 포함한다. 인정어린이원 및 지역별 보육사업의 이용 아동수는 내각부 인정어린이원 관련 현황(2021년 4월1일 현재) 및 후생노동성 보육소 등 관련 현황(2021년 4월1일 현재)의 수치로부터 산출.
3. 인가외보육시설 이용자수는 후생노동성 인가외보육시설의 현황(매년3월31일현재)에 의함. 단, 2021년 현황에는 사업소내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1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유치원 이용아동수는 학교기본조사(문부과학성 매년5월1일현재)에 의함.
5. 취학전아동수(0-5세아 인구)는 인구통계(총무성 통계국 매년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해서 4월1일 현재의 인구를 추계. A세 아동 인구=10월1일 현재 A세 아동 인구×5/12+10월1일 현재 (A+1)세아 인구×5/12)
6. 합계는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림 Ⅲ-1-7] 대기아동수 및 보육소 등 이용률 추이(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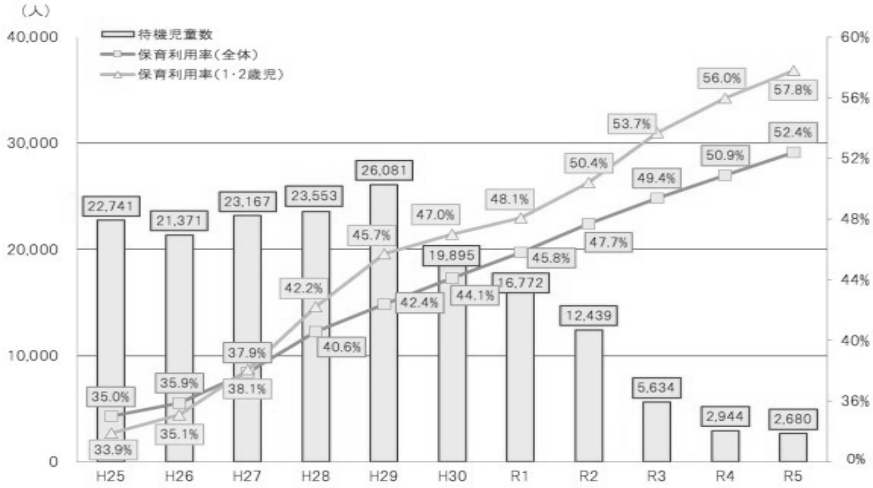

주: H25=2013년, H26=2014년, H27=2015년, H28=2016년, H29=2017년, H30=2018년, R1= 2019년, R2=2020년, R3=2021년, R4=2022년, R5=2023년
출처: 어린이가정청 보육소등의 관련 현황 정리(2023년 4월1일) 2023년 9월1일 보도자료. p. 3

먼저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소 이용률의 증가에는 신제도가 목표로 한 양적증가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제도가 제시한 지역별 보육사업은 일반적인 인가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의 최저기준과는 다른 인적·물적 환경에 의해 보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표 Ⅲ-1-1〉 지역별보육의 시설기준, 공정가격 및 인건비 비율

	가정적 보육	소규모보육			사업소내 보육	거택방문형 보육	(참고)보육소
		A	B	C			
직원 배치	0~2세 3:1	0세 3:1 1,2세 6:1 +1	0세 3:1 1,2세 6:1 +1	0~2세 3:1	정원 19명 이하는 소규모 A·B형	0~2세 1:1	0세 3:1 1~2세 6:1
보육사 자격	연수수료자	보육사	보육사 (1/2 이상)	연수종료자	상동	연수종료자	보육사
면적	1인 3.3㎡	영아실·포복실 1인3.3㎡ 보육실1인1.98㎡	영아실·포복실 1인3.3㎡ 보육실1인 1.98㎡	1인 3.3㎡	상동	-	영아실1인 1.65㎡ 포복실1인 3.3㎡ 보육실1인 1.98㎡

	가정적 보육	소규모보육			사업소내 보육	거택방문형 보육	(참고)보육소
		A	B	C			
급식	외부반입가	외부반입가	외부반입가	외부반입가	외부반입가	-	3세미만아는 자원 조리
공정 가격	176,460엔	정원13~19명 247,620엔	정원13~19명 205,880엔	정원11~15명 184,410엔	정원19명이 하는 소규모 A·B와 같은 정원 20명2 42,300엔	500,820엔	정원90명 196,860엔 정원20명 276,750엔
인건비 비율	53.4%	64.8%	64.6%	62.5%	(생략)	-	75.1%
법인 본부 귀속비 비율	0.2%	1.6%	1.8%	0.0%	(생략)	-	0.5%

주: 가정적 보육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후생노동성령),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후생성령), 공정가격은 20/100지역(동경23구)의 보육표준시간인정·영아에 관한 기본단가(2023년도), 2019년도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 등의 경영실태조사」(내각부실시, 2019년11월26일공표)부터 작성. 보육소의 공정가격, 인건비 비율, 법인본부 귀속비 비율은 사립보육소.
자료: 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연구소(2023). 2023년 보육백서. 히토나루 서방 , p. 59.

〈표 Ⅲ-1-2〉에 의하면 통상 인가보육소나 인정어린이원의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에는 전원이 보육사 자격을 있고 이유식이나 식사에 있어서도 아동의 몸 상태를 배려한 대응이 가능한 조리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형 보육사업은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에 있어 소규모시설로서의 장점도 있으나, 인적·물적 환경의 최저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3세미만 아동의 보육료에 있어서 지역형 보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금이 있으나, 인가보육소나 인정어린이원과 같은 인가시설과는 재정지원이 제각각으로 다른 가운데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에도 차이가 있다.

〈표 Ⅲ-1-2〉 연령별 보육소 이용 아동수·대기 아동수(2023년4월1일 현재)

	이용 아동수	대기 아동수
3세미만(0~2세)	1,096,589 (40.4%)	2,436 (90.9%)
0세 아동	135,991 (5.0%)	156 (5.8%)
1·2세 아동	960,598 (35.4%)	2,280 (85.1%)
3세 이상 아동	1,620,746 (59.6%)	244 (9.1%)
계	2,717,335 (100.0%)	2,680 (100.0%)

자료: 어린이가정청 보육소 등의 관련 현황 정리(2023년4월1일), 2023년9월1일 보도자료. p. 6.

2023년 4월 1일 현재 보육소 대기아동수는 2,680명으로 전년도 2,944명 대비 264명이 감소하였으나, 3세 미만 아동이 대기아동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세, 2세 아동이 2,280명으로 85.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0세 아동의 대기가 적은 이유는 육아휴직이 일반화되어 생후 1년간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대기아동의 정의가 변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대기아동수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대기아동수는 차이가 있다. 이에 숨은(잠재적) 대기아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보육연구소에 의하면,[56] 2022년 현재 숨은(잠재적) 대기아동은 ①기업주도형 보육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11,264명, ②지방단독사업을 이용하는 아동 6,199명, ③육아휴직자 15,199명, ④특정의 보육원 등을 희망하는 자 35,656명, ⑤구직활동을 일시중지한 자 4,229명, ⑥특별 보육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자 7,267명으로 합계 아동수는 79,814명에 이른다.

상기의 ①기업주도형 보육사업과 ②지방단독사업은 인가외 보육시설[57]이기는 하지만 지역별 보육사업과 동등의 조건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어린이가정청이 제시한 2021년도 인가외 보육시설의 현황 정리[58]에 의하면, 인가외 보육시설에는 베이비 호텔, 사업소내 보육시설(병원내 보육시설), 거택방문형 보육사업, 그외로 구분된다. 2021년 현재 인가외 보육시설 20,058개소 중 베이비 호텔은 1,051개소, 사업소 내 보육시설은 8,683개소(병원내 보육시설 2,906개), 거택방문형 보육시설은 6,502개(사업자 463, 개인6,039), 그외의 시설이 3,822개이다. 인가외 보육시설를 이용하는 전체 아동의 38.8%가 3세미만 아동으로 137,257명에 달한다.

인가보육소[59]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국가가 정한 상한액(국고부담금 정산)이 설

56) 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연구소『2023년 보육백서』히토나루 서방, 2023년8월, p142

57) 「인가외 보육시설」이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시설로 인증보육소등의 지방단독 보육시설도 대상이다. 지도감독은 아동을 보육하기에 적합한가 그 내용과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도도부현이 내부조사를 시행한다. 2021년말시점에서 도도부현 지지, 지정도시시장, 중핵시시장 또는 아동상담소 설치시 시장에게의 신청이 의무화한 인가외 보육시설의 내부조사는 원칙 년1회이상 시행하고 인가외 거택방문형 보육사업은 년1회이상 집단지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는 수 없이 대상을 정해야 하는 경우, 베이비 호텔은 반드시 년1회이상의 내부조사를 행해야 한다. 여기서 베이비 호텔이란 ①밤 8시 이후의 보육, ②숙박이 필요한 보육, ③일시 돌봄의 아이가 이용아동의 반수이상, 의 하나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어린이가정청 성육국「2021년도 인가외보육시설의 현황정리」, p1. 상기내용도 인용문에 해당.

58) 어린이가정청 성육국 2021년도 인가외보육시설의 현황정리, p. 4

정되어 있다. 만 3세 이상의 보육료 무상화에 따라 보육료 납부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3호 인정 만3세미만 아동으로, 보육료는 소득세액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된다. '생활보호세대 및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세대(~약260만엔)'는 무료이고, 그외는 소득세액에 따라 보육표준시간과 보육단시간에 의해 수익자 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료도 높아지는 구조이다.

2019년 10월부터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가 실시되었으며, 그 대상은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 보육사업, 기업주도형 보육사업의 이용 아동이 대상이다. 영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0세에서 2세까지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보육료가 무료이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즉, 보육소를 이용하는 최연장 자녀를 첫째 자녀로 간주시, 둘째 자녀는 반액, 셋째 자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연 소득 360만엔 미만의 세대는 첫 번째 자녀의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

둘째, 인가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무상보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과에 '보육의 필요성 인정'을 받을 것, ②보육소, 인정어린이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가외 보육시설 이용아동도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0세에서 2세까지 월액 4.2만 엔까지의 이용료가 무상이다.

59) 인가보육소는 정부가 정한 일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보육원이다.

〈표 Ⅲ-1-3〉 일본 서비스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표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지역별보육사업(인가)				인가보육시설		인가외보육시설		
	소규모 보육사업	가정적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	거택방문형 보육사업	인가보육소 (認可保育所)	인정어린이원 (認定こども園)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인증보육소 (認証保育所)	그외의 인가외 보육시설
도입연도 최초지급)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1947년	2006년	2016	2001	
지원대상	0~2세 아동 6~19명	0~2세 아동 5명 이내 (3명부터 보조자 필수)	0~2세 아동	0~2세아동 1 : 1보육	0세~취학전 아동	0세~취학전아동	0세~ 취학전아동	0세~ 취학전아동	0세~ 취학전아동
지원내용	보육자의 거택,그외의 장소,시설의 보육	보육자의 거택,그외의 장소,시설의 보육	직원의 아동과 지역의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대상(지역의 일정수)	방문형 1대1보육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시설내 보육
근거법	어린이·육아 지원법	어린이·육아지 원법	어린이·육아지 원법	어린이·육아 지원법	아동복지법	인정어린이원법			
주무부처	시정촌, 민간사업자등	시정촌, 민간사업자등	사업주등	시청촌, 민간사업자등	어린이가정청	어린이가정청	내각부	시정촌 민간사업자 개인등	민간사업자 개인등
비고: 타사업 중복성	직접계약	직접계약	직접계약	직접계약	조치제도 (措置制度)	직접계약	직접계약	직접계약	직접계약

2) 현금지원

육아와 관련한 현금지원으로는 ①출산·육아관련 현금지원과 ②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가) 출산·육아관련 현금지원

먼저 출산·육아관련 현금지원에는 이하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급부금이 있다.

〈표 Ⅲ-1-4〉 4개의 급부금

구분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육아 응원교부금	출산수당금	육아휴업급부금
기간	출산 후 일괄	임신 신고시와 출생 신고후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이 빠른 쪽의 42일 전~출산 후 56일후	여성 : 출산 후 56일후~1세의 생일날의 전전일 남성 :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빠른 쪽부터 1세 생일의 전전일
금액	50만엔	5만엔상당×2회 - 쿠폰, 서비스 이용권, 교통비나 베이비용품 구입, 랜탈비용 조성 등 폭넓은 방법으로 지급가능	과거 12개월의 평균월수×2/3÷30일	지급개시부터 180일까지 : 과거6개월의 평균 월수×0.67÷30일 지급개시부터 181일이후 : 과거6개월의 평균월수×0.5÷30일
상한액				180일 이내 : 305,319엔 181일 이후 : 227,850엔
대상자	거의 모든 여성	모든 여성	건강보험과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회사원과 공무원인 여성)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아님)
운영	건가보험 공제조합 국민보험	시구정촌 (민간에의 위탁가)	건강보험·공제조합	고용보험

(1)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2023년 4월을 기준 이전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출산비용이 증액되었다.

(2) 출산·육아응원 교부금(子育て応援交付金)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육아지원을 활용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출산 육아응원교부금 사업의 하나이다. 임신과 0세부터 2세까지의 저연령기의 육아가정에 맞춰서 출산·육아 등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면담과 계속적인 정보를 발신함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에 연결하는 반소형(伴歩型)상담지원의 충실을 도모한다. 또한 임신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임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육아 관련용품의 구입비 조성이나 육아지원 서비스를 일체화한 사업을 지원하는 교부금을 창설했다. 교부금은 임신신고후의 면담실시후는 5만엔 상당의 출산응원기프트로, 출생신고후부터 영아 가정전도방문 사이에 면담 실시후에는 5만엔 상당의 육아응원기프트를 받을 수 있다.

(3) 출산수당금(出産手当金)

산전산후 중의 휴업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부터 42일(쌍둥이인 경우 98일)전부터 출산일 다음날부터 56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휴직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일 지급액은 과거 12개월의 평균월수입[60]액의 2/3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가입자 본인(회사원, 공무원)이다.

(4) 육아휴업급부금(育児休業給付金)

육아휴업중의 휴업보상으로써 지급되는 급부금이다. 엄마는 산후휴가를 포함해 1년간 산후휴가와 1세까지의 육아휴업을 이용할 수 있다. 아빠의 경우 출생자녀의 1세까지 육아휴업과 급부금의 지급은 생일의 전전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업급부금은 통상 급여로 최대 약 45만엔(1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외에 「저소득 육아세대에 대한 육아세대 생활지원 특별급부금」이 있다. 이는 코로나에 의한 소득 감소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한부모나 저소득의 양부모 가정의 생활을 지원하는 급부금이다. 지급대상은 아동부양수당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분의 주민세균등비율이 비과세 대상인 육아세대이다. 아동 1인당 일률적으로 5만엔이 지급된다.

60) 잔업 수당이나 교통비를 포함함. 보너스는 불포함

나) 아동수당

현행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은 아래의 〈표 Ⅲ-1-5〉 와 같다.

〈표 Ⅲ-1-5〉 2023년도 현재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부양친족수	소득제한한도액		소득상한한도액	
	소득제한 한도액	수입액의 기준	소득상한 한도액	수입액의 기준
0명(전년말에 태어난 아동이 없는 경우)	622	833.3	858	1,071
1명(아동이 한명인 경우)	660	875.6	896	1,124
2명(아동1명+년수103만엔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698	917.8	934	1,162
3명(아동2명+년수103만엔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736	960	972	1,200
4명(아동3명+년수103만엔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774	1,002	1,010	1,238
5명(아동4명+년수103만엔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812	1,040	1,048	1,276

주: 1)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 상기표 중 ① (소득제한한도액) 미만인 경우, 표면의 지급액을 소득이 ① 이상 ②(소득상한한도액) 미만의 경우, 법률의 부칙에 근거한 특례급부 (아동 1인당 월액 일률5,000엔) 을 지급한다.
2) 또한, 2022년 10월 지급분부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의 소득이 ②이상인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3)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다음의 소득이 ②보다 낮아진 경우, 인정청구서의 신규 제출이 필요하다.
자료: 내각부「아동수당제도의 안내」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annai.html (인출일: 2023. 9. 10.)

한편 정부는 2023년 6월 13일 어린이미래전략회의(의장 기시다 수상)에서「차원이 다른 소자화 대책」을 구체화한「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을 결정했다. 주된 내용은 아동수당과 육아휴업급부 확충에 관한 구체안으로, 향후 3년에 걸쳐서 연간 3조원대 중반의 예산을 확보해 과속화 플랜으로써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재원은 세출(歲出)개혁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의 아동수당 수급에서의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2024년 중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을 도입하였다.

〈표 Ⅲ-1-6〉 아동수당의 개정내용 정리

변경 전(2023년도 현재)		변경 후(2024년도중 실시예정)		
아동연령	아동수당액	출생순	아동연령	아동수당액
3세미만	일률15,000엔	첫째·둘째 아동	3세미만	15,000엔
3세이상 초등학교 졸업 전	10,000엔 (셋째이후는		3세이상 고등학생까지	10,000엔

변경 전(2023년도 현재)		변경 후(2024년도중 실시예정)		
아동연령	아동수당액	출생순	아동연령	아동수당액
	15,000엔)			
중학생	일률10,000엔	셋째 이상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30,000엔
소득제한 있음		소득제한을 철폐		

개정 안에 따르면 3세미만의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한명당 월 1만5천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만엔을 지급한다. 셋째 자녀 이후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액 3만엔을 지급하게 된다(표 Ⅲ-1-6 참조).

〈표 Ⅲ-1-7〉 일본 현금지원 범주의 영아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대상현금지원				영아가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육아 응원교부금	출산수당금	육아휴업급부금	아동수당주)
도입연도 (최초지급)	2023년 (1994)	2023년 1월	(1922)	2022년 10월	1971년
지원 대상	거의 모든 여성	모든 여성	건강보험과 공제조합의 피보험자(=회사원과 공무원인 여성)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아님)	중학생까지
지원 내용	50만엔	5만엔상당×2회 -쿠폰, 서비스 이용권, 교통비나 베이비용품 구입, 렌탈비용 조성 등 폭넓은 방법으로 지급 가능	과거 12개월의 평균월급여×2/3÷30일	지급개시부터 180일까지 : 과거 6개월의 평균월급여×0.67÷30일 지급개시부터 181일이후 : 과거 6개월의 평균월급여×0.5÷30일	•3세미만 15,000엔 •3세이상 초등졸업전 10,000엔(셋째이후 15,000엔) •중학생 10,000엔
근거법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육아·개호휴업법	아동수당법
주무 부처	건강보험 공제조합 국민보험	시구정촌(민간에의 위탁가)	건강보험·공제조합	고용보험	시정구촌

주: 아동수당은 개정 전을 기준으로 정리

3) 시간지원: 육아휴업(육아휴직)제도

1976년에 제정된 의무교육제 학교 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등의 간호사, 보모(현 보육사)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은 특정의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에 한정된 육아휴업법이었다.[61] 교원, 간호사, 보육사가 이 직종에 해당한다. 이후 남녀 및 직종을 불문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인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이 1991년에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육아휴업, 개호휴업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육아·개호휴업법)로 개정되었다. 2021년도의 고용균등 기본조사[62]에 의하면 육아휴업은 여성의 이용률이 85.1%, 남성의 이용률은 13.97%이고, 여성은 약 50%가 12개월 이상 이용한 것에 비해 남성은 2주 이내 이용한 경우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1-8] 성별·이용기간별 육아휴업 이용률(2021년 고용균등 기본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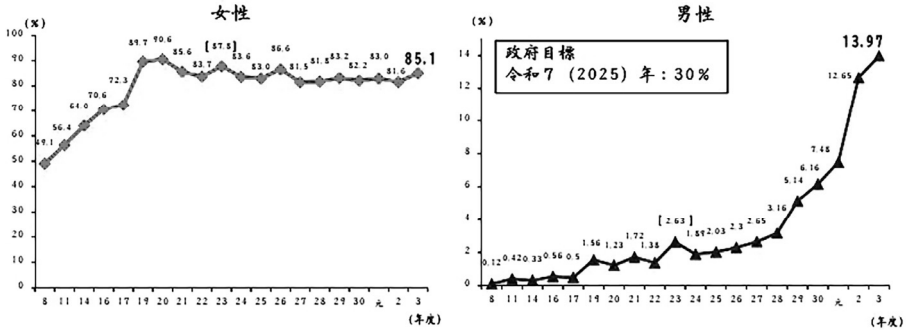

출처: 후생노동성 000851662.pdf (mhlw.go.jp)(인출일: 2023. 9. 10.)

2021년 6월 개정된 「육아·개호휴업법」의 주된 내용에는 '산휴아빠육아휴업제도'가 포함된다. 산휴아빠육아휴업제도는 산후 8주 이내에 4주를 2회로 분할하여 육아휴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의 육아휴업제도이다. 또한 부부가 각자 1세까지의 육아휴업을 2회까지 분할해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주에게는 임신·출산한 종업원에게 개별 육아휴업제도의 안내와 이용 의향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밖에 2023년 4월부터는 근로자가 1,000

61) 중의원HP
62) 2019년10일1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의 1년간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의 경우, 2021년10월1일까지 육아휴업을 개시한 자의 비율

명 이상인 기업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이용률을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표 Ⅲ-1-8〉 육아휴업제도 개정 전후 변화

	개정전	~현재	개정후(2022년10월1일~)	
	육아휴업제도	아빠엄마 육휴플러스	출생시 육아휴업 (통상 산후아빠육아휴업)	육아휴업제도
대상기간 취득가능 일수	자녀 연령 1세 (연장시 2세)까지	자녀 연령 1세 2개월까지 연장가능	자녀 출생후 8주간 이외에 4주간까지 이용 가능 *육휴와는 별도로 이용 가능	자녀 연령 1세(최장 2세)까지
신청기한	1개월 전까지		원칙 휴업의 2주 전까지	원칙 1개월 전까지
분할취득	원칙 분할불가		2회로 분할하여 이용 가능 (처음부터 한번에 신청 필요)	2회로 분할하여 이용 가능(매번 이용시에 신청)
휴업중의 취업	원칙 취업불가		노사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합의한 범위 2)로 휴업중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	원칙 취업불가
1세 이후의 연장	육휴개시일은 1세 1세반 시전에 한정			육휴개시일을 유연화
1세 이후의 재취득	재취득불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취득 가능※3
비고			2021년 6월「육아·개호휴업법」개정에 근거	

주: 1) 고용환경의 정비등에 관해 이번 개정에서 의무화한 내용을 상한한 실시을 노사협정에서 정한 경우는 1개월전까지 가능하다.
2) 구체적인 수속절차는 이하 ①~④ 참조.
① 노동자가 취업해도 좋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그에 상당하는 조건을 신청, ②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청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후보일 시간을 제시(후보일등이 없는 경우는 그 취지), ③노동자가 동의, ④사업주가 통지 또한 취업가능일등에는 상한이 있다.
② 휴업기간중의 소정노동일·소정노동시간의 반
③ 휴업개시·종료예정일을 취업일로 하는 경우는 해당일의 소정노동시간수 미만
자료: 후생노동성.「육아·개호휴업법 개정포인트 안내」. 000789715.pdf (mhlw.go.jp)로부터 작성

〈표 Ⅲ-1-9〉 일본 시간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대상 시간지원		
	출생시 육아휴업 (통상 산후아빠육아휴업)	육아휴업제도	아빠엄마 육휴플러스 (계속)
지원대상	아이가 출생후 8주간이외에 4주간까지 이용가능 ＊육휴와는 별도로 이용가능	원칙 아이가 1세(최장 2세)까지	아이가1세2개월까지 연장가능
지원내용	육아휴업	육아휴업	육아휴업
근거법	육아·개호휴업법	육아·개호휴업법	육아·개호휴업법
주무부처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2. 프랑스

가. 양육지원 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OECD, 2023).[63] 프랑스가 적정한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현재 프랑스가 3.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실로 프랑스는 가족 수당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아 가구에 대한 양육 지원을 살펴 보면 3세 미만 영아의 주중 낮시간 주된 돌봄자는 부모가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표 Ⅲ-2-1 참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가된 보육사이며 이용 비중은 전체 3세 미만 영아 중 16%로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중보다 현저히 낮다, 보육 시설에서 돌보는 아동의 비중도 13%로 낮다. 조부모 혹은 친인척의 도움으로 영아 자녀를 돌보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랑스 영아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육아휴직을 해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데, 프랑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양성 평등이 발달한 스웨덴보다 높지 않다(OECD, 2023).[64] 즉, 프랑스에서 부모가 영아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비중이 높은 것은 육아휴직 제도 혹은 영아 보육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영아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족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3세 이상 아동의 취학전 교육은 유치원(école maternelle)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연령 아동의 대다수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3세 이상 아동의 돌봄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세 미만 영아 돌봄 서비스는 부족하여 최근에 영아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3)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58명이며,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0명으로 이스라엘(3.0명), 체코(1.83명), 멕시코(1.82명), 아이슬랜드(1.82명) 다음으로 높다.

64)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2014년)은 스웨덴이 63.9%(평균 소득의 50%), 61.1%(평균 소득의 100%), 44.1(평균 소득의 150%), 프랑스는 51.2%(평균 소득의 50%), 26.1%(평균 소득의 100%), 18.1%(평균 소득의 150%)이다.

(Luc Masson, 2015).[65]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중은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70%로 매우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3년 61%로 낮아졌으며, 부모 외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인 인가된 보육사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3세 미만 아동 중 32%가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프랑스 3세 미만 영아의 주중 낮시간 주된 돌봄자 비중(2002, 2007, 2013)

단위: %

돌봄자	2002년	2007년	2013년
부모	70	63	61
조부모 혹은 친인척	4	4	3
인가된 보육사	13	18	19
보육시설	9	10	13
기타	4	5	5
합계	100	100	100

주: 기타는 가정 양육 도우미, 학교, 인가 받지 않은 보육사, 친구, 친척, 베이비 시터 혹은 가족 외 사람, 유아원, 방과후 돌봄, 여가 센터 혹은 특별한 기관을 포함한다. 2. 낮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말한다

자료: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1).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20,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medias/cnaf/Nous_connaitre/Recherche_et_statistiques/Onape/Cnaf_Rapport%20Onape_Accueil%20du%20jeune%20enfant2021.pdf(인출일: 2023. 7. 1.).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게 부부 가족 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완화된 소득 기준을 부여하며, 긴 시간의 자8소득 수준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 한편 자녀를 돌보는 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부모 가족보다 높은 급여와 긴 휴가를 제공하며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실로 프랑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프랑스 사회정책이 구현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영아 가구의 양육 지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 영아 양육 지원의 현황을 서비스 지원, 현금 지원,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5) 2018년까지 275,000명의 보육 정원을 확충하고 보육 정원의 10%를 빈곤선 이하 가정에서 거주하는 아동에게 할당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Luc Masson, 2015).

나. 범주별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1) 서비스[66]

프랑스는 3세 미만 영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다양한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 돌봄 서비스는 평일 낮시간, 저녁 시간, 방학 동안에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아동들과 함께 집단으로 자녀 돌봄을 맡기거나, 자녀를 단독으로 돌봄을 맡길 수 있다. 자녀를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개인 보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집 밖에서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부모가 선택한 보육 서비스의 유형과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등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본 장에서는 영아기 양육 지원 서비스를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재가 돌봄)와 시설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시설 돌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재가 돌봄에는 가정 양육 도우미(Aide à domicile), 침식 제공 도우미(Slarié au pair)가 있다. 시설 돌봄에는 어린이집(Crèch; 집단, 가족, 부모, 직장), 유아원(Le jardin d'enfants),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시간제 보육시설(Halt garderie)이 있다.

가) 가정 양육 도우미

가정 양육 도우미는 개인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로서 양육 도우미가 아동의 집에서 직접 아동을 돌본다. 부모가 직접 양육 도우미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양육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 양육 도우미는 영아를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본다. 이용비용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용비용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전체 이용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66) 본 절의 내용은 프랑스 행정부(2023a) 공식홈페이지, 서비스 지원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60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나) 침식 제공 도우미

침식 제공 도우미는 프랑스인 혹은 외국인 양육 도우미로서 현금이 아닌 현물(침식 제공 등)로 보상한다. 영아를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본다.

다) 어린이집

프랑스의 어린이집은 특정한 조건(연령, 사진 등록 신청 등)을 충족하는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3세 미만 영아는 생후 2개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다(daylily Paris, 2023). 프랑스의 어린이집 유형은 집단 어린이집, 가족 어린이집, 부모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최대로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가 다르다. 어린이집은 지자체(시 혹은 도) 혹은 민간(협회 등)이 운영하며, 모성보호국(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단 어린이집은 60명까지의 아동을 돌볼 수 있다. 아동은 원장(보육교사, 의사, 유아교육자 등)과 전문가(보육보조원 및 유아교육자 등)로 구성된 팀으로 돌본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자격 및 경력에 관한 규정이 면제될 수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전문가 1명 당 아동 6명으로, 걷기 이전 아동은 전문가 1명 당 아동 5명, 걷는 아동은 전문가 1명 당 아동 8명까지이다.

가족 어린이집은 인가된 보육사가 1~4명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 시설이다. 1주일에 한두 번 인가받은 보육사들과 아동들은 가족 어린이집에서 만나서 아동들의 사회성과 발달을 도모한다. 보육사들은 어린이집 직원 (보육 교사 혹은 의사)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부모 어린이집은 최대 24명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시설로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부모 어린이집은 부모가 설립·운영하며 개원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아동 보육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참여 형태는 시설마다 다르다.

직장 어린이집은 회사 혹은 공공기관(행정 기관 혹은 병원) 직원의 자녀들을 돌보는 보육시설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취원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직장 어린이집은 최대 60명까지의 아동들을 돌볼 수 있다. 보육시간은 부모의 업무 시간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어린이집은 12명의 소규모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서 다른 어린이집 보다 덜 제한적인 규정(예를 들어 원장 선임 면제 등)을 받는다. 마이크로 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를 통해 이용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전체 이용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유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간 형태로 유아원이 있다. 유아원은 18개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을 낮 시간에 돌보는 시설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 아동을 돌보는 동시에 교육 활동을 제공하여 취학전 아동이 학교로 통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세 미만 아동 6명당 한명의 전문가가 아동을 돌본다. 이용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 인가된 보육사

인가된 보육사는 6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람으로 아동의 집 혹은 보육사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본다. 보육 시간 동안 인가받은 보육사가 돌보는 3세 미만 아동의 수는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인가받은 보육사는 도의 서비스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육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와 보육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계약서에는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보육사는 새로운 아동을 맡아서 보살핀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보육사에게 적용되는 근로 시간은 법정 주당 35시간 근무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일일, 주간, 연간 최대 근로 시간

이 부여된다. 공휴일과 주간 휴식 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용비용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전체 이용 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가받은 보육사 이용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 시간제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시설은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주당 몇 시간 혹은 반나절 동안 아동을 돌보아 주는 시설이다. 이용 대상 아동의 연령은 6세 미만이며, 시설 당 최대 정원은 60명이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 혹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시설의 보육사들은 보육 보조원 혹은 CAP 유아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가족 혹은 부모의 직업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한부모 혹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통합 상태에 있는 부모를 위해 보육 정원 20명 중 최소 1명의 입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시간제 보육 시설 이용비용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Ⅲ-2-2〉 프랑스 서비스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유아원	인가된 보육사	시간제 보육시설	가정 양육 도우미	침식 제공 도우미
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시설	보육사가 아동의 집 혹은 보육사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주당 몇시간 혹은 반나절 동안 아동을 돌봐주는 시설	양육 도우미가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서비스	현금이 아닌 현물로 보상을 지불하는 양육 도우미
지원 대상	3세 미만 아동	18개월~6세	6세 미만	6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연령 제한 없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연령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상이	-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상이	-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를 통	-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상이	-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를 통해	

구분	영아 대상 서비스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유아원	인가된 보육사	시간제 보육시설	가정 양육 도우미	침식 제공 도우미
	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해 지원 (전체 비용의 최소 15% 본인 부담) - 지원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지원 (전체 비용의 최소 15% 본인 부담) - 지원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함 -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음	
주무부처 (2023년 기준)	모성보호국 (PMI)					
전달체계	지자체 혹은 민간이 운영		- 부모가 직접 보육사와 고용관계를 갖거나, 협회에 고용된 보육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자료: 프랑스 행정부 사이트(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607(인출일: 2023. 6. 1.)

2) 현금지원[67]

프랑스의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은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수당,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는 수당, 제3자가 자녀를 돌볼 때 지급하는 수당,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수당에는 출산 보너스(Prime à la naissance), 출산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après la naissance), 자녀사망수당(Allocation versée en cas décès d'un enfant)이 있다. 둘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에는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에는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la)[68]과 이사수당(Prime de déménagement)이 있다.

67) 본 절의 내용은 프랑스 행정부 (2023b) 사이트, 현금 지원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자녀 양육 방식과 관련하여 제3자가 돌보는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때 지급되는 수당에는 자녀교육 분담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과 부모돌봄 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이 있다.

가) 출산보너스

출산보너스는 자녀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사람들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녀 임신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출산보너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자녀 수, 부부(양부모) 혹은 한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2023년도의 출산보너스 지원 액수는 1,019.43 유로이다.

〈표 Ⅲ-2-3〉 프랑스 출산보너스와 출산기초수당의 소득 기준

단위: 유로

부양 자녀수 (출생 혹은 출생 예정)	부부		한부모
	맞벌이	홑벌이	
자녀 1명	43,665	33,040	43,665
자녀 2명	50,273	39,648	50,273
자녀 3명	58,203	47,578	58,203
추가 자녀 1명 당	7.930	7,930	7.930

자료: 프랑스 행정부(2023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50(인출일: 2023. 6. 1.)

나) 출산기초수당

출산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출산기초수당은 3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자녀 수, 부부 혹은 한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다르며 출산보너스와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월 지급 액수는 자녀 수, 부부(양부모) 혹은 한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2023년

68) 가족 보조금은 3세 이상의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세부적은 사항을 살펴 보지 않는다.

도 출산기초수당의 월 지급액수는 아래와 같다.

〈표 Ⅲ-2-4〉 프랑스 출산기초수당의 월 지급 액수

단위: 유로

부양 자녀수 (출생 혹은 출생 예정)	월 지급 액수	연소득 기준		
		부부		한부모
		맞벌이	홑벌이	
자녀 1명	184.81	36,546 이하	27,654 이하	36,546 이하
	92.40	36,546~43,665	27,654~33,040	36,546~43,665
자녀 2명	184.81	42,077 이하	33,185 이하	42,077 이하
	92.40	42,077~50,273	33,185~39,648	42,077~50,273
자녀 3명	184.81	48,714 이하	39,822 이하	48,714 이하
	92.40	48,714~58,203	39,822~47,578	48,714~58,203

자료: 프랑스 행정부(2023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52(인출일: 2023. 6. 1.).

다) 자녀사망수당

자녀사망수당은 임신 20주부터 자녀의 25번째 생일 이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 2년 이후 자녀 사망 당시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부모에게 지급된다. 수당 액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표 Ⅲ-2-5〉 프랑스 지녀사망수당의 지급 액수

단위: 유로

부양 자녀수	소득 기준	지급 액수
자녀 1명	88,961 유로 이하	2,163
	88,961 유로 이상	1,082
자녀 2명	94,893 유로 이하	2,163
	94,893 유로 이상	1,082
자녀 3명	100,825 유로 이하	2,163
	100,825 유로 이상	1,082
자녀 4명	106,757 유로 이하	2,163
	106,757 유로 이상	1,082

자료: 프랑스 행정부(2023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5558,(인출일: 2023. 6. 1.).

라)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20세 미만 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된다. 수당 금액은

소득, 부양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매월 지급된다. 가족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프랑스에 평소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년 중 6개월 이상 프랑스에 체류해야 한다. 국경 국가에서 공부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한 번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 외국어를 배우거나, 치료를 받거나, 학업 또는 직업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며, 둘째 자녀가 14세가 되면 증액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증액은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15세와 16세 2명인 경우 15세 자녀에 대한 인상분만을 받을 수 있다. 부양 자녀가 3명인 경우 14세 이상의 각 자녀에 대해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

〈표 Ⅲ-2-6〉 프랑스 가족수당의 월 지급 액수

단위: 유로

부양 자녀수	소득 기준	지급 액수	14세 이후 증액
자녀 2명	71,194 이하	141.99	71.00
	71,194~94,893	71.00	35.50
	94,893 이상	35.50	17.75
자녀 3명	77,126 이하	323.91	71.00
	77,126~100,825	161.95	35.50
	100.825 이상	80.98	17.75
자녀 4명	83,058 이하	505.85	71.00
	83,058~106,757	252.92	35.50
	106,757 이상	126.46	17.75

자료: 프랑스 행정부(2023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3.(인출일: 2023. 6. 1.).

가족의 소득이 한도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체감된 보조금(Complément dégressif)이 지급된다.[69] 체감된 보조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 [소득 한도 + (12×가족 수당액) - 소득액]/12

69) 소득 기준을 초과한 한도와 소득 간의 차이는 가족 수당 월 수당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77,200 유로인 경우 소득 한도인 77,126 유로를 초과하여 가족 수당 323.91유로를 받을 수 없다. 이 가족이 초과한 소득 액수는 74유로이다. 이 소득 차액은 323.91 유로에 12를 곱한 3,886.92 유로 보다 적기 때문에 체감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녀 3명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임시 일시불 보조금(allocation forfaitaire provisoire) 지급된다. 자녀 연령이 20세가 되면 부양 자녀로 간주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액수가 감소되는데, 이러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20세가 되는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가구에 거주하고 있고, 1,070.78 유로 이상의 전문직 소득을 받지 않는 경우 자녀의 21세 생일 달의 전월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임시 일시불 보조금 급여액은 연 소득이 3,058 유로 이하인 경우 월 89.79유로, 83,058~106,757 유로인 경우 월 44.90 유로, 106,757 유로 이상인 경우 월 22.45 유로이다.

마) 이사수당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이사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사수당액수는 상한액 내에서 이사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3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막내 자녀의 두 번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사이에 이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사수당의 수급 조건이다. 이사수당 급여액의 최대 한도액은 자녀 3명인 경우 1,070.23유로, 자녀 4명인 경우 1,159.42유로, 자녀 1명 추가 당 89.19 유로이다.

바)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은 6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인가받은 보육사, 가정 내 베이비시터, 소규모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가 보육사 혹은 베이비시터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자녀 1인당 하루당 급여는 57.60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용비용의 총 85%까지만 지급하며 나머지 15%는 부모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월 최소 1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취업중이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노령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한편, 학생이거나 장애성인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활동연대수당을 받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사회연대기금을 수령하고 구직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보조금의 지원 액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Ⅲ-2-7〉 프랑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의 월 지급 액수

단위: 유로

가족 유형	지원 금액		소득 기준			
	3세 미만	3~6세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부부	506.01	253.00	21,661 이하	24,735 이하	27,809 이하	30,883 이하
	319.07	159.56	21,661~ 48,135	24,735~ 54,968	27,809~ 61,801	30,883~ 68,634
	191.42	95.71	48,135 이상	54,968 이상	61,801 이상	68,634 이상
한부모	657.81	328.91	30,325	34,629	38,933	43,236
	414.79	207.43	30,325~ 67,389	34,629~ 76,955	38,933~ 86,521	43,236~ 96,088
	248.84	124.42	67,389 이상	76,955 이상	86,521 이상	96,088 이상

자료: 프랑스 행정부(2023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214,(인출일: 2023. 6. 1.).

예를 들어 5세 자녀 양육을 위해 연 소득이 28,000유로인 부부가 보육사를 고용하고 월 500유로를 보육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159.56 유로의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는 500 유로의 85%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59.56 유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일 같은 조건의 가족이 월 160 유로를 보육사 이용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 160유로의 85%인 136유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 자녀교육분담수당

자녀교육분담수당은 3세 미만(입양의 경우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1명 이상인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할 때 지원하는 수당이다. 사회보장일반체계에 속해 있는 경우 지역가족 수당 금고(Caf: Caisse d'allocation familiales) 혹은 농업체계에 속해 있는 경우 농업사회공제회(MSA: Mutualité sociale agricole)가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3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풀타임 혹은 파트 타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자녀의 출생, 입양 또는 양육 이전 기간 동안 최소 8분기 이상의 연금을 납입해야 한다. 부모 중 한 명 혹은 양쪽 부모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급여는 매월 지급된다. 급여액은 근무를 완전히 중단한 경우 월 428.71유로, 근무 시간을 50% 줄여서 근로하는 경우 월 277.14유로, 근

무시간을 50~80% 줄여서 근로하는 경우 월 159.87유로이다. 부부가 동시에 수당을 받는 경우 이러한 급여액수 한도내에서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의 첫 번째 생일까지 각 부모당 6개월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당 24개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6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 당 48개월 지급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부부의 경우 3세 이하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교육분담수당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가 어린이집 혹은 보육 서비스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프랑스 가족수당금고, 2023). 소득 기준은 자녀 수와 부부 혹은 한부모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막내 자녀의 만 3세 생일까지 총 3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 부모당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를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교육분담수당과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지원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종일제로 휴직하여 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인가받은 보육사, 가정 양육 도우미, 마이크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녀교육분담수당은 가족보조금, 자녀간호수당, 질병 혹은 모성수당, 장애연금 혹은 퇴직연금과도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아) 부모돌봄수당

부모돌봄수당은 질병(중병), 부상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등 특정한 조건 하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월 최대 22일까지 자녀와 함께 보낸 하루 또는 반나절에 대해 일일 수당이 지급된다. 부모돌봄수당은 최대 3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돌봄수당은 부부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하루 종일 일을 중단한 경우 일당 62.44 유로가 지급되며, 반나절 일을 중단한 경우 31.22 유로가 지급된다. 부모돌봄수당은 출산·육아·입양 휴가에 대한 보상, 고용 보험 할당금 또는 출산휴가대체할당금(자영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병가 또는 직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상, 퇴직 또는 장애 연금,

자녀교육분담수당,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받은 장애아동 교육수당에 대한 보충 및 인상분, 성인장애수당, 인적 지원의 필요성과 연계된 장애보상수당, 실업수당과 중복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표 Ⅲ-2-8〉 프랑스 현금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현금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 지원				
	출산보너스	출산기초수당	자녀 교육 분담 수당	가족수당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부모 돌봄 수당	자녀 사망 수당	자녀 이사 수당
정의	출산 준비 및 출산 비용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수당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3세 미만 부양 자녀가 1명 이상인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거나 줄일 때 지원하는 수당	20세 미만 부양 자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인가받은 보육사, 베이비시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급받는 수당	자녀가 중병·부상·장애가 있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자녀가 사망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사에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	3세 미만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	만3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부	20세 미만 부양 자녀 2명 이상인 가족	-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인가받은 보육사, 베이비시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근로하고 있는 부모 혹은 노령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영업자	중병·부상·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임신 20주부터 자녀 25번째 생일 이전에 자녀가 사망한 부모	자녀 3명 있는 가족
지원 내용	1,019.43 유로	자녀 수, 부부 혹은 한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이한 매월 급여 지원	- 근무를 완전히 그만 둔 경우: 월 429.71 유로 - 근무시간을 50% 줄여서 근로: 월 277.14 유로 - 근무 시간을 50~80% 줄여서 근로: 159.87 유로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상이한 매월 급여 지원	소득 수준, 지녀수, 자녀 연령, 부부 혹은 한부모 여부에 따라 상이한 매월 급여 지원	- 하루 종일 일을 멈춘 경우: 일당 62.44 유로 - 반나절 일을 멈춘 경우: 일당 31.22 유로	-	- 자녀 3명: 최대 1,070.23 유로 - 자녀 4명: 최대 1,159.42 유로 - 자녀 1명 추가 당 89.19 유로

구분	영아 대상 현금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 지원				
	출산보너스	출산기초수당	자녀 교육 분담 수당	가족수당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부모 돌봄 수당	자녀 사망 수당	자녀 이사 수당
근거법				사회보장법 L521-1~3 R521-1~4 D521-1~4 R552-1~3				
주무부처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가족수당금고		
비고: 특징, 타사업 중복성			출산·육아 및 입양 휴가 수당, 병가 또는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상, 병가 또는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상, 실업 수당, 가족 보조금, 급여, 휴일 수당, 퇴직 및 장애 연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음			출산·육아·입양 휴가에 대한 보상, 고용 보험 할당금 또는 출산 휴가 대체 할당금(자영업 근로자에게 고용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병가 또는 직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상, 퇴직 또는 장애 연금, 자녀 교육 분담 수당,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받은 장애 아동 교육 수당에 대한 보충 및 인상분, 성인 장애 수당, 인적 지원의 필요성과 연계된 장애 보상 수당, 실업 수당과 중복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		

자료: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2023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 (인출일: 2023. 6. 1.)

3) 시간지원[70]

프랑스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중 특히 영아 돌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는 출산전후휴가(Le congé de maternité), 육아휴직(Le congé parental d'éducation), 가족관련휴가(Les congés pour événements familiaux et le congé de deuil), 자녀입양휴가(Le congé d'adoption), 아버지돌봄휴가(Le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자녀돌봄휴가(Les congés et absences pour enfant malade)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휴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본다.

가)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에 여성 근로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이 정지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자녀 수와 출산 예정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표 Ⅲ-2-7 참조). 자녀를 임신 중이고 이미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는 임신 전 휴가 시작을 최대 2주까지 앞당길 수 있으며 산후 휴가도 같은 기간만큼 단축된다. 쌍둥이를 임신 중인 직원은 산전 휴가 시작을 최대 4주까지 앞당길 수 있으며 산후 휴가도 같은 기간만큼 단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 전후 총 8주 동안은 고용될 수 없으며, 이 중 6주는 출산 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체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출산 휴가 및 그 후 10주 동안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받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중에는 해고될 수 없도록 보호하며, 출산휴가가 끝나면 근로자는 이전 직장 또는 최소한 동등한 급여를 받는 유사한 직장으로 복귀한다.

70) 본 절의 주요 내용을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2023)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Ⅲ-2-9〉 프랑스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전	임신 후	계
일반적인 경우			
첫째 아 혹은 둘째 아	6주	10주	16주
셋째 아	8주	18주	26주
두 쌍둥이 출산	12주	22주	34주
두 쌍둥이 이상 출산	24주	22주	46주

자료: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2023),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les-absences-pour-maladie-et-conges-pour-evenements-familiaux/article/le-conge-de-maternite(인출일: 2023. 7. 1.).

나) 육아휴직

자녀를 출산하거나 만 16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사람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를 중단하거나 단축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자산의 시간 저축 계좌에서 취득한 권리를 사용하여 "재정"조달할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교육분담수당(PreParE)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육아 휴직 제도와 PreParE는 독립적인 제도이다. PreParE는 가족수당기금 혹은 농업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혜택이다.

육아휴직을 하며 자녀교육분담수당(PreParE)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고용 계약이 정지되는 전체 휴가로 이용할 수 있고,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로 이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은 최초에는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이후에는 연장할 수 없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까지 육아휴직이 연장될 수 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다태아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늦어도 자녀의 만 6세 생일 이전까지 종료된다. 자녀가 사망하거나 가계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시간제 근무 기간을 변경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단축할 수 있다.

다) 가족관련휴가

가족관련휴가는 출생, 결혼, 시민 파트너쉽 체결, 가까운 친척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이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출산한 경우 3일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5세 미만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소 8일의 유족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자녀 입양 시 3일, 자녀의 장애 진단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 자녀입양휴가

자녀입양휴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자녀입양휴가 일수는 자녀 수와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입양 휴가 동안 근로자가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보장체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입양휴가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6주이며, 입양으로 인해 가구 내 자녀 수가 3명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18주, 다자녀 입양의 경우 22주의 입양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배우자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부 모두에게 있다. 취업 중인 두 부모가 입양휴가를 공유하는 경우, 법정 휴가 기간은 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5일, 여러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32일로 늘어난다. 공유된 휴가는 각 부모에 대해 16주 또는 늘어난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8주 또는 22주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아버지돌봄휴가

자녀 출산 후 아버지 근로자 혹은 어머니의 파트너 근로자는 25일의 아버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 출산 시 3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 돌봄휴가는 두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기간은 출산휴가 직후 연속된 4일의 기간으로 근로자는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를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기간은 21일 혹은 다태아의 경우 28일을 각각 최소 5일씩 두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아버지돌봄휴가(4일)는 출산 후 3일의 출산휴가 직후에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휴가 기간(21일 또는 다태아의 경우 28일)은 자녀 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출산 후 자녀가 즉시 입원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4일의 휴가를 최대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버지돌봄휴가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바) 자녀돌봄휴가

아프거나 다친 자녀 또는 부양하고 있는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는 연간 3일 무급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16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돌보는 경우 연간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표 Ⅲ-2-10〉 프랑스 시간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시간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돌봄휴가	가족관련휴가	자녀입양휴가	자녀돌봄휴가
정의	출산 전후에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자녀 출산 혹은 입양한 사람이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 활동을 중단 또는 축소하여 근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	자녀 출산 후 아버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출생, 결혼, 시민 파트너쉽 체결, 가까운 친척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아프거나 다친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지원 대상	출산 여성	출산 여성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
지원 내용	- 첫째아 혹은 둘째아: 임신 전 6주, 임신 후 10주 - 셋째아 이상: 임신 8주, 임신 후 18주 - 두 쌍둥이 출산: 임신 전 12주, 임신 후 22주 - 두 쌍둥이 이상 출산: 임신 전 24주, 임신 후 22주	-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전에 최대 1년 및 2회 연장 가능 - 시간제 근로 전환 가능 - PreParE 지원	- 총 25일 휴가 (다태아 경우 32일 휴가)	- 휴가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 16주, 입양에 따라 자녀 수가 3명 이상이 된 가족(18주), 다자녀 입양 (22주)	- 연간 3일 무급 휴가 - 자녀가 1세 미만 또는 16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돌보는 경우 연간 5일 휴가
근거법	노동법 L. 1225-16 부터 L. 1225-34, L. 1225-66부터 L. 1225-69, D. 1225-4-1, R. 1225-18,	노동법 L. 1225-47 부터 L. 1225-59, R. 1225-12와 R. 1225-13, 2023년 3월 9일 법률 제2023-171	노동법 L. 1225-35부터 L. 1225-36, D. 1225-8, D. 1225-8-1. 사회보장법 L. 331-8, D. 331-3	노동법 L. 3142-1부터 L. 3142-5, R. 3142-1 1, D. 3142-1-1, D.3142-1-2, 사회보장법	노동법 L. 1225-37부터 L. 1225-46-1, L. 1225-66부터 L. 1225-69, R. 1225-9, R. 1225-11,	노동법 L. 1225-61 부터 L. 1225-65-2, R. 1225-14, R. 1225-15, D. 1225-16, D. 1225-17이다.

구분	영아 대상 시간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돌봄휴가	가족관련휴가	자녀입양휴가	자녀돌봄휴가
	R. 1225-19.		부터 D. 331-8.	L. 331-9, D. 331-6.	입양 개혁을 위한 2022년 2월 21일자 법률 제 2022-219호.	
주무부처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자료: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사이트(2023),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les-absences-pour-maladie-et-conges-pour-evenements-familiaux/article/le-conge-de-maternite(인출일: 2023. 7. 1.)

3. 스웨덴

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배경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스웨덴이 포괄적 복지국가로 발전한 20세기 대부분 동안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한 사민당의 유산으로 보는 것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박승희 외, 2007). 영아양육정책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의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1990년대 경제불황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경험한 이후 자녀양육에서의 국가의 적극적 책임과 지원은 당파를 넘어서는 공동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았기에 (다카하시 미에코, 2013), 2000년 이후에 반복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틀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스웨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 양육지원정책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려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1) 사민당 주도하에 진행된 복지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근간이 된 철학적, 이념적 틀을 살펴보고,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께 발전해온 양육지원 정책의 특성을 가족정책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변화를 양성평등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 스웨덴의 사회환경 중 양육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성의 취업률, 부모들의 부모휴가 사용 현황의 역사적 변화과정,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의 기초이념과 철학

사민당은 1932년부터 44년간 내리집권을 통해 스웨덴 복지국가의 틀을 다지고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심 이념인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 이념은 사민당 집권 초기 총리인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이 1928년 국회연설에서 사용한 '국민의 집'이라는 은유적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 즉, 국가의 역할 및 의무, 그리고 국민들 간의 관계를 가족의 그것과 빗대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과 상호 간 이해, 배려,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공동체적 사회(신필균, 2011: 64)"를 건설하는 것을 사민주의 이념의 핵심 기치로 삼았다. 이는 스웨덴 아동정책 설계의 근간으로도 작용하였다. 스웨덴은 1960년대 전후 경제발전 과정에 수반되었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지원과 저

출산 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아동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70년대에는 아동 정책 설계에 있어 '국민의 집에 거주하는 모두의 아이(신필균, 2011: 93)'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보육시설 확충 및 아동수당(barnbidrag)이나 아동가정 주거비지원(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등과 같은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교역할을 해줄 원리나 이념이 필요하다. 시노다 다케시(2013)는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분석한다.[71] 이러한 원리는 아동정책에도 적용된다. 어린 아동은 여러 면에서 아직 완전히 자립적이고 자율적일 수 없는 위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완전한 한 개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동정책을 디자인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2) 스웨덴 양육정책의 특성과 발전과정

가) 가족정책 측면

스웨덴 가족정책 발전의 특징은 그 목표는 인구문제 해결이라는 지엽적이고 단일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회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김연진·김진욱, 2022). 실제로 스웨덴은 20세기 내내 성공적인 가족정책의 결과로 유럽 내에서도 독보적인 인구증가폭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에서 가족정책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의 다양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Elmer et al., 2000; 신필균, 2011에서 재인용). 첫째는 인구구조의

71) '사회적 시민권'은 개개인이 시민으로서 사회의 성장 및 유지에 공헌하는 반대급부로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일-생활 균형의 경우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여기는 만큼 그 둘 간의 균형보장 역시도 권리라고 의식할 때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을 앞두었거나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생활 균형은 개개인의 공적인 일의 영역과 사적인 가정의 영역 간의 균형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균형이라는 문제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스웨덴 성평등은 남녀 모두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따라서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남녀 각자가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일과 양육을 분담하면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균형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구정책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 둘째는 자녀의 유무나 수에 따라 가정형편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정의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육성한다는 국가발전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넷째는 남녀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나) 양성평등 측면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다양한 측면의 종합적인 고려를 그 기본 특성으로 하고 있으나 영아 양육정책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이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는 양성평등 발전과정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시노다 다케시(2013)는 영아 양육정책의 발달 과정을 크게 다음과 같이 3기에 걸친 발달로 요약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의 1기는 “남성 소득자-여성 돌봄 가족모델”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소득을 책임지고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전통적인 모델이다.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2기는 “맞벌이/여성 돌봄 가족모델”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가계소득을 남성과 함께 책임지는 변화를 맞이했으나, 남성이 자녀양육을 여성과 함께 책임지는 반대급부의 변화는 아직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여성 이중 부담 가족 모델”이다. 이후의 3기는 “맞벌이/부모 돌봄 가족 모델”로 상기에 언급한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 증가로 인한 남녀 간의 균형이 잡혀가는 양성평등 모델이다. 이처럼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양성평등을 이루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스웨덴은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지표에서 국제 사회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성별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소득수준의 경우에도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의 소득수준을 상회해왔기 때문에, 부부간 양육참여의 비율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개별 가정의 선택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양육참여에 더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한

가정 내에서 양육참여의 성별격차를 지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차원인 직장에서의 지위에 있어서도 성별격차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여성이 주양육자로서 역할하게 되는 가정에서의 결정은 직장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순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선호를 높이게 된다. 이에 따른 결과로 급여수준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대우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게 되면, 이는 각 가정에서 여성을 주양육자로 택하게 되는 패턴을 재강화 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가정내에서의 합리적 결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남성의 참여를 더 높이고 더 나아가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남성만 사용 가능한 부모휴가 기간의 연장 등).

〈표 Ⅲ-3-1〉 성별에 따른 평균 월급여 수준 (SEK)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	41,600	42,200	42,700	43,600	44,400	44,800	45,200	46,600	47,700
여	31,800	32,800	33,700	34,600	35,500	36,400	37,100	38,300	39,500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통계청(www.scb.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다. 18세에서 66세의 월급여 보고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전일제 근로가 아닌 경우 전일제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급여를 바탕으로 한 자료임.

자료: 스웨덴 통계청(www.scb.se). 성별 평균 월급여 수준,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105__AM0105A/Landsting3g12/(인출일: 2023. 8. 20)

둘째,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양육정책은 가정생활에서 성별역할 분담의 비평등적 고착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육아초기에서부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이를 편중되게 담당하게 되면, 이전의 패턴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육초기부터 부모의 균형 있는 참여의 장려는 이러한 고착을 방지하는 예방책으로서, 그리고 균형 있는 양육 역할 분담의 지속적인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시발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의 평등한 양육참여의 장려는 아동권리의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아동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에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밝혀왔다. 이를 고려하면 아동

에게 우호적인 발달적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양육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3) 사회환경적 배경

가) 취업률

[그림 Ⅲ-3-1] 은 2000년대 스웨덴의 성별 취업률을 보여주는데, 주목할만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의 취업률보다 지속적으로 대략 4-5%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계열의 변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시계열 변동 자체는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경제 요인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요인들이 전 인구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을 뿐, 특정 성별에 더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셋째, 여성의 취업률이 항상 남성의 취업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스웨덴의 성별 취업률 격차는 OECD 평균이 2021년 기준 10%의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하면 그 절반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기준 OECD 평균인 10%의 차이는 2000년 기준 18%였던 것에 비해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상당히 개선된 수치라는 것을 고려하면 2000년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4~5%선의 차이만을 보여온 스웨덴의 기록은 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림 Ⅲ-3-1] 2000년대 남녀 취업률(스웨덴 VS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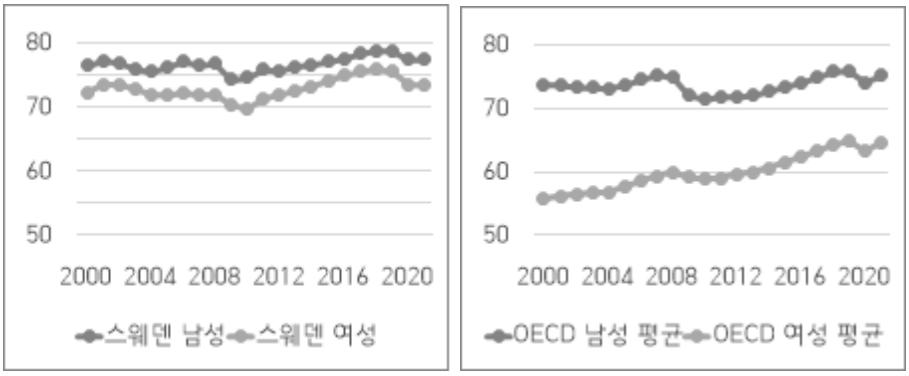

주: 위의 도표는 OCED Family Database에서 2023년 8월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인출일: 2023. 8. 20.).

나) 부모휴가 사용률

여기에서는 부모휴가와 관련된 제도의 주요 변곡점과 그에 따른 부모휴가 사용률의 변화(특히 남성 사용률 변화를 중점으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청[72]은 부모휴가와 관련한 10개의 주요 이정표적인 변화 사항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Ⅲ-3-2〉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주요 변화 경향(사회보험청)

(1) 1974년 부모휴가제도가 이전에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것에서 남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후 첫 해 남성의 부모휴가사용률은 0.5%였음.
(2) 1995년 부모휴가 중 1개월은 각각 남성 혹은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으며,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은 평균 9.9일로 증가됨.
(3) 1998년 부모휴가의 10%를 남성이 90%를 여성이 사용하였음.
(4) 2002년 부모휴가 중 남성 혹은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부모휴가 총 사용가능일수도 480일로 증가됨.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이 평균 4.4일 증가함.
(5) 2006년 부모휴가의 20%를 남성이 80%를 여성이 사용하였음.
(6) 2008년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제도를 단순화 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가시켰음.
(7) 2013년 부모휴가의 25%를 남성이 75%를 여성이 사용하였음.
(8) 2016년 부모휴가 중 남성 혹은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으며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이 평균 4.1일 증가함.
(9) 2017년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가 폐지됨.
(10) 2022년 말 기준으로 부모휴가의 30%를 남성이 70%를 여성이 사용하였음.

주: (1)~(10)의 내용은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제시한 육아휴직이용률의 주요 변화 경향 중 주요 내용을 저자가 발췌/수정하여 옮긴 것임.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주요 변화 경향,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foraldraforsakringens-historia(인출일: 2023. 8. 20.).

다) 근로환경

스웨덴의 탄력근무제는 1970년대 초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대략 지난 20여년에 해당한다. 탄력근무제는 법제화된 제도는 아니며 대체로 지역협정이나 고용주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사용된다. 탄력근무제가 가능한 경우는 직군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대략 40% 정도의 근로지에서 탄력근무제를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73]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탄력근무제의 영향 혹은 수혜를 받아 많은 직장인들이

72)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foraldraforsakringens-historia
73) 탄력근무제는 대체로 고용주가 가능한 출근 및 퇴근 시간의 범주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본인에게 맞는

이른 출근과 이른 퇴근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김지현, 2023. 6. 22.). 하지만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업무를 완료하고 정시 퇴근하는 문화로 인하여 가족과 보내는 저녁 시간의 확보는 탄력근무제와 별개로 일반적으로 용이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다카하시 미에코, 2013). 또한 가족정책이 사회에 장시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기에 이를 근로자들이 권리로서 사용함에 있어 고용주나 사업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도 양육과 관련된 직장근로환경의 특성 중 하나이다.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1) 서비스 지원

가) 푀르스콜라(Förskola)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1세가 되는 때부터 푀르스콜라(förskola)라는 취학전 교육기관(유아학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아동이 3세가 되는 가을학기부터는 연간 525시간(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정기적인 보육과 교육의 형태를 띄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부모의 양육휴가사용 여부, 취업 혹은 학업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제는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시간에 푀르스콜라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100% 양육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부모가 전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기와 관련해서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다자녀 부모의 경우 부모가 신생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양육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모든 자녀를 적합한 수준으로 돌볼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가 100% 양육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더 많은 자녀는 일정시간 푀르스콜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간을 최종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출근은 7-9시 사이에, 퇴근은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능하며 이 중에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여 계약된 근로시간만큼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고용주 입장에서도 주간의 주요 시간에 모든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휴가 기간은 아동이 1.5세가 되는 시점에 소진되며, 이에따라 아동이 이 무렵부터 푀르스콜라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세부터 5세까지는 대부분의 아동이 푀르스콜라를 이용하고 있다. 〈표 Ⅲ-3-3〉에는 지난 10여년 간 푀르스콜라에 등록한 1세 영아의 수와 전체 1세 영아 중 푀르스콜라에 등록한 영아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표 Ⅲ-3-3〉 1세 영아의 푀르스콜라 등록 인원 수 및 비율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등록 인원	56,464	55,204	55,962	56,392	59,094	58,955	59,897	58,232	57,524	59,107
등록 비율	49.2%	47.9%	47.6%	47.8%	48.6%	49.8%	50.5%	50.0%	50.0%	51.0%

주: 위의 표는 스웨덴 교육청(www.skolverket.se)에서 공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1세는 조사해당 연도의 전해에 태어난 아동을 의미함. 2세부터 5세의 경우 90-95%의 영유아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표 Ⅲ-3-3〉에는 1세에 대한 자료만 제시함.

자료: 스웨덴 교육청, 1세 영아의 푀르스콜라 등록 인원 수 및 비율, https://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istik/sok-statistik-om-forskola-skola-och-vuxenutbildning?sok=SokC&verkform=F%C3%B6rskola&omrade=Barn%20och%20grupper&lasar=2022&run=1(인출일: 2023. 8. 20.).

푀르스콜라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용시간이 가구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고,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 비용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서비스 이용비용 역시도 아동별로 차이가 있으나 각 가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은 존재한다. 또한 푀르스콜라 이용비용의 상한선은 아동의 이용시간(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 혹은 30시간 미만의 반일제/파트타임 이용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도 있다. 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로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상한선은 첫번째 자녀의 경우 가계수입의 3%,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 아동의 경우 각각 가구소득의 2%와 1%이며 네번째 아동부터는 푀르스콜라 사용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각 가구소득에 비례로 비용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이와 별개로 푀르스콜라 사용비용을 책정하는 월소득의 최대한계선도 존재하는데 이는 2023년 현재 SEK54,830(655만원 상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즉, 월소득이 이 최대한계선을 넘더라도 푀르스콜라 비용은 최대한계선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이에 따라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푀르스콜라 사용료의 월별 최대치를 계산할

경우 각각 SEK1,645(20만원 상당), SEK1,097(13만원 상당), SEK548(7만원 상당)에 해당하고, 부모의 소득이 앞서 제시한 소득의 최대한계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한편 주당 30시간 미만 혹은 파트타임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상한선은 첫번째 아동의 경우 가계수입의 2%,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 아동의 경우 가계수입의 1%이며 네번째 아동부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상기의 가구소득의 최대한계선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즉, 푀르스콜라는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전제로 한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실제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해당 아동을 위한 기관운영비용의 10-15%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아동의 부모들은 아동수당(Barnbidrag)을 수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대체로 푀르스콜라 이용비용 수준과 대동소이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수당이 푀르스콜라 비용을 갈음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푀르스콜라 이용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부모가 어린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커리어 유지/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부모들에게 우호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하다.

〈표 Ⅲ-3-4〉 푀르스콜라 이용 아동 1인당 연간 소요비용 및 월별환산비용(SEK)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간	137,298	139,982	146,148	152,456	156,503	158,223	160,100	160,373	161,419	163,000
월별 환산	11,442	11,665	12,179	12,705	13,042	13,185	13,342	13,364	13,452	13,583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통계청(www.scb.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다. 원자료는 연간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12로 나눈 월별환산 자료를 추가하였다.
자료: 스웨덴 통계청, 푀르스콜라 이용 아동 1인당 연간 소요비용,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UF__UF0514/UtbKostForskola/(인출일: 2023. 8. 20.).

나) 개방형 푀르스콜라(Öppen förskola)

개방형 푀르스콜라(Öppen förskola)는 상기한 푀르스콜라(förskola)에 정규 등록하지 않은 아동에게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작용 및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주 이용층은 풀타임으로 부모휴가를 사용하거나 전업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며, 따라서 기관운영의 목적으로 부모

들간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별도의 등록이나 예약 없이 운영시간 내에 아무때나 방문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간도 아동의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무료로 이용하며 유일한 사용요건은 아동이 개방형 푀르스콜라(Öppen förskola)를 이용하는 동안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다.

다) 페다고지 케어(Pedagogisk omsorg)

페다고지 케어(Pedagogisk omsorg)는 푀르스콜라(förskola)를 대신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정규적 교육/보육 서비스이다. 아동의 교육 및 보육적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운영자가 본인 가정에서 합리적인 규모의 아동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4] 현재는 별도의 시설/부지를 이용해서 운영하거나 다가정 공동양육의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다. 이용비용은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상기 푀르스콜라(förskola) 비용에서 언급되었던 비용상한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74) 2009년까지는 가정탁아로 명명되었음.

〈표 Ⅲ-3-5〉 스웨덴 서비스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		
	푀르스콜라/페다고지 케어	개방형 푀르스콜라	푀르스콜라/페다고지 케어
정의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단기/임시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도입연도 (최초지급)	1996[75]/2009	19961	1996/2009
지원 대상	1세-5세 아동 / 1세-12세 아동	1세-5세 아동	영아가 있는 가정의 더 나이 많은 미취학 형제자매
지원 내용	이용비 상한선	무료이용	이용비 상한선
근거법	학교법: Skollag (2010:800)		
주무부처	교육부 (Skolverket)		
비고: 특징, 타사업 중복성	부모휴가와 중복사용 불가		

75) 기관의 역사는 푀르스콜라 전신의 경우 1896년부터, 개방형 푀르스콜라 전신의 경우 1972년부터 시작되지만 여기에는 현대의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형태로 교육부에서 일괄 담당하기 시작한 연도를 기재하였다.

2) 현금 지원

가) 아동수당(barnbidrag)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아동수당(barnbidrag)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지급 주체는 사회보험청이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모(들)에게 월 1회 (매월 20일경) 자동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16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녀가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직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 교육을 마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한다.[76]

아동수당(barnbidrag)은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부모 각각에게 절반씩 지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보험청에 신청해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부모에서 다른 부모로) 수령인을 변경하거나 각각의 부모가 절반씩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 보호인이 한명인 경우에는 해당인이 아동수당(barnbidrag) 전부를 단독 수령한다.

아동수당(barnbidrag)의 기본 금액은 2023년 현재 아동 1인당 SEK1,250(15만원 상당)이며,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자녀 지원금을 별도 지급한다. 다자녀 추가 지원금은 자녀수에 따른 차등이 있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동양육에 드는 비용 역시도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아래 표는 자녀수에 따른 총 아동수당(barnbidrag)의 금액을 나타낸다.

76) 아동수당(barnbidrag)은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스스로 수입을 발생시킬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동이 가정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는 관계로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16세가 지나서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아동들은 아동수당에 상응하는 '학업수당'을 지급받는다.

〈표 Ⅲ-3-6〉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 및 다자녀 추가 수당 액수(1인 단독 수령시 기준: SEK)

자녀수	아동수당	다자녀 추가 수당	총합
1	1,250	-	1,250
2	2,500	150	2,650
3	3,750	730	4,480
4	5,000	1,740	6,740
5	6,250	2,990	9,240
6	7,500	4,240	11,740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 및 다자녀 추가 수당 액수,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인출일: 2023. 8. 20.).

〈표 Ⅲ-3-7〉는 지난 10여년간 스웨덴에서 아동수당과 다자녀 추가 수당을 수급받은 인원과 총 금액을 보여준다. 2014년생 아동부터 부모가 아동수당을 50%씩 분할 지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제도를 수정한 영향으로 2014년부터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3년에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이 7.6%였으나, 2022년에는 33.9%까지 증가하였고, 다자녀 추가 수당의 경우 2013년에는 5.9%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33%까지 증가하였다.

〈표 Ⅲ-3-7〉 아동수당(barnbidrag) 및 다자녀 추가 수당 수급현황

성별	아동수당(barnbidrag) 수급인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	949,179	960,720	975,558	990,204	1,007,463	1,021,855	1,034,286	1,041,558	1,046,071	1,043,752
남	77,889	131,630	199,472	260,490	316,084	365,698	413,236	460,875	504,804	534,161
성별	아동수당(barnbidrag) 수급총액(1000SEK)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	1,716,365	1,715,499	1,708,777	1,702,134	1,695,833	1,999,412	1,975,370	1,933,423	1,891,955	1,837,965
남	115,385	154,675	204,106	252,425	304,144	417,501	472,486	523,780	572,841	604,637
성별	다자녀 추가 수당 수급인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	614,279	624,640	633,176	647,887	663,405	673,823	705,306	713,693	717,986	714,239
남	38,678	69,062	105,748	143,255	181,016	216,670	255,640	290,392	324,948	351,914
성별	다자녀 추가 수당 수급총액(1000SEK)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	229,558	226,650	218,936	234,764	259,272	248,976	259,492	253,738	245,914	236,759
남	20,626	22,932	26,566	34,022	44,875	49,332	58,585	63,014	67,506	70,624

주: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한 자료임. 위 표에 나타난 성별은 아동의 성별이 아닌 수급자인 부모의 성별을 나타냄.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 아동수당(barnbidrag) 및 다자녀 추가 수당 수급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barn-och-familj/statistik-inom-omradet-barn-och-familj---barnbidrag(인출일: 2023. 8. 20.).

나)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

산모가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직무나 직장의 특성이나 환경이 태아나 산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변경이나 부서이동과 같은 대안제공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제공이 여의치 않아 산모가 소득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라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소득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태아 및 영유아의 최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현금지원정책 제도의 일부로 소개한다.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의 수급대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직무수행이 신체적 피로를 가중하여 수급받게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직무수행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수급받게 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위험요소로 인해서 직무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시점부터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직무수행의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는 고용주가 수행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는 출산 예정일 11일 전까지 수급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10일 전부터는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는 직무변경의 정도(즉, 업무가 감소되는 정도)에 따라서 25, 50, 75, 100%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급받게 된다. 단,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소득발생이 전제되어야 한다.[77]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를 받기 위한 이러한 기본 필요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소득의 80% 정도를 지급받게 되는데 일일 상한선이 있어 일일 최대 SEK837(10만원 상당)까지 지급된다.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를 받기 위한 기본 필요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의 대안은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를 수급하는 것이다.

7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것.

아래에는 2000년대에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를 받은 인원과 금액이 수급비율에 따라 100%, 75%, 50%, 25%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급인원과 지급액이 그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특이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연 25,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를 수급했음을 알 수 있다. 근무감소의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급비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급한 인원의 대부분은 100%로 수급하였으며,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직전인 2020년 기준으로 총 6.3억 크로나 상당(777억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표 Ⅲ-3-8〉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 수급현황

사용비율	수급인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23,662	24,777	25,228	27,210	26,501	25,794	24,822	24,552	37,754	28,869
100%	21,971	22,737	23,207	25,330	24,516	23,417	22,456	22,387	34,866	26,545
75%	682	753	781	787	763	828	853	800	1,590	1,154
50%	1,426	1,718	1,724	1,740	1,765	1,971	1,961	1,749	2,236	1,657
25%	436	549	534	496	575	598	525	465	631	528
사용비율	수급총액: 1000SEK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519,284	552,209	569,856	625,527	619,311	614,682	608,296	628,126	1,596,771	1,189,268
100%	495,853	524,926	542,210	597,374	591,046	581,315	573,282	595,735	1,512,301	1,127,950
75%	10,273	11,596	12,038	12,138	11,909	13,418	14,664	13,452	44,068	32,083
50%	11,701	13,883	13,824	14,381	14,488	17,904	18,489	17,243	35,872	25,406
25%	1,458	1,804	1,784	1,634	1,867	2,045	1,861	1,696	4,530	3,828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음.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 임신급여(graviditetspenning) 수급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barn-och-familj/statistik-inom-omradet-barn-och-familj---graviditetspenning.(인출일: 2023. 8. 20.).

다) 자녀양육비(underhållsbidrag) 및 자녀양육비 지원(underhållsstöd)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부의 결정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사회보험청에서는 이혼한 부모 모두가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혼 후 자녀양육비(underhållsbidrag) 지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자녀양육비(underhållsbidrag) 재원 마련 및 지급은 그 자체로는 해당 부모들의 책임영역으로 사회보험청은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underhållsbidrag)가 예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녀양육비 지원(underhållsstö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둘 중 한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에,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만약 자녀양육비(underhållsbidrag)가 합의한 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자녀양육비 전액 혹은 일부액 미지급, 지급 불능이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는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underhållsstöd)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2023년 기준 아동이 7세까지는 월 SEK1,673(20만원 상당), 7세부터 15세까지는 월 SEK1,823(22만원 상당), 그리고 15세 이후부터는 월 SEK 2,223(27만원 상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자녀양육비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책정된 지원금의 전액이 지원되며,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되 지급하는 금액이 상기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이 지원된다. 배우자 없이 아동을 출산한 경우(정자기증을 받아 출산한 경우 등)와 같은 한부모 가정도 상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위에 책정된 금액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Ⅲ-3-9〉은 지난 10년간 성별 연령대별 이혼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이혼은 40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 아동 부모의 주를 이루는 20대와 30대에서도 상당수의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보면, 자녀양육비 지원(underhållsstöd)제도는 영유아 발달이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변화로부터 받게 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Ⅲ-3-9〉 지난 10년간 스웨덴 성별 연령대별 이혼인구

연령대	성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9세	남	2077	1900	1739	1547	1461	1436	1364	1260	1054	818
	여	3710	3436	3126	2879	2741	2759	2688	2531	1998	1656
30-39세	남	6395	6230	5727	5546	5642	5692	5986	5973	5510	4762
	여	7487	7245	6910	6737	6882	7127	7307	7417	6871	6063
40-49세	남	8196	7966	7626	7328	7152	7266	7476	7682	6989	6314
	여	8427	8229	7602	7462	7311	7495	7737	7879	7296	6551
50-59세	남	5048	4897	4827	4913	4865	5112	5130	5252	5006	4817
	여	3895	3866	3866	3852	3875	3979	4149	4253	4063	4045
60세 이상	남	2630	2651	2535	2573	2606	2710	2817	2910	2775	2881
	여	1479	1418	1427	1480	1436	1598	1609	1670	1648	1718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통계청(www.scb.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으며, 이성간 커플의 이혼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자료: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성별 연령대별 이혼인구,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BE__BE0101__BE0101L/CivilstandTypPar/(인출일: 2023. 8. 20.)

〈표 Ⅲ-3-10〉에 따르면 0~4세 아동 중 약 매년 20,000에서 30,000명의 아동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자녀양육비 지원(underhållsstöd)을 지급받은 인원의 18%는 남성, 82%는 여성이었다.

〈표 Ⅲ-3-10〉 자녀양육비 지원(underhållsstöd) 수혜 아동 수

연령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0-4	29,499	30,685	30,503	28,916	26,965	23,874	22,623	21,742	20,691	19,023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으며, 해당연도의 12월에 수급받은 인원수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자녀양육비 지원 수혜 아동수,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barn-och-familj/statistik-inom-omradet-barn-och-familj---underhallsstod(인출일: 2023. 8. 20.).

라) 아동가정 주거비 지원(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

사회보험청은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정에 아동가정 주거비지원(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을 하고 있다. 아동가정 주거비지원(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자녀 수, 자녀와

동거 여부, 주거비용, 주택크기, 가구소득 등을 보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험청은 주거비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주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7일경에 결정된 지원금액만큼을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지원신청은 1년마다 재신청해야 하며,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주거상황이나 소득수준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사회보험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청은 국세청(skatteverket)과 연계하여 주거비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이 대상자가 보고한 것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과지급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환수한다.

월별 최대 지급액수는 한자녀 가정의 경우 SEK3,400(42만원 상당), 두자녀 가정의 경우 SEK4,200(52만원 상당), 그리고 세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SEK5,200(64만원 상당)이다. 〈표 Ⅲ-3-11〉는 지난 10년간 아동가정 주거비지원(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을 받은 가구 수와 가구별 평균 수급액수를 나타낸다. 지난 10여년간 큰 변동 없이 매년 17~18만 가구가 평균 연간 SEK25,600(306만원 상당) 정도의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11〉 아동가정 주거비지원(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 수급 가구수 및 가구별 평균 수급 금액 (SEK)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수	180,912	186,726	188,083	183,070	179,868	176,874	173,685	174,894	168,478	153,855
평균 수급액	23,500	25,323	25,187	25,067	25,866	25,896	28,564	26,319	25,482	24,976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다. 원자료는 수급액 총액 자료이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급액 총액을 수급가구수로 나누어 가구당 평균수급액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성인이 되기 전 자녀가 있는 가정 전체에 대한 자료로 영유아 가정에 대한 별도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아동가정 주거비지원 수급 가구수 및 수급총액,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bob-mottagare-belopp-ar.(인출일: 2023. 8. 20.).

〈표 Ⅲ-3-12〉 스웨덴 현금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현금지원			
	아동수당	임신급여	자녀양육비 지원	아동가정 주거비지원
도입연도 (최초지급)	1948	2011[78]	1996	1997[79]
지원 대상	모든 아동(16세 미만)	일부 임산부	일부 이혼가정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
지원 내용	아동수당지급	임신기간 근로환경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유급휴가 제공	이혼 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청에서 대리지급	주거비 지원
근거법	아동수당법 Lag (1947:529) om allmänna barnbidrag	사회보험법[80] Socialförsäkringsbalk (2010:110)	자녀양육비지원법 Lag (1996:1030) om underhållsstöd	주거비 지원법 Lag (1993:737) om bostadsbidrag
주무부처	사회보험청			
전달체계	사회보험청에서 수혜자에게 직접지급			

78) 전신인 임산부급여(havandeskapspenning)는 1980년부터 시행
79) 1930년대 중반에3자녀 이상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었으나 현재의 형태를 이룬 것은 1997년임
80) 직무수행 위험요소와 관련해서는 근로환경법[Arbetsmiljölag (1977:1160)]에 근거

3) 시간 지원

여기에서 소개할 제도들은 모두 부모가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점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제도들을 시간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 소개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에는 부모가 영아를 보살피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 동안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도 항상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 제도들은 현금 지원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81]

가)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 및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1) 시간지원: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의 사용일수는 한 아동 당 총 480일이 주어진다. 산모의 경우 출산예정일의 60일 전부터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의 사용이 가능하며, 아동이 12세가 되는 날까지, 혹은 아동이 5학년을 마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480일 중 384일은 아동이 4세가 되는 생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따라서 아동이 4세가 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는 최대 96일이다.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 일수도 늘어나는게 되는데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의 경우 각각 660, 840, 1020일의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가 주어진다.

휴가는 1일보다 더 적은 단위로 분할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임의 분할은 불가능하며 현재 가능한 것은 75%, 50%, 25%, 그리고 12.5%이다. 또한 사용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연간 3회에 거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의 협의를 거쳐 3회 이상 분할 사용하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김연진, 2020).

한 아동 출산을 기준으로 양 부모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각 부모에게 총 휴가일수인 480일의 절반인 240일이 휴가사용 가능일수로 주어진다(단,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480일을 전부 사용한다). 그 중 90일은 다른 부모에게 양도 불가능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이며, 나머지 150일은 다른 부모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아동이 2016년 혹은 그 이후에

81) 앞의 현금지원에서 소개된 제도들은 부모가 영아와 지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현금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소개하는 시간 지원 제도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동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총 휴가일수는 240일로 같았으나 다른 부모에게 양도 불가능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60일, 양도 가능한 휴가일수는 180일이었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은 남녀가 부모휴가를 더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3-13〉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 사용 및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수급 현황

성별	인원(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	416,476	424,591	435,183	447,233	467,240	479,910	479,259	462,538	445,487	437,479
남	340,246	344,658	355,383	370,220	390,350	408,380	411,497	394,511	378,104	374,507
성별	일수(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	92.9	91.8	90.2	88.3	86.9	84.2	82.5	80.6	79.6	78.0
남	37.4	38.3	39.2	39.6	41.0	41.6	41.2	40.6	39.4	39.5
비율	71.3%	70.5%	69.7%	69.1%	67.9%	66.9%	66.7%	66.5%	66.9%	66.4%
성별	수급액(SEK)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	45,128	44,284	43,929	44,099	43,464	43,446	44,075	45,017	46,824	48,048
남	24,019	24,513	25,192	25,762	26,704	27,514	28,214	28,583	29,030	30,722
비율	65.3%	64.4%	63.6%	63.1%	61.9%	61.2%	61.0%	61.2%	61.7%	61.0%

주: 1) 상기자료는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음. 위 표에 나타난 성별은 아동의 성별이 아닌 사용/수급자인 부모의 성별을 나타냄.
2) 비율은 해당연도의 전체사용인원 중 여성의 비율, 전체수급액 중 여성수급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부모휴가 사용 및 부모휴가급여 수급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fp-antal-mottagare-nettodagar-belopp. (인출일: 2023. 8. 20.).

영아기의 부모휴가 이용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아동이 1세가 될 때까지는 양 부모가 동시에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블데이(dubbeldagar)라고 불리며 최대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82]

〈표 Ⅲ-3-14〉에는 지난 9년간 부모가 더블데이(dubbeldagar)를 사용한 적이 있는 아동의 수와 더블데이(dubbeldagar)로 사용된 총 부모휴가일수가 제시되어 있다. 더블데이(dubbeldagar) 사용일수는 부모 총합 사용 일수이다. 따라서 이를 2로 나눈 후 아동 수로 나누면 한 아동이 양 부모와 동시에 집에 함께 있었던 평균 일수를 구할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38,560명의 아동의 부모가 총 913,313일의 더블데이(dubbeldagar)를 사용해서 평균 한 아동이 양 부모와 11.8일간 동시에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14〉 더블데이(dubbeldagar) 사용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동수	33,716	35,423	27,666	36,777	35,487	38,121	35,346	35,980	38,560
더블데이 사용일수	828,134	842,001	879,048	830,968	805,387	879,289	825,064	852,714	913,313
1인당 평균	12.3	11.9	11.7	11.3	11.3	11.5	11.7	11.8	11.8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83]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음.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더블데이 사용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fp-dubbeldagar-ar-lan.(인출일: 2023. 8. 20.).

(2) 소득보전: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상기한 부모휴가 사용 기간의 근로 중단 및 이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이다.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의 지급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속적인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가 상병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의 수입을 보전해주

82) 만약 30일 전부를 사용한다면 이 기간 부모 각각에서 동시에 30일의 휴가일수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한 아동에게 주어진 총 480일의 부모휴가 일수 중 60일이 이 기간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83)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fp-dubbeldagar-ar-lan

는 상병급여(sjukpenning)로서 이를 산출하는 방식이 체계화 되어 있다.[84] 여타의 다른 수입보전을 하는 다른 복지제도들도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상병휴가의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는 총 480일의 부모휴가(föräldraledighet) 기간 중 390일간은 소득에 비례한 정률급여로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90일간은 일괄적으로 하루 SEK180(2만1천원 상당)을 지급받게 된다(정액급여).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 출산시에는 정률급여일수는 각각 480일, 660일, 840일에 해당하고 정액급여 일수는 일괄적으로 180일에 해당한다.

정률급여 기간에 받는 실제 지급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그 지급수준은 크게는 상기의 상병급여(sjukpenning)제도를 따른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갖춘 부모는 상병급여 수준에 준하는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på sjukpenningnivå)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하루 SEK250(3만원 상당), 월지급액으로 환산시 대략 SEK7,500(90만원 상당)을 지급받게 된다.

상병급여 수준에 준하는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på sjukpenningnivå)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상병급여(sjukpenning)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 조건은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괄적 최저 지급액(SEK250)이 아닌 이전 소득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상병급여 수준에 준하는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på sjukpenningnivå)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84) 상병급여(sjukpenning) 산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은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이다. 이는 여러 사정으로 복지제도 수혜자의 줄어든 수입을 보전해 줄 때 그 수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수입이 줄어들기 이전까지의 수입 수준 및 수입 지속성에 기초하고 있다(개괄적으로 수입감소 이전 1년의 수입수준이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복지혜택 수혜자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상병급여근거수입(SGI)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받게 되고,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보다는 적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금액을 수급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상병휴가의 경우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에 기초하여 수입감소보전을 받기 위한 조건은 수입 금액의 측면에서 연간 SEK12,600(150만원 상당)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기간의 측면에서 6개월 연속으로 근무했거나 혹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부의 기간을 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의 이전 수입을 근간으로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을 산출하고 이의 80여 퍼센트(정확히는 77.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은 상한선이 존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상병급여(sjukpenning)는 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데, 이 상한선은 2023년 현재 연봉기준으로 SEK525,000(6,300만원 상당)이다.

(1)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산예정일 전 연속으로 240일 이상의 근무를 통해 SEK85,000(1,000만원 상당)이상의 연수입을 올린 경우
(2) 구직자의 경우 실업 전 6개월간의 취업 경력이 있고, 실직 후 일주일내로 실업청(arbetsförmedlingen)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 주식/유한회사의 대표로써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면서 연소득 SEK117,590(1400만원 상당)이상인 경우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계소득이 있는 경우(다만 사업 시작 36개월 미만의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소득이 적더라도 통계청(statistikmyndigheten)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수준의 업무, 교육, 경력 수준의 인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는다)
(5) 학생이면서 학업시작전에 취업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마지막 월급을 기반으로 수급기준이 정해짐)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의 상한선은 상병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부모들이 수급하게 되는 최대금액은 연봉기준으로 SEK525,000(6,300만원 상당)의 80여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면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수급받게 되는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의 80여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 이외에도, 직업군에 따라 단체협약에 따라 직장으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에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수급받는 80%에 직장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0 퍼센트를 수급받아 실제로는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의 90여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수급받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지원의 규모는 직업군이나 직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나) 10일휴가(10-dagar)

(1) 시간 지원

아동을 직접 출산하지 않는 부모는 신생아의 출산과 연계하여 10일휴가(10-dagar)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신생아의 부가 사용하도

록 하고 있으나, 부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단독출산의 경우에는 타인이 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기도 한다. 10일휴가(10-dagar)는 신생아가 출생 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이 지나기 전에의 기간에만 사용 가능하다.

(2) 소득보전

10일휴가(10-dagar)는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보전 수준은 상병급여 수준에 준하는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på sjukpenningnivå)와 동일하게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의 80여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휴가 사용 첫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출산인의 배우자 등록이 확인되면 (법적 혼인한 부부의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등록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우자 자격을 국세청(skatteverket)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됨) 그로부터 대체로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급해당인에게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한다. 아래의 〈표 Ⅱ-3-15〉는 지난 10년간 10일휴가(10-dagar)를 사용한 인원, 평균 1인당 사용한 휴가일수 및 소득보전 액수를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평균 8만 7천여명의인원이 10일 전부를 사용하면서 SEK9,775(117만원 상당)을 수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15〉 10일휴가(10-dagar)를 사용한 인원 및 1인당 평균 사용 일수와 수급액 (SEK)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83,277	86,284	86,001	88,416	88,203	89,360	87,090	8,7653	8,8040	85,217
일수	9.7	10.0	9.9	9.8	9.8	9.8	9.8	9.8	9.8	9.8
수급액	9,153	9,382	9,399	9,463	9,581	9,765	10,009	10,176	10,346	10,483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다. 원자료에는 휴가사용 총일수와 수급액 총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을 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사용 일수와 수급액을 나타내었다.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10일휴가 사용 총일수 및 수급액 총액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tfp-antal-mottagare-belopp/.(인출일: 2023. 8. 20.).

다) 아동돌봄휴가

(1) 시간지원

아동의 부모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아동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아동이 질병이나 감염으로 인해 보육/교육기관에 등원/등교할 수 없는 경우
(2) 아동을 의료진료시설로 데려가는 경우
(3) 주양육자가 아파서 아동을 본인이 돌봐야 하는 경우
(4) 의료제공자가 개설한 아동돌봄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한 아동당 120일간의 아동돌봄휴가(vab)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연령이 생후 8개월부터 12세에 해당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이 생후 8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여타의 이유로 8개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정규돌봄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기간에는 아동돌봄휴가(vab)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명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아동돌봄휴가(vab) 사용이 가능하다. 아동돌봄휴가(vab)는 7일까지는 특별한 증빙 없이 사용가능하나 연속 7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발급하는 증빙이 필요하다.

(2) 소득보전

아동돌봄휴가(vab)는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하며, 소득보전 수준은 상병급여 수준에 준하는 부모휴가급여(föräldrapenning på sjukpenningnivå)와 동일하게 상병급여근거수입(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의 80여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휴가 사용 첫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로부터 대체로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급해당인에게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한다. 아래의 〈표 Ⅲ-3-16〉는 지난 10년간 아동돌봄휴가(vab)를 사용한 인원, 성비, 평균 1인당 사용한 휴가일수 및 소득보전 액수를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평균 83만여 명의 인원이 8.3일의 아동돌봄휴가(vab)를 사용하면서 SEK7,836(94만원 상당)을 수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용

인원 중 대략 62퍼센트가 여성이었다.

〈표 Ⅲ-3-16〉 아동돌봄휴가(vab)를 사용한 인원, 성비 및 1인당 평균 사용 일수와 수급액 (SEK)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747,083	757,280	777,701	811,549	836,553	865,761	876,900	891,212	854,860	908,480
성비	62.8	62.5	61.9	61.7	61.6	61.6	61.5	60.8	60.3	60.9
일수	7.7	7.8	7.8	7.8	7.8	8.0	7.6	9.3	9.8	9.4
수급액	6,730	6,890	7,011	7,033	7,233	7,568	7,378	9,152	9,772	9,597

주: 상기자료는 스웨덴 사회보험청(www.forsakringskassan.se)[85]에서 2023년 8월에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하였다. 원자료에는 휴가사용 총일수와 수급액 총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을 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사용 일수와 수급액을 나타내었다. 성비는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아동돌봄휴가 사용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tfp-antal-mottagare-belopp/.(인출일: 2023. 8. 20.).

85)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tfp-antal-mottagare-belopp/

〈표 Ⅲ-3-17〉 스웨덴 시간 지원 범주의 영아 양육지원 요약

구분	영아 대상 시간 지원	영아가 대상에 포함된 시간 지원	
	10일휴가	부모휴가 및 부모휴가급여	아동돌봄휴가
도입연도 (최초지급)	1980	1974	1974
지원 대상	산모의 배우자	아동의 부모(출산예정일 60일 전~12세)	아동의 부모(생후 8개월~12세)
지원 내용	출산과 연계한 10일간의 유급휴가	480일의 유급휴가 (384일은 4세 생일까지 사용)	아동의 병간호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유급휴가
근거법	사회보험법 Socialförsäkringsbalk (2010:110)	부모휴가법 Föräldraledighetslag (1995:584)	아동돌봄휴가권리법 Lag (1978:410) om rätt till ledighet för vård av barn, m.m.
주무부처	사회보험청		
전달체계	사회보험청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		
비고: 타사업 중복성	푀르스콜라와 중복사용 불가		

Ⅳ

영아 양육실태 분석

01 영아 가구의 특성
02 영아 가구의 양육 실태
03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이용 계획
04 소결

Ⅳ. 영아 양육실태 분석

제4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영아 부모 대상 조사의 응답 가구의 특성과 영아 양육실태를 주양육자 및 보조양육자, 영아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부모의 직접돌봄 실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영아 가구의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응답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 가구의 거주지역은 중소도시 45.1%, 대도시 39.4%, 읍/면지역 15.6% 순이었다. 영아인 막내자녀 나이는 연령별로 비슷했는데, 만2세가 약간 더 많았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61.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맞벌이가 56.4%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700만원 미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미만은 35.7%, 700만원 미만은 21.8% 순이었다.

〈표 Ⅳ-1-1〉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전체	100.0(1,021)
지역	
대도시	39.4(402)
중소도시	45.1(460)
읍/면	15.6(15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31.0(317)
만1세	33.4(341)
만2세	35.6(363)
자녀 수	
1명	61.5(628)

구분	비율
2명 이상	38.5(393)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56.4(576)
맞벌이 아님	43.6(445)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35.7(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42.4(433)
700만원 이상	21.8(2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영아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는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인 경우가 51.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모는 35.7%, 부는 77.7%로 차이가 있었다.

모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미취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40시간 미만과 40시간 이상이 각각 26.0%, 22.7%로 유사하였으며, 부는 40시간 이상이 62.6%로 절반 이상이었다. 종사상 지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는 상용근로자인 경우가 42.0%, 부는 77.6%였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어머니에 대한 내용만 조사하였는데, 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00~500만원 미만이 25.3%, 500만원 이상은 14.4% 순이었다.

〈표 Ⅳ-1-2〉 영아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모	부
전체	100.0(1,021)	100.0(1,000)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35.7(365)	77.7(777)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12.9(132)	19.9(199)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51.3(524)	2.4(24)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51.3(524)	2.4(24)
40시간 미만	26.0(265)	33.0(337)
40시간 이상	22.7(232)	62.6(639)
본인 종사상 지위		

구분	모	부
상용근로자	42.0(429)	77.6(776)
임시/일용근로자	3.1(32)	2.8(28)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종사자	11.9(122)	18.0(180)
경제활동안함/휴학	42.9(438)	1.6(16)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25.0(255)	-
300만원 미만	35.4(361)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5.3(258)	-
500만원 이상	14.4(147)	-

주: 모의 응답에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21명을 제외하고 1,000명에 대한 부의 결과 비율을 산정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2. 영아 가구의 양육 실태

가. 양육 형태와 양육 비용

막내자녀 주양육자는 어린이집이 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엄마가 43.3%,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6.3%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막내 자녀 나이가 만0세일 때는 엄마가 주양육자라는 응답이 75.4%로 절반 이상으로 높았으나, 만1세와 만2세는 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각각 45.2%, 76.0%이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일 때 주양육자가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5%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의 35.3%로 차이가 큰 편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일 때 주 양육자가 엄마라는 응답이 54.5%인 반면, 400만원 이상 가구는 엄마가 주양육자라는 응답이 30%대로 차이가 있었다.

〈표 Ⅳ-2-1〉 막내자녀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조부모 또는 친인척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어린이 집	계(수)
전체	43.8	1.3	6.3	0.8	2.3	0.1	45.5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5.4	2.2	8.2	1.3	1.9	0.0	11.0	100.0(317)
만1세	44.0	1.5	6.7	0.6	2.1	0.0	45.2	100.0(341)

구분	엄마	아빠	조부모 또는 친인척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어린이 집	계(수)
만2세	16.0	0.3	4.1	0.6	2.8	0.3	76.0	100.0(363)
$X^2(df)$				307.0(1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0.0	0.9	10.6	1.2	3.6	0.2	53.5	100.0(576)
맞벌이 아님	61.6	1.8	0.7	0.2	0.4	0.0	35.3	100.0(445)
$X^2(df)$				131.7(6)***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54.5	2.2	1.1	0.5	2.2	0.0	39.5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39.0	0.9	8.1	0.7	1.2	0.0	50.1	100.0(433)
700만원 이상	35.4	0.4	11.2	1.3	4.5	0.4	46.6	100.0(223)
$X^2(df)$				63.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현재 주양육자와 희망 주양육자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8.2%로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막내 자녀 나이나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Ⅳ-2-2〉 현재 주양육자와 희망 주양육자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88.2	11.8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86.1	13.9	100.0(317)
만1세	88.0	12.0	100.0(341)
만2세	90.4	9.6	100.0(363)
$X^2(df)$		3.0(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88.0	12.0	100.0(576)
맞벌이 아님	88.5	11.5	100.0(445)
$X^2(df)$		0.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영아인 막내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보조양육자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40.2%이며,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및 혈연'이라는 응답이 55.3%로 절반 이상이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맞벌이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3〉 막내 자녀 보조양육자(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가족 및 혈연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기타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음	(수)
전체	55.3	5.2	1.9	2.0	0.7	40.2	(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61.5	7.3	3.5	0.9	0.3	33.1	(317)
만1세	54.5	5.9	1.5	1.5	0.9	41.1	(341)
만2세	50.7	2.8	0.8	3.3	0.8	45.5	(363)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5.3	5.9	2.3	1.7	0.7	30.4	(576)
맞벌이 아님	42.5	4.3	1.3	2.2	0.7	52.8	(445)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7.9	5.2	0.8	1.1	1.4	47.1	(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58.0	4.6	2.3	1.6	0.2	38.3	(433)
700만원 이상	62.3	6.3	2.7	4.0	0.4	32.3	(223)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막내 자녀의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는 빈도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31.4%, '1주일에 2~3회 이하'가 23.7%, '정해진 바 없이 필요할 때'라는 응답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나이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인 경우에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38.2%,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정해진 바 없이 필요할 때' 라는 응답이 27.6%, '1주일에 2~3회 이하'가 26.2%로 비슷하게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근로형태별로는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거의 매일'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42.2%, 32.1%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미취업 상태에서는 '1주일에 2-3회 이하와 '정해진 바 없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26.3%, 24.8%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본인 1일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미취업의 경우 '정해진 바 없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이외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 비율이 45.1%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표 Ⅳ-2-4〉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는 빈도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1주일에 2~3회 이하	1주일에 1회 이하	2주일에 1회 이하	1달에 1회 이하	정해진 바 없이 필요할 때	계(수)
전체	31.4	23.7	13.1	4.3	7.4	20.1	100.0(61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5.0	26.4	16.0	5.2	5.2	22.2	100.0(212)
만1세	32.3	23.4	11.9	4.0	10.0	18.4	100.0(201)
만2세	37.4	21.2	11.1	3.5	7.1	19.7	100.0(198)
$X^2(df)$	13.1(10)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8.2	22.4	12.0	3.7	7.5	16.2	100.0(401)
맞벌이 아님	18.6	26.2	15.2	5.2	7.1	27.6	100.0(210)
$X^2(df)$	28.4(5)***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42.2	19.9	10.9	3.5	7.8	15.6	100.0(256)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32.1	27.2	11.1	4.9	6.2	18.5	100.0(81)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21.2	26.3	15.7	4.7	7.3	24.8	100.0(274)
$X^2(df)$	30.4(10)**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21.2	26.3	15.7	4.7	7.3	24.8	100.0(274)
40시간 미만	34.7	27.2	9.8	4.0	5.2	19.1	100.0(173)
40시간 이상	45.1	15.9	12.2	3.7	9.8	13.4	100.0(164)
$X^2(df)$	37.8(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영아를 주양육자로서 기관에 맡길 때 지출 비용과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합쳐서 영아의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을 살펴보았다. 비용 지출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10만원 미만'이 1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30만원 미만' 13.9%, '30~50만원 미만' 11.5% 순이었다.

막내 자녀 연령별로는 자녀 연령이 만0세일 때는 '비용 지출 없다'는 응답이 51.7%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 평균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조양육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 지출 없다'는 응답이 44.6%, 그 다음은 '10만원 미만'이 22.2%로 상대적으로 월 평균 지불 비용이 적은 편이었다.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에도 '비용 지출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보다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월평균 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 '비용 지출 없다'는 응답이 47.6%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맞벌이인 경우가 월평균 비용이 10만원 이상부터 전반적으로 맞벌이 아닌 경우보다 높았다.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미취업중인 경우 '비용 지출 없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든 이상이든 상관없이 월 평균 비용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미만에서는 '비용 지출이 없다'는 응답이 42.7%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월평균 지불 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16.6%로 다른 소득수준의 가구들이 10%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었다.

〈표 Ⅳ-2-5〉 영아의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비용 지출 없음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36.9	19.3	13.9	11.5	6.9	4.2	7.3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구분	비용 지출 없음	10만원 미만	10~ 30만원 미만	30~ 50만원 미만	50~ 70만원 미만	70~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계(수)
만0세	51.7	10.4	9.1	10.4	5.4	6.3	6.6	100.0(317)
만1세	39.9	17.6	12.3	11.4	8.2	3.5	7.0	100.0(341)
만2세	21.2	28.7	19.6	12.4	6.9	3.0	8.3	100.0(363)
$X^2(df)$				96.1(12)***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31.8	17.3	13.1	13.6	8.2	6.1	10.0	100.0(611)
없음	44.6	22.2	15.1	8.3	4.9	1.5	3.4	100.0(410)
$X^2(df)$				51.3(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8.6	17.0	14.8	12.5	9.7	5.9	11.5	100.0(576)
맞벌이 아님	47.6	22.2	12.8	10.1	3.1	2.0	2.0	100.0(445)
$X^2(df)$				85.3(6)***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9.4	20.4	11.5	9.5	3.8	2.1	3.2	100.0(524)
40시간 미만	25.7	18.1	21.1	14.0	8.3	4.5	8.3	100.0(265)
40시간 이상	21.6	18.1	11.2	12.9	12.1	8.6	15.5	100.0(232)
$X^2(df)$				130.7(12)***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2.7	23.8	13.7	11.2	4.1	3.3	1.1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35.1	19.2	15.7	11.1	7.4	3.7	7.9	100.0(433)
700만원 이상	30.9	12.1	10.8	12.6	10.3	6.7	16.6	100.0(223)
$X^2(df)$				76.6(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양육자와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29.8%,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16.8%이었다.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과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9.5%, 8.2%로 10% 미만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읍면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은 반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정에서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맞벌이가 아닌 경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보다는 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6〉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계(수)	평균(점)
전체	8.2	16.8	35.7	29.8	9.5	100.0(644)	3.2
지역 규모							
대도시	5.6	17.7	36.1	33.8	6.8	100.0(266)	3.2
중소도시	10.3	13.5	35.1	28.4	12.8	100.0(282)	3.2
읍면지역	9.4	24.0	36.5	22.9	7.3	100.0(96)	3.0
$X^2(df)/F$			17.7(8)*				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4.6	18.3	26.1	37.9	13.1	100.0(153)	3.4
만1세	8.3	14.6	36.6	29.8	10.7	100.0(205)	3.2
만2세	10.1	17.5	40.2	25.5	6.6	100.0(286)	3.0
$X^2(df)/F$			20.2(8)*				5.8**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7.3	14.8	33.3	33.3	11.2	100.0(411)	3.3
맞벌이 아님	9.9	20.2	39.9	23.6	6.4	100.0(233)	3.0
$X^2(df)/t$			13.8(4)**				3.4**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함	9.4	17.4	39.7	26.3	7.1	100.0(448)	3.0
이용하지 않음	5.6	15.3	26.5	37.8	14.8	100.0(196)	3.4
$X^2(df)/t$			23.8(4)***				-3.9***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2	15.8	44.0	24.4	9.6	100.0(209)	3.2
400~700만원 미만	10.0	18.5	30.2	31.0	10.3	100.0(281)	3.1
700만원 이상	7.8	14.9	34.4	35.1	7.8	100.0(154)	3.2
$X^2(df)/F$			13.8(8)				0.2

주: 평균은 '매우 부담스럽다=1'~'전혀 부담스럽지 않다=5'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스러워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부모의 직접 돌봄

영아 부모가 주중 평일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은 모의 경우 평균 9.2시간, 부의 경우 3.0시간으로 어머니가 돌보는 시간이 아버지의 3배 이상 길었다. 모의 경우 돌봄시간 비율은 분포가 비슷하였는데, 5시간 이하가 2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8시간 이하인 경우가 26.6% 순이었으며, 하루 중 13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돌본다는 경우도 23.7%에 달했다. 반면 부의 경우에는 주중 하루 2시간 초과~4시간 이하로 돌본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고, 1시간 이하로 돌본다는 응답도 27.0%로 높게 응답되었다.

〈표 Ⅳ-2-7〉 주중 평일 영아 부모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단위: %, 시간

모					부				
5시간 이하	5시간 초과 ~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평균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평균 (시간)
28.1	26.6	21.5	23.7	9.2	27.0	22.6	30.2	20.2	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그림 Ⅳ-2-1] 주중 평일 영아 부모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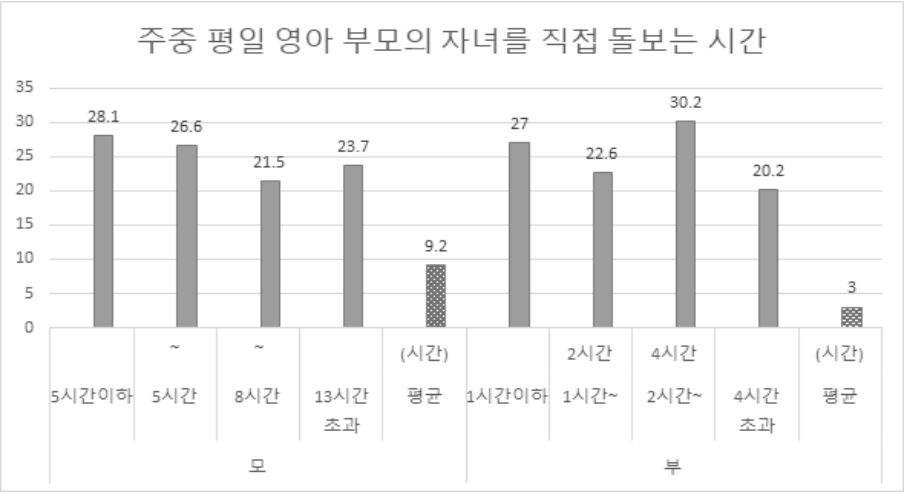

주: 〈표 Ⅳ-2-7〉을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주중 평일 어머니가 영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시간 이하가 42.4%로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13시간 초과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아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어머니는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인(어머니)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미취업 상태에서는 영아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13시간 초과인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40시간 이상은 5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는데,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에서는 5시간 초과~8시간 이하와 5시간 이하가 각각 37.0%, 35.8%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에서는 5시간 이하인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표 Ⅳ-2-8〉 모의 영아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중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5시간 이하	5시간 초과~8시간 이하	8시간초과~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계(수)	평균(시간)
전체	28.1	26.6	21.5	23.7	100.0(1,021)	9.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42.4	25.9	16.3	15.5	100.0(576)	7.7
맞벌이 아님	9.7	27.6	28.3	34.4	100.0(445)	11.2
$X^2(df)/t$		150.5(3)***				−11.3***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7.4	24.2	31.5	36.8	100.0(524)	11.7
40시간 미만	35.8	37.0	14.0	13.2	100.0(265)	7.5
40시간 이상	65.9	20.3	7.8	6.0	100.0(232)	5.6
$X^2(df)/F$		351.3(6)***				188.2***(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부의 경우에는 주중 평일 영아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2시간 초과~4시간 이하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응답은 20%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영아의 아버지가 주중 평일 영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막내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2시간초과~4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다. 다만, 아버지의 영아 자녀 돌봄 시간은 자

녀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만 2세일 때는 평균 시간이 2.7시간으로 다른 연령대의 3시간대에 비해 줄어들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 2시간 초과~4시간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평균 시간도 3.4시간인 반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1시간 이하가 33.3%, 평균시간은 2.6시간으로 맞벌이 가구의 아버지가 영아 자녀의 직접 돌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아버지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역할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등 성별역할분업이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아버지가 미취업일 상태일 때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평균 6.4시간, 4시간 초과인 경우가 54.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모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주중에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가구 월소득에 따라서는 부의 주중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구소득 중 여성의 기여 비중이 커질수록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Ⅳ-2-9〉 부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중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계(수)	평균 (시간)
전체	27.0	22.6	30.2	20.2	100.0(1,000)	3.0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3.1	21.5	30.4	25.0	100.0(312)	3.4
만1세	26.9	23.3	28.4	21.5	100.0(335)	3.0
만2세	30.6	22.9	31.7	14.7	100.0(353)	2.7
$X^2(df)/F$		13.5(6)*				6.6**(a)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2.1	22.3	31.7	23.9	100.0(565)	3.4
맞벌이 아님	33.3	23.0	28.3	15.4	100.0(435)	2.6
$X^2(df)/t$		21.2(3)***				4.6***
부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20.8	4.2	20.8	54.2	100.0(24)	6.4

구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계(수)	평균 (시간)
40시간 미만	26.1	22.8	26.4	24.6	100.0(337)	3.2
40~46시간 미만	19.3	22.4	39.5	18.8	100.0(352)	3.2
46시간 이상	38.0	24.0	24.0	13.9	100.0(287)	2.4
$X^2(df)/F$		63.7(9)***				11.1***(a)
월평균 모의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34.4	21.6	30.8	13.2	100.0(250)	2.5
300만원 미만	23.4	22.9	31.1	22.6	100.0(354)	3.2
300~500만원 미만	25.5	24.3	30.3	19.9	100.0(251)	3.0
500만원 이상	25.5	20.7	26.9	26.9	100.0(145)	3.5
$X^2(df)/F$		18.7(9)*				5.4**(a)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7.5	19.8	29.2	23.5	100.0(353)	3.1
400~700만원 미만	27.8	23.4	31.8	17.1	100.0(428)	2.9
700만원 이상	24.7	25.6	28.8	21.0	100.0(219)	3.1
$X^2(df)/F$		7.4(6)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주말동안 영아 부모의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모는 12.7시간, 부는 8.3시간으로 어머니가 많았지만, 주중일 때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모의 경우에는 주중과 비슷하게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비중이 비슷하였는데, 16시간 초과라고 응답한 비율도 24.4%이었다. 반면, 부의 경우 3시간 초과~8시간 이하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비율이 적은 시간대는 12시간 초과로 21.7%로 주말에도 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2-10〉 영아 부모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말

단위: %, 시간

모					부				
9시간 이하	9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12시간 초과 ~16시간 이하	16시간 초과	평균 (시간)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12시간 초과	평균 (시간)
21.4	27.6	26.6	24.4	12.7	22.5	31.1	24.7	21.7	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모가 주말동안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 12시간대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맞벌이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비해 시간대별로 돌보는 시간의 비율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주말 돌봄 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86] 맞벌이가 모의 주말 양육참여 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주말동안 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에서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적극성을 띠어 양육참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감소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Ⅳ-2-11〉 모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9시간 이하	9시간 초과~12시간 이하	12시간 초과~16시간이하	16시간 초과	계(수)	평균(시간)
전체	21.4	27.6	26.6	24.4	100.0(1,021)	12.7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3.4	26.2	26.6	23.8	100.0(576)	12.5
맞벌이 아님	18.7	29.4	26.7	25.2	100.0(445)	12.9
$X^2(df)/t$		3.8(3)				-1.5
월평균 모의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9.2	27.1	27.8	25.9	100.0(255)	13.0
300만원 미만	18.3	25.8	30.7	25.2	100.0(361)	13.0
300~500만원 미만	24.4	28.3	26.0	21.3	100.0(258)	12.3
500만원 이상	27.2	32.0	15.6	25.2	100.0(147)	12.1
$X^2(df)/F$		17.7(9)*				2.9*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9.7	28.5	25.8	26.0	100.0(365)	12.9
400~700만원 미만	22.2	23.6	30.0	24.2	100.0(433)	12.8
700만원 이상	22.4	34.1	21.5	22.0	100.0(223)	12.3
$X^2(df)/F$		11.9(6)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주중 부모별 자녀 직접 돌봄 시간의 충분성 정도를 어머니에게 질문한 결과, 5점

86) 〈부표 Ⅳ-2-2〉 참조할 것.

평균 기준 모는 3.6점, 부는 2.3점으로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이 더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Ⅳ-2-12〉 주중 자녀 직접 돌봄 시간의 충분성 정도

단위 : %(명), 점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①+② 부족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④+⑤ 충분하다	계 (수)	평균 (점)
모	6.2	16.8	23.0	19.8	24.8	32.4	57.2	100.0(1,021)	3.6
부	27.7	35.1	62.8	20.3	12.8	4.1	16.9	100.0(1,000)	2.3

주: 1) 평균은 '매우 부족하다=1점'~'매우 충분하다=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2) 아버지 양육 참여의 충분성은 어머니가 평가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부의 경우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한 편)는 응답이 62.8%로 절반을 넘었으며, 모의 경우에는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한편)는 응답은 57.2%로 상반된 평가결과를 보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서도 평가했다는 점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Ⅳ-2-2] 주중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의 충분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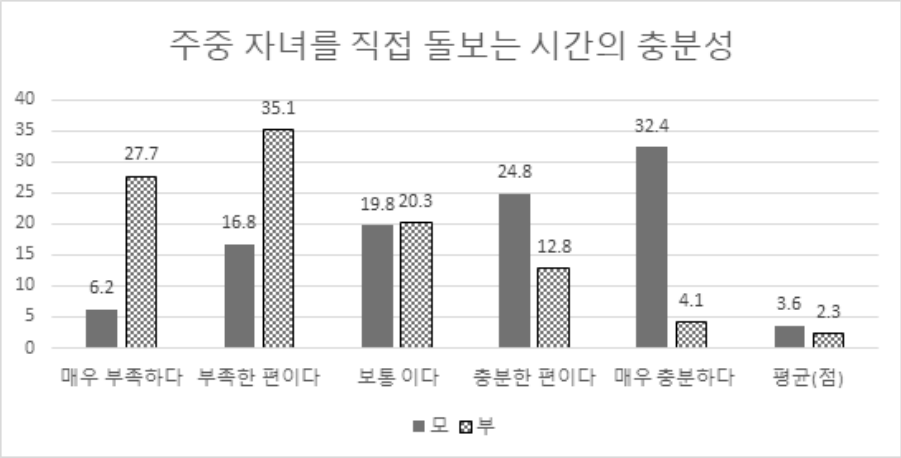

주: 〈표 Ⅳ-2-12〉을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3.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이용 계획

가. 어린이집 이용 실태

1) 어린이집 이용 여부

영아 자녀를 둔 응답가구 중 하루 기준 최소 3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54.4%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자녀연령, 맞벌이 여부 및 모(母)의 근로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만0세아는 16.1%에 불과하나, 만1세아는 55.7%, 만2세아는 86.8%로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맞벌이 가구는 62.3%로 외벌이 가구(44.3%)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근로는 주된 변인으로 파악된다. 즉, 어머니가 근로를 하지 않거나 휴직하여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38.7%와 43.1%로 평균 보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반면,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상인 모(母)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73.7%로 매우 높았다. 단, 모(母)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54.4%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로써 어린이집의 영아보육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물론이고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아의 경우도 만2세아 부터는 어린이집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1〉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4.5	45.5	100.0(1,021)
지역 규모			
대도시	55.7	44.3	100.0(402)
중소도시	53.0	47.0	100.0(460)
읍면지역	55.3	44.7	100.0(159)
$X^2(df)$		0.7(2)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6.1	83.9	100.0(317)
만1세	55.7	44.3	100.0(341)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만2세	86.8	13.2	100.0(363)
$X^2(df)$		341.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2.3	37.7	100.0(576)
맞벌이 아님	44.3	55.7	100.0(445)
$X^2(df)$		33.0(1)***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72.3	27.7	100.0(365)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67.4	32.6	100.0(132)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38.7	61.3	100.0(524)
$X^2(df)$		108.1(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38.7	61.3	100.0(524)
40시간 미만	68.7	31.3	100.0(265)
40시간 이상	73.7	26.3	100.0(232)
$X^2(df)$		108.5(2)***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43.1	56.9	100.0(255)
300만원 미만	60.7	39.3	100.0(361)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7.0	43.0	100.0(258)
500만원 이상	54.4	45.6	100.0(147)
$X^2(df)$		19.4(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8.2	51.8	100.0(365)
4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58.2	41.8	100.0(433)
700만원 이상	57.4	42.6	100.0(223)
$X^2(df)$		8.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 당초 희망했던 기관과 일치하는 비율은 59.7%에 그쳤다. 해당 비율은 자녀 연령이나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86.7%로 자녀수 1명인 가구(73.1%)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다자녀가구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87]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원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희망어린이집과의 일치율이 직장어린이집 90.9%, 법인·단체등어린이집 88.9%, 국공립어린이집 85.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을 희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1.0%에 그쳤다.

〈표 Ⅳ-3-2〉 현재 어린이집의 희망 어린이집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원하는 기관임	원하는 기관 아님	계(수)
전체	59.7	40.3	100.0(556)
지역 규모			
대도시	79.0	21.0	100.0(224)
중소도시	76.6	23.4	100.0(224)
읍면지역	84.1	15.9	100.0(88)
$X^2(df)$		2.2(2)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80.4	19.6	100.0(51)
만1세	77.4	22.6	100.0(190)
만2세	79.4	20.6	100.0(315)
$X^2(df)$		0.4(2)	
자녀 수			
1명	73.1	26.9	100.0(323)
2명 이상	86.7	13.3	100.0(233)
$X^2(df)$		15.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표 Ⅳ-3-3〉 현재 어린이집의 희망 어린이집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원하는 기관임	원하는 기관 아님	계(수)
전체	78.9	21.1	100.0(554)
재원 어린이집 유형			
민간	78.2	21.8	100.0(179)
국공립	85.5	14.5	100.0(166)
가정	71.0	29.0	100.0(155)
사회복지법인	73.9	26.1	100.0(23)

87)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 중 다자녀가구 관련 규정: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보건복지부, 2023c: 68)

구분	원하는 기관임	원하는 기관 아님	계(수)
직장	90.9	9.1	100.0(22)
법인·단체등	88.9	11.1	100.0(9)

주: '모름"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2) 어린이집 이용 행태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당 평균 이용일수, 평균 등·하원시각 및 보육 수요 충족 여부, 등원 방법 및 소요 시간을 조사하였다.

먼저 주당 이용 일수는 평균 5일이고, 4일 이하는 4.0%에 불과하여 영아자녀의 경우에도 주중(월~금)에 걸쳐 어린이집을 상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3-4〉 어린이집 주 평균 이용 일수

단위: %(명), 일

4일 이하	5일 이상	계(수)	평균(일)
4.0	96.0	100.0(556)	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다음으로 평일 기준으로 평균 등원시각은 오전 9시이고,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 이전이 30.0%, 오전 9시 30분 이후가 33.1%로 조사되었다. 오전 9시 이전의 등원 비율은 맞벌이 가구가 39.8%이고, 모(母)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모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모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각각 46.2%, 38.8%, 48.5%로 상대적으로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3-5〉 어린이집 등원시간

단위: %(명), 시, 분

구분	9:00 이전	9:00~ 9:30 이전	9:30 이후	계(수)	평균시각
전체	30.0	36.9	33.1	100.0(556)	9시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39.2	29.4	31.4	100.0(51)	8시 54분
만1세	29.5	38.4	32.1	100.0(190)	9시

구분	9:00 이전	9:00~ 9:30 이전	9:30 이후	계(수)	평균시각
만2세	28.9	37.1	34.0	100.0(315)	9시
$X^2(df)$		2.7(4)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9.8	34.3	25.9	100.0(359)	8시 54분
맞벌이 아님	12.2	41.6	46.2	100.0(197)	9시 18분
$X^2(df)$		50.1(2)***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46.2	36.4	17.4	100.0(264)	8시 48분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22.5	31.5	46.1	100.0(89)	9시 6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2.3	39.9	47.8	100.0(203)	9시 18분
$X^2(df)/F$		84.5(4)***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2.3	39.9	47.8	100.0(203)	9시 18분
40시간 미만	32.4	36.3	31.3	100.0(182)	9시
40시간 이상	48.5	33.9	17.5	100.0(171)	8시 42분
$X^2(df)$		67.9(4)***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5.5	36.4	48.2	100.0(110)	9시 18분
300만원 미만	33.8	38.4	27.9	100.0(219)	8시 54분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6	36.1	33.3	100.0(147)	9시
500만원 이상	38.8	35.0	26.3	100.0(80)	8시 54분
$X^2(df)$		21.6(6)**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8.2	41.5	40.3	100.0(176)	9시 12분
4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5.3	35.3	29.4	100.0(252)	8시 54분
700만원 이상	35.9	33.6	30.5	100.0(128)	9시
$X^2(df)$		17.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평일 기준으로 평균 하원시각은 오후 4시 30분이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오후 4시 30분 이전이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오후 4시 이전 23.4%, 오후 5시 30분 이후는 21.6%로 조사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오후 4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은 맞벌이가 아닌 경우 34.0%, 모(母)가 미취업 또는 휴직중

36.9%, 근로소득이 없는 모(母)에서 32.7%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오후 5시 30분 이후 하원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 31.8%, 모(母)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서 각각 37.9%와 43.9%로 높게 나타났다. 단, 모(母)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후 4시 이전의 하원 비율이 31.3%로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에서는 이른 하원 이후에 병행하여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0세아의 경우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률은 16.1%로 낮은 수준이나, 평균 하원시각은 오후 4시 30분으로 나타나서 실수요자 위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6〉 어린이집 하원시간

단위: %(명), 시,분

구분	16:00 이전	16:00~16:30 이전	16:30~17:30 이전	17:30 이후	계(수)	평균시각
전체	24.3	33.6	20.5	21.6	100.0(556)	16시 30분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3.5	33.3	15.7	27.5	100.0(51)	16시 30분
만1세	28.4	28.9	18.9	23.7	100.0(190)	16시 24분
만2세	21.9	36.5	22.2	19.4	100.0(315)	16시 30분
$X^2(df)$		7.3(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8.9	25.3	24.0	31.8	100.0(359)	16시 42분
맞벌이 아님	34.0	48.7	14.2	3.0	100.0(197)	15시 54분
$X^2(df)$		87.0(3)***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16.7	22.3	23.1	37.9	100.0(264)	16시 54분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18.0	37.1	30.3	14.6	100.0(89)	16시 24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36.9	46.8	12.8	3.4	100.0(203)	15시 54분
$X^2(df)$		118.3(6)***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36.9	46.8	12.8	3.4	100.0(203)	15시 54분
40시간 미만	17.0	33.0	29.1	20.9	100.0(182)	16시 36분
40시간 이상	17.0	18.7	20.5	43.9	100.0(171)	17시
$X^2(df)$		125.7(6)***				

구분	16:00 이전	16:00~16:30 이전	16:30~17:30 이전	17:30 이후	계(수)	평균시각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32.7	50.9	12.7	3.6	100.0(110)	16시
300만원 미만	18.3	29.2	26.9	25.6	100.0(219)	16시 42분
300~500만원 미만	23.1	32.0	18.4	26.5	100.0(147)	16시 30분
500만원 이상	31.3	25.0	17.5	26.3	100.0(80)	16시 24분
$X^2(df)$	50.0(9)***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6.7	44.3	18.2	10.8	100.0(176)	16시 12분
400~700만원 미만	21.4	29.4	22.2	27.0	100.0(252)	16시 36분
700만원 이상	26.6	27.3	20.3	25.8	100.0(128)	16시 30분
$X^2(df)$	25.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앞서 다룬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등원 및 하원시각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한 총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24분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시간은 0세 자녀에서 7시간 36분으로 1, 2세 대비 상대적으로 길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7시간 54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모(母)의 경우는 8시간 18분으로 평균보다 길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와 모(母)가 일하지 않는 경우는 어린이집 총 이용시간이 공히 평균 6시간 36분으로 나타나서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현행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조사 결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한다'고 응답이 88.1%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성에 대한 의견은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모(母)의 경우는 총 이용시간이 8시간 18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지만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4%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표 Ⅳ-3-7〉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충분성 여부

단위: %(명), 시간, 분

구분	어린이집 총 이용시간	충분성 여부		계(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7시간 24분	88.1	11.9	100.0(55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시간 36분	84.3	15.7	100.0(51)
만1세	7시간 24분	87.4	12.6	100.0(190)
만2세	7시간 24분	89.2	10.8	100.0(315)
$X^2(df)$		1.2(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7시간 54분	87.7	12.3	100.0(359)
맞벌이 아님	6시간 36분	88.8	11.2	100.0(197)
$X^2(df)$		0.1(1)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6시간 36분	87.7	12.3	100.0(203)
40시간 미만	7시간 36분	92.9	7.1	100.0(182)
40시간 이상	8시간 18분	83.6	16.4	100.0(171)
$X^2(df)$		7.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한편 어린이집의 등원하는 방식으로는 도보가 59.7%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40.3%) 보다 많았다.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편도로 10분 이내가 72%에 달하고, 20분을 초과하는 비율은 4.1%에 불과하였다.

〈표 Ⅳ-3-8〉 어린이집 등·하원에 걸리는 편도 시간

단위: %(명),

등·하원 방법		등·하원시간(편도)							계(수)
도보	차량 이용	5분 이내	5 ~ 10분 이내	10 ~ 15분 이내	15 ~ 20분 이내	20 ~ 25분 이내	25 ~ 30분 이내	30분 이상	
59.7	40.3	34.9	37.1	16.7	7.2	1.6	1.1	1.4	100.0(5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3) 연장보육 이용

본 연구를 위한 영아가구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 44.1%가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0세아의 연장보육 이용률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근로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58.2%, 모(母)가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각각 63.3%와 65.5%로 높게 나타난다. 모(母)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 미만에 비해 이용률이 낮아서 이들 가구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만 이용하고 연장보육 대신에 다른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400~700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연장보육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짐작된다.

〈표 Ⅳ-3-9〉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44.1	55.9	100.0(55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54.9	45.1	100.0(51)
만1세	45.3	54.7	100.0(190)
만2세	41.6	58.4	100.0(315)
$X^2(df)$		3.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58.2	41.8	100.0(359)
맞벌이 아님	18.3	81.7	100.0(197)
$X^2(df)$		82.3(1)***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63.3	36.7	100.0(264)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48.3	51.7	100.0(89)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7.2	82.8	100.0(203)
$X^2(df)$		99.4(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7.2	82.8	100.0(203)
40시간 미만	53.8	46.2	100.0(182)
40시간 이상	65.5	34.5	100.0(171)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X^2(df)$		98.2(2)***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9.1	80.9	100.0(110)
300만원 미만	52.5	47.5	100.0(21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7.6	52.4	100.0(147)
500만원 이상	48.8	51.3	100.0(80)
$X^2(df)$		35.6(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5.0	75.0	100.0(176)
4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55.2	44.8	100.0(252)
700만원 이상	48.4	51.6	100.0(128)
$X^2(df)$		39.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기관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52.1%로). 그 다음으로 '연장보육이 불필요한 경우"(37.3%)를 제외하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가 4.8%로 조사되었으며, 연장보육의 질에 대한 우려는 0.3%에 그쳤다. 장시간보육의 기피로 인해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60.0%, 모(母)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64.4%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로써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맞벌이가구 위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장시간보육의 기피로 인해 모(母)의 근로소득 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병행하여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또한 영아가구에서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장시간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정 내에서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는 결과이다.

〈표 Ⅳ-3-10〉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37.3	4.8	1.3	0.3	1.3	**52.1**	2.9	100.0(311)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9.3	2.7	0.7	0.7	2.7	60.0	4.0	100.0(15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맞벌이 아님	44.7	6.8	1.9	0.0	0.0	44.7	1.9	100.0(161)
$X^2(df)$	18.7(6)**(b)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5.2	6.5	1.8	0.0	0.6	44.0	1.8	100.0(168)
40시간 미만	28.6	3.6	1.2	0.0	2.4	59.5	4.8	100.0(84)
40시간 이상	27.1	1.7	0.0	1.7	1.7	64.4	3.4	100.0(59)
$X^2(df)$	22.0(12)*(b)							

주: ① 연장보육이 불필요해서, 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③ 영아반 연장반이 개설되지 않아서 ④ 서비스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 원하는 시간만큼 운영되지 않아서 **⑥ 아이를 기관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아서** ⑦ 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서비스 질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66.1%(평균 3.8점, 5점 만점)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하는 비율(매우 불만족+불만족)은 7.3%에 불과하였다.

〈표 Ⅳ-3-11〉 어린이집 연장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계(수)	평균(점)
1.6	5.7	7.3	26.5	40.0	26.1	66.1	100.0(245)	3.8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한다=1점'~'매우 만족한다=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자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장보육을 이용할 의향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부정 응답률은 26.1%로 조사되었다. 긍정 응답률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母)의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하 이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Ⅳ-3-12〉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시 연장보육 이용 의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다	없다	전혀 없다 + 없다	보통	있다	매우 있다	매우 있다+ 있다	계(수)	평균 (점)
전체	10.2	15.9	26.1	26.9	35.5	11.4	46.9	100.0(245)	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0.5	15.3	25.8	26.3	35.9	12.0	47.8	100.0(209)	3.2
맞벌이 아님	8.3	19.4	27.8	30.6	33.3	8.3	41.7	100.0(36)	3.1
$X^2(df)/t$					1.1(4)(b)				0.5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4.3	28.6	42.9	28.6	19.0	9.5	28.6	100.0(21)	2.8
300만원 미만	14.8	17.4	32.2	25.2	31.3	11.3	42.6	100.0(115)	3.1
300~500만원 미만	2.9	11.4	14.3	28.6	47.1	10.0	57.1	100.0(70)	3.5
500만원 이상	7.7	12.8	20.5	28.2	35.9	15.4	51.3	100.0(39)	3.4
$X^2(df)/F$					15.9(12)(b)				3.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8	25.0	31.8	25.0	38.6	4.5	43.2	100.0(44)	3.1
400~700만원 미만	12.9	16.5	29.5	28.1	30.2	12.2	42.4	100.0(139)	3.1
700만원 이상	6.5	8.1	14.5	25.8	45.2	14.5	59.7	100.0(62)	3.5
$X^2(df)/F$					12.5(8)				3.1

주: 평균은 '전혀 없다=1점'~'매우 있다=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나. 어린이집 이용 시기

어린이집 이용가구가 최초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시기는 평균 14.9개월로 조사되었으며, 11개월 이하에 시작한 경우가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 13.8개월로 전체 평균 보다 빠르고, 자녀가 11개월 이하일 때부터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비율도 34.5%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조양육자가 있는 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3〉 현재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0개월 ~ 11개월	12개월 ~ 14개월	15개월 ~ 18개월	19개월 이후	계(수)	평균 (개월)
전체	28.8	22.7	25.7	22.8	100.0(556)	14.9
보조양육자 유무						
보조양육자 있음	30.7	25.5	28.0	15.8	100.0(322)	14.1
보조양육자 없음	26.1	18.8	22.6	32.5	100.0(234)	16.0
$X^2(df)/t$		21.6(3)***				-3.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4.5	24.5	23.4	17.5	100.0(359)	13.8
맞벌이 아님	18.3	19.3	29.9	32.5	100.0(197)	17.0
$X^2(df)/t$		27.8(3)***				-6.1***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0.5	21.6	27.3	30.7	100.0(176)	16.2
400만원~700만원 미만	34.5	21.0	23.0	21.4	100.0(252)	14.5
700만원 이상	28.9	27.3	28.9	14.8	100.0(128)	13.9
$X^2(df)/F$		18.7(6)**				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앞서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희망하는 시기였는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시기보다 빨리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50.7%로 절반에 달하였으며, '희망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는 응답률은 40.6%에 그쳤다. 희망하는 시기보다 어린이집을 빨리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52.4%,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모(母)에서 60.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희망하는 시기보다 어린이집을 이르게 이용하게 된 경우는 주로 부모의 취업, 근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14〉 어린이집 실제 이용 시작 시기와 희망 이용 시기의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희망시기와 일치함	희망시기보다 늦게 이용함	희망시기보다 빨리 이용함	계(수)
전체	40.6	8.6	50.7	100.0(55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9.8	7.8	52.4	100.0(359)
맞벌이 아님	42.1	10.2	47.7	100.0(197)

구분	희망시기와 일치함	희망시기보다 늦게 이용함	희망시기보다 빨리 이용함	계(수)
$X^2(df)$		1.5(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1.9	10.8	47.3	100.0(203)
40시간 미만	47.8	6.6	45.6	100.0(182)
40시간 이상	31.6	8.2	60.2	100.0(171)
$X^2(df)$		12.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이처럼 희망하는 시기와 실제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희망하는 입소 시기는 평균 21.9개월로 실제 입소한 시기보다 7개월이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시기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보조양육자가 있는 가구에서 20.9개월로 약간 빠르고 13개월 이하를 희망한 비율도 22.1%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에 희망하는 어린이집 입소 시기가 평균보다 빠른 것은 보조양육자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장시간보육에 대한 우려는 덜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Ⅳ-3-15〉 희망했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0개월~13개월	14개월~20개월	21개월~24개월	25개월 이후	계(수)	평균(개월)
전체	21.5	22.1	33.9	22.4	100.0(330)	21.9
보조양육자 유무						
보조양육자 있음	22.1	26.3	34.2	17.4	100.0(190)	20.9
보조양육자 없음	20.7	16.4	33.6	29.3	100.0(140)	23.2
$X^2(df)/t$		8.7(3)*				−2.4*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4.5	23.6	31.9	19.9	100.0(216)	21.2
맞벌이 아님	15.8	19.3	37.7	27.2	100.0(114)	23.3
$X^2(df)/t$		5.8(3)				−2.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4.3	18.7	39.6	27.5	100.0(91)	23.7
400만원~700만원 미만	23.9	25.8	31.3	19.0	100.0(163)	20.8
700만원 이상	25.0	18.4	32.9	23.7	100.0(76)	22.1

구분	0개월~ 13개월	14개월~ 20개월	21개월~ 24개월	25개월 이후	계(수)	평균 (개월)
$X^2(df)/F$	8.2(6)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한편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희망하는 시기보다 빠르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39.0%, '주양육자의 취업이나 질환 등으로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되어서' 36.9%, '육아휴직 이후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게 되어서' 21.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16〉 희망시기보다 빨리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이유

단위: %(명)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육아휴직 후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게 되어서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되어서 (주양육자의 취업,질환 등)	기타	계(수)
39.0	21.6	36.9	2.5	100.0(2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희망 시기보다 빨랐던 가구에서 가정에서 육아휴직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었거나, 부모 대신에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린이집에 더 늦게 보내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8.8%로 대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곧 부모의 직접양육이나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표 Ⅳ-3-17〉 (희망 시기보다 일찍 이용한 경우) 가정양육 가능 시 어린이집 입소시기 지연 의향 여부

있음	없음	계(수)
98.8	1.2	100.0(1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다. 미이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계획

1) 기타 기관 이용 실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자녀(36개월 미만)를 둔 가구가 어린이집 외 '학원이나 기관을 3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불과하였다. 해당 비율은 대도시 지역(6.2%)과 만2세아(1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3-18〉 어린이집 외 다른 학원이나 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3.4	96.6	100.0(465)
지역 규모			
대도시	6.2	93.8	100.0(178)
중소도시	1.4	98.6	100.0(216)
읍면지역	2.8	97.2	100.0(71)
$X^2(df)$		6.8(2)*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3	97.7	100.0(266)
만1세	3.3	96.7	100.0(151)
만2세	10.4	89.6	100.0(48)
$X^2(df)$		8.2(2)*	

주: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 기준이며, 다른 학원이나 기관에는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어린이집과 이외 학원 및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기관에 보내기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 59.0%,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 17.1%, '현재 신청하여 대기 중' 13.1% 순으로 응답되었다, 근처에 보낼만한 기관이 없거나, 교사 1명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 기관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와 2.7%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Ⅳ-3-19〉 어린이집, 학원, 기타 기관 등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17.1	59.0	1.1	2.9	13.1	2.9	2.7	1.1	100.0(44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5.8	69.2	0.4	1.2	9.6	2.7	0.8	0.4	100.0(260)
만1세	18.5	45.9	0.7	5.5	17.1	3.4	6.2	2.7	100.0(146)
만2세	20.9	41.9	7.0	4.7	20.9	2.3	2.3	0.0	100.0(43)
$X^2(df)$	54.9(14)***(b)								

주: ①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② 기관에 보내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 ③ 기관에 보내 보았으나 적응을 못해서 ④ 근처에 보낼만한 기관이 없어서 ⑤ 현재 신청하여 대기 중 ⑥ 아이 건강상 이유로 ⑦ 교사 1명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 ⑧ 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2) 기관 이용 계획

현재 어린이집과 이외 학원 및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서 '향후 기관을 보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자녀 연령이나 보조양육자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영아자녀의 경우에도 기관 이용이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됨을 알 수 있다.

〈표 Ⅳ-3-20〉 기관 미이용 영아자녀 가구의 기관 이용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3.7	26.3	100.0(44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0.8	29.2	100.0(260)
만1세	78.8	21.2	100.0(146)
만2세	74.4	25.6	100.0(43)
$X^2(df)$	3.1(2)		
보조양육자 유무			
보조양육자 있음	72.2	27.8	100.0(277)
보조양육자 없음	76.2	23.8	100.0(172)
$X^2(df)$	0.9(1)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76.1	23.9	100.0(209)
맞벌이 아님	71.7	28.3	100.0(240)

구분	예	아니오	계(수)
$X^2(df)$	1.1(1)		

주: 기관은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현재 어린이집과 이외 학원 및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서 향후 기관을 보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예정하는 이용 시기는 평균 21.6개월로 조사되어, 앞서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기에 보내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가구가 희망하는 입소 시기였던 평균 21.9개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들 가구에서 향후 예정하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96.1%로 대다수였다. 단, 만2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학원 및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6.3%로 나타났다.

〈표 Ⅳ-3-21〉 기관 미이용 영아자녀 가구의 희망하는 기관 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0개월 ~ 12개월	13개월 ~ 18개월	19개월 ~ 24개월	25개월 이후	계	평균(개월)
전체	26.3	22.4	25.4	26.0	100.0(331)	21.6
지역 규모						
대도시	22.1	26.2	23.0	28.7	100.0(122)	21.9
중소도시	30.0	20.0	21.9	28.1	100.0(160)	21.8
읍면지역	24.5	20.4	42.9	12.2	100.0(49)	20.6
$X^2(df)/F$			14.1(6)*			0.3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45.7	27.2	14.7	12.5	100.0(184)	17.8
만1세	2.6	20.9	48.7	27.8	100.0(115)	23.7
만2세	0.0	0.0	3.1	96.9	100.0(32)	35.9
$X^2(df)/F$			182.5(6)***			66.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6.5	23.9	18.9	20.8	100.0(159)	19.9
맞벌이 아님	16.9	20.9	31.4	30.8	100.0(172)	23.2
$X^2(df)/t$			20.8(3)***			−2.7**

주: 기관은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3-22〉 기관 미이용 영아자녀 가구의 이용 예정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다른 학원 /기관	잘 모름	계
전체	96.1	1.2	0.9	1.8	100.0(33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96.7	1.1	0.0	2.2	100.0(184)
만1세	97.4	0.0	0.9	1.7	100.0(115)
만2세	87.5	6.3	6.3	0.0	100.0(32)
$X^2(df)$			20.9(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3)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실태

현재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가구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인 비율은 42.6%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母)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상용근로자인 경우, 그리고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서 입소대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어린이집은 장시간보육 기피 현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일정하고 상시근무를 하는 경우에 선호하는 양육방식으로 여겨진다.

〈표 Ⅳ-3-23〉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42.6	57.4	100.0(465)
지역 규모			
대도시	48.9	51.1	100.0(178)
중소도시	43.1	56.9	100.0(216)
읍면지역	25.4	74.6	100.0(71)
$X^2(df)$	11.5(2)**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36.5	63.5	100.0(266)
만1세	52.3	47.7	100.0(151)
만2세	45.8	54.2	100.0(48)
$X^2(df)$	10.1(2)**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49.3	50.7	100.0(217)
맞벌이 아님	36.7	63.3	100.0(248)
$X^2(df)$	7.5(1)**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52.5	47.5	100.0(101)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30.2	69.8	100.0(43)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1.1	58.9	100.0(321)
$X^2(df)$	7.0(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1.1	58.9	100.0(321)
40시간 미만	34.9	65.1	100.0(83)
40시간 이상	60.7	39.3	100.0(61)
$X^2(df)$	10.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 입소 대기 중인 경우, 대기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조사되었으며, '10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아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유아 6.8개월 대비 약간 길고, 10개월 이상 대기한 비율은 30.7%로 조사되어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김은설 외, 2021: 331).

〈표 Ⅳ-3-24〉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

단위: %(명), 개월

1개월 ~ 2개월	3개월 ~ 5개월	6개월 ~ 9개월	10개월 이상	계	평균(개월)
23.7	26.8	23.2	26.3	100.0(198)	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4. 소결

앞 절에서 살펴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자녀의 주양육자가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45.5%)과 어머니라는 응답 비율이(43.3%) 유사하였다. 자녀가 만0세일 때는 어머니가 주양육자라는 응답이 75.4%로 높은 반면, 만1세때는 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45.2%, 만2세는 76.0%로 점점 주양육자가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변하였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53.5%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이는 영아기 내에서도 연령과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 양육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므로, 영아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영아 자녀의 보조양육자의 경우 모의 근로형태가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상관없이 취업모는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거의 매일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42.1%, 32.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양육자(기관 포함)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부담 정도도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정에서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아의 경우 가정이든 기관이든 양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가 취업을 한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가정양육보다는 보조양육자나 기관 도움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영아기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영아기 부모의 가정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아 자녀의 양육은 주중·주말을 불문하고 어머니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모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주중 양육참여 시간이 많아지며, 주말과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영아의 어머니는 대부분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 영아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취업모도 평균 7.7시간으로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 양육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거의 집중되는 편이며, 이는 주중, 주말, 취업여부와 상관없었다. 반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는 5점 기준 2.3점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아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에 대해 가정 내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어린이집 이용률과 이용시간 등 서비스 이용 행태를 살펴 본 결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모(母)의 근로형태와 근로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의 돌봄시간 지원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영아보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출퇴근 시각이 일정하고, 상시로 근무하는 모(母)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구 또는 취업모의 영아 자녀가 희망하는 시기에 원활하게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의 공급 전략은 도보 또는 차량으로 10분 이내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린이집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10분 이내가 72%에 달하고, 20분을 초과하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집과의 거리'가 32.9%로 조사된 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은설 외, 2021: 249).

다섯째, 0~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 양상을 고려하면 이들 가구의 양육지원의 방향성은 부모의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의 내실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0세아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16.1%로 낮은 수준이나 총 이용시간이 길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서 종일제보육의 실수요자 위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휴직제도 이용 및 대체인력을 채용이 어려운 근로 특성 등으로 인해 단기간 휴직 이후에 복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어린이집의 보육지원체계는 현행과 같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기본보육은 현재의 7시간이 적정하고, 연장보육의 이용자격도 현행과 같이 맞벌이 가구 등 필요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총 이용시간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와 모(母)가 근로하지 않는 경우는 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맞벌이 가구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의 경우는 최대 8시간 18분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시간이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4%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 이때 연장보육료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차

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앞서 연장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부모 부담액을 부과할 경우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47.8%로 조사되었으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지지를 보이므로 부모 부담액의 상한선을 책정하되, 저소득층 가구를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월평균 가구소득과 모(母)의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가정 내 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현재 공공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자부담이 증가하며, 소득기준 '라'형의 경우는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한 가구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세제지원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장시간보육 기피'는 연장보육의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구에서도 두드러지므로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돌봄시간 지원은 휴직 사용 이후의 근로시간단축제도의 활성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앞서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아이를 기관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육료 지원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고 해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장시간보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영아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어린이집 입소 희망 시기는 약 21개월로 나타나며,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가구의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자녀가 너무 어려서가 지목되므로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이 최대 24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단, 부모 양쪽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희망하는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여성 위주의 휴직제도 활용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여 적정한 휴직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V

영아 양육을 위한 정책 요구

01 영아 양육의 행복과 애로사항
02 영아 양육지원 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03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04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개선 요구
05 소결

V. 영아 양육을 위한 정책 요구

제 5장에서는 영아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애로사항, 영아 양육지원 정책들에 대한 의견, 영아 부모와 전문가들의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1. 영아 양육의 행복과 애로사항

가. 자녀 양육의 행복도

영아 양육의 애로사항을 질문하기에 앞서 막내(영아)를 양육하며 느끼는 행복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V-1-1〉에 따르면 응답 대상 영아 부모들의 76.1%가 영아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매우 행복하다 29.8%+행복하다 46.3%), '보통이다'가 17.6%이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는 6.3%(전혀 행복하지 않다 1.4%+행복하지 않다 4.9%)였다.

〈표 V-1-1〉 영아 자녀 양육의 행복감 정도

단위: %(명), 점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다	①+② 행복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행복하다	⑤ 매우 행복하다	④+⑤ 행복하다	계 (수)	평균 (점)
1.4	4.9	6.3	17.6	46.3	29.8	76.1	100.0(1,021)	4.0

주: 행복도 평균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매우 행복하다=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영아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맘충, 노키즈존과 같이 육아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든 사회 분위기', '아이가 아플 때 맡길 곳이 없음'이 제시되었다. 한창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큰 시기인 영아 양육기에 사회적으로도 지지받지 못하는 분위기는 영아 양육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감염 등에 취약하여 자주 아픈 영아기에 아이를 기관에 맡겨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이가 아플 때 영아 부모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애로사항

영아 자녀 양육의 행복도를 살펴보는 한편 현재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 응답 기준 영아의 부모들이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영아 양육에서의 육체적·정신적 힘듦(부담)'으로 나타났고(33.0%), 다음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23.5%), '비용 부담'(19.2%), '일-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10.3%), '(휴직·퇴사 등으로 인한)가구소득 감소'(8.8%), '경력단절·승진 누락 등 불이익'(2.9%)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영아 양육에서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비용을 감당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큰 애로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외 취업한 부모의 경우 전반적인 '일-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휴직·퇴사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경력단절 등 장기적으로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위험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도 응답 순위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Ⅴ-1-2〉 영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1+2순위

구분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듦	아이를 키우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듦	영아기 발달에 맞는 양육 방법,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휴직·퇴사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듦	휴직·퇴사 등으로 경력 단절,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이 있음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음	기타	계(수)
1순위	23.5	19.2	33.0	0.9	8.8	2.9	10.3	1.4	-	100.0(1,021)
1+2순위	36.4	35.1	54.0	5.8	22.2	10.7	26.6	8.9	0.3	(1,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이러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가구의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맞벌이 여부,어

머니(본인)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영아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이 영아 양육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되어(28.8%) 외벌이 가구의 16.6%에 비해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길다보니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문제를 꼽는 비율이 42.2%로 더 높았다.

'어머니(본인)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데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근로시간이 짧을수록(즉,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1-3〉 자녀 양육의 어려움 -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23.5	19.2	33.0	0.9	8.8	2.9	10.3	1.4	100.0(1,021)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8.8	16.8	25.9	0.5	8.3	3.8	14.6	1.2	100.0(576)
맞벌이 아님	16.6	22.2	42.2	1.3	9.4	1.8	4.7	1.6	100.0(445)
$X^2(df)$					69.9(7)***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6.4	22.3	41.4	1.1	10.5	2.5	4.4	1.3	100.0(524)
40시간 미만	26.4	17.7	28.7	0.8	7.2	3.4	14.3	1.5	100.0(265)
40시간 이상	36.2	13.8	19.0	0.4	6.9	3.4	19.0	1.3	100.0 (232)
$X^2(df)$					105.4(14)***(b)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8.1	26.6	34.8	0.8	10.1	1.9	6.0	1.6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24.0	16.2	31.6	1.4	9.2	3.5	12.9	1.2	100.0(433)
700만원 이상	31.4	13.0	32.7	0.0	5.8	3.6	12.1	1.3	100.0(223)
$X^2(df)$					46.8(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한편, 자녀를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중 경력 상의 불이익 경험이 있는지 부모별로 살펴보았다. 〈표 V-1-4〉에 따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상의 불이익 경험 비율은 어머니의 경우 44.5%, 아버지는 9.5%로 자녀 양육으로 어머니가 경력상 불이익을 경험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부모별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 경험 여부

단위:%(명)

	있다	없다	계
엄마(본인)	44.5	55.5	100.0(1,021)
아빠(배우자)	9.5	90.5	100.0(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상 불이익 경험 유무를 가구 및 어머니의 근로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V-1-5〉와 같았다. 즉, 어머니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현재 미취업이거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대체로 낮을수록 경력 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자녀수가 많거나 자녀 양육을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력 상의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경력 상 불이익의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어머니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소득은 반대로 어머니의 경력 상 불이익 경험 여부에 따른 결과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 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 현재 종일제 근로가 아닌 단시간 근로, 시간제 근로의 형태로 종사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5〉 제특성별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 경험 여부 - 엄마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4.5	55.5	100.0(1,021)
자녀 수			
1명	38.7	61.3	100.0(628)
2명 이상	53.7	46.3	100.0(393)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2(df)$	22.0(1)***		
보조양육자 유무			
보조양육자 있음	41.6	58.4	100.0(611)
보조양육자 없음	48.8	51.2	100.0(410)
$X^2(df)$	5.2(1)*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4.1	55.9	100.0(524)
40시간 미만	50.6	49.4	100.0(265)
40시간 이상	38.4	61.6	100.0(232)
$X^2(df)$	7.5(2)*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9.2	60.8	100.0(429)
임시/일용근로자	68.8	31.3	100.0(32)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종사자	52.5	47.5	100.0(122)
경제활동안함/휴학	45.7	54.3	100.0(438)
$X^2(df)$	15.9(3)**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48.6	51.4	100.0(255)
300만원 미만	49.0	51.0	100.0(361)
300만원~500만원 미만	40.3	59.7	100.0(258)
500만원 이상	33.3	66.7	100.0(147)
$X^2(df)$	14.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다양한 양육지원사업(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육아휴직,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영아 부모들이 이러한 양육지원사업의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지역맘카페, 블로그, SNS'가 영아 부모들이 가장 많이 정부지원사업의 정보를 얻는 경로였으며(53.5%), 이외 '이웃, 친구 등 지인'(19.0%), '정부부처 및 관련사업 홈페이지'(14.8%), '아이가 다니는 기관'(5.7%), '구청, 주민센터 등'(5.5%)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부모의 거주지역 규모, 영아(막내 자녀)의 나이,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지역맘카페, 블로그, SNS'를 활용한 비율은 다소 낮고, 반대로 '정부부처 및 관련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은 도시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막내 자녀 나이,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는데, 만 0~1세 영아의 부모들은 2세 부모들에 비해 '지

역맘카페, 블로그, SNS'와 '정부부처 및 관련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다. 기관 이용이 늘어나는 2세아의 부모는 '아이가 다니는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9.1%로 0~1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한편 자녀수는 1명인 부모에 비해 2명 이상인 부모가 '지역맘카페, 블로그, SNS' 의존도가 다소 감소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사업홈페이지, 아이가 다니는 기관, 구청·주민센터 등 정보획득 경로가 좀더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6〉 양육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명)

구분	정부부처 및 관련사업 홈페이지	아이가 다니는 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	이웃, 친구 등 지인	지역 맘카페, 블로그, SNS	기타	계(수)
전체	14.8	5.7	5.5	19.0	53.5	1.6	100.0(1,021)
지역 규모							
대도시	14.7	6.2	6.5	16.9	54.0	1.7	100.0(402)
중소도시	13.3	5.4	4.3	21.1	54.8	1.1	100.0(460)
읍면지역	19.5	5.0	6.3	18.2	48.4	2.5	100.0(159)
$X^2(df)$	10.1(10)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5.8	5.0	4.7	16.7	56.8	0.9	100.0(317)
만1세	15.8	2.6	5.9	19.1	54.8	1.8	100.0(341)
만2세	12.9	9.1	5.8	20.9	49.3	1.9	100.0(363)
$X^2(df)$	19.7(10)*						
자녀 수							
1명	13.7	5.3	3.8	19.6	56.4	1.3	100.0(628)
2명 이상	16.5	6.4	8.1	18.1	48.9	2.0	100.0(393)
$X^2(df)$	13.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이러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알아볼 때 영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41.7%의 응답자가 정부지원사업마다 정보를 따로 알아봐야 하는데서 겪는 번거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고, 이외 '본인(의 자녀)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어려움'(30.2%),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름'(18.2%), '각종 정보 채널별 정보가 달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8.6%)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V-1-7〉 양육 관련 정부지원사업 정보 획득 시의 어려움

단위: %(명)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름	지원을 받고 싶어도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지원마다 정보를 따로 찾아봐야 해서 번거로움	각종 정보 제공 채널별 정보가 달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	기타	계(수)
18.2	30.2	41.7	8.6	1.3	100.0(1,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이처럼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알아볼 때 한번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별로 따로따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과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육아정책 정보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5점 만점 기준 4.4점으로 영아 부모들은 '육아정책 정보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 정보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은 '막내 자녀(영아)의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나이 2세에 비해 0~1세 자녀의 부모가 통합플랫폼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 나이 2세 경에 어린이집 이용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0~1세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해당 연령 부모들의 정부 정책 정보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1-8〉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④+⑤ 필요하다	계 (수)	평균 (점)
전체	0.7	1.4	2.1	9.0	35.8	53.1	88.9	100.0(1,021)	4.4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3	1.9	3.2	6.6	30.0	60.3	90.2	100.0(317)	4.5
만1세	0.6	0.6	1.2	7.6	35.8	55.4	91.2	100.0(341)	4.5
만2세	0.3	1.7	1.9	12.4	41.0	44.6	85.7	100.0(363)	4.3
$X^2(df)/F$				26.3(8)**(b)					6.1**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함	1.1	1.1	2.2	12.2	37.4	48.2	85.6	100.0(556)	4.3
이용하지 않음	0.2	1.7	1.9	5.2	34.0	58.9	92.9	100.0(465)	4.5
$X^2(df)/t$				23.9(4)***(b)					-4.1***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매우 필요하다=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2)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b)로 표기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2. 영아 양육지원 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가. 서비스 지원

영아 자녀 양육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90.3%(들어본 적 있다 60.0% + 내용까지 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2.9%, 육아종합지원센터 78.8%,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63.3% 순의 인지도를 보였다. 이중 시간제보육서비스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이 30%대인 반면,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18.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2-1〉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명)

전체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시간제보육	9.7	60.0	30.3	100.0(1,021)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36.7	44.4	18.9	100.0(1,02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7.1	59.2	23.7	100.0(1,021)
육아종합지원센터	21.2	47.0	31.8	100.0(1,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각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해당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만 30.1%이며, 그 외 서비스는 이용한 경우가 10% 이하로 나타났다.

〈표 V-2-2〉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시간제보육	10.3	89.7	100.0(922)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6.7	93.3	100.0(64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6.6	93.4	100.0(846)
육아종합지원센터	30.1	69.9	100.0(8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이처럼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대부분 60~70%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0.3%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V-2-3〉 영아 양육 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점)
시간제보육	2.1	5.3	29.5	42.1	21.1	100.0(95)	3.8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3	0.0	27.9	48.8	20.9	100.0(43)	3.9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3.6	3.6	30.4	39.3	23.2	100.0(56)	3.8
육아종합지원센터	0.8	2.1	26.9	46.3	24.0	100.0(242)	3.9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나. 현금성 지원

영아 자녀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인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의 인지도, 수혜 경험, 사용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현금성 지원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현금성 지원에 대해 90%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내용까지 안다 + 들어본 적 있다) 인지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아동수당'은 98.9%가 인지하고 있어 인지도가 가장 높은 현금성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모급여'(96.2%), '가정양육수당'(94.5%), '첫만남이용권'(9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 현금성 지원 인지 여부

단위 : %(명)

전체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
부모급여	3.8	31.4	64.7	100.0(1,021)
가정양육수당	5.5	19.4	75.1	100.0(1,021)
아동수당	1.1	12.0	86.9	100.0(1,021)
첫만남 이용권	9.9	26.9	63.2	100.0(1,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한편 현금성 지원의 인지도를 막내 자녀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급여는 막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내용까지 안다'는 비율이 높아져, 막내 자녀가 2세인 경우 38.0%만이 내용까지 안다고 답하였으나, 1세는 71.6%, 0세는 88.0%가 '내용까지 안다'고 응답해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급여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 부모급여의 인지도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V-2-5〉 현금성 지원 인지 여부 - 1) 부모급여

단위: %(명)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전체	3.8	31.4	64.7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0.9	11.0	88.0	100.0(317)
만1세	2.3	26.1	71.6	100.0(341)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만2세	7.7	54.3	38.0	100.0(363)
$X^2(df)$		197.4(4)***		
자녀 수				
1명	3.3	31.4	65.3	100.0(628)
2명 이상	4.6	31.6	63.9	100.0(393)
$X^2(df)$		1.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조사 대상 영아 부모 중 94.5%가 '가정양육수당'을 알고 있었고, 특히 '내용까지 안다'는 경우도 75.1%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내용까지 알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85.8%로 자녀수가 1명일 때의 68.5%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V-2-6〉 가정양육수당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전체	5.5	19.4	75.1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6.9	21.1	71.9	100.0(317)
만1세	6.7	17.0	76.2	100.0(341)
만2세	3.0	20.1	76.9	100.0(363)
$X^2(df)$		8.4(4)		
자녀 수				
1명	7.5	24.0	68.5	100.0(628)
2명 이상	2.3	12.0	85.8	100.0(393)
$X^2(df)$		39.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아동수당'은 98.9%가 인지하고 있고, '내용까지 안다'는 경우도 86.9%로 인지도가 전체 현금성 지원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유사한 결과로,

자녀수가 2명 이상일 때는 '내용까지 안다'는 경우가 91.6%로 영아 가구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V-2-7〉 아동수당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전체	1.1	12.0	86.9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0.3	12.0	87.7	100.0(317)
만1세	1.5	11.7	86.8	100.0(341)
만2세	1.4	12.4	86.2	100.0(363)
$X^2(df)$		2.6(4)(b)		
자녀 수				
1명	1.4	14.6	83.9	100.0(628)
2명 이상	0.5	7.9	91.6	100.0(393)
$X^2(df)$		12.7(2)**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b)로 표기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마지막으로 첫만남이용권은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63.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내용까지 아는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인지도가 비슷하였다.

〈표 V-2-8〉 첫만남이용권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모른다	들어본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전체	9.9	26.9	63.2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3	10.4	88.3	100.0(317)
만1세	6.5	21.1	72.4	100.0(341)
만2세	20.7	46.8	32.5	100.0(363)
$X^2(df)$		250.7(4)***		
자녀 수				
1명	9.6	26.4	64.0	100.0(628)

구분	모른다	들어본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2명 이상	10.4	27.7	61.8	100.0(393)
$X^2(df)$		0.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현금성 지원의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절반 이상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아동수당은 94.2%가 수혜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다[88].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은 50% 내외가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없는 경우의 비율을 제외하면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9〉 현금성 지원 수혜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해당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부모급여	45.7	7.1	43.9	3.3	100.0(982)
가정양육수당	57.7	10.2	29.4	2.7	100.0(965)
아동수당	94.2	4.0	0.0	1.9	100.0(1,010)
첫만남 이용권	49.9	9.0	39.1	2.0	100.0(9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대상 조사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영아 가구에 어떠한 용도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처를 질문하였다. 단, 현금성 지원의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만0세아 시기에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일회성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어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지정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이 지급되는 기타 현금성 지원(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첫만남이용권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한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의 식비 54.7% 순이었다. 이외 전체가족의 생활비 34.9%, 자녀의 보건·의료비 34.2%, 엄마의 산후

88) 단, 아동수당의 경우 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조사대상자인 0~2세 영아 가구의 영아는 모두 지급 대상이므로 수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급 받은 현금성 지원의 명칭을 정확히 모르거나, 대상 아동이 2023년 신생아로 조사시점 당시 신청 전인 경우로 사료됨.

조리비 33.3%도 30%대의 비율로 사용처를 응답하였고, 엄마의 보건·의료비로 사용한 경우는 20.5%에 해당하였다. 첫만남이용권을 '자녀의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응답은 7.0%로 높지 않았다.

〈표 Ⅴ-2-10〉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중복응답)

단위: %(명)

전체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식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 구입비	자녀의 돌봄 서비스비용	자녀의 보건/ 의료비	엄마의 산후 조리비	엄마의 보건/ 의료비	(수)
34.9	54.7	64.1	7.0	34.2	33.3	20.5	(459)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다음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제외한 기타 현금성 지원의 사용처를 질문할 결과, 자녀의 식비 65.0%,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한 경우가 62.3%로 비슷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37.5%, 자녀의 금융 관련 비용이 34.7% 순이었다.

[그림 Ⅴ-2-1]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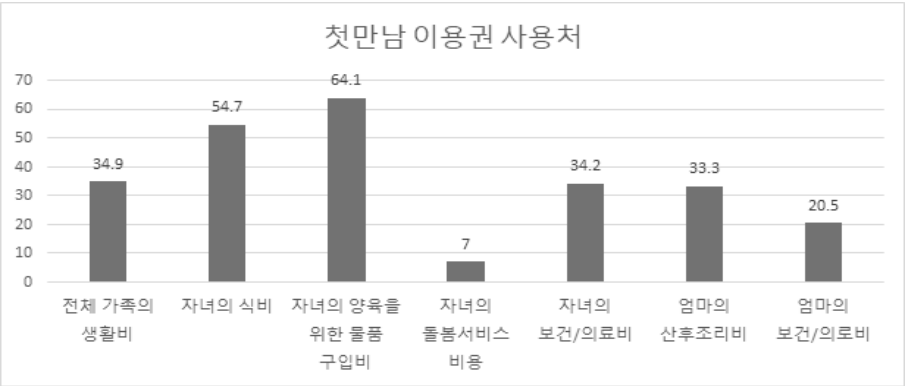

주: 〈표 Ⅴ-2-10〉을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현금성 급여의 사용처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물품구입비, 식비, 전체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참여하는 놀이, 체험, 문화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비율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현금성 급여를 사교육 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비율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사용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다(0세 2.1%~2세 6.9%).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만원 미만에서는 자녀의 식비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71.9%로 높았으며, 전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42.9%로 다른 소득수준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자녀의 금융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하게 30%대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2-11〉 현금성 급여(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사용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가족의 생활비	자녀 식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구입비	자녀의 돌봄 서비스 비용	자녀의 사교육 등 관련 비용	자녀 금융 관련 비용	자녀참여 놀이, 체험, 문화활동 이용 비용	(수)
전체	37.5	65.0	62.3	8.4	5.0	34.7	24.1	(96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42.8	69.5	67.5	8.2	2.1	36.0	17.1	(292)
만1세	38.5	67.9	62.4	10.1	5.5	33.6	29.1	(327)
만2세	32.0	58.6	58.0	6.9	6.9	34.6	25.4	(350)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2.9	71.9	69.9	8.8	5.4	32.1	29.3	(352)
4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7.1	63.3	59.2	8.3	5.1	35.0	22.3	(412)
700만원 이상	28.8	56.6	55.6	7.8	3.9	38.5	19.0	(205)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다.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1)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는 내용까지 아는 경우가 71.2%로 가장 높았으며,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 여부가 각각 67.0%, 64.1% 순이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54.1%가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6.3%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모른다는 응답이 30%대 후반대로 1/3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2〉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인지 여부

단위 : %(명)

전체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계(수)
출산전후휴가	3.5	29.5	67.0	100.0(1,021)
배우자 출산휴가	4.3	31.6	64.1	100.0(1,021)
육아휴직	2.1	26.7	71.2	100.0(1,02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9.6	36.3	54.1	100.0(1,021)
3+3 부모육아휴직제	39.8	34.5	25.8	100.0(1,021)
가족돌봄휴직	36.7	38.3	25.0	100.0(1,021)
가족돌봄휴가	36.7	36.5	26.7	100.0(1,02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5.2	32.9	21.8	100.0(1,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제도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했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이외 어머니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은 40.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은 10%대 정도였으며, 3+3 부모육아휴직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은 이용 비율은 10%미만으로 이용 비율이 낮았다.

출산전후휴가는 상용근로자인 경우 이용 경험이 85.3%인 반면, 임시직이나 자영업은 이용 경험이 20%대로 종사자 지위에 따라 차이가 컸다(부표 V-2-1 참조).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은 전체 40.1%인데, 대도시 거주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한 경험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이용 경험은 72.5%이었으나, 다른 종사자 지위에서는 10%대로 역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용 경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부표 V-2-2 참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전체 이용 경험 비율이 19.7%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2.6%,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을 때 이용 경험이 23.8%, 월평균 본인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31.7%의 이용했다고 응답해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부표 V-2-4 참조).

〈표 V-2-13〉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출산전후휴가	50.3	49.7	100.0(985)
배우자 출산휴가	51.4	48.6	100.0(959)
어머니 육아휴직	40.1	59.9	100.0(1,000)
아버지 육아휴직	10.9	89.1	100.0(98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9.7	80.3	100.0(923)
3+3 부모육아휴직제	8.8	91.2	100.0(604)
가족돌봄휴직	5.3	94.7	100.0(646)
가족돌봄휴가	13.6	86.4	100.0(64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6.8	93.2	100.0(5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중 휴직·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용했던 기간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어머니는 평균 11.5개월, 아버지는 5.5개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아버지는 어머니의 절반 정도만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평균 7.1개월, 가족돌봄휴직은 가장 짧은 2.8개월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4〉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 이용 기간(평균)

단위: 개월

어머니 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
11.5	5.5	7.1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표 V-2-15〉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어머니					아버지				
1~6 개월	7~11 개월	12개월 이상	계 (수)	평균 (개월)	1~2 개월	3~11 개월	12개월 이상	계(수)	평균 (개월)
15.5	17.2	67.3	100.0 (401)	11.5	33.6	40.2	26.2	100.0 (107)	5.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아버지 육아휴직 기간은 어머니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외벌이)의 가장인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했던 경우 평균 3.1개월의 휴직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Ⅴ-2-16〉 어머니 소득별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1개월 ~ 2개월	3개월 ~ 11개월	12개월 이상	계(수)	평균 (개월)
전체	33.6	40.2	26.2	100.0(107)	5.5
월평균 본인(어머니)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64.0	24.0	12.0	100.0(25)	3.1
300만원 미만	14.3	57.1	28.6	100.0(28)	7.1
300만원~500만원 미만	28.6	34.3	37.1	100.0(35)	6.0
500만원 이상	31.6	47.4	21.1	100.0(19)	5.6
$X^2(df)/F$		18.2(6)**			4.3**(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경험자의 이용기간을 살펴보았는 바, 이용기간은 평균 7.1개월이며, 1~2개월 단기간 이용한 경우는 35.2%, 10개월 이상은 32.4%로 비슷하였다.

〈표 Ⅴ-2-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1~2개월	3~9개월	10개월 이상	계(수)	평균(개월)
35.2	32.4	32.4	100.0(182)	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34명에게 이용 기간을 질문할 결과, 평균 2.8개월이었으며, 1개월 이용했다는 응답이 55.9%정도로 절반 이상이었다.

〈표 Ⅴ-2-18〉 가족돌봄휴직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1개월	2~3개월	4개월 이상	계(수)	평균(개월)
55.9	23.5	20.6	100.0(34)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2)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자녀양육에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어머니 육아휴직제도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특히 높았으며,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이용자도 적었지만 자녀양육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64.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V-2-19〉 자녀양육에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 %, 점

구분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대체로 도움 안됨	①+② 도움이 안됨	③ 보통	④ 대체로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④+⑤ 도움됨	계	평균 (점)
출산전후휴가	0.2	2.2	2.4	7.1	31.1	59.4	90.5	100.0(495)	4.5
배우자 출산휴가	1.8	2.6	4.5	8.5	34.3	52.7	87.0	100.0(493)	4.3
어머니 육아휴직	0.2	1.2	1.5	7.0	22.7	68.8	91.5	100.0(401)	4.6
아버지 육아휴직	3.7	6.5	10.3	15.0	22.4	52.3	74.8	100.0(107)	4.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0.5	1.1	1.6	9.3	34.1	54.9	89.0	100.0(182)	4.4
3+3 부모육아휴직제	7.5	1.9	9.4	15.1	13.2	62.3	75.5	100.0(53)	4.2
가족돌봄휴직	0.0	2.9	2.9	32.4	29.4	35.3	64.7	100.0(34)	4.0
가족돌봄휴가	0.0	3.4	3.4	14.8	35.2	46.6	81.8	100.0(88)	4.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0.0	5.3	5.3	18.4	26.3	50.0	76.3	100.0(38)	4.2

주: 평균은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1점'~'매우 도움이 되었다=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그림 Ⅴ-2-2] 자녀양육에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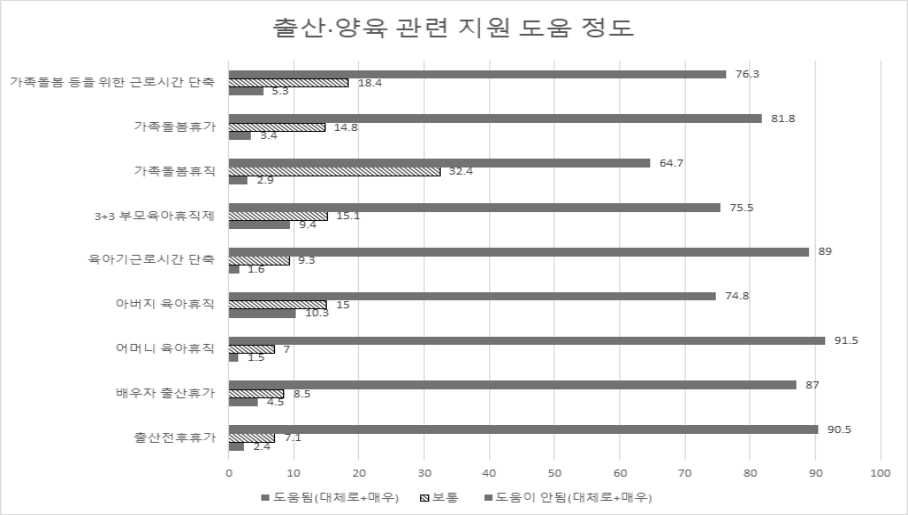

주: 〈표 Ⅴ-2-19〉를 그림으로 구성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3)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 이용 의향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없지만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74.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71.8%, 어머니 육아휴직은 71.5%, 가족돌봄휴가도 70.3%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2-20〉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제도의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어머니 육아휴직	71.5	14.5	14.0	100.0(620)
아버지 육아휴직	65.1	17.7	17.2	100.0(89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74.3	13.6	12.2	100.0(839)
3+3 부모육아휴직제	64.0	16.3	19.7	100.0(947)
가족돌봄휴직	68.4	13.6	18.0	100.0(987)
가족돌봄휴가	70.3	13.4	16.3	100.0(93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71.8	12.6	15.6	100.0(9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어머니 육아휴직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71.5%로 높게 나타났다.

제특성별로 육아휴직제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막내 자녀 나이가 0세인 경우 1~2세에 비해 이용 의향이 다소 높았으나 대체로 약 70% 전후의 이용 의향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 종사자 지위가 임시/일용직일 경우 이용할 의향이 84.6%로 나타났는데, 실제 해당 직위에서 어머니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는 19.4%로(부표 Ⅳ-2-2 참조)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사용하고 싶지만 종자자 지위 상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 육아휴직 의향이 아닌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연장보육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2-21〉 어머니 육아휴직제도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71.5	14.5	14.0	100.0(620)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3.7	12.9	13.5	100.0(171)
만1세	69.8	16.0	14.2	100.0(212)
만2세	71.3	14.3	14.3	100.0(237)
$X^2(df)$		0.9(4)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69.4	16.1	14.5	100.0(366)
40시간 미만	71.6	13.6	14.8	100.0(176)
40시간 이상	80.8	9.0	10.3	100.0(78)
$X^2(df)$		4.5(4)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8.0	9.3	12.7	100.0(118)
임시/일용근로자	84.6	3.8	11.5	100.0(26)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종사자	67.0	17.5	15.5	100.0(103)
경제활동안함/휴학	69.7	16.1	14.2	100.0(373)
$X^2(df)$		7.7(6)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함	72.0	14.0	14.0	100.0(329)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이용하지 않음	70.8	15.1	14.1	100.0(291)
$X^2(df)$		0.2(2)		
연장보육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함	74.4	11.6	14.0	100.0(129)
연장보육 이용하지 않음	70.5	15.5	14.0	100.0(200)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음	70.8	15.1	14.1	100.0(291)
$X^2(df)$		1.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65.1%로 절반 이상이었다.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경우가 10.9%인 것과 비교하면, 이용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아버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 의향이 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월평균 모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의향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다고 해서 아버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의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육아휴직 이후에도 가정경제가 유지 된다고 판단될 때 이용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V-2-22〉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65.1	17.7	17.2	100.0(893)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0.7	14.9	14.5	100.0(276)
만1세	64.5	17.1	18.4	100.0(299)
만2세	60.7	20.8	18.6	100.0(318)
$X^2(df)$		7.0(4)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6.9	17.3	15.9	100.0(492)
맞벌이 아님	62.8	18.2	19.0	100.0(401)
$X^2(df)$		1.9(2)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월평균 본인(모)의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67.6	15.6	16.9	100.0(225)
300만원 미만	63.5	18.4	18.1	100.0(326)
300~500만원 미만	63.4	18.1	18.5	100.0(216)
500만원 이상	67.5	19.0	13.5	100.0(126)
$X^2(df)$		2.7(6)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65.7	15.9	18.4	100.0(315)
400~700만원 미만	64.9	18.6	16.5	100.0(382)
700만원 이상	64.3	18.9	16.8	100.0(196)
$X^2(df)$		1.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이용 경험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74.3%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78.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2.1%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74.3	13.6	12.2	100.0(83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8.8	11.4	9.8	100.0(255)
만1세	71.8	14.3	13.9	100.0(287)
만2세	72.7	14.8	12.5	100.0(297)
$X^2(df)$		4.3(4)		
본인(모)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4.6	13.9	11.6	100.0(303)
임시/일용근로자	82.1	7.1	10.7	100.0(28)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종사자	68.2	20.9	10.9	100.0(110)
경제활동안함/휴학	75.1	11.8	13.1	100.0(398)
$X^2(df)$		7.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3.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가. 자녀 양육에 긴급히 필요한 정책 지원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이 25.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는 22.0%,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육아휴직)' 21.1%,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보육 서비스 지원'13.3%,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11.4%, '부모를 대신해 가정에서 아이를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6.4% 순으로 응답되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즉, 영아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영아 양육기간 중 감소하는 소득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에 대처하기 위한 '현금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취업한 부모라도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지원(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 지원은 '현금'과 '시간' 지원에 비해 필요성이 낮게 응답되었다. 대리 돌봄서비스 지원 중에서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서비스 기관에 비해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서비스 지원(예: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성을 낮게 느끼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로부터 영아의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영아의 '가정'에서의 양육을 원하더라도 외부 인력이 개인의 집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믿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V-3-1〉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분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보육 서비스 지원	부모 대신 아이를 가정에서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 지원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계(수)
1순위	13.3	6.4	11.4	21.1	22.0	25.9	100.0(1,021)
1+2순위	24.7	13.5	24.2	36.4	49.5	51.7	(1,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현재 영아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가구의 제특성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주로 영아 부모의 취업 및 근로특성, 가구소득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먼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현금 지원 보다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등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요구는 24.8%,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 23.3% 등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시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반면 외벌이 가구인 경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에 대해 34.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외벌이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 요구는 '시간', '현금' 지원에 비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으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장시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14.9%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10.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12.4%로 '장시간 돌봐주는 기관 보육서비스 지원'(11.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에 차이를 보여,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28.4%),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24.1%)

과 '현금 지원'(13.4%)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미취업 등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유사하게 '현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결과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35.1%가, 400~700만원 미만에서는 21.5%, 700만원 이상에서는 19.3%가 현금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의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영아(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자녀가 2세인 경우는 '기관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0, 1세인 경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시간지원도 자녀 연령별로 시간지원의 유형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지원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은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Ⅴ-3-2〉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 1순위

단위: %(명)

구분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기관 보육 서비스 지원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가정 내 개별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대리돌봄 서비스 지원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 지원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계(수)
전체	13.3	6.4	11.4	21.1	22.0	25.9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2.9	6.9	11.7	23.7	20.2	24.6	100.0(317)
만1세	12.0	6.7	11.4	21.7	21.7	26.4	100.0(341)
만2세	14.9	5.5	11.0	18.2	24.0	26.4	100.0(363)
$X^2(df)$	5.8(10)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4.9	6.9	10.6	24.8	23.3	19.4	100.0(576)
맞벌이 아님	11.2	5.6	12.4	16.2	20.4	34.2	100.0(445)

구분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기관 보육 서비스 지원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가정 내 개별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대리돌봄 서비스 지원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 지원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계(수)
$X^2(df)$	34.8(5)***						
본인(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1.5	6.9	10.7	19.1	21.2	30.7	100.0(524)
40시간 미만	14.7	6.4	11.3	18.5	21.9	27.2	100.0(265)
40시간 이상	15.9	5.2	12.9	28.4	24.1	13.4	100.0(232)
$X^2(df)$	31.9(10)***						
본인(모)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5.2	5.8	11.0	28.7	23.1	16.3	100.0(429)
임시/일용근로자	9.4	6.3	3.1	12.5	34.4	34.4	100.0(32)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종사자	15.6	10.7	12.3	14.8	18.9	27.9	100.0(122)
경제활동안함/휴학	11.2	5.7	12.1	16.0	21.0	34.0	100.0(438)
$X^2(df)$	61.0(15)***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1.8	4.9	11.2	16.4	20.5	35.1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13.2	7.2	11.5	23.6	23.1	21.5	100.0(433)
700만원 이상	16.1	7.2	11.2	23.8	22.4	19.3	100.0(223)
$X^2(df)$	29.1(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서비스 지원 확대 시 이용 의향

시간제 보육,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영아 양육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몰랐거나 알더라도 이용 경험이 없는 사례를 대상으로 그러한 서비스 확대 시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의향이 80.6%로 가장 높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76.5%, '시간제 보육' 67.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66.8% 순이며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3-3〉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종합)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시간제보육	67.5	32.5	100.0(92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66.8	33.2	100.0(978)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76.5	23.5	100.0(965)
육아종합지원센터	80.6	19.4	100.0(77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녀 연령별 이용 의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는 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부표 V-3-1, V-3-2, V-3-3 참조).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의향은 영아의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아 0~2세에 걸쳐 이용의 폭이 넓은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부표 V-3-4 참조).

다. 현금 지원으로 인한 양육 여건 변화에 대한 의견

2024년부터 0세(0~11개월) 영아에 대해서는 최대 11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면 양육 여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영아 부모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양육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를 포함한 총 6개의 항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항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민간 육아도우미 고용을 생각할 것 같다'(2.6점),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2.7점)는 '보통(3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양육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3.8점)과 '자녀에게 놀이 및 체험활동을 더 많이 해줄 것 같다'(3.8점)가 현금 지원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로 응답되었다. 이외 '나(어머니)의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는 3.3점, '육아휴직 기간을 더 길게 이용할 것 같다'는 3.2점으로 응답되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지원이 크게 증가할 경우 어머니의 육아휴직 이용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아 1인당 최고 11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어도 배우자(아버지) 육아휴직의 이용은 어머니에 비해 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V-3-4〉 영아 자녀 당 매월 110만원 지원의 효과

단위 : %(명), 점

영아 1인당 매월 110만원 지원의 효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점)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4.1	6.0	17.8	47.8	24.3	100.0(1,021)	3.8
민간 육아도우미 고용을 생각해볼 것 같다	16.3	33.0	28.1	16.8	5.8	100.0(1,021)	2.6
나의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	11.8	17.8	22.3	29.6	18.5	100.0(584)	3.3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	22.4	24.6	23.9	18.3	10.9	100.0(985)	2.7
육아휴직 기간을 더 길게 이용할 것 같다	13.0	19.9	22.8	27.4	17.0	100.0(584)	3.2
자녀에게 놀이 및 체험활동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3.5	7.1	22.3	42.7	24.3	100.0(1,021)	3.8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라. 시간 지원 종류별 개선 의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등 영아 양육 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을 제도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거의 모든 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은 '이용 기간 확대', '급여 수준 상향(유급화 포함)',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세 가지로 공통적으로 압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각 제도의 유형별로는 개선요구 사항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는 주로 이용자의 성별(아버지, 어머니)과 유급 여부, '장기간 집중적인 시간 지원(휴직)' 또는 '일시적인 시간 지원(휴가)', '지속적인 시간 단축'인지 등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을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용자의 성별이 '남성'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아버지 육아휴직'의 경우 무엇보다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나, '어머니의 육아휴직'은 무엇보다 '급여수준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제도라도 '남성'이 이용 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나 문화

조성이 더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급여수준 상향'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다음으로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개선사항으로도 응답되었다. 아버지가 가구의 주된 소득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 상향'의 조건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제고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중요한 개선 필요사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육아휴직은 '급여수준 상향' 다음으로 '이용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조사 시점 기준 자녀 1명당 1년간의 기간 이상으로 연장을 원하는 수요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개선 요구 중에는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는 10.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는 현재 급여 수준에서 아버지의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직장분위기의 부담이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단, 아버지가 이용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는 '급여수준 상향'보다는 '이용기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한 여성의 건강회복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신생아 양육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아버지의 양육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핵가족화로 주변의 양육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부부가 자녀 양육을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시간 지원 제도의 유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간'의 시간을 지원하는 '휴직' 관련 제도(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는 남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급여수준 상향'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 지원 제도의 이용이 장기화될 경우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직접적으로 가계 유지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원하는 기간만큼의 휴직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돌봄휴직'의 경우는 현재 무급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급휴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가족돌봄휴직과 동일하게 현재 무급으로 운영되나, 이용 기간이 연중 최대 10일에 한정되므로 유급화에 대한 요구는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비해 영아 부모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생소한 제도에 속해 전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홍보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볼 수 있겠다.

〈표 V-3-5〉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의 개선점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간 확대	급여 수준 상향 (유급화 포함)	이용 자격 제한 완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용 시 업무 수행 상의 불편 제거	이용 시 경력 에서의 불이익 금지	기타	개선 필요 사항 없음	계(수)
배우자 출산휴가	**36.5**	**10.8**	**1.6**	**40.2**	**5.1**	**4,9**	**0.6**	**0.4**	**100.0(493)**
어머니 육아휴직	24.4	**40.6**	1.2	20.7	5.5	6.5	0.7	0.2	1000(401)
아버지 육아휴직	10.3	**33.6**	1.9	**43.0**	4.7	5.6	0.0	0.9	100.0(10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28.0	16.5	2.7	**36.8**	8.8	4.9	0.0	2.2	100.0(182)
가족돌봄휴직	26.5	**35.3**	0.0	23.5	5.9	8.8	0.0	0.0	100.0(34)
가족돌봄휴가	21.6	30.7	2.3	**35.2**	5.7	2.3	1.1	1.1	100.0(88)
가족돌봄 위한 근로시간 단축	31.6	21.1	0.0	**42.1**	2.6	2.6	0.0	0.0	100.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시간지원제도 중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요구에 차이가 있는 '육아휴직'을 '아버지 육아휴직'에 한정하여 가구의 제특성에 따라 추가 분석해 보았다.

아버지 육아휴직의 개선 필요 사항을 '맞벌이 여부', '본인(어머니)의 근로소득'에 따라 살펴 보았는 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맞벌이 가구인 경우(13.7%)에 외벌이 가구(2.9%)에 비해 '이용기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슷한 맥락에서 배우자인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 육아휴직의 '이용기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고, 반대로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수준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아버지 육아휴직'을 '맞벌이 가구' 의 아버지 또는 극단적으로 '소득이 높은 여성'의 배우자인 아버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어떤 아버지라도 자녀 양육을 직접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급여수준 상향'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Ⅴ-3-6〉 아버지 육아휴직 개선점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간 확대	급여 수준 상향	이용 자격 제한 완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용 시 업무수행 상의 불편 제거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개선 필요 사항 없음	계
전체	10.3	33.6	1.9	43.0	4.7	5.6	0.9	100.0(107)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3.7	32.9	1.4	42.5	4.1	4.1	1.4	100.0(73)
맞벌이 아님	2.9	35.3	2.9	44.1	5.9	8.8	0.0	100.0(34)
$X^2(df)$	4.5(6)(b)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4.0	36.0	0.0	60.0	0.0	0.0	0.0	100.0(25)
300만원 미만	10.7	35.7	3.6	32.1	7.1	10.7	0.0	100.0(28)
300~500만원 미만	11.4	31.4	2.9	42.9	2.9	5.7	2.9	100.0(35)
500만원 이상	15.8	31.6	0.0	36.8	10.5	5.3	0.0	100.0(19)
$X^2(df)$	13.7(18)(b)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b)로 표기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4.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개선 요구

가. 응답 전문가 특성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자인 학계 전문가 32명에게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요구를 조사하였다. 학계 전문가 주 연구 분야는 아동(보육)/가족이 46.9%, 유아교육이 18.8%, 사회/여성, 사회복지, 경제/행정이 34.4%로 구성되었다. 연구경력은 21년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이하 및 16년~21년 미만이 각각 31.3%로 동일한 비율이었다.

〈표 V-4-1〉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전체	전체
전체	100.0(32)
주 연구 분야	
아동(보육)/가족	46.9(15)
유아교육	18.8(6)
사회/여성, 사회복지, 경제/행정	34.4(11)
연구 경력	
15년 이하	31.3(10)
16년 이상 21년 미만	31.3(10)
21년 이상	37.5(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1) 한국의 양육지원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

영아 대상 양육지원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으로 '서비스, 현금, 시간지원을 아울러, 전반적으로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3%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서 다음을 제기하였다. 현 정부의 현금 지원 강화가 여성노동 등 젠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모의 직접양육이 가능하도록 시간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현금지원의 확대로 가정양육이 강화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세부 부문별 방향성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으나,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현금 지원 정책에서 '아동이 어릴수록 더 높은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해당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가 오히려 많이 소요되므로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편적인 현금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46.9%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의

견으로는 가구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한 차등지원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금 지원 보다는 서비스와 시간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현금 지원 강화가 가정양육을 유도하여 취약가구 영아의 발달 및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었다.

서비스 지원 정책 부문에서는 '보육서비스는 돌봄 공백과 대응의 필요성 이외 다양한 욕구 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시킴' 96.9%,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비용 차등지원' 75.0%,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확대' 78.1%, '영아의 어린이집 연장보육 지원자격 제한' 68.8%, '시간제 서비스 지원보다는 정기적·반일제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중심으로 발전시킴' 65.6%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질 관리의 어려움으로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단보육의 질 제고가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연장보육의 이용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이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 '아동의 생후 1년 까지 시간지원을 강화'에 대해서는 96.9%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일상적인 일·가정양립 지원 보다는 집중적인 돌봄시간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46.9%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와 이후 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집중적인 돌봄 시간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여성 위주의 제도 활용으로 성 평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표 Ⅴ-4-2〉 현행 영아 대상 양육지원정책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단위: %(명)

구분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모름	계(수)
전반 방향성	서비스/현금/시간지원을 아울러 전반적으로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확대	56.3	37.5	6.3	100.0(32)
현금 지원 정책	아동이 어릴수록 더 높은 수준의 현금 지원	34.4	56.3	9.4	100.0(32)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편적인 현금 지원 위주로 지원	46.9	53.1	0.0	100.0(32)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수준 확대	37.5	59.4	3.1	100.0(32)

구분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모름	계(수)
서비스 지원 정책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확대	78.1	18.8	3.1	100.0(32)
	보육서비스는 돌봄 공백 대응의 필요성 이외 다양한 욕구 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시킴	96.9	0.0	3.1	100.0(32)
	시간제 서비스 지원보다는 정기적·반일제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중심으로 발전시킴	65.6	21.9	12.5	100.0(32)
	영아 대상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자격 제한	68.8	25.0	6.3	100.0(32)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용을 선별적으로 차등지원	75.0	15.6	9.4	100.0(32)
시간 지원 정책	아동의 생후 1년까지의 시간 지원 강화	96.9	3.1	0.0	100.0(32)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보다는 '집중적인 돌봄시간 지원' 강화	46.9	37.5	15.6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V-4-3〉 영아 양육지원정책의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영아 양육지원정책의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현금지원 중심의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에 반대함. 가장 중요하게 양육자들이 영아기에 가정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함. 가장 필요한 정책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지원 확대이며, 이와 더불어 가정양육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 가정양육의 강화는 젠더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특히, 저소득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인하기 때문에 계층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금지원 확대는 지양하고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시간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정양육을 확대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현금성 지원 등 가정양육 지원 확대는 여성의 가정 내 돌봄 강화, 돌봄 인프라 구축 위주로 확대 필요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V-4-4〉 현금 지원 정책 부문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현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아동이 어릴수록 더 높은 수준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정양육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취약가구의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으로 발달을 위한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자녀양육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릴 때 더 높은 수준의 현금지원 보다는 동일한 수준의 아동수당 지급이 더 타당함
- 보편적인 현금지원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지원은 가구소득이나 가구특성(가령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서비스 및 시간 지원 확대가 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현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자녀가 어릴수록 현금지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아동수당의 연령과 금액을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함
- 가구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구소득과 무관한 지원액은 불합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Ⅴ-4-5〉 서비스 지원 정책 부문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어린이집 연장보육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지원자격에 따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안 고려함
-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 확대 보다는 돌봄 공백 발생 사유가 사회적, 공적일 경우(맞벌이, 한부모 등) 보육기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아동 단위 비용 부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시간제보육,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보다는 정규적/반일제 기관 보육의 강화가 요구됨
- 가정내보육서비스 확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으므로 아동 1인당 보육교사 비율 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시설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방향이 보다 바람직함
- 1:1 파견서비스의 경우 충분한 물량 공급과 양질의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Ⅴ-4-6〉 시간 지원 정책 부문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시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
- 두 가지 방식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육아휴직 후에 복직 후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등이 적용되여야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함
- 일상적 시간 지원이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양립에 더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는 양육자의 노동 이력에 유리한 영향을 주지 못함. 생애 과정에서 양육을 일방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도 노동 이력에 유리하지 않음
- 육아휴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함. 그러나 휴가·휴직 지원 강화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함께 확대되어야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음. 두 정책은 대체관계로 접근할 성격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해야함
- 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옴. 근로시간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노동시장 내 지위 개선을 통한 성 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영아 연령별 강화 필요 정책 범주

영아 자녀의 연령대별로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 중 특히 어떤 부문에서 강화가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 지원,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 지원에 더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현금 지원의 강화에 대해서는 전(全)

연령대에 걸쳐 6.3%~9.4%로 낮은 수요를 나타냈다.

〈표 V-4-7〉 연령별 강화가 필요한 정책 범주

단위: %(명)

구분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	현금성 지원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	계(수)
0세(0~11개월)	12.5	6.3	**81.3**	100.0(32)
1세(12~23개월)	25.0	6.3	68.8	100.0(32)
2세(24~35개월)	**53.1**	9.4	37.5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정책 부문별 개선 방향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 순으로 세부 과제별 강화 필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 지원 부문은 어린이집(연장보육),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이 포함되며, 일반 서비스와 단시간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일반 서비스로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필요+ 필요) 은 '기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96.9%(평균 4.8점, 5점 만점), '영아보육의 지리적 접근성 보장' 93.8%(4.5점),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이용 편의성 제고' 81.3%(4.2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 75.0%(4.2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충과 연장보육 이용비용의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화는 공히 59.4%의 응답자가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반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대상 자격기준 완화'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하의 낮은 지지를 보였다.

〈표 V-4-8〉 서비스 지원 정책의 개선 및 강화 필요성: 일반 서비스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평균
영아보육의 지리적 접근성 보장	0.0	0.0	6.3	40.6	53.1	0.0	100.0(32)	4.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0.0	6.3	34.4	34.4	25.0	0.0	100.0(32)	3.8
기관 보육서비스 질 제고	0.0	0.0	3.1	12.5	84.4	0.0	100.0(32)	4.8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평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	3.1	0.0	21.9	28.1	46.9	0.0	100.0(32)	4.2
어린이집 이용비용 지원 확대	6.3	15.6	50.0	25.0	3.1	0.0	100.0(32)	3.0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대상 자격기준 완화	6.3	15.6	37.5	31.3	9.4	0.0	100.0(32)	3.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비율 상향	3.1	18.8	40.6	37.5	0.0	0.0	100.0(32)	3.1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이용 편의성 제고	0.0	0.0	18.8	46.9	34.4	0.0	100.0(32)	4.2
연장보육 이용비용 소득기준 적용 차등화	6.3	3.1	28.1	37.5	21.9	3.1	100.0(32)	3.7

주: 평균은 '매우 불필요=1점'~'매우 필요=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단시간 서비스 지원에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 81.2%(평균 4.2점, 5점 만점), '시간제보육 질 제고' 78.1%(4.2점),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및 이용 편의성 제고' 78.1%(4.1점),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와 '시간제 보육반 증설'은 공히 68.7%(3.9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표 V-4-9〉 서비스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단시간 서비스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시간제 보육반 증설	0.0	3.1	28.1	40.6	28.1	100.0(32)	3.9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0.0	3.1	28.1	40.6	28.1	100.0(32)	3.9
시간제보육의 질 제고	0.0	0.0	21.9	37.5	40.6	100.0(32)	4.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0.0	0.0	18.8	40.6	40.6	100.0(32)	4.2
시간제보육 비용 지원 확대	6.3	15.6	59.4	15.6	3.1	100.0(32)	2.9
일시연계서비스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편의성 제고	0.0	3.1	18.8	40.6	37.5	100.0(32)	4.1

주: 평균은 '매우 불필요=1점'~'매우 필요=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으로는 영아자녀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참여 놀이 프로그램 및 양육 관련 자조모임 활동 지원 강화 등이 제기되었다.

〈표 V-4-10〉 기타 영아 양육을 위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과제

영아 양육을 위한 서비스 지원 부문의 추가 과제
- 영아 양육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처체계 개발
- 사전신청 없이 응급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 가구 상황별 시간제 양육지원 시간 확대(예, 다자녀, 쌍생아의 경우 시간제 돌봄시간 확대)
-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관련 소규모 그룹 활동 지원
- 영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현금 지원 부문에서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자동 지급' 81.3%(평균 4.2점, 5점 만점), '아동별 받을 수 있는 유사 현금 지원 통일·일원화' 75.0%(4.1점),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상향' 62.5%(3.5점) 순으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부모급여 지급 수준 상향'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낮은 지지를 보였다.

〈표 V-4-11〉 현금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계 (수)	평균
'부모급여'의 지급 수준 상향	21.9	28.1	34.4	6.3	9.4	0.0	100.0(32)	2.5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상향	6.3	18.8	12.5	43.8	18.8	0.0	100.0(32)	3.5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 확대	21.9	21.9	12.5	34.4	9.4	0.0	100.0(32)	2.9
아동별 받을 수 있는 유사 현금 지원 통일·일원화	0.0	12.5	12.5	31.3	43.8	0.0	100.0(32)	4.1
수급 자격 충족 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	0.0	6.3	9.4	37.5	43.8	3.1	100.0(32)	4.2
가구특성 반영하여 아동수당 차등 지원	15.6	21.9	12.5	34.4	15.6	0.0	100.0(32)	3.1

주: 평균은 '매우 불필요=1점'~'매우 필요=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현금지원으로는 영아 대상의 현금지원을 통합하는 방안과 소득기준을 적용한 부가급여, 유아 대상 아동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 부모급여의 2세아 확대 적용 등이 제기되었다.

〈표 Ⅴ-4-12〉 기타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부문의 개선과제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부문의 추가 과제
- 현재 흩어져있는 수당 종류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소득에 상관없이 주는 현금지원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이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필요
- 유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상향조정 필요. 현금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만2세까지 확대하는 것 필요 (0세, 1세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적 지급)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시간 지원 부문은 '집중적인 돌봄 시간'과 '일하며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세부 과제별 필요도를 질문하였다.

2개 항목 모두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히 93.8%(평균 4.7점, 만점 5점)로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집중적인 돌봄 시간의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상향 조정' 96.9%(4.6점),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87.5%(4.4점),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기간 확대' 81.3%(4.4점), '육아휴직 사후지급액 관련 규제 완화' 81.3%(4.3점),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유급화' 78.1%(4.1점),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71.9%(4.1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표 Ⅴ-4-13〉 시간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집중적인 돌봄 시간 부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평균
휴가·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0	0.0	6.3	15.6	78.1	0.0	100.0(32)	4.7
휴가·휴직 이용기간 확대	6.3	15.6	31.3	18.8	28.1	0.0	100.0(32)	3.5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0.0	6.3	21.9	28.1	43.8	0.0	100.0(32)	4.1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상향 조정	0.0	0.0	3.1	34.4	62.5	0.0	100.0(32)	4.6
육아휴직 사후지급액 관련 규제 완화	0.0	6.3	12.5	31.3	50.0	0.0	100.0(32)	4.3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기간 확대	3.1	3.1	12.5	15.6	65.6	0.0	100.0(32)	4.4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평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0.0	3.1	9.4	28.1	59.4	0.0	100.0(32)	4.4
육아휴직 이용 대상 아동 연령 상향	3.1	28.1	31.3	9.4	28.1	0.0	100.0(32)	3.3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유급화	0.0	3.1	15.6	50.0	28.1	3.1	100.0(32)	4.1

주: 평균은 '매우 불필요=1점'~'매우 필요=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또한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의 경우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평균 4점대의 지지를 보이는 가운데, '이용 기간 확대' 87.5%(4.4점, 5점 만점), '남성 근로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84.4%(4.4점), '제도 이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84.4%(4.3점), '휴직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 별도 산정' 81.3%(4.2점) 순으로 필요성이 응답되었다.

〈표 V-4-14〉 시간 지원 정책의 개선과 강화 필요성: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부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평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0	0.0	6.3	15.6	78.1	0.0	100.0(32)	4.7
이용 기간 확대	0.0	0.0	12.5	37.5	50.0	0.0	100.0(32)	4.4
제도 이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	0.0	0.0	15.6	40.6	43.8	0.0	100.0(32)	4.3
남성 근로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0.0	3.1	12.5	28.1	56.3	0.0	100.0(32)	4.4
이용 대상 아동 연령 상향	0.0	6.3	18.8	40.6	34.4	0.0	100.0(32)	4.0
휴직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 별도 산정	0.0	6.3	9.4	43.8	37.5	3.1	100.0(32)	4.2

주: 평균은 '매우 불필요=1점'~'매우 필요=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 지원으로는 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제기되었는데, 이때 부모권 보장의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한편, 반대로 육아휴직은 소득대체율 상향 보다는

지원 대상 확대가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외 기간이 정해진 육아휴직 이외 영아를 둔 가구에서 필요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표 Ⅴ-4-15〉 기타 영아 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부문의 개선과제

영아 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 부문의 추가 과제
- 돌봄 관련 휴직, 휴가, 유연근로 등의 방법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간 축소(임금보전),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을 다양화하고,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봄은 누군가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유지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함
- 육아휴직은 급여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 보다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현재 육아휴직은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육아휴직 보다는 일상적인 돌봄을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형평성 측면에서 역효과를 지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 영아 양육지원 정책 변화 및 영향에 관한 의견

1) 부모급여 도입의 영향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영아 가구의 양육비 경감 정도를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됨 28.1%+도움됨 68.8%)는 응답이 96.9%로 대부분 영아 가구의 양육비 경감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4-16〉 부모 급여의 영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 도움 정도

단위 : %(명), 점

①+② 도움되지 않음	③+④ 도움됨	계(명)	평균
3.1	96.9	100.0(32)	3.3

주: 매우 도움되지 않음은 응답이 없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유관 제도 이용 수요가 변화될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육서비스 이용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5.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과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4.4%, 31.3%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육아휴직 이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이었다.

〈표 V-4-17〉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제도 이용 수요 변화 예상

단위: %(명)

구분	이용이 감소할 것	이용이 증가할 것	변화가 없을 것임	잘 모르겠음	계(수)
보육서비스 이용	65.6	3.1	28.1	3.1	100.0(32)
아이돌보미 이용	31.3	34.4	25.0	9.4	100.0(32)
육아휴직 이용	3.1	34.4	56.3	6.3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육아휴직 제도 변화의 영향

육아휴직 이용 기간 확대 시 성별 이용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육아휴직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에게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7.5%,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4%로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육아휴직 이용 기간에 있어서는 여성에게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3.1%로 절반 이상이었고, 남녀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4-18〉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단위: %(명)

구분	남녀 모두에서 증가	여성에게서 증가	남성에게서 증가	변화가 없을 것임	계(수)
육아휴직 이용	34.4	37.5	0.0	28.1	100.0(32)
육아휴직 이용 기간	34.4	53.1	3.1	9.4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육아휴직 급여 상향 시 성별 이용 수요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 이용과 이용기간 모두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8.8%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는 육아휴직 이용 기간 확대 시에는 여성에게서만 이용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향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변화에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Ⅴ-4-19〉 육아휴직급여 상향 시 성별 이용 수요(이용률 및 이용기간) 변화 예측

단위: %(명)

구분	남녀 모두에서 증가	여성에게서 증가	남성에게서 증가	변화가 없을 것임	계(수)
육아휴직 이용	68.8	15.6	15.6	0.0	100.0(32)
육아휴직 이용 기간	68.8	18.8	9.4	3.1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 시 육아휴직 이용 시기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육아휴직 이용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더 이용 기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가 영아일 때 더 이용기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으로 31.3%에 해당하였다.

〈표 Ⅴ-4-20〉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의 확대 시 육아휴직 이용 시기 변화

단위: %(명)

자녀가 영아일 때 더 이용 기간 증가	자녀가 유아일 때 더 이용 기간 증가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더 이용 기간 증가	이용 시기의 경향성 변화가 없을 것임	잘 모르겠음	계(수)
31.3	6.3	43.8	15.6	3.1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 확대 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가 변화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금보다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절반 이상으로(59.4%) 높게 응답되었다.

〈표 Ⅴ-4-21〉 육아휴직 이용 가능 기간의 확대 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

단위: %(명)

지금보다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가 늦어질 것임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에 변화가 없을 것임	잘 모르겠음	계(수)
59.4	28.1	12.5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유아와 차별화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유아(만3~5세)와는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가 어디까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차별화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이 필요한 대상 연령은 만0~1세(생후 24개월 미만까지)라고 응답하였으며(50.0%), 만0세(생후 12개월 미만까지)라는 의견은 28.1%로 대다수는 0~1세까지를 유아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연령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4-22〉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

단위: %(명)

0세 (생후12개월 미만)	0~1세 (생후24개월 미만)	0~2세 (생후36개월 미만)	유아(만3~5세)와 차별화된 방향성 및 전략 불필요	계(수)
28.1	50.0	18.8	3.1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정합성 진단

현재 영아 양육을 돕기 위한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 정책의 범주 중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 또는 누락되거나 반대로 중복지원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전문가 중 약 50%가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28.1%는 특정 대상이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특정 대상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은 전문가 중 31.3%가 이에 응답하였다.

〈표 Ⅴ-4-23〉 현재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 범주에서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하거나, 중복 지원 또는 지원이 누락된 부분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한 부분	50.0	34.4	15.6	100.0(32)
특정 대상이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	28.1	43.8	28.1	100.0(32)
특정 대상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들)	31.3	37.5	31.3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Ⅴ-4-24〉~〈표 Ⅴ-4-26〉에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서는 '시간 지원'이 노동자 중에서도 대상이 한정된 점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지원이 미흡하거나 누락이 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외 발달 특이성이 있거나 장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영아, 다태아, 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아 등에 대한 정교한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육아휴직도 상한액이 낮아 지원이 미흡한 제도로 지적되었다.

〈표 Ⅴ-4-24〉 지원이 미흡한 대상과 미흡한 지원 내용

내용
- 불안정, 비정규, 비정형(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자에 시간지원(육아휴직 등) 미흡. 노동시장 내부자에 혜택 집중.
- 육아휴직은 낮은 상한액 설정으로 지원 미흡
- 양육 위기 상황(부모의 우울, 중독, 빈곤 등)에 대한 양육지원 미흡
- 발달특이성을 보이는 영아, 장애 위험군(경계선 영아)에 대한 지원 미흡
- 다태아, 한국 적응이 되기 전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영아 자녀 등에 대한 정교한 서비스 미흡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Ⅴ-4-25〉 지원이 누락된 대상과 지원 내용

내용
- 한국 국적 없는 거주 영아(국적 없는 영아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 파악 방안 필요)
-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가구(소득 파악의 정확성, 정교성 필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육아휴직 적용 제외
- 비정형 노동자 시간지원 대상 누락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한편, 지원의 중복과 관련해서는 연령별로는 영아기(특히 0세)에 다양한 지원이 중복되고 있고, 정책 지원의 범주별로는 유사한 형태의 현금 지원이 중복되고 있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외 육아휴직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상으로 육아휴직 이용 자체가 혜택을 누리는 것임에도 부모급여까지 받는 것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지원을 중복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표 V-4-26〉 지원이 중복된 대상과 지원 내용

내용
- 영아기에 수당과 서비스, 시간지원(휴직),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지원의 혜택이 집중되고 이후 연령별 격차가 큼. - 0세아에게 지원이 중첩적으로 몰려 있음.(현금, 서비스, 육아휴직). 0세 아동에 대한 보유지원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 범주별 중복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이 정비될 필요 있음.
- 특정 대상에 대한 중복보다는 유사 정책들이 중복 지원되고 있음. 적정수준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금 지원의 중복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표증인데(안정적, 복귀보장 등), 부모급여 지급과 육아휴직 이용이 모두 가능한 대상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지원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전문가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 정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가) 전반적 개선 방향의 필요성

앞서, 우리나라에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특정 대상은 지원이 미흡하거나 여전히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경우, 혹은 중복지원으로 지원 정책 간의 정합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였다(표 V-4-23 참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정책 범주 간의 중복지원이나 지원의 충분성 부족, 사각지대의 발생 등 정합성이 낮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책 지원 부문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그러한 개선 방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총 8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4점 만점 기준으로 '필요성' 인식을 평정한 결과, 8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모두 평균 3점(필요함)을

상회하여 전문가들은 8개 항목의 개선방향이 모두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 지원 부문 간 개선 방향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와 '정책수요자(영아 양육가구) 대상 일원화된 통합 정책 정보 제공 및 신청 플랫폼 구축'으로 평균 3.6점에 해당하였다. 즉, 전문가들은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중요시하는 점이 명확해야 그러한 목표를 위해 각 정책 지원 부문의 역할이 짜임새 있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영아 양육지원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를 가장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수요자(영아 가구)의 입장에서는 영아 가구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정책 지원의 선택지를 한 눈에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책 정보 제공 및 신청 통로(플랫폼)'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원화된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정책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양육지원 정책의 지원이 미흡하게 주어지거나 누락, 중복되는 대상을 파악하는데도 용이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유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조정'(3.2점), '영아 양육지원 정책 대상인 영아의 기준 일원화'(3.1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즉 전문가들은 정책 지원을 체계화하는데 있어 국가가 정책을 통해 목표로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각 정책 지원 부문들도 동일한 지향점 하에서 각 부문의 역할을 정하여 분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원화된 행정관리체계 구축이나 사업대상의 통일과 같은 것은 다소 '기계적·형식적' 체계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4-27〉 영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 서비스, 현금 지원 부문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단위: %(명), 점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수)	평균
총괄 컨트롤 타워 설립 또는 협력체계 구축	3.1	12.5	15.6	50.0	34.4	84.4	100.0(32)	3.2
'영아'의 기준 일원화	3.1	6.3	9.4	68.8	21.9	90.6	100.0(32)	3.1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①+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수)	평균
영아 가구 특성별 양육 요구의 파악 및 관련 정책 지원 구분	0.0	3.1	3.1	56.3	40.6	96.9	100.0(32)	3.4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	0.0	0.0	0.0	40.6	59.4	100.0	100.0(32)	3.6
시간, 서비스, 현금 지원의 정책 목표의 확인	0.0	0.0	0.0	53.1	46.9	100.0	100.0(32)	3.5
현금, 시간, 서비스 지원별 법령 정비와 통합 재정의 확보	0.0	3.1	3.1	43.8	53.1	96.9	100.0(32)	3.5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의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0.0	0.0	0.0	56.3	43.8	100.0	100.0(32)	3.4
일원화된 통합 정책 정보 제공 및 신청 플랫폼 구축	0.0	0.0	0.0	43.8	56.3	100.0	100.0(32)	3.6

주: '평균'은 '매우불필요=1점'~'매우 필요=4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나) 영아 양육지원 관련 사업의 대상(일원화) 연령 조정의 적절성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영아 양육 지원 사업들 간 지원 유형(범주)이나 소관 부처에 따라 '대상 영아의 연령 기준'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및 일원화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업인 '시간제 보육'은 현재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나, 주로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이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사업인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어, 시간제 보육의 최저 이용 월령도 생후 3개월로 하향 조정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68.8%가 이러한 최저 연령 하향을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재 0~1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모급여'의 경우 '시간제 보육'이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영아'를 36개월 미만(또는 이하)까지로 통일하기 위해 생후 35개월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4-28〉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대상 연령 조정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시간제 보육 이용 대상연령 하한 하향 조정 (생후 6개월 → 생후 3개월)	68.8	31.3	100.0(32)
부모급여 지급 대상 연령 상향 조정 (생후 23개월 이하 → 생후 35개월 이하	50.0	50.0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 영아 양육지원 관련 사업 조정의 적절성

영아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총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Ⅴ-4-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네 가지 항목 중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으로 육아휴직 종료 및 복귀 추가'에 96.9%의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은 적절한 기준 변경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들에 가구소득, 자녀수 또는 출생순위(다자녀 우대) 등 차등 지원 기준을 도입'(68.8%), '어린이집 연장보육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65.6%),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차등화 하는 등 '시간 지원에 자녀수 기준을 적용한 지원 강화' (65.6%) 순으로 지원기준 변경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4-29〉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기준 변경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현금성 지원에 차등지원 기준 도입	68.8	31.3	100.0(32)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로 '육아휴직 종료 및 복귀' 추가	96.9	3.1	100.0(32)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65.6	34.4	100.0(32)
시간 지원에 자녀수에 따른 지원 강화	65.6	34.4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한편 현금지원 종류가 다양화되어 영유아 1인당 2가지 이상의 현금성 지원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동일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대상자가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면, 대상자의 현금지원별 자격기준(연령, 기관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을 일괄 산출하여 통합하여 지급하는 '현금지원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응답 대상 전문가 중 81.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외에도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기타 휴가·휴직 제도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은 71.9%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4-30〉 제도 개선 방안의 적절성

단위 : %(명)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
현금지원 통합 방안의 적절성	81.3	18.8	0.0	100.0(32)
기타 휴가-휴직 제도 유급화 방안의 적절성	71.9	21.9	6.3	100.0(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현재 36개월 이하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달리 4가지 소득기준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전문가 조사에서는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기준유형 '라'형까지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질문하였는 바, 전체 응답 대상 전문가 중 본 설문에 응답한 총 30명의 전문가 중 46.7%는 비용지원 대상 확대에 찬성하였으나, 나머지 53.3%는 반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였다.

〈표 V-4-3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① 매우 반대	② 대체로 반대	①+② 반대	③ 대체로 찬성	④ 매우 찬성	③+④ 찬성	계(수)	평균
16.7	36.7	53.3	33.3	13.3	46.7	100.0(30)	2.4

주: 평균은 '매우 반대=1점'~'매우 찬성=4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잘모르겠다' 응답(2인)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한편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가장 고소득층인 '라'형까지 확대)할 경우 이는 중상위소득, 고소득가구가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 기관보육서비스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소득기준유형 '가~다'형까지 지원하는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 "비용 지원 대상 확대보다는 돌봄인력 서비스의 질 보장, 신청의 간소화 및 이용가능성의 제고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외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소득층에는 비용 지원을 더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혜택이라는 점'도 '라'형까지의 비용 지원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였다.

한편,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으므로, 지급받은 부모급여를 이용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고소득층을 비용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면 이중혜택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다.

〈표 Ⅴ-4-3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반대 이유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는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는 방향임. 라형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선별주의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중상위소득, 고소득가구가 가정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면, 기관보육서비스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현재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라형의 경우 소득 기준, 대상 등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데, 굳이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을 통해 일정기간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한 라형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현행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이 적정함.
- 부모급여를 통해 비용지원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있다고 판단함.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의 소득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부모급여를 지급하므로 중복지원이 될 수 있음
-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은 최저임금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자체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는 비용보다 이용이 어려운 점이 더 문제임.
- 비용 지원 대상 확대보다는 돌봄인력 서비스의 질 보장, 신청의 간소화 및 이용가능성의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5. 소결

본 연구를 위한 영아 양육 가구 대상의 조사에서 영아 양육시의 행복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일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나 존중의 부족'과 '아픈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난감함',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분위기'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느 시기보다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크고, 또 그로인한 정신적인 부담도 큰 시기인 영아 양육기에 사회적으로도 부모됨이 폄하되고 지지받지 못하는 분위기는 부모들이 느끼는 영아 양육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영아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은 우선적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한편, 이를 존중하고 가치롭게 보는 사회적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는 결과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 5장에서 제시된 부모 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조사 및 전문가 조사의 결과 영아 부모들이 양육지원 정보 획득 및 신청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적·종합적 육아정책 정보 제공 플랫폼'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들이 크게 다양화되고 확대되었으나 대부분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정보 접근성'은 양육지원 수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나 자격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손쉽게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는 '통합적·종합적 정보 채널', 그리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조사에서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방향성에서도 높은 동의를 얻은 항목이었다.

둘째,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영아 부모 대상 조사 결과, 영아 부모의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별로 인지도 차이가 커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60% 전후로 인지도가 높았으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내용까지 아는 경우는 18.8%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실제 영아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미만이었다. 영아기에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70% 이상이 알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았으며,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아동수당은 적용 연령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경우는 94.2%이었다. 현금성 급여의 사용처를 질문한 결과, 자녀의 식비가 65.0%로 절반 이상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만 0세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족의 생활비와 식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위한 금융관련 비용(보험, 적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위한 영아 부모 FGI 참여 사례 중에서는 영아 가구의 소득의 불충분성,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자녀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소득계층에 동일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만큼,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별·가구 소득수준별로 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출산·양육 관련 시간 지원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60~70%대로 인지도가 높았으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50%대,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1/3정도의 인지도를 보여 각 제도 간 편차가 컸다. 또한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이용한 경우는 종사자 지위에 따라 수혜 비율이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용 의향은 70~80% 이상이나 실제 사용한 경우는 10% 대로 실제로 사용하고 싶어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아버지의 육아휴직의 사용 비율은 10.9%로 어머니의 육아휴직 이용률인 40.1%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시간 지원 이용에서의 성별 격차도 드러났다. 이처럼 출산·양육 관련 시간지원 정책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 상황과 근로소득 수준, 성별에 따라 이용 여부가 차이가 크므로 이

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은 영아 양육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25.9%)이며, 다음으로는 부모가 영아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지원', 부모를 대신해 영아를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영아기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반대로 기존의 영아 가구를 위한 양육지원이 주로 대리 돌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직접 돌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이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리 양육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력이 개별 가정으로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형태 보다는 믿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부모의 취업 형태, 가구소득 등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영아 양육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서 각 부모 입장에서 부족한 자원에 대해 지원 요구가 높은 당연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영아 가구 조사 결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욕구 차이를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0~2세 영아의 세부연령에 따라서도 각 범주 양육지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에는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간 지원'의 형태에서도 근로를 일정 시간 중단하고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원 혹은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도 차이가 있었으며, 기관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에도 세부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현금 지원은 소득계층별 차등을 두어 욕구가 높은 계층에 지원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간 지원의 설계에서는 자녀의 연령별로 더욱 유용한 시간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여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관 혹은 대리돌봄 인력을 활용한 대리돌봄 서비스의 지원은 시간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의 증감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역시 자녀 연령별 더욱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로 전문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아 양육지원의 방향성 및 개선과제에 관해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연령대별 부문별 양육지원의 비중은 0~1세아는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2세아부터는 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금지원은 0~2세아 전(全) 연령대에 걸쳐 강화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므로 추가적인 강화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영아 양육지원의 방향성은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되, 서비스 지원과 부모의 직접 돌봄을 위주로 강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현금 지원 부문의 세부 과제로는 현재 부모급여 지급대상인 23개월 이하의 경우 수당액의 상향 조정은 불필요하나,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금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2세아에 대한 현금지원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보편적 수당을 강화할 시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자녀수에 따른 가구소득의 형평성 제고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서비스 지원 부문의 세부 과제로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시간제), 시간제 보육 등 전반에 걸쳐 서비스 질의 제고가 일차적인 과제로 파악된다. 또한 영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의 접근성 제고는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보다 우선시되는 과제로 볼 수 있다. 연장보육의 지원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반대 의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엄격한 제약으로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밖에도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 절차를 간소화 하여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간 지원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휴직제도의 강화 보다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의 강화가 보다 강조되므로 이용 기간의 확대와 휴직제도와의 별도 설계 등을 포함하여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휴직제도 이외에 일상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시간 지원 정책은 관련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여성 위주로 제도가 이용되지 않도록 배우자 및 남성의 제도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육아휴직제도는 기간 확대 보다는 사각지

대해소가 우선시되며, 휴직급여의 상한선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이나, 소득대체율의 상향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육아휴직제도의 이용기간 변화는 여성에게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인해 육아휴직 이용 기간 증가가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을 높여 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지 검토가 요구된다.

VI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01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02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준별 체계화 방안
03 영아 양육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Ⅵ.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제 5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이 영아 양육 가구의 양육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수월성을 제고, 체감도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방향성과 체계화의 요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2~4절에 걸쳐 제시된 국내외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발전 배경과 현황을 비교하고, 영아 부모 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영아 양육의 현황과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파악한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한편, 5장에서는 이외에도 영아 양육 가구의 양육실태 분석 결과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 전문가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영아 양육지원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1.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가. 정합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로의 재구조화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는 정책 지원의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 중 50%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범주에서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하고, 28.1%는 지원에서 누락된 대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반대로 중복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의견도 31.3%에 해당하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원에 따라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의 형태가 갖추어져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형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에도 지원 대상, 지원 정책의 범주, 범주 내 지원사업 간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의 미흡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정책 지원의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책 범주별로는 '서비스', '현금' 지원에 비해 '시간' 지원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은 범주로 지적되고 있었다. '시간' 지원은

근로의 형태, 종사상 지위 등 취업 부모가 속한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른 명백한 지원의 격차가 발견되는 범주로, 이러한 특성을 불문하고 취업자인 부모 모두가 영아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괄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시간'지원의 경우 이용자의 성별 격차도 큰 범주로 이용 대상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현금' 지원의 범주에서는 유사한 수당이 다른 명칭으로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폐합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범주임은 정합성 제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대상면에서는 특히 0세 영아를 포함한 영아기에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점이 중복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이는 영아기의 양육지원 욕구가 유아에 비해 다양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영아기(0~2세)에 해당하는 자녀 양육의 욕구를 세부 연령별로 더욱 강화·집중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연령별 '핵심 욕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는 한편, 핵심 욕구가 아니더라도 욕구의 다양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유관 정책 범주·사업의 변화(특정 범주·사업의 확대, 축소 등)에 따른 정책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대응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향 중 '정합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위한 영아 부모 조사에서 부모들은 '서비스', '시간' 지원 정책에 있어서 인지 및 수혜 경험이 없었던 경우라도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은 이용 미경험자 중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용 대상의 확대나 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경우 이용이 활성화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짐작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의 이용기간 확대시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육아휴직을 이용한 부모의 직접 돌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아의 기관 이용 시기도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영아 보육서비스 기관의 수요 감소를 고려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일본의 경우처럼 영(유)아 양육지원 업무에 대한 행정부처 일원화, 관련 법률의 통합 제정 등 형식적 측면의 정합성 제고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영아 양육지원의 정합성 제고 방안 중 이러한 형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가장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양육지원 욕구에 따른 지원의 충실성·다양성(선택권) 확보

본 연구를 위한 영아 부모,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0~2세 각 연령별 현재 수요에 비해 미흡하여 강화가 필요한 범주들이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모들이 영아를 양육하며 느끼는 주된 애로사항인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 '아이를 맡길 믿을만한 돌봄 인프라(기관 및 인력)의 부족',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 등도 부모의 취업특성, 가구소득 등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아 가구가 필요로 하는 양육 지원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핵심적인 양육지원의 유형이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연령의 영아라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양육지원은 가구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양육자원(서비스, 현금, 시간)별 정책지원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각 욕구 대응의 충분성은 정책지원의 종류의 다양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정책 범주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선택하더라도 선택한 양육 방식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욕구 대응의 충분성(충실성)'을 체계화의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영아 연령별 핵심 양육지원 전략 차별화

영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상 영아의 세부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현금지원은 영아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지원이었으나, 다음으로 많이 요구된 '시간 지원'은 시간지원이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지원 유형(예: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로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영아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지원 중에서도 '가정에서 자녀를 장시간 돌봐주는 서비스

지원'과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지원'은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보육서비스 지원'은 2세 영아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 '서비스'의 세부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요구를 종합하면 0~1세 영아 양육기에는 '부모의 직접 돌봄'과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강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2세부터는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과 '일하며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부모 직접 돌봄 시간 지원'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의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양육지원 정책의 전략과 방향성이 '유아'대상의 정책 지원과 차별화되어야 할 '영아 양육지원 대상'연령은 0~1세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 바, 영아 중 0~1세에 대한 양육지원 방향과 전략은 2세와 구분하여 수립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 수요자의 정책지원 접근성 제고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는 무엇보다 수요자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을 쉽고 빠르게 이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지원의 효과(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은 보편적인 지원이라 해도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되므로, 무엇보다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과 수급까지 빠르고 쉽게 연계가 되는 것이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의 영아 부모 대상의 조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의 정보 획득을 주로 지역맘카페, 블로그, SNS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정보마다 따로 정보를 찾고 대상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정보제공 채널별 정보의 차이로 인한 혼란 등 정책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을 지원받는데 있어 영아 부모의 정보력에 따른 불평등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양육지원 정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는 공신력 있고 대표성 있는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수요자의 정책지원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은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의 주무부처와 사업 운영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

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 제공자도 해당 플랫폼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정보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은 단순히 양육지원 정책을 함께 보여주는 통로가 아닌, 개개 정책지원 대상자(아동, 부모)의 특성별(아동 연령, 양육형태, 부모 취업 여부, 가구소득 수준 등) 수급 자격 있는 지원이 자동적으로 확인되고 신청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종합적·통합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2.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준별 체계화 방안

영아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따라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아 양육지원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개발·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제도 설계가 영아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누락된 부분 없이 잘 설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영아 양육지원의 효율적·효과적 제공과 수급을 위한 영아 양육지원의 체계화를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정책 목적에 따른 정책 범주 체계화

먼저 수요자의 어떠한 양육지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지 그 '목적'에 따른 범주가 체계화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이 일정 시간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돌봄 및 교육의 제공인지(서비스), 자녀 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가구소득 감소 대응 등 경제적 부담 완화인지, 자녀를 근로자인 부모가 (일상적으로 근로할 시간에)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인지(시간)[89] 등 지원 목적을 기준으로 정책 범주를 구분하여 각 범주별 갖추어진 정책들을 분류, 확인하여야 한다.

89)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의 '일(근로)'로 인한 것이며, 일정 시간 '일' 대신 부모 직접 돌봄을 택하는데 따른 소득 감소 및 단절, 경력상의 불이익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표 Ⅵ-2-1〉 자녀 양육지원의 범주별 지원 목적에 따른 체계화

범주	지원 목적	관련 법령
서비스	일정 시간 (부모 등 보호자를 대신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돌봄 및 교육)을 제공함.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정의)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
현금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양육비 추가, 소득 감소) 경감	•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 • 「영유아보육법」 제32조의2(양육수당) 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시간	근로자인 부모가 (근로 시간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허용함 제19조의2(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허용함

주: 연구자가 임의 구분한 내용임.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8호)」 제19조; 제19조의2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456호)」 제2조; 제32조의2
「아동수당법(법률 제19455호)」 제1조
「아이돌봄지원법(법률 제19338호)」 제2조

나. 지원 대상 특성에 따른 체계화

다음으로 각 정책 범주의 지원 대상의 특성이 체계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영아의 연령, 맞벌이 여부(또는 대리돌봄의 욕구 여부), 소득 수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양육 취약계층(예: 다문화 가정),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특성(예: 장애, 발달 수준 등) 등을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체계를 구분할 경우 대상별로 특정 지원 정책에서 누락되는 등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해당 연령의 모든 영아를 포함할 경우 '보편지원', 일부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이 특정될 경우

‘선별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이 보편적으로 모든 영아를 포함하더라도 지원 내용은 다시 가구 및 영아 특성에 따라 차등화 될 수 있다.

〈표 Ⅵ-2-2〉 영아 양육지원의 대상 특성에 따른 체계화

	대상	지원 내용	예
보편 지원	영아 가구	지원 대상 내 동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중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서비스(보육료)
		지원 대상 중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돌봄 공백 발생 여부)
선별 지원	부모가 근로자인 영아 가구	동일	일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배우자 출산휴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등	3+3부모육아휴직제(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성별에 따른 차등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이용시 우대 조치
	저소득 가구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장애 아동 가구	동일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농어촌 거주 가구	동일	농어촌양육수당
	기타	취업, 구직, 돌봄 필요, 저소득, 다문화 등에 따른 이용 자격 부여	어린이집 연장보육

주: 연구자가 임의 구분한 내용임.

다. 지원 유형에 따른 체계화

마지막으로 정책 범주 내에서도 지원의 방식, 즉 ‘유형’을 기준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먼저, 부모 혹은 보호자를 대리한 돌봄 및 교육, 즉 양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범주의 정책은 장소와 시간에 따른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집 등 집단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인 경우 ‘기관양육(돌봄)지원 서비스’, 영아의 집 혹은 돌봄제공인력의 집 등 일반 ‘가정’에서 제공될 경우 ‘가정 내 돌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의 장단과 정기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리돌봄서비스의 시간이 길고 정기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장시간 서비스’, 이용이 1회성 혹은 수시적 형태로 가능하며 1회 이용시간이 비교적 짧고 1~2시간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

도 기관 돌봄서비스와 가정 내 돌봄서비스와 중복적인 부분이 있으나, 양육지원(돌봄)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다. 즉, 돌봄제공자 1인이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형태와 돌봄제공자 1인이 원칙적으로 1:1의 형태로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가능할 것이다.

시간 지원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처럼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양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휴직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유형으로는 근로자인 부모가 근로를 지속하면서 하루 중 일정시간 혹은, 주요 사유 발생시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와 같은 형태이다. 유연근무제도의 경우는 일정 시간을 자녀양육을 위해 할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자녀돌봄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크게는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금 지원'의 경우 지원의 횟수나 기간에 따른 유형 구분, 대상의 보편성에 따른 구분 또는 지원 금액의 차등화 여부에 따른 구분 등 다양한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표 Ⅵ-2-3〉 영아 양육지원의 지원 유형에 따른 체계화

정책 범주	지원 유형 구분 기준	구분 기준별 지원유형	예
서비스	서비스 제공 장소	기관 양육(돌봄)지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연장보육 포함)
		가정 내 양육(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제공 시간	장시간 양육(돌봄)지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연장보육포함),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시간제돌봄서비스
		단시간양육(돌봄)지원	시간제보육, 시간제돌봄서비스,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 제공 형태	집단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개별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시간 제공 형태	집중적인 양육(돌봄)시간 제공	휴직제도(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일상적 일-양육 양립 시간 제공(하루 중 일정시간, 주요 사유 발생시 일정 기간)	근로시간단축(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휴가(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소득 지원	유급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정책 범주	지원 유형 구분 기준	구분 기준별 지원유형	예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무급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현금(성)	지원 횟수 및 기간	1회성 지급	첫만남 이용권
		일정 기간 정기적 지급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수당, 농어촌수당 포함), 아동수당
	대상	보편적(연령별)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일반), 아동수당
		선별적	장애아동수당, 농어촌수당, 기저귀조제분유(저소득) 지원
	차등 지원 여부	연령별 차등지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수당, 농어촌 수당 포함)
		차등기준 없음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주: 연구자가 임의 구분한 내용임.

3. 영아 양육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는 향후 지향해야 할 영아양육지원의 전반적 방향성은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의 확대’로 수렴되었으나,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추진 전략은 현금 지원의 확대가 아닌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는 ‘시간 지원’, 가정양육 가구를 위한 ‘서비스 지원’의 확대 위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또한 영아를 위한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관보육서비스 등 대리돌봄서비스의 실수요층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 서비스 지원

1) 영아 보육 실수요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본 연구를 위한 영아 부모 조사 결과 0~1세아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어린이집 등 기관 보육서비스를 통한 장시간 대리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곧 현재 영아 부

모들이 0~1세 상대적으로 더 어린 영아들에 대해서는 부모 직접 양육을 기관 등을 이용한 대리양육 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예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급)육아휴직 기간 18개월까지 연장'이 실현될 경우 육아휴직 이용 및 육아휴직 이용 기간도 증가하며, 영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곧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될 경우 '영아'에 대한 '기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한편, 영아 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등 0~1세 대상 현금지원의 수준 증가도 부모들에게 육아휴직 이용 및 이용기간을 더 연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 이용 증가를 통해 기관 보육서비스 수요 감소를 함께 예측하고 있었다.

다만, 비록 현재도 0~1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고, 특히 0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16.1%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의 영향이 0~1세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특히 0세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층은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선택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 외에는 없는 절박한 실수요층으로 짐작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0세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총 7시간 36분에 달해 1세~2세의 평균 이용시간(7시간 24분)보다도 장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0세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연장보육' 이용률도 54.9%로 1세(45.3%), 2세(41.6%)에 비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즉, 0세아 양육에서 가능하다면 부모의 직접 돌봄이 선호되고 있어 가정양육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0세아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장시간'의 기관 보육이 최선의 양육 지원일 수 밖에 없는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 필요 외 기타 다양한 욕구로(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 어린이집을 보편적인 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보다 높은 연령의 영아들에 비해 0세 혹은 0~1세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의 경향이 강화되는 방향 속에서도 부모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대리 돌봄' 실수요층을 위한 인프라로 반드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의 특성상 등하원 거리가 멀거나 장시간의 등하원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의 이용의 어려움이 더욱 크기 때문에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인프라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할 때 현재 20인 규모의 가정 어린이집 보다 더욱 소규모로 설치, 접근성을 높인 0~1세 위주의 '영아보육 어린이집(가칭)'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영아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인건비 지원 비율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가정 돌봄-기관 돌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수요자를 위한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강화: 취업예정자,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자의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보장

본 연구의 영아 부모 대상 조사 결과, 어린이집을 실제 보내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생후 14.7개월이나 최초 이용시기와 실제 이용을 원했던 희망시기와 일치하는 경우는 40.6%에 불과했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에는 희망했던 시기보다 빨리 이용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희망하는 시기는 평균 21.9개월로 약 7개월 빨리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원했던 시기보다 빨리 이용하게 된 경우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9.0%로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시간지원'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육아휴직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일견 '중복 지원(시간+서비스)'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복귀 예정 시기에 어린이집 연계가 안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입소대기를 하던 중 입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시기보다 이르게 보내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비율이 높고 출산 후 대부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관이 충분히 갖추어진 스웨덴의 경우 입소할 보육서비스 기관이 없을 것을 우려한 보육서비스 기관의 조기 입소와 중복 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최대 이용기간을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시기의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조기 대기와 조기 입소의 형태가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육아휴직의 종료 후 직장 복귀 예정으로 반드시 장시간 기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으로 추가하여 가점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이후의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를 보장하고, 시간 지원을 받는 동시에 서비스 지원을 이용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육아휴직 종류 후의 복귀 시기가 예정된 경우 혹은 신규 취업 시기가 예정된 경우 예정 시기에 맞게 연계될 수 있도록 입소우선순위의 추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특정 보육소 이용 신청 영아가 많은 경우 시정촌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조정을 한 후 이용가능한 보육소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처럼(장경희·유해미, 2019: 20-21, 23) 일부 지자체의 조정 등 개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영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아 연장보육료 수익자 부담·차등지원 도입

0~1세 영아보육서비스 지원 방향에서 기본보육 이후의 '연장보육서비스'는 '실수요자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현재와 같이 '장시간 대리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장시간 보육서비스인만큼 서비스 질(급간식, 인력,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등)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수익자 부담으로 영아가구가 연장보육료를 지출하도록 하는 한편, 영아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른 연장보육료 차등 지원과 총 보육료 지출액에 대한 상한액 설정을 동시에 마련하여 영아 가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장보육료의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가구소득 기준 유형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 동일한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보육료의 수익자 부담의 총액 상한은 0~1세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표 Ⅵ-3-1〉 실수요자를 위한 연장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실수요자를 위한 질 높은 연장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연장보육)	- 연장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및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도입 & 가구부담 최소화를 위한 보육료부담상한액 설정 - 수익자 부담 도입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유형과 통일된 기준 및 차등지원률 사용 고려. - 0~1세 부모급여 지급액을 보육료 총액이 초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한액 설정.

4) 단시간 이용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

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의 확대 등으로 특히 0~1세 이하 영아의 가정양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조양육자 없이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할 때 긴급하게 발생하는 단시간 대리양육 욕구에 대한 대응, 양육자의 육체적·정신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단시간 돌봄서비스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영아인 만큼 거점형의 형태보다는 보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인 형태로의 개소 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어린이집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간제보육반을 어린이집 내 개설하는 형태로 추진됨이 좀더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의 어린이집 정규 학급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별도의 안정적 인력을 두어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반을 두는 이른바 지역 거점 시간제보육기관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는 지자체의 유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순환하는 형태의 운행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시간제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과 더불어 수익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보육 비용 지원에 대한 재설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간제보육이 매우 저렴하게 제공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가정의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오남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시간제보육은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단가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됨에 따라, 일부 영아 가구에서 정기적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있음에도 가정양육을 선택하여 부모급여를(현금) 지급받고 시간제보육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최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미이용 영아에 대한 지원 수준 격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는 만큼, 이제는 시간제보육 이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대상 연령 하한을 현재의 생후 6개월에서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연령인 생후 3개월 이상으로 동일하게 맞추어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일본의 경우 시간제보육의 이용 하한 연령이 생후 2개월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산전후 90일(산후 최소 45일) 이상부터는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연령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경우 시간제보육 대상 영아의 연령별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돌봄 인력과 돌봄 환경 등의 구체적 보육 환경을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연령별로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68.8%가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3-2〉 서비스 지원의 개선 방안(종합)

개선 목표	대상 욕구	방안
실수요자 장시간 영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취업 등으로 인한 장시간 대리 돌봄 수요/양육 공백 해소	- 0~1세 대상 정원 10인~19인 이하의 소규모 영아 보육 어린이집 신설, 운영 기준 마련 - 연장보육 자격 제한 유지 -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에 '육아휴직 종료 예정' 추가
서비스 질 제고	(부모 직접 돌봄 불가시)믿고 맡길 수 있는 대리돌봄 욕구	• 연장보육료 소득기준별 수익자 부담 도입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 어린이집 0~1세반 연장보육서비스 가구소득별 연장보육료 차등 지원, 상한액 설정으로 비용부담 완화 - 연장보육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연장보육 석식 등 급간식 질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강화
단시간 이용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가정양육 가구의 단시간 돌봄 욕구	-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물리적 접근성 강화) -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연령 하향(현행 생후 6개월 이상 → 생후 3개월로 하향 확대)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양성 확대

나. 현금 지원

1) 유사 중복성 현금 지원 통합

자녀양육에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대 후반 이후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22년 이후 영아 대상으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수준을 대폭 상향한 '영아수당' 도입과 출산후 1년간 사용 가능한 '첫만남이용권' 도입,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등 0~1세 영아 대상의 현금 지원이 집중 확대되었다. 이는 그간 영아와 유아 양육 욕구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위주로 지원되었던 경향에서 영아 양육 가구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아기 양육 형태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국가 수준의 현금 지원은 종류별 목적에 있어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 현금 지원의 개수가 증가하였으나 영아 가구 입장에서도 어떤 수당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개별 수당 수급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한 개별 현금 지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상 아동의 연령 및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 자격조건을 한번에 확인하여 통합하여 지급하는 신청·지급의 일원화, 나아가 목적에 차별성 없는 현금 지원들을 통합하여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러한 통합·일원화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 가구소득, 자녀수 등 가구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구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차등 없이 아동의 연령이나 기관이용여부에 따라서만 수급액이 달라질 뿐 보편적으로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특히 특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금 지원이나, 근거법도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달라 더욱 혼동을 주는 상황이다.

한편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로 지원하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임에도 조건 없이 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10만

원의 금액을 현금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동일한 「아동수당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걸쳐 있는 유사·중복적 현금지원의 법률적 근거와 유형의 통폐합·간소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목적 또는 지급 주기의 차별성이 있거나(예: 첫만남이용권) 특정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현금 지원(예: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수당)을 제외하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개별 수당들은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 및 일괄 지급되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Ⅵ-3-3〉 유사·중복성 현금지원의 통합 방안

<table>
<tr><th>개선 목표</th><th>대상 현금 지원(근거법)</th><th>방안</th></tr>
<tr><td>유사·중복적 현금지원 통폐합</td><td>-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 부모급여 (아동수당법)</td><td>- 2~5세 가정양육수당을 ‘부모급여’체계로 통합
-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액 일괄 추가하여 지급
- 프랑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벤치마킹 및 변형(어린이집·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 전액 및 현금 차액 지급, 공공서비스 이용 외는 현금 수급액으로 이용)
- 연령별 부모급여 지급액 차등화 지속 적용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통합(안)]
<table>
<tr><th>구분</th><th>지급액 (’24년~)</th><th>비고</th></tr>
<tr><td>0세</td><td>100만원</td><td rowspan="3">서비스 선택시 바우처 전액 지원(단,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시간별 자부담 총액이 부모급여를 상회하는 경우 부모급여액까지만 지원)</td></tr>
<tr><td>1세</td><td>50만원</td></tr>
<tr><td>2~5세</td><td>10만원</td></tr>
</table></td></tr>
<tr><td>수급자의 신청·수급의 편의성 제고</td><td>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및 자격조건별 지급 일원화</td><td>- 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 신청
- 자격조건별 산정된 부모급여(현금) 수급액+10만원(아동수당) 통합 지급
<table>
<tr><th>구분</th><th>미이용시 (’24년 기준)</th><th>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총지급액(’24년~)</th></tr>
<tr><td>0세</td><td>110만원</td><td rowspan="2">① 부모급여〉보육료인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10만원)-보육료
② 부모급여〈보육료인 경우: 10만원(아동수당) 지급(보육료는 전액 지원)</td></tr>
<tr><td>1세</td><td>60만원</td></tr>
<tr><td>2~5세</td><td>20만원</td><td>10만원
②번 경우에 해당함.</td></tr>
</table></td></tr>
</table>

2) 욕구(양육비 부담 완화 욕구: 가구소득 수준, 자녀수)별 차등 지원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되고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보편 지원의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은 가구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원의 충분성·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수준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소개된 프랑스의 사례처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 양육 가구만 대상으로 하거나(예: 출산 보너스), 보편적 수당이라도 가구의 소득수준, 자녀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한 현금 지원(예: 출산 기초 수당, 가족수당), 취업 부모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대리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에 한정하여 소득수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등 현금 지원의 주된 목표인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차등지원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차등 지원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할 때, 가구소득 기준을 대표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시간 지원

1) 시간 지원의 포괄성 강화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 및 FGI에서 시간 지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요구하였다. 대표적인 시간 지원 제도인 '육아휴직'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장의 규모, 사업장의 분위기 등에서도 이용 가능성이 차이가 나며, 취업한 부모의 종사상 지위, 고용 형태 등에서 제도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취업한 부모들의 자녀 양육(특히 영아)을 위한 시간 지원 제도는 제도 이용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줄여가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

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욕구(자녀 직접 돌봄 시간 욕구: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도입

'부모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시간지원에 있어서도 핵심 욕구인 '자녀양육 시간'의 필요성 차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한 배우자(어머니)의 건강 회복과 양육지원의 목적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러한 기준을 고려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시 출생 자녀수 또는 총 자녀수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가 동시에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둥이), 혹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양육지원의 부담이 증가함을 고려해, 가구 내 총 자녀수 혹은 최소한 자녀 돌봄의 지원이 더 필요한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차등하여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프랑스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아버지 돌봄 휴가'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통상 25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태아 출산 시에는 32일의 휴가를 받는 등 다태아 출생에 따른 '돌봄' 자원의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 양육에서 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낀다고 응답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수 기준에 따른 다자녀 출생 가구에 추가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본 연구의 영아 부모 대상 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용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다음으로 높은 36.5%로 응답된 결과를 고려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10일 기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더불어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이 약 30% 추가됨을 고려 자녀수 1명이 추가될 때 3~4일의 휴가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Ⅵ-3-4〉 자녀수 기준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차등 부여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 지원 욕구 대응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자녀수 무관 배우자의 출산시 유급 10일의 휴가 부여 - 영유아 자녀수 기준(집중적 돌봄 필요) 자녀수 1명 추가 시 배우자 출산휴가 약 30~40% 추가 부여 - 예) 출생아 포함 영유아 자녀 1명 10일/ 2명 13~14일/3명 16~17일

3) 외벌이 가구(한부모 포함)의 취업 부모를 위한 시간 지원 인센티브 제공

외벌이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인 취업 부모(근로자인 한부모 포함)의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인 육아휴직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이용시 육아휴직급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맞벌이 가구보다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부모권이 '맞벌이 가구'의 부모, 혹은 '고소득 배우자'를 둔 부모에게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제고는 소득대체율의 인상 뿐 아니라 150만원으로 제한된 상한액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맞벌이 가구의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서 활용되는 특례와 유사한 형태로 '외벌이 가구'의 취업 부모, '한부모 가구'의 취업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상한액을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처럼 200~300만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표 Ⅵ-3-5〉 시간 지원의 취약대상을 위한 특례(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 지원 취약대상 지원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 외벌이 가구의 취업 부모, 한부모 가구의 취업부모 대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특례 지원 -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상한액 200~300만원선 인상)

4) 시간 지원의 성별 이용 형평성 제고

본 연구를 위한 영아 부모 대상 조사 결과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주요한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향후 육아휴직제도 이용 기간, 급여 확대 시 주로 여성의 이용율, 이용기간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남성의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있어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

위기 조성'이라 응답하여 현재 시간 지원 제도는 남성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영아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여성이 시간지원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남성의 시간지원 제도 이용이 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 위주로 시간지원제도가 이용되고 있고, 여성조차도 여성이 시간지원 제도를 이용해 자녀를 더 돌볼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시간지원제도의 확대가 여성위주의 자녀돌봄 경향을 더욱 공고화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남성의 시간지원제도 이용률을 제고하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부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3a).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고용노동부(2023b).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업무 편람.

관계부처합동(2006a).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관계부처합동(2006b).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6): 2015 가족 행복 더하기.

관계부처합동(2012).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관계부처합동(2018).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20~'2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2023. 4.).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황선영·엄지원(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김지현·최정원·윤유나(2020).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은지·정가원·배호중·김수진·성경·이상건·최영·안현미(2019).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

랜 2015.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2b).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

보건복지부(2023a).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보육사업 안내(본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3d). 2023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신수지·이승현(2017). 시간제보육 사업의 성과 및 내실화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양미선·서문희·이규림·김정민(2014).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김나영·박은정·오미애·송신영(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유해미·이규림·이민경(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1a).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b).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2022).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와 정책적 함의. 육아정책포럼, 74, 6-19.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2022). 육아정책포럼 제75호(겨울호), 정책동향, 아동 대상 현금지원 제도.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II):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a).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b).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장경희·유해미(2019).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정미라·김경숙·이방실(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제33권 제2호, pp.163-289.

최윤경·조숙인·이혜민·김정현·윤재석(2022a).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박은정·최선자·권혜진·박유경(2022b).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인터넷 자료]

고용노동부(2019).「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https://www.moel.go.kr/skin/doc.html?fn=20190911174709e51235a456c24ed2a3c8cb14d2ade8c4.hwp&rs=/viewer/BBS/2019/(인출일: 2023. 6. 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300494(인출일: 2020. 3. 25.).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여성, 모성보호육아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인출일: 2023. 6. 9.).

관계부처합동(2013. 5. 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p.129.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014(인출일: 2023. 5. 30.).

경향신문(2023. 2. 22). 저출생의 그늘, '보육 일선' 가정어린이집, 10년새 절반이 사라졌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2222113015(인출일: 2023. 2. 23.)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0399(인출일: 2023. 5. 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수당,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인출일; 2023. 5. 19.).

법제처,남녀고용평등법[시행 2001. 11. 1.] [법률 제6508호, 2001. 8. 14., 전부개

정]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5008&lsId=&efYd=2001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인출일: 2023. 5. 3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인구아동, 보육,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 _ID=06400108&PAGE=8&topTitle=%EB%B3%B4%EC%9C%A1%EC%A7%80%EC%9B%90%EC%B2%B4%EA%B3%84%20%EA%B0%9C%ED%8E%B8 (인출일: 2023. 5. 1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보육사업기획, 가정양육수당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3020200(인출일; 2023. 5. 19.)

연합뉴스(2023. 2. 19.). 저출생에 4년째 어린이집 8천개 문 닫았다…"인구절벽 체감",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7126500530?input=1195m(인출일: 2023. 2. 20.)

연합뉴스(2022. 8. 20.). [2023예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50100530(인출일: 2023년 5월 19일).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기획3]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육 분야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19060(인출일: 2023년 5월 19일).

KOSIS 국가통계포탈 사이트: 주제별 통계-국제기구별 통계-World Bank 성별통계 중 경제활동인구 통계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X023&vw_cd=MT_RTITLE&list_id=R_SUB_OTITLE_OTIT_WBTIT_4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RTITLE(인출일: 2023. 7. 3.).

KOSIS 국가통계포탈 사이트: 주제별 통계-노동-지역별 고용조사-경력단절 여성-연령대별/사유별 경력단절 통계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H08S&vw_cd=MT_ZTITLE&list_id=B19_EQ3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인출일: 2023. 7. 3.).

KOSIS 국가통계포탈 사이트: 주제별 통계-인구-인구총조사-2023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별(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vw_cd=MT

_ZTITLE&list_id=A_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인출일: 2023. 5. 10.)

표준국어대사전, 체계화,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5224f6adccf4c76b030aee16b33602b(인출일: 2023. 3. 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회복지, 양육수당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sitePage=(인출일: 2023. 5. 19.).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9. 4. 29.).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아이사랑플랜 심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내년부터 실(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4. 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인출일: 2023. 5. 1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6. 6. 23.). 맞춤형 보육 정책 관련, 전업주부-취업주부 차별, 교사 인건비가 삭감 등 의견에 대해 설명드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인출일: 2023. 5.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7. 11.). 맞춤형 보육 현장 정착을 위한 즉시 보완 등 실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인출일: 2023. 5.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4. 17.).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인출일: 2023. 5.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 15.).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인출일: 2023. 5.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9. 19.).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909&SEARCHKEY=TITLE&SEARCHVALUE=%EC%98%A8%EC%A2%85%EC%9D%BC+%ED%99%9C%EA%B8%B0%EC%B0%A8%EA%B2%8C (인출일: 2023. 5.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4. 1.).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인출일: 2023. 5. 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3.).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인출일: 2023. 3.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19.).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인출일: 2023. 5. 18.).

통계청 보도자료(2022. 6. 21.).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100&bid=211&tag=&act=view&list_no=418841&ref_bid=(인출일: 2023. 5. 15.).

통계청 보도자료(2022. 3. 24.). 2022 한국의 사회지표,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500&bid=10820&act=view&list_no=424445&tag=&nPage=1&ref_bid=(인출일: 2023. 7. 3.).

통계청 보도자료(2022. 12. 21.).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30600&bid=11814&act=view&list_no=422530(인출일: 2023. 3. 6.).

[해외자료]

〈일본〉

全国保育団体連合会・保育研究所(2023).『2023保育白書』ひとなる書房.

乳児保育研究会編(2019).『改訂5版資料でわかる乳児の保育新時代』ひとなる書房.

後藤茉莉(2023). 『出産・育児に伴う労働上の課題 - 育児休業を中心に - 』 国会図書館.

編集部(2023). '少子化対策強化に向け児童手当や育児休業給付拡充など提言'『労働基準広報』.

金川めぐみ(2023). 『ひとり親家庭なぜ困窮るのか - 戦後福祉法制から権利保障実現を考える - 』法律文化社.

내각부, '아동수당제도의 안내', 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annai.html(인출일: 20230. 9. 10.)

내각부, 어린이 육아본부,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에 대해서',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outline/pdf/setsumei(인출일: 2023. 9. 10.)

내각관보 HP.'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인출일: 2023. 9. 10.).

어린이가정청, 보육소 등의 관련 현황 정리 (2023년4월1일), 2023년 9월1일 보도자료 p. 3

어린이가정청, 성육국,「2021년도 인가외보육시설의 현황 정리」.

'어린이가정청' 어린이미래전략방침(리플렛)'의 필자전기. https://www.cfa.go.jp/resources/kodomo-mirai/(인출일: 2023. 9. 10.)

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연구소(2023). 2023년 보육백서. 히토나루 서방.

총무성통계국「한 눈에 보는 그래프 장기노동통계」(2023년 4월14일 갱신), https://www.jil.go.jp/kokunai/statistics/timeseries/html/g0203_02.html (인출일: 2023. 9. 10.)

후생노동성, 성별 · 이용기간별 육아휴업 이용률, 000851662.pdf (mhlw.go.jp) (인출일: 2023. 9. 10.)

후생노동성「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레이와시대의 사회보장과 노동을 생각한다-」, https://www.mhlw.go.jp/stf/wp/hakusyo/kousei/20/backdata/1-1-3.html#:~:text=%E5%9B%B3%E8%A1%A81-13%E3%80%80,%E3%82%8B%E3%83%BC%EF%BD%9C%E5%8E%9A%E7%94%9F%E5%8A%B4%E5%83%8D%E7%9C%81(인출일: 2023. 9. 10.)

후생노동성,「육아·개호휴업법 개정포인트 안내」000789715. pdf, (mhlw.go.jp).

〈프랑스〉

daylily Paris (2023). https://daylilyparis.com/fr/conseils-femme-enceinte/article/a-quel-age-mettre-bebe-en-creche-.html(인출일: 2023. 8. 1.).

Luc Masson (2015). La fécondité en France résiste à la crise, Situation sociale des pays européens depuis le début de la crise, Éclairage.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1).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20,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medias/cnaf/Nous_connaitre/Recherche_et_statistiques/Onape/Cnaf_Rapport%20Onape_Accueil%20du%20jeune%20enfant2021.pdf(인출일: 2023. 7. 1.).

OECD (2023)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인출일: 2023. 8. 1.).

프랑스 고용 · 노동·사회통합부(2023).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les-absences-pour-maladie-et-conges-pour-evenements-familiaux/ (인출일: 2023. 7. 1.).

프랑스 가족 수당 금고 (2023).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partagee-d-education-de-l-enfant-prepare(인출일: 2023. 8. 1.).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서비스 지원,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601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현금 지원,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시간 지원,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les-absences-pour-maladie-et-conges-pour-evenements-familiaux/

프랑스 행정부 (2023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601(인출일: 2023. 6. 1.).

프랑스 행정부 (2023b).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 (인출일: 2023. 6. 1.).

〈스웨덴〉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김연진·김진욱 (2022). 스웨덴은 어떻게 아버지친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스웨덴의 남성 부모휴가정책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3, 5-46.

김지현 (2023. 6. 22). "일과 육아, 왜 하나만 선택하죠?"…'경단녀' 없는 스웨덴, 비결은.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613032553966 (인출일: 2023. 8. 20.).

근로환경법[Arbetsmiljölag (1977:1160)]

다카하시 미에코 (2013). '세이브 더 패밀리' - 젠더와 아동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복지사회. 강내영, 온나자와 나오코, 홍일표 (번역).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편), 스웨덴 스타일: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 이매진, pp. 232-257.

박승희·채구묵·김철주·홍세영 (2007).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스웨덴 교육청, 1세 영아의 푀르스콜라 등록 인원 수 및 비율, https://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istik/sok-statistik-om-forskola-skola-och-vuxenutbildning?sok=SokC&verkform=F%C3%B6rskola&omrade=Barn%20och%20grupper&lasar=2022&run=1(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더블데이 사용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fp-dubbeldagar-ar-lan. (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부모휴가 사용 및 부모휴가급여 수급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fp-antal-mottagare-nettodagar-belopp. (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주요 변화 경향,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foraldraforsakringens-historia(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아동가정 주거비지원 수급 가구수 및 수급총액,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bob-mottagare-belopp-ar.(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아동돌봄휴가 사용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tfp-antal-mottagare-belopp/.(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임신급여 수급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barn-och-familj/statistik-inom-omradet-barn-och-familj---graviditetspenning.(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 및 다자녀 추가 수당 액수,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자녀양육비 지원 수혜 아동수,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barn-och-familj/statistik-inom-omradet-barn-och-familj---underhallsstod(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사회보험청, 10일휴가 사용 총일수 및 수급액 총액 현황,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tfp-antal-mottagare-belopp/.(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통계청. 성별 평균 월급여 수준,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105__AM0105A/Landsting3g12/(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성별 연령대별 이혼인구,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BE__BE0101__BE0101L/CivilstandTypPar/(인출일: 2023. 8. 20.).

스웨덴 통계청, 푀르스콜라 이용 아동 1인당 연간 소요비용,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UF__UF0514/UtbKostForskola/(인출일: 2023. 8. 20.).

시노다 다케시 (2013). 평등과 균형 – 복지사회의 일과 가정을 떠받치는 두 이념. 강내영, 온나자와 나오코, 홍일표 (번역).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편), 스웨덴 스타일: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 이매진, pp.208-331.

신필균 (2011).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후마니타스.

Abstract

A Plan for the Systemization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in Infants

Jeongwon Lee · Haemi Yoo · Hyejoo Cho · Yunhwan Kim · Yoonjeong Shin · Inae Han

As the support for households which bring up an infant is increasing recently, there is a growing concerning about the consistency of such support with applicable support system and a greater interest in the change of demands for infant-rearing support policy for those households. Therefore, systemization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supports for infant-rearing families quickly and to provide the subjects with adequate and effective supports to meet their need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child care system, or a method to systemize such system by analyzing the governmental supports for infant-rearing families in each key category and by identifying areas which show inconsistency between the objectives of individual system or areas where supports are overlapped or missing, the purpose of which is to make sure that people on the demand side can be guaranteed a variety of options depending on their needs and receive effective support.

As the key methodology, this study has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 fact-finding survey of infant-caring parents and FGI, and an expert survey, and has held a policy seminar. The fact-finding survey of infant-caring parents was carried out on 1,000 parents who raise an infant aged 0~2 years. The expert survey was carried out on a total of 40 preceding researchers in the areas of childcare policy for infants and toddlers in order to collect their opinions about the direction and method to systemize childcare support policy.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confirm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plans at the central government-level (such as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etc.) that the country's childcare support policies for infants and toddlers and its policy directions have been changed depending on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regime or other milestone event. The earlier childcare support policies wer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ies to support the mothers' economic activities and thus the majority of policies took the form of childcare cost support. However, the policies have been expanded to 'cash support' and 'time support' to assist the families' own childrearing as the appropriateness of 'childrearing in the family' was being emphasized. After 2019, guarantee of income and cash support for infant-rearing families were reinforced, and in 2023 the policy is being directed toward comprehensive supports for applicable families with the introduction of 'parent benefit'.

Second, in Korea, the childcare support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specialized for 'infants', excluding toddlers, are usually focused on the supports available to the families if they choose the option of 'childrearing in the family', while the purposes of individual supports, especially in the category of 'service' and 'time', tend to be inconsistent. It appears that due to the basic tone of 'expanding' the supports in all areas, there arise confusion in the goals of the policies.

Third, the infant-care support policies of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Japan, France, and Sweden, show the different directions depending on the country's ow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needs. In Japan, the supports have been expanded and developed focusing on childcare policies to support women's economic activity and to solve the issue of low fertility. In France, due to their strong family culture, a variety of options are offered for childcare in family rather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support policy. Especially, France seems to have developed the supports by meticulously reflecting different needs and demands of individual families for childcare supports in the cash support

category, such as the needs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 income level, or single family household. In the case of Sweden, their policy has been developed from multidirectional family policy perspectives which consider all related aspects, including population policy, social justice, and talent development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national development, and gender equality. Characteristically, the policy is especial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course of 'gender equality' more closely.

Fourth, the survey on the infant-rearing parents has revealed that the main caregivers of infants are 'child care/day care center(45.4%)' and 'mother(43.3%)', and 53.5% of the households in which both parents are working use a day care center. The average time of using a day care center is seven hours and 24 minutes, and 44.1% use extended hours, showing the high demands for a long-time day care center service. In the case of households in which mothers have long but regular working hours, extended hours of childcare service would be more convenient.

Fifth, the infant-rearing families actually send their child approximately seven months earlier than the time they wish to do so. This study has found that such phenomenon is due to their concern that they might not be able to use the day care center at the time of their expectation.

Sixth, the study has revealed that the main difficulties in infant-rearing are physical and mental burden, and childcare costs. Among the families in which both families are working, 'holding down a job and rearing a child' is also pointed out as a main difficulty, and the rate of career disadvantage experienced by the mothers due to childcare is remarkably higher as 44.5% than that of fathers as 9.5%. The majority of sources where the infant-rearing parents get the information about childcare support policies are local online communities for mothers, blogs and other similar SNS platforms. In respect to getting the childcare support information, most interviewees have answered that having to search for each information separately by different support program of the government is the most challenging part, and many have mentioned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platform for childcare policy information'

which provides integrated information and one-stop childcare service.

Seventh, the level of awareness of infant-rearing support policies is high as 90% in the area of 'cash support', but the awareness of childcare service and time supports is high only in some programs, while the level of awareness and actual experience of using the time support system which was adopted recently appears to be extremely low, showing a large discrepancy in different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Especially, the differences in demanding to improve the 'time support' system have been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by gender.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time support program which helps the families take care of their own child(ren) is mainly used by the mothers.

Eighth,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show that the majority are in favor of the expansion of various childcare support policies as a desirable direction. However, many have pointed out that the support expansion should be enhanced and focused on the time support rather than cash support. In addition, some experts have suggested 'age-specific difference' in childcare support, which strengthens the 'time support' for the families with 'younger child(ren) and strengthens the 'service support' as the children grow old.

Ninth, this study has asked about the potential impacts of policy changes, such as introduction of parent benefits, and extended parental leave. First, the experts have expected that the parent benefit would reduce the buren of childcare costs, the demands for the service of day care centers would be the same, and the extended parental leave would increase the use of such leave by both men and women, while the use period would be more increase among women. In addition, the experts have expected that the pay raise of parental leave benefit would increase both the use rate of parental leave and the use period in both genders.

Tenth, the experts have answered that to systemize infant-rearing support policies, relevant departments should differentiate the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es depending on the ages, especially 0~1 years old, and that the most limited category or the category that shows poor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 policies is 'time support' category, while

'cash support' is overlapped in different programs and thus requires an adjustment by merging and abolishing similar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has suggested four policy directions to promote the systemization of infant-rearing support policy, that is, 're-structuralization toward a consistent policy support system', 'securing full and diverse support depending on the needs for childcare support', 'differentiation of key childcare support strategies by age', and 'improvement of the parents' accessibility to the policy support.'

To achieve the said goals, this study has also suggested the methods to systemize the support policy based on three criteria, 'policy objectives',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 targets', and the 'support type.'

As for the method by 'policy objectives', the study recommends that the supports be divided into 'service', 'cash' and 'time' depending on the objectives, and the support targets be divided into 'general support' for infants of all applicable ages and 'selective support' for specific targets based on prescribed standards, to sub-categorize the content of support depending on individual targets. As for the methods by support type, the study suggests to systemize the type of support by criteria, by establishing specific criteria of each support typ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categories, such as service, cash, and time support.

Keyword: Infant, childcare support/childrearing support, systemization

부록

부록 1. 부표

〈부표 Ⅳ-2-1〉 모의 주중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충분한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①+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④+⑤ 충분하다	계 (수)	평균 (점)
전체	6.2	16.8	23.0	19.8	24.8	32.4	57.2	100.0(1,021)	3.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3.5	10.1	13.6	12.9	28.4	45.1	73.5	100.0(317)	4.0
만1세	7.6	17.6	25.2	19.1	21.7	34.0	55.7	100.0(341)	3.6
만2세	7.2	22.0	29.2	26.4	24.5	19.8	44.4	100.0(363)	3.3
$X^2(df)/F$				72.5(8)***					33.7***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9.4	27.4	36.8	19.8	21.5	21.9	43.4	100.0(576)	3.2
맞벌이 아님	2.0	3.1	5.2	19.8	29.0	46.1	75.1	100.0(445)	4.1
$X^2(df)/F$				160.8(4)***					-13.3***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12.1	36.2	48.2	20.0	21.4	10.4	31.8	100.0(365)	2.8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6.8	18.9	25.8	25.8	21.2	27.3	48.5	100.0(132)	3.4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9	2.9	4.8	18.1	28.1	49.0	77.1	100.0(524)	4.2
$X^2(df)/F$				286.1(8)***					169.4***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9	2.9	4.8	18.1	28.1	49.0	77.1	100.0(524)	4.2
40시간 미만	6.8	21.5	28.3	23.0	27.5	21.1	48.7	100.0(265)	3.4
40시간 이상	15.1	43.1	58.2	19.8	14.2	7.8	22.0	100.0(232)	2.6
$X^2(df)/F$				318.9(8)***					194.9***
월평균 본인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6	3.1	4.7	18.4	26.7	50.2	76.9	100.0(255)	4.2
300만원 미만	6.6	21.6	28.3	19.4	26.3	26.0	52.4	100.0(361)	3.4

구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①+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④+⑤ 충분하다	계 (수)	평균 (점)
300~500만원 미만	7.4	19.4	26.7	22.1	23.6	27.5	51.2	100.0(258)	3.5
500만원 이상	10.9	24.5	35.4	19.0	19.7	25.9	45.6	100.0(147)	3.3
X²(df)/F				90.8(12)***					37.9***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7	6.6	9.3	22.5	27.1	41.1	68.2	100.0(365)	4.0
400~700만원 미만	8.5	20.8	29.3	18.2	23.6	28.9	52.4	100.0(433)	3.4
700만원 이상	7.2	26.0	33.2	18.4	23.3	25.1	48.4	100.0(223)	3.3
X²(df)/F				66.4(8)***					28.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Ⅳ-2-2〉 부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3시간 이하	3시간초과~ 8시간이하	8시간초과~ 12시간이하	12시간 초과	계(수)	평균 (시간)
전체	22.5	31.1	24.7	21.7	100.0(1,000)	8.3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8.6	40.4	24.4	16.7	100.0(312)	8.0
만1세	25.1	29.3	23.6	22.1	100.0(335)	8.2
만2세	23.5	24.6	26.1	25.8	100.0(353)	8.7
X²(df)/F			23.8(6)**			1.5
자녀 수						
1명	18.7	34.5	26.0	20.8	100.0(615)	8.5
2명 이상	28.6	25.7	22.6	23.1	100.0(385)	8.1
X²(df)/t			17.8(3)***			1.3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6.6	30.8	26.9	25.7	100.0(565)	9.2
맞벌이 아님	30.1	31.5	21.8	16.6	100.0(435)	7.3
X²(df)/t			31.8(3)***			5.8***
모의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13.4	31.6	25.4	29.6	100.0(358)	9.7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28.9	29.7	25.0	16.4	100.0(128)	7.5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27.2	31.1	24.1	17.5	100.0(514)	7.7

구분	3시간 이하	3시간초과~ 8시간이하	8시간초과~ 12시간이하	12시간 초과	계(수)	평균 (시간)
$X^2(df)/F$		37.0(6)***				17.9***
모의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27.2	31.1	24.1	17.5	100.0(514)	7.7
40시간 미만	24.8	29.1	24.8	21.3	100.0(258)	8.4
40시간 이상	9.2	33.3	25.9	31.6	100.0(228)	9.9
$X^2(df)/F$		39.0(6)***				14.3***
부의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37.5	29.2	12.5	20.8	100.0(24)	7.1
40시간 미만	27.3	30.6	21.1	21.1	100.0(337)	8.0
40~46시간 미만	11.9	32.7	29.0	26.4	100.0(352)	9.5
46시간 이상	28.6	30.0	24.7	16.7	100.0(287)	7.5
$X^2(df)/F$		41.3(9)***				10.3***(a)
모의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2.5	31.2	28.1	28.1	100.0(423)	9.7
임시/일용근로자	21.9	40.6	25.0	12.5	100.0(32)	7.2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종사자	30.8	27.4	22.2	19.7	100.0(117)	7.8
경제활동안함/휴학	30.1	31.3	22.0	16.6	100.0(428)	7.3
$X^2(df)/F$		53.1(9)***				16.3***
월평균 모의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30.8	31.2	18.8	19.2	100.0(250)	7.3
300만원 미만	23.2	32.5	24.3	20.1	100.0(354)	8.2
300~500만원 미만	17.9	30.3	26.7	25.1	100.0(251)	9.0
500만원 이상	14.5	29.0	32.4	24.1	100.0(145)	9.5
$X^2(df)/F$		25.0(9)**				7.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8.9	30.6	19.0	21.5	100.0(353)	7.8
400~700만원 미만	21.0	31.5	24.3	23.1	100.0(428)	8.5
700만원 이상	15.1	31.1	34.7	19.2	100.0(219)	8.9
$X^2(df)/F$		26.9(6)***				3.5*(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Ⅳ-2-3〉 주중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충분한 정도 - 아빠

단위: %(명), 점

구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①+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④+⑤ 충분하다	계 (수)	평균 (점)
전체	27.7	35.1	62.8	20.3	12.8	4.1	16.9	100.0(1,000)	2.3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3.4	35.9	59.3	18.9	15.7	6.1	21.8	100.0(312)	2.5
만1세	28.1	34.3	62.4	22.4	11.9	3.3	15.2	100.0(335)	2.3
만2세	31.2	35.1	66.3	19.5	11.0	3.1	14.2	100.0(353)	2.2
$X^2(df)/F$				12.3(8)					4.1*
배우자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2.5	20.8	33.3	12.5	33.3	20.8	54.2	100.0(24)	3.3
40시간 미만	29.4	33.5	62.9	19.0	15.1	3.0	18.1	100.0(337)	2.3
40~46시간 미만	18.5	42.0	60.5	21.9	13.6	4.0	17.6	100.0(352)	2.4
46시간 이상	38.3	29.6	67.9	20.6	7.3	4.2	11.5	100.0(287)	2.1
$X^2(df)/F$				69.0(12)***					11.2***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4.1	32.0	56.1	24.6	15.3	4.0	19.3	100.0(353)	2.4
400~700만원 미만	32.0	33.2	65.2	18.5	11.7	4.7	16.4	100.0(428)	2.2
700만원 이상	25.1	43.8	68.9	16.9	11.0	3.2	14.2	100.0(219)	2.2
$X^2(df)/F$				20.0(8)*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부표 Ⅳ-3-1〉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문15)

단위: %(명)

민간	국공립	가정	사회 복지법인	직장	법인·단체	모름	계(수)
32.2	29.9	27.9	4.1	4.0	1.6	0.4	100.0(5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부표 Ⅴ-2-1〉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1) 출산전후휴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50.3	49.7	100.0(985)

구분	있다	없다	계(수)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5.3	14.7	100.0(428)
임시/일용근로자	23.3	76.7	100.0(30)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	27.7	72.3	100.0(112)
경제활동안함/휴학	22.2	77.8	100.0(415)
$X^2(df)$	372.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Ⅴ-2-2〉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3-1) 어머니 육아휴직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0.1	59.9	100.0(1,000)
지역 규모			
대도시	44.4	55.6	100.0(396)
중소도시	39.1	60.9	100.0(447)
읍면지역	31.8	68.2	100.0(157)
$X^2(df)$	7.7(2)*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46.5	53.5	100.0(314)
만1세	38.7	61.3	100.0(333)
만2세	35.7	64.3	100.0(353)
$X^2(df)$	8.5(2)*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2.5	27.5	100.0(429)
임시/일용근로자	19.4	80.6	100.0(31)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	16.2	83.8	100.0(117)
경제활동안함/휴학	15.4	84.6	100.0(423)
$X^2(df)$	328.4(3)***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27.4	72.6	100.0(248)
300만원 미만	45.2	54.8	100.0(356)
300만원~500만원 미만	41.8	58.2	100.0(251)
500만원 이상	46.2	53.8	100.0(145)
$X^2(df)$	23.1(3)***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4.7	75.3	100.0(352)
400만원~700만원 미만	48.0	52.0	100.0(429)
700만원 이상	49.3	50.7	100.0(219)
$X^2(df)$	53.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Ⅴ-2-3〉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3-2) 아버지 육아휴직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10.9	89.1	100.0(981)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3.1	86.9	100.0(559)
맞벌이 아님	8.1	91.9	100.0(422)
$X^2(df)$	6.2(1)*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0.2	89.8	100.0(244)
300만원 미만	8.0	92.0	100.0(350)
300만원~500만원 미만	14.3	85.7	100.0(244)
500만원 이상	13.3	86.7	100.0(143)
$X^2(df)$	7.0(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1.1	88.9	100.0(342)
400만원~700만원 미만	10.8	89.2	100.0(424)
700만원 이상	10.7	89.3	100.0(215)
$X^2(df)$	0.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부표 Ⅴ-2-4〉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19.7	80.3	100.0(923)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0.3	69.7	100.0(416)
임시/일용근로자	13.8	86.2	100.0(29)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12.0	88.0	100.0(100)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종사자			
경제활동안함/휴학	10.6	89.4	100.0(378)
$X^2(df)$	53.7(3)***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함	22.6	77.4	100.0(508)
이용하지 않음	16.1	83.9	100.0(415)
$X^2(df)$	6.1(1)*		
연장보육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함	21.1	78.9	100.0(227)
연장보육 이용하지 않음	23.8	76.2	100.0(281)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음	16.1	83.9	100.0(415)
$X^2(df)$	6.7(2)*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0.7	89.3	100.0(225)
300만원 미만	21.8	78.2	100.0(326)
300만원~500만원 미만	18.5	81.5	100.0(233)
500만원 이상	31.7	68.3	100.0(139)
$X^2(df)$	25.3(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4.6	85.4	100.0(309)
400만원~700만원 미만	19.2	80.8	100.0(406)
700만원 이상	28.4	71.6	100.0(208)
$X^2(df)$	15.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Ⅴ-2-5〉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5) 3+3 부모육아휴직제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8.8	91.2	100.0(604)
배우자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57.1	42.9	100.0(14)
40시간 미만	6.9	93.1	100.0(189)
40시간~46시간 미만	7.6	92.4	100.0(237)
46시간 이상	8.5	91.5	100.0(164)
$X^2(df)$	42.2(3)***		
본인 종사상 지위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상용근로자	12.5	87.5	100.0(313)
임시/일용근로자	0.0	100.0	100.0(16)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	5.4	94.6	100.0(56)
경제활동안함/휴학	5.0	95.0	100.0(219)
$X^2(df)$	11.5(3)**(b)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Ⅴ-2-6〉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7) 가족돌봄휴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13.6	86.4	100.0(646)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16.9	83.1	100.0(272)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15.5	84.5	100.0(71)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0.2	89.8	100.0(303)
$X^2(df)$	5.7(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0.2	89.8	100.0(303)
40시간 미만	12.4	87.6	100.0(170)
40시간 이상	20.8	79.2	100.0(173)
$X^2(df)$	1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 $p < .01$.

〈부표 Ⅴ-2-7〉 출산·양육 관련 지원 이용 경험 유무 -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6.8	93.2	(559)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4	92.6	(285)
임시/일용근로자	6.3	93.8	(16)
사업자/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	6.6	93.4	(61)
경제활동안함/휴학	6.1	93.9	(197)
$X^2(df)$	0.3(3)(b)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5.4	94.6	(166)
400만원~700만원 미만	5.3	94.7	(264)
700만원 이상	11.6	88.4	(129)
$X^2(df)$	6.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부표 Ⅴ-3-1〉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67.5	32.5	100.0(92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6.7	23.3	100.0(296)
만1세	65.6	34.4	100.0(305)
만2세	60.9	39.1	100.0(325)
$X^2(df)$	18.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부표 Ⅴ-3-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66.8	33.2	100.0(978)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6.1	23.9	100.0(305)
만1세	67.7	32.3	100.0(325)
만2세	57.8	42.2	100.0(348)
$X^2(df)$	24.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01$

〈부표 Ⅴ-3-3〉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시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76.5	23.5	100.0(965)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80.8	19.2	100.0(302)

구분	있다	없다	계(수)
만1세	77.5	22.5	100.0(320)
만2세	71.7	28.3	100.0(343)
$X^2(df)$	7.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 $p < .05$

〈부표 Ⅴ-3-4〉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시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80.6	19.4	100.0(779)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84.6	15.4	100.0(267)
만1세	78.6	21.4	100.0(252)
만2세	78.5	21.5	100.0(260)
$X^2(df)$	4.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부표 Ⅴ-3-5〉 어머니 육아휴직 개선점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간 확대	급여 수준 상향	이용 자격 제한 완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업무 수행 상의 불편 제거	경력 에서의 불이익 금지	기타	개선 필요 사항 없음	계(수)
전체	24.4	40.6	1.2	20.7	5.5	6.5	0.7	0.2	100.0(40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8.1	41.8	0.0	18.5	6.2	3.4	1.4	0.7	100.0(146)
만1세	23.3	41.9	0.8	22.5	1.6	9.3	0.8	0.0	100.0(129)
만2세	21.4	38.1	3.2	21.4	8.7	7.1	0.0	0.0	100.0(126)
$X^2(df)$	21.4(14)(b)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26.4	36.8	1.1	24.1	4.6	6.9	0.0	0.0	100.0(87)
400~700만원 미만	20.9	44.2	1.9	20.4	5.8	5.8	1.0	0.0	100.0(206)
700만원 이상	29.6	37.0	0.0	18.5	5.6	7.4	0.9	0.9	100.0(108)
$X^2(df)$	10.6(14)(b)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부록 2.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기본과제인「영아 양육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의 양육 실태 및 영아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지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ㅁ조 사 실 시 기 관 :	한국리서치
ㅁ조 사 관 련 문 의 :	한국리서치 전혜진 수석(02-3014-0983)
ㅁ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리서치 강연지 수석(02-3014-1047)

Ⅰ. 자녀 양육 특성

문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　　)시/도
2. (　　)시/군/구
3. (　　)읍/면/동

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 설문중단
2. 여자

문3.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설문중단

문4. 자녀는 모두 몇 명 있습니까? (　　)명

문5. 막내 자녀는 몇 세입니까? 만 연령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만0~2세 (2020년 8월 생부터 2023년 7월 생까지)
2. 만3~5세 (초등학교 입학 전) → 설문중단
3. 초등학교 1~3학년 → 설문중단
4.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설문중단

문5-1. 막내 자녀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1. 만0세 (2022년 8월 이후 출생)
2. 만1세 (2021년 8월 생 ~ 2022년 7월 생)
3. 만2세 (2020년 8월 생 ~ 2021년 7월 생)

문6.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1. 가구원수 (　　)명

문6-1.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한부모(본인) + 자녀
2. 부모(본인+배우자) + 자녀
3. 조부모 + 부모(본인+배우자) + 자녀
4. 조부모 + 한부모(본인) + 자녀
5. 기타

Ⅵ. 응답가구 특성

문7. 현재 귀하 및 귀하 배우자의 근로 형태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1) 본인	2) 배우자
1. 취업/학업 여부 1. 취업 중(휴직 포함) 2. 학업 중(휴학 포함) 3. 취업/학업 병행중 4. 미취업/미학업 5. 배우자 없음		
2. 근로형태 ※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 가장 '주된' 형태를 기준하여 응답함. ※ 학업중인 경우 학업을 기준으로 기입 1. 일정 요일, 일정시간 규칙적으로 출퇴근 2. 요일 또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출퇴근 3. 재택근무 4. 교대근무 5. 휴직중 6. 휴학중		
3. 근로시간 1주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학업중인 경우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입	____시간 ____분	____시간 ____분
4. 종사상 지위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 무급가족종사자 7.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등)		

[응답 기준]

※ 본 설문에서 자녀에 대한 문항은 귀댁의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문항의 막내 자녀에는 문5번에서 응답한 연령('만0세 자녀', '만1세 자녀', '만2세 자녀')이 자동 출력됩니다.

Ⅱ. 영아 양육 실태

문8. 현재 막내 자녀를 낮시간에 주로 돌봐주는 사람/기관(주양육자)은 누구(어디)입니까?

1. 엄마
2. 아빠
3. 조부모 또는 친인척
4. 정부지원(여성가족부/ 지자체) 아이돌보미
5. 민간 육아도우미(사설업체 소속 또는 개인 활동 베이비시터 등)
6. 이웃, 지인
7. 어린이집
8. 기타(　　)

문8-1. 막내 자녀를 낮시간에 주로 돌봐주는 사람/기관(주양육자/기관)은 귀하가 희망하던 사람(기관) 입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9. 본인, 배우자, 문8에서 응답한 주양육자를 제외하고 평소 막내 자녀를 돌볼 때 추가로 도움을 받는 사람(보조양육자)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가족 및 혈연(조부모 또는 친인척)
2. 정부지원 (공공)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 지원 아이돌보미)
3. 민간 육아도우미(사설업체 소속 또는 개인 활동 베이비시터 등)
4. 이웃, 지인(공동 육아 또는 품앗이 돌봄 포함)
5. 기타(　　)
6.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음

문9-1. 막내 자녀를 돌보는데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 가장 자주 도움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추가로 도움을 받는 사람(보조양육자): [제시: 문9]

1. 거의 매일
2. 1주일에 2~3회 이하
3. 1주일에 1회 이하
4. 2주일에 1회 이하
5. 1달에 1회 이하
6. 정해진바 없이 필요할 때

문10. 아이를 돌보는 사람/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막내 자녀의 양육자/기관에 대해 월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주로 돌봐주는 사람/기관(주양육자): [제시: 문8] - 추가로 도움을 받는 사람(보조양육자): [제시: 문9]

1. 비용 지출 없음 → 문11
2. 10만원 미만
3. 10~30만원 미만
4. 30~50만원 미만
5. 50~70만원 미만
6. 70~100만원 미만
7. 100만원 이상

문10-1. 막내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십니까?

1. 매우 부담스럽다
2. 부담스럽다
3. 보통이다
4. 부담스럽지 않다
5.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문11. 부모님이 막내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수면시간 제외)은 하루 중 평균 몇 시간 정도 입니까? 평일 및 주말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주중(평일)		2. 주말	
엄마(본인)	아빠(배우자)	엄마(본인)	아빠(배우자)
( ) 시간 ( ) 분	( ) 시간 ( ) 분	( ) 시간 ( ) 분	( ) 시간 ( ) 분

문11-1. 부모님이 막내 자녀를 하루 중 직접 돌보는 시간(주중 기준)은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1	2	3	4	5
1. 엄마(본인)					
2. 아빠(배우자)					

문12. 막내 자녀를 키우며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1.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12-1
2. 행복하지 않다 → 문12-1
3. 보통이다
4. 행복하다
5. 매우 행복하다

문12-1. 막내 자녀를 키우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 )

문13. 막내 자녀는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문21

문13-1. 막내 자녀는 어린이집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1. 생후 ( )개월부터 다니고 있음

문13-2. 막내 자녀가 00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는 희망한 시기입니까?

1. 예 → 문14
2. 아니오, 희망시기 보다 늦게 이용하게 됨
3. 아니오, 희망시기 보다 빨리 이용하게 됨

문13-2-1. 막내 자녀를 어린이집에 언제 보내길 희망하셨습니까?

1. 원래는 생후 ( )개월부터 이용을 희망함

문13-3. 막내 자녀를 희망하던 시기보다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2. 육아휴직 후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게 되어서
3.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되어서(주양육자의 취업, 질환 등)
4. 기타( )

문13-3-1.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거나(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활용), 부모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린이집에 더 늦게 보내고 싶었습니까?

1. 그렇다(실제 보낸 시기보다 늦게 보내고 싶었음)
2. 아니다

문14. 막내 자녀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이용 일수, 등하원 시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어린이집 이용 행태
1. 주 평균 이용 일수	주 평균 (　　)일
2. 등원시간(평일 기준)	(　　)시 (　　)분
3. 하원시간(평일 기준)	(　　)시 (　　)분

문14-4. 현재 어린이집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15. 막내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다음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단체어린이집
4. 민간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직장어린이집
7. 협동어린이집
8. 모름

문16. 막내 자녀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습니까?

1. 도보
2. 차량 이용(셔틀버스, 자차 포함)

문16-1.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하원 하는 데 걸리는 편도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1. 5분 이내
2. 5~10분 이내
3. 10~15분 이내
4. 15~20분 이내
5. 20~25분 이내
6. 25~30분 이내
7. 30분 이상

문17. 막내 자녀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원래 보내길 원했던 어린이집이었습니까?

1. 원하는 기관이었다
2. 원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문18. 막내 자녀는 현재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19
2. 아니다

※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시간 + 연장보육시간 - 기본보육: 09:00~16:00(7시간) - 연장보육: 16:00~19:30

문18-1.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연장보육이 불필요해서
2.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현행 비용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3. 영아반 연장반이 개설되지 않아서
4. 서비스 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원하는 시간만큼 운영되지 않아서
6. 아이를 기관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아서
7. 기타( )

※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시간 + 연장보육시간 - 기본보육: 09:00~16:00(7시간) - 연장보육: 16:00~19:30

문19. 막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20. 어린이집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예: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급간식 질 제고 등)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연장보육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없다
3. 보통이다
4. 있다
5. 매우 있다

문21. 막내 자녀는 어린이집 외 다른 학원이나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예: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

1. 그렇다 (예: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
2. 아니다

문21-1. 막내 자녀를 어린이집에도, 다른 학원이나 기관(예: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에도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
2. 기관에 보내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
3. 기관에 보내보았으나 적응을 못해서(아이가 싫어 함)
4. 근처에 보낼만한 기관이 없어서
5. 현재 신청하여 대기중
6. 아이 건강상 이유로(자주 아픔, 예민함, 장애, 질병 등)
7. 교사 1명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집단 돌봄)이 불안해서
8. 기타( )

문22. 막내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기관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 기타 기관 :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보내는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을 말합니다.

1. 예
2. 아니오 → 문23

문22-1. 막내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기타 기관에 보내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 막내 자녀가 생후 ( )개월 정도가 되면 보내려 함.

문22-2. 막내 자녀를 어느 기관에 보내실 예정입니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다른 학원, 기관(예: 놀이학교,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선교원, 체능단 등)
4. 잘 모르겠음

문23. 현재 막내 자녀는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중입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문24-1

문23-1. 막내 자녀는 어린이집에 얼마나 대기중입니까?

1.( )개월

Ⅳ.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인지 및 수혜 경험

문24-1. 귀하는 영아 양육 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구분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1	2	3
1. 시간제보육			
2.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3.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4. 육아종합지원센터			

문24-2. 다음의 양육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2
1. 시간제보육		
2.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3.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4. 육아종합지원센터		

문24-3. 다음의 양육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1. 시간제보육					
2.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3.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4. 육아종합지원센터					

문24-4-1. 귀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늘린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간제보육
: 지정된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1. 있다
2. 없다

문24-4-2. 귀하는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중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유형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이용)

1. 있다
2. 없다

문24-4-3. 귀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중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이용)

1. 있다
2. 없다

문24-4-4. 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 있다
2. 없다

문25.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영아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알고 있습니까?

구분	1. 인지 여부			2. 수혜 경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있다	없다	해당 없다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1	2	3	4
1. **부모급여**('22년 1.1. 이후 출생아 대상) ※ '23년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급							
2. **가정양육수당**(만 2세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 지급)							

구분	1. 인지 여부			2. 수혜 경험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있다	없다	해당 없다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1	2	3	4
3. **아동수당**(0세~만8세 월 10만원 지급)							
4. **첫만남 이용권**('22년 1.1. 이후 출생아 대상) 출생시 200만원 바우처 제공							

문26. 첫만남 이용권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한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전체 가족의 생활비
2. 막내 자녀의 식비(분유, 이유식, 식재료) 구입비
3. 막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의류, 유모차 등 기기, 장난감, 기저귀, 물티슈, 영유아용 로션, 목욕용품 등) 구입비
4. 막내 자녀의 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비용
5. 막내 자녀의 보건/의료비
6. 엄마의 산후조리비
7. 엄마의 보건/의료비

문26-1. 문 26번의 항목 이외에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한 항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의 문26번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가족의 생활비
- 막내 자녀의 식비(분유, 이유식, 식재료 구입)
- 막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의류, 유모차 등 기기, 장난감, 기저귀, 물티슈, 영유아용 로션, 목용용품 등) 구입비
- 막내 자녀의 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비용
- 막내 자녀의 보건/의료비
- 엄마의 산후조리비
- 엄마의 보건/의료비

1. 그 외 없음
2. 있다면 기입해 주십시오. ( )

문27. 아동에게 지급된 현금성 급여(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한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전체 가족의 생활비
2. 막내 자녀의 식비(분유, 이유식, 식재료) 구입비
3. 막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의류, 유모차 등 기기, 장난감, 기저귀, 물티슈, 영유아용 로션,

목욕용품 등) 구입비
4. 막내 자녀의 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등) 비용
5. 막내 자녀의 사교육(학원, 학습지 등) 등 관련 비용
6. 막내 자녀의 금융(저축/보험 등) 관련 비용
7. 막내 자녀가 참여하는 놀이, 체험, 문화 활동(키즈카페, 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등) 이용 비용

문27-1. 문29번의 항목 이외에 현금성 급여를 사용한 항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의 문27번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가족의 생활비
- 막내 자녀의 식비(분유, 이유식, 식재료) 구입비
- 막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물품(의류, 유모차 등 기기, 장난감, 기저귀, 물티슈, 영유아용 로션, 목용용품 등) 구입비
- 막내 자녀의 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등) 비용
- 막내 자녀의 사교육(학원, 학습지 등) 등 관련 비용
- 막내 자녀의 금융(저축/보험 등) 관련 비용
- 막내 자녀가 참여하는 놀이, 체험, 문화 활동(키즈카페, 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등) 이용 비용

1. 그 외 없음
2. 있다면 기입해 주십시오. ( )

문28. 2024년부터는 0~11개월의 영아 자녀 당 매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원을 받는다면 양육 여건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2024년 기준 영아 자녀 대상 현금 지원액]
0~11개월: 매월 11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 부모급여 100만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양육에 필요한 비용(식비, 육아용품 등)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2. 민간 육아도우미 고용을 생각해볼 것 같다					
3. 나의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					
4.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					
5. 육아휴직 기간을 더 길게 이용할 것 같다					
6. 자녀에게 놀이 및 체험활동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문28-1. 문28번에 제시된 항목 외에 영아(0~11개월)에게 월 110만원이 지원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의 문28번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 양육에 필요한 비용(식비, 육아용품) - 민간육아도우미 고용 - 나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검토,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자녀에게 놀이 및 체험활동 제공

1. (　　)

문29-1. 귀하는 다음의 지원(출산·양육 관련한 휴가/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알고 있습니까?

구분	인지 여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내용까지 안다
	1	2	3
1. **출산전후휴가** (산전후 90일, 출산전부터 이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0일 이내 유급휴가)			
3.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			
5. **3+3 부모육아휴직제** ('22.1.1. 이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최초 이용하고,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이용시 첫 3개월에 대해 휴직급여 상향 지급)			
6. **가족돌봄휴직** (무급, 연간 90일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7. **가족돌봄휴가** (무급, 연간 10일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가능)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0시간 이내 단축근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문29-2. 막내 자녀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의 지원(출산·양육 관련한 휴가/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막내 자녀 **대상** 이용 경험	
	있다	없다
	1	2
1. **출산전후휴가** (산전후 90일, 출산전부터 이용 가능)		

구분	막내 자녀 대상 이용 경험	
	있다	없다
	1	2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0일 이내 유급휴가)		
3-1. **어머니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3-2. **아버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		
5. **3+3 부모육아휴직제** ('22.1.1. 이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최초 이용하고,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이용시 첫 3개월에 대해 휴직급여 상향 지급)		
6. **가족돌봄휴직** (무급, 연간 90일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7. **가족돌봄휴가** (무급, 연간 10일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가능)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0시간 이내 단축근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문29-3. 막내 자녀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의 지원(출산·양육 관련한 휴가/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아직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이용을 계획하는 전체 기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막내 자녀 대상 이용기간
1. **어머니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　　) 개월
2. **아버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　　) 개월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	(　　) 개월
4. **가족돌봄휴직** (무급, 연간 90일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　　) 개월

문29-4. 자녀 양육에 다음의 지원(출산·양육 관련한 휴가/휴직,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얼마나 도움되셨습니까?

※ 배우자가 제도를 이용한 경우 본인 입장에서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자녀 양육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안되었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1. **출산전후휴가** (산전후 90일, 출산전부터 이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0일 이내 유급휴가)					
3-1. **어머니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3-2. **아버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					
5. **3+3 부모육아휴직제** ('22.1.1. 이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최초 이용하고,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이용시 첫 3개월에 대해 휴직급여 상향 지급)					
6. **가족돌봄휴직** (무급, 연간 90일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7. **가족돌봄휴가** (무급, 연간 10일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가능)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0시간 이내 단축근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문30-1.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0일 이내 유급휴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기간 확대
2. 급여 수준 상향
3. 이용 자격 제한(대상 자녀 연령, 사유, 신청 기한 등) 완화
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자격 충족시 이용 의무화 등)
5. 이용 시 업무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으로 업무 수행상의 불편 제거
6.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7. 기타( )
8. 개선 필요사항 없음

문30-2. 어머니 육아휴직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기간 확대
2. 급여 수준 상향
3. 이용 자격 제한(대상 자녀 연령, 사유, 신청 기한 등) 완화
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자격 충족시 이용 의무화 등)
5. 이용 시 업무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으로 업무 수행상의 불편 제거
6.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7. 기타( )
8. 개선 필요사항 없음

문30-3. 아버지 육아휴직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기간 확대
2. 급여 수준 상향
3. 이용 자격 제한(대상 자녀 연령, 사유, 신청 기한 등) 완화
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자격 충족시 이용 의무화 등)
5. 이용 시 업무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으로 업무 수행상의 불편 제거
6.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7. 기타( )
8. 개선 필요사항 없음

문30-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기간 확대
2. 급여 수준 상향
3. 이용 자격 제한(대상 자녀 연령, 사유, 신청 기한 등) 완화
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자격 충족시 이용 의무화 등)
5. 이용 시 업무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으로 업무 수행상의 불편 제거
6.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7. 기타( )
8. 개선 필요사항 없음

문30-5. 가족돌봄휴직(무급, 연간 90일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기간 확대
2. 유급 급여로 전환
3. 이용 자격 제한(대상 자녀 연령, 사유, 신청 기한 등) 완화
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자격 충족시 이용 의무화 등)
5. 이용 시 업무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으로 업무 수행상의 불편 제거
6.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7. 기타(　　)
8. 개선 필요사항 없음

문30-6. 가족돌봄휴가(무급, 연간 10일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가능)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기간 확대
2. 유급 급여로 전환
3. 이용 자격 제한(대상 자녀 연령, 사유, 신청 기한 등) 완화
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자격 충족시 이용 의무화 등)
5. 이용 시 업무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으로 업무 수행상의 불편 제거
6.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7. 기타(　　)
8. 개선 필요사항 없음

문30-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1년 이내 주당 15~30시간 이내 단축근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기간 확대
2. 급여 수준 상향
3. 이용 자격 제한(대상 자녀 연령, 사유, 신청 기한 등) 완화
4.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자격 충족시 이용 의무화 등)
5. 이용 시 업무 조정, 대체인력 활용 등으로 업무 수행상의 불편 제거
6. 이용 시 경력에서의 불이익 금지
7. 기타(　　)
8. 개선 필요사항 없음

문31. 귀댁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향후 다음의 제도(휴가/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1	2	3
1. **어머니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2. **아버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			
4. **3+3 부모육아휴직제** ('22.1.1. 이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최초 이용하고,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이용시 첫 3개월에 대해 휴직급여 상향 지급)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1	2	3
5. **가족돌봄휴직** (무급, 연간 90일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6. **가족돌봄휴가** (무급, 연간 10일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가능)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0시간 이내 단축근무, 질병·사고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시)			

Ⅴ.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개선 요구

문32. 막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2.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듦
3. 아이를 키우는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나를 위한 휴식, 여가 시간 부족, 체력 부담)
4. 영아기 발달에 맞는 양육 방법,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5. 휴직·퇴사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듦
6. 휴직·퇴사 등으로 경력 단절,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이 있음
7.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움(자녀 돌볼 시간이 부족함)
8.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음(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는 것 같음)
9. 기타( )

문33. 아이를 키우면서 이직, 퇴사, 승진 누락 등 경력 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2
1. 엄마(본인)		
2. 아빠(배우자)		

문34-1. 귀하는 양육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예: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부모급여, 육아휴직,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1. 정부부처(예: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관련 사업 홈페이지
2. 아이가 다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3. 구청, 주민센터 등
4. 이웃, 친구 등 지인
5. 지역맘 카페, 블로그, SNS

6. 기타( )

문34-2. 귀하는 정부지원사업(예: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부모급여, 육아휴직,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1.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름
2. 지원을 받고 싶어도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3. 지원마다 정보를 따로 찾아봐야 해서 번거로움
4.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채널의 정보가 달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
5. 기타( )

문34-3. 귀하는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과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육아정책 정보 통합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문35. 귀댁에서 막내 자녀를 키우는데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 지원(어린이집)
2.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가정에서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예: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3.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4.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수 있는 시간 지원(육아휴직)
5.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6.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문36-1. 귀하의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총 근로 소득은 얼마입니까?(세후 기준)

0. 근로소득 없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문36-2. 귀 가구의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세후 기준)

※ 가구 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 앞서 응답한 본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부록 3. 전문가 의견 조사

영아 가구 양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과제인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의 영아 양육지원의 제도 간 정합성, 정책 지원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정책 지원의 체계화'를 목표로 유관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한 고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문을 읽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설문 조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만 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영아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 상**: 유관 연구 분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구의 참여 절차**: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가 있다면,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설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참 여 기 간**: 2023년 8월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을 완료하고 설문 조사 참여 철회 및 폐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만원의 조사 참여 수당이 제공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본 설문조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함에 따라 경미한 근육통과 피로감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 참여에 따라 귀하에게 개인적인 이익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영아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식별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계좌정보 등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 보관되며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

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무공간에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보관되며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자료에 따라 하단 표의 기간의 경과 후 서류는 분쇄, 파일은 영구삭제하여 파기될 예정입니다.

종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에 공급에 관한 기록	연구자료
보관 연한	조사 완료 후 5년	작성일로부터 5년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설문조사 완료 후에도 귀하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청하면 해당 데이터는 즉시 삭제할 것입니다.

❍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다만, 근무시간(09:00~18:00) 외에는 E-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번호: 02-398-7708
E-MAIL: dian74@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자 조혜주 전화번호: 02-398-7711
E-MAIL: thgid@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RB 사무국 전화번호: 02-398-7727

1.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2.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설문중단

Ⅰ. 전문가 일반 사항

배문1. 다음 중 귀하의 주 연구(관심) 분야는 무엇입니까?

1. 아동(보육)/가족
2. 유아교육
3. 사회/여성
4. 사회복지
5. 경제/행정

배문2. 귀하가 해당 분야에서 연구(활동)하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　　)년

Ⅱ. 영아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문1. 현재 한국에서 0~2세 영아를 양육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은 〈표 1〉~〈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지원의 범주 중 0~2세(0~36개월 미만) 연령별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강화가 필요한 정책 범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아의 연령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현금성 지원(아동수당, 부모급여, 각종 바우처 등)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휴가, 휴직, 유연근무 등)
	1	2	3
1. 0세(0~11개월)			
2. 1세(12~23개월)			
3. 2세(24~35개월)			

※ 문 2 ~ 문4까지는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각 정책 범주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2-1. 귀하께서는 '서비스 지원'의 정책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비스 지원(0~2세 대상): 어린이집(연장보육),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다음은 일반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화 방향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1. 적정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공급 및 확대(영아보육의 지리적 접근성 보장)						
2. 영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						
3. 기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보조인력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						
4. 영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의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5.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 확대(입학금, 차량 비용 등 추가 비용 지원 확대)						
6.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자격기준 완화 (‘라’형의 비용 지원 대상 포함)						
7.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비율 상향						
8.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이용 편의성 제고						
9. 연장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연장보육 이용 비용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화						

문 2-2. 귀하께서는 ‘서비스 지원’ 의 정책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비스 지원(0~2세 대상): 어린이집(연장보육),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다음은 단시간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화 방향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10.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시간제 보육반 증설)						
11.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12. 시간제보육의 질 제고(보조인력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등)						
13.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14. 시간제보육 비용 지원 확대(현행 75% 지원, 시간당 천원 본인부담)						
15. 일시연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문2-3. 문2-1, 문2-2에서 제시된 서비스 범주의 개선 방향 외에 영아 양육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 ( )
2. 그외 없음

문3. 귀하께서는 '현금 지원' 의 정책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화 방향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1. 영아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지급 수준 상향 ('24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2. 영아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상향 (아동당 월 10만원 지급)						
3. 영아에게만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연령 확대(현행 0~1세(0~23개월)까지만 지급)						
4. 아동별 받을 수 있는 유사 현금지원의 통합·일원화(예: 0, 1세아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통합)						
5. 수급 자격 충족 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						
6. 가구특성(가구소득, 자녀수 등 고려) 반영하여 아동수당 차등지원						

문3-1. 문3에서 제시된 현금지원의 개선 방향 외에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 ( )
2. 그외 없음

문4-1. 귀하께서는 '시간 지원'의 정책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집중적인 돌봄 시간 부여(휴가·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화 방향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1. 휴가·휴직의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용 의무·자동화 등)						
2. 휴가·휴직의 이용 기간 확대						

강화 방향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3.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현행 통상임금의 80% 지급)						
4.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상향 조정(현행 150만원 상한)						
5. 육아휴직 중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액 관련 규제 완화						
6.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기간 확대(현행 유급휴가 10일)						
7.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8. 육아휴직 이용 대상 아동 연령 상향(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 대상 신청 가능)						
9.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유급화						

문4-2. 귀하께서는 '시간 지원'의 정책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부여(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화 방향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1.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용 의무·자동화 등)						
2. 이용 기간 확대						
3. 제도 이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산정방식 개선 등)						
4. 남성 근로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여성 위주 이용 방지						
5. 이용 대상 아동 연령 상향(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 대상 신청 가능)						
6. 휴직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별도 산정						

문4-3. 문4에서 제시된 시간 지원의 개선 방향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 ( )
2. 그외 없음

문5-1. 현재 한국의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모르겠음
	1	2	3
1.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을 아울러, 전반적으로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함			

문6-1. 다음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방향성 :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을 아울러, 전반적으로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함

(　　)

문5-2. 현재 한국의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현금 지원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모르겠음
	1	2	3
1. 아동이 어릴수록 더 높은 수준의 현금을 지원함			
2.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편적인 현금 지원 위주로 지원함			
3.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수준을 확대함(예: 영아 대상 '가정 내 양육 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의 수준 확대)			

문6-2. 다음의 현금 지원 관련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다음의 서비스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제시: 문5-3=2라고 응답한 항목]

(　　)

문5-3. 현재 한국의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서비스 지원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모르겠음
	1	2	3
1.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확대함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모르겠음
	1	2	3
(예: 영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2. 보육서비스는 '돌봄 공백' 대응의 필요성 이외 다양한 욕구 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시킴(예: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발달 지원 등)			
3. 필요할 때 시간제로 이용하는 서비스(예: 시간제보육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보다는 정기적·반일제이상(일일 3시간 이상, 점심시간 포함 4시간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어린이집) 중심으로 발전함			
4. 영아의 어린이집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은 불가피한 '대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함			
5.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용을 차등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계층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지원'임.			

문6-3. 다음의 서비스 지원 관련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다음의 서비스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제시: 문5-3=2라고 응답한 항목]

(　　)

문5-4. 현재 한국의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시간 지원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모르겠음
	1	2	3
1. 아동의 생후 1년까지의 시간 지원을 강화함(예: 3+3 부모 육아휴직제)			
2 시간 지원은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보다는 '집중적인 돌봄 시간' 지원 (휴가·휴직)을 강화함. (예: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보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확대)			

문6-4. 다음의 시간 지원 관련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다음의 시간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제시: 문5-4=2라고 응답한 항목]

(　　)

Ⅲ.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관한 의견

문7. 귀하께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 급여가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0~1세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인 0~1세아(0~23개월)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대상 아동별로 지급.

1. 전혀 도움되지 않음
2. 도움되지 않음
3. 도움됨
4. 매우 도움됨

문8. 부모 급여가 도입됨으로써 영아 가구의 보육서비스(어린이집) 이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1.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할 것
2.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할 것
3. 변화 없음
4. 잘 모르겠음

문9. 부모 급여가 도입됨으로써 영아 가구의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1. 이용 수요가 감소할 것
2.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
3. 변화 없음
4. 잘 모르겠음

문10. 부모 급여가 도입됨으로써 영아 가구의 육아휴직 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1. 이용이 감소할 것
2. 이용이 증가할 것
3. 변화 없음
4. 잘 모르겠음

문11-1. 귀하께서는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면(예: 현행 자녀 1인당 부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취업한 부모들의 육아휴직 이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남녀의 육아휴직 이용이 모두 증가할 것임
2. 지금보다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임
3. 지금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임
4. 육아휴직 이용률에 변화가 없을 것임
5. 잘 모르겠음

문11-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면(예: 현행 자녀 1인당 부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취업한 부모들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남녀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모두 늘어날 것임
2. 지금보다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임
3. 지금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임
4. 육아휴직 이용 기간은 변화가 없을 것임
5. 잘 모르겠음

문11-3. 귀하께서는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면(예: 현행 자녀 1인당 부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취업한 부모들의 육아휴직 이용 시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자녀가 영아일 때 이용 기간이 늘어날 것임
2. 지금보다 자녀가 유아일 때 이용 기간이 늘어날 것임
3. 지금보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이용 기간이 늘어날 것임
4. 육아휴직 이용 시기의 경향성에 변화가 없을 것임
5. 잘 모르겠음

문1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면(예: 현행 자녀 1인당 부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관)의 이용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가 늦어질 것임

2. 지금보다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가 빨라질 것임
3. 영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에 변화가 없을 것임
4. 잘 모르겠음

문13-1. 귀하께서는 향후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된다면(예: 소득대체율 또는 상한액 상향) 취업한 부모들의 육아휴직 이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남녀의 육아휴직 이용이 모두 증가할 것임
2. 지금보다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임
3. 지금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임
4. 육아휴직 이용률에 변화가 없을 것임
5. 잘 모르겠음

문13-2. 귀하께서는 향후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된다면(예: 소득대체율 또는 상한액 상향) 취업한 부모들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남녀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모두 늘어날 것임
2. 지금보다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임
3. 지금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임
4. 육아휴직 이용 기간은 변화가 없을 것임
5. 잘 모르겠음

Ⅲ. 영아 양육지원의 체계화 요건과 방안

문14. 귀하께서는 유아(만3~5세)와는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0~1세(생후 24개월 미만)
3. 0~2세(생후 36개월 미만)
4. 유아(만3~5세)와 차별화된 방향성 및 전략 불필요

문15. 귀하께서는 참고자료로 제시한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의 범주에서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하거나, 중복 지원 또는 지원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1	2	3
1.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한 부분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1	2	3
2. 특정 대상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들)			
3. 특정 대상이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			

문15-1-1.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서비스, 시간, 현금지원의 범주에서 특정 대상에 지원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문15-2-1.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서비스, 시간, 현금지원의 범주에서 특정 대상에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지원들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문15-3-1. 우리나라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서비스, 시간, 현금지원의 범주에서 특정 대상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지원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문16. 귀하께서는 현재 영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 서비스, 현금 지원 부문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방향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1	2	3	4
1. 영아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 또는 유관 부처·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조정(중복 및 누락 대상 관리)				
2. 영아 양육지원 정책 대상인 '영아'의 기준 일원화				
3. 영아 가구의 특성별 양육 욕구의 파악 및 관련 정책 지원의 구분				
4.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목표)의 명확화				
5. 시간, 서비스, 현금 지원의 정책 목표의 확인				
6. 현금, 시간, 서비스 지원별 법령 정비와 통합 재정의 확보				
7.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의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8. 정책 수요자(영아 양육 가구) 대상 일원화된 통합 정책 정보 제공 및 신청 플랫폼 구축				

※ 문 17~문19까지는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별 정합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17. 귀하께서는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다음 사업의 대상 연령 조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간제 보육: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단위 보육서비스. 서비스 이용자는 시간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함. 생후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1회 이용시 1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개별돌봄서비스. 1회 이용 시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연령 조정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1	2
1. 현재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연령 하한인 '생후 6개월'을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연령 하한인 '생후 3개월'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시간제보육 이용 대상 '생후 6개월~36개월 이하'에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로 조정) cf. 일본 등 주요국의 시간제보육서비스 대상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임.		
2. 부모급여 지급 대상 연령을 현행 생후 23개월 이하에서 생후 35개월 이하로 상향 조정(지급 대상 0~1세에서 0~2세로 상향)		

문17-3. 다음의 영아 양육시 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연령 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다음의 연령 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제시: 문17=2라고 응답한 항목]

( )

문18. 귀하께서는 영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개편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1	2
1. 현금성 지원에 차등지원의 기준 도입(가구소득, 자녀수 또는 출생순위 등의 차등 지원 기준 도입)		
2.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로 '육아휴직 종료 및 복귀'를 추가(육아휴직		

사업 개편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1	2
종료 시점의 어린이집 미연계 우려로 인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어린이집의 중복적 이용 문제 해소)		
3. 어린이집 연장보육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4. 시간 지원에 자녀수에 따른 지원 강화(예: '자녀양육' 지원의 목적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해당 출생아 포함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차등화)		

문18-5. 다음의 영아 가구 특성에 따라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아래의 사업개편안에 대해 사업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제시: 문18=2라고 응답한 항목]

( )

문19. 귀하께서는 영아에게 지급되는 각종 '현금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일 대상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자격기준(연령, 기관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일괄 산출, 통합 신청, 통합 지급

현금 급여 통합: **현재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0~1세' 영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등 **동일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현금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

1. 적절함
2. 적절하지 않음

문19-1. '현금 지원'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문 20~문21은 기타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20.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외 자녀돌봄을 위해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타 휴가·휴직 제도(예: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문20-1. 기타 휴가·휴직 제도를 유급화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문21. 영아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36개월 이하 영아 대상)'를 이용한다면, 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 보다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 소득 기준 유형 '라'형까지 지원 대상 확대

1. 매우 찬성
2. 대체로 찬성
3. 대체로 반대
4. 매우 반대
5. 잘 모르겠다

문21-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당지급을 위해 응답해 주신 분의 계좌 정보(예금주,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한국리서치는 본 조사 설문 참여 대상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 조사 참여에 대한 사례비 지급
- 응답 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 작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례금 지급 시) 예금주,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통계 자료 작성 관련) 성명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조사 종료 후 3개월까지
- 수당 지급 후 정보는 폐기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 위탁에 대한 업체 안내
- 사례비 지급 및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 한국리서치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합니다.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2.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사례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설문중단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68 650657
ISBN 979-11-6865-065-7